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93호

2024. 7. 18.(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9293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제929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제9295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제9296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제9297호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제929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15
제9299호 서울특별시교육감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제930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19
제930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 21

[입법예고]

제2024-2113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3
제2024-2114호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6
제2024-2118호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57

◈ 고 시

제2024-332호 봉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7
제2024-352호 제기4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및 재지정 고시 ····· 102
제2024-348호 동작구 노량진동 56-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 ····· 105
제2024-34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111
제2024-351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113
제2024-353호 24년 5차 모아타운 수시공모 대상지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115
제2024-354호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22
제2024-355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136

제2024-356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5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43
제2024-357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76
제2024-358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79
제2024-359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82

◈ 공 고

제2024-195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고 ····· 232
제2024-2066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234
제2024-2069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 236
제2024-2074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237
제2024-2079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239
제2024-2081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 241
제2024-2086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실시(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243
제2024-2087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246
제2024-2089호 공인등록 공고 ····· 248
제2024-209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 249
제2024-2096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 250
제2024-2099호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258
제2024-2100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259
제2024-2103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260
제2024-2105호 청문조서 열람 · 확인 통지 공고 ····· 262
제2024-2116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 265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 고]

제2024-260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266

◈ 구 고 시

제2024-85호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 269
제2024-70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주차장,문화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랑구) ····· 271

제2024-6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공공청사,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양천구) ····· 275
제2024-13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 문화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 278
제2024-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동작구) ····· 282
제2024-135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서초구) ····· 284
제2024-14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서초구) ····· 308
제2024-106호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강남구) ····· 311
제2024-1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강동구) ····· 313

◈ 구 공 고

제2024-79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광진구) ····· 316
제2024-1125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성북구) ····· 317
제2024-93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강북구) ···· 320
제2024-1151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 열람공고(도봉구) ····· 323
제2024-1348호 도시계획시설(갈곡리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 공고(은평구) ····· 352
제2024-147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강서구) ···· 360
제2024-1310호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 내 문화공원 조성계획(안) 주민 열람 공고(영등포구) ····· 361
제2024-1311호 신길동 413-5번지 일원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안) 주민 열람 공고(영등포구) ····· 368
제2024-17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강남구) ····· 381
제2024-1475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동구) ····· 383
제2024-1477호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안) 공람 공고(강동구) ····· 386

◈ 사업소고시

제2024-18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96
제2024-18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97
제2024-18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98
제2024-19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399
제2024-19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00
제2024-19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01

제2024-19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02

◈ 기 타

제2024-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마포소방서) ····· 403
제2024-3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영등포소방서) ····· 404
제2024-270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05
제2024-27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06
제2024-280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07
제2024-28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08
제2024-282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09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9293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으로 한다.

별표 3 명칭란 중 “휘경공업고등학교”를 “서울반도체고등학교”로 한다.

구 분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본청	동부	동대문구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동대문구 겸재로 21

별표 7 구분란 중 “중부교육지원청(13교)”를 “중부교육지원청(14교)”로, “중구(4교)”를 “중구(5교)”로 하고, 중부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서울광희초등학교병설유치원” 란 다음에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란을, 위치란 중 “중구 다산로 269(신당동)” 다음에 “중구 퇴계로 22길 17”을 신설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중부교육지원청	중구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중구 퇴계로22길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휘경공업고등학교의 명칭 변경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교명제정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에서 성별 균형 내용 신설
  나. 2024. 9. 1.자 고등학교 1개교(휘경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
  다. 2024. 9. 1.자 유치원 1개원(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 (제5조제2항)
    □ 조항 개정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신설>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나. 고등학교 명칭 변경 (제3조 관련 별표 3)
    □ 교명 변경: 1개교
      ○ 휘경공업고등학교 →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다. 유치원 명칭 및 위치 신설 (제3조 관련 별표 7)
    □ 신설: 1개원
      ○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중구 퇴계로22길 17)

◈ 서울특별시조례 제929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교육시설안전과장”을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 변경 (조례 제6조제5항)
  o 당연직위원 중 교육시설안전과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변경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조례 제11조)
  o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 연장

◈ 서울특별시조례 제9295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산 소재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15조의 제목 “(기부자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 특례)”를 “(기부자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특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를 “사용을 허가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사용 · 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연 6회”를 “연 12회”로 한다.

제4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학교 부담 해소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별도 위임 근거 신설

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 마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에 대한 감면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 사무에 대한 별도 위임 근거 마련

o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별도 재산관리관 지정을 위한 조례 근거 신설

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 마련

o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 1건당 기준가격: 취득·처분 각 20억원)

o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감면 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률: 100분의 80)

다.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체계의 통일성 확보

o 용어의 정비 :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

o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 완화

· 분할납부 기준금액 : 100만원 → 50만원

· 분할납부 횟수 : 연 6회의 범위 → 연 12회의 범위

※ 변상금의 경우,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시 6개월 이내 2회 범위

◈ 서울특별시조례 제9296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개방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3.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개방을 중지한 경우
5. 그 밖에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 중 ‘놀 권리’의 확보를 위해 방과 후와 주말, 공휴일에도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 함.

나. 이에 개방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방하지 않는 근거를 설정하여 실질적인 개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조항신설(제3조제2항)

나.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제3조제2항)

다.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안 제3조의2에 별도 규정되는바, 이와 관련한 단서를 삭제함(제3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97호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학생”을 “학생, 학교전담노무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학생의 안전보장)”을 “(학생의 노동인권보호 및 안전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사고”를 “노동인권침해 또는 안전사고”로, “및”을 “등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를 “산업재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노동인권침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과 보건에”를 “산업재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노동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로, “하여야”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협약 위반, 노동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고등학생 현장실습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한 실습 여건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임.

나. 이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학교전담노무사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노동인권보호와 안전보장을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학교전담노무사를 포함함(제9조제2항)

나. 학생의 노동인권보호 사항을 강화함(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9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7월 18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잔식기부"란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을 말한다.
3. "푸드뱅크"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부받은 식품등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나누는 사업을 말한다.
4.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
5.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잔식기부를 지원·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내 학교와 푸드뱅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남은 잔식을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장은 학교급식의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에 재정지원 요청 및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잔식기부를 위해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잔식기부의 지원·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잔식기부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잔식기부 관리 및 운영 방안
3. 잔식기부 지도 및 감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표창)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학교급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식을 폐기하지 않고 지역사회기부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감량과 탄소중립의 가치를 반영한 급식을 활성화하기 위함.

나.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잔식)을기부하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잔식 기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제1조, 제2조)

나. 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제5조, 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99호

서울특별시교육감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감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인적·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장벽 없는 정책이 수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통합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통합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정보관리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평가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관련 상담
4. 제9조에 따른 교원 대상 교육 및 연수 등 지원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센터의 업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특수교육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수교육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와 학부모, 교원의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구체적인 지원 대책 및 기능이 명시되지 않아 연속성 있는 통합교육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과 조기 발견 및 관리 등을 명시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범위를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다. 또한 2025년 2월 28일에 개정 시행 예정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의 통합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바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라. 이와 함께 교육 시책 추진 시 인적·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 학생과 장벽 없는 정책이 수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도 감독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마. 아울러, 학부모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이 특수교육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 위한 인적·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정책 수립, 통합교육 지원 강화(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의3)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범위를 보장하고 연속성 있는 통합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특수교육정책자문단 구성 및 실태조사 공개 의무(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30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7월 18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
3. “급식시설”이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시설·설비를 말한다.
4. “조리장”이란 급식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고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5. “급식종사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명시된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급식시설 환경 개선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리장 내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2. 조리장 내 실내 공기 질 측정장치 설치
3. 조리과정에서의 유해 물질 차단을 위한 설비의 설치
4.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5.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급식종사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급식종사자 근무 여건 등 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급식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4조).

라. 급식종사자 배치 및 인력 운영에 대해 규정함(제5조).

마. 급식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30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7월 18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 등의 인문교육을 진흥함으로써 인문학적 기본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인문교육”이란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문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문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인문교육을 위한 학습체계,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3. 학생 등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
4. 교원의 인문교육 관련 연수 및 지원책 확대
5. 인문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6.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인문교육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인문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교육 관련 교사 연수 강화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학생 등의 교육을 위한 인문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인문교육 관련 교육·행사 개최) ① 교육감은 인문교육에 대한 학생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인문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개최
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행사
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

제10조(경비의 지원)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교육감은 인문교육 사업의 성과가 탁월하거나 인문교육에 큰 공헌을 한 개인과 학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학생 등의 인문교육을 진흥함으로써 인문학적 기본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함(제2조, 제3조).

나. 교육감의 인문교육 진흥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제6조).

다. 인문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범위를 규정함(제8조).

라. 인문교육 관련 교육과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13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 사항과 도매시장법인의 최저거래 기준 등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반영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안 제4조, 제16조, 제24조 등에 표기된 서울시장의 권한을 위탁받는 자를 '공사 사장'에서 '공사'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24조제1항, 안 제26조제1항, 안 제30조, 안 제 42조제1항)
- 지방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신청 절차 규정 정비(안 제24조)
- 중도매업 재허가 절차 규정에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 반영("재허가" → "갱신허가") 등(안 제26조제1항)
- 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검증 권한 위임 및 검증결과 제출 기한 규정 신설(안 제26조제3항)
- 중도매업 허가 신청 처리 기한 변경(안 별지 제8호 서식)
- 축산부산물의 가격 관련 제43조 삭제

나. 도매시장 최저거래 기준 정비

-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최저거래금액 관련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 축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삭제 및 시장별 구분 기준 정비(안 별표 7 개정)
- 도매시장법인의 최저거래 기준 신설(안 별표 7 개정)
-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최저거래 기준 조정 및 수산부류 비수기(4~9월) 반영(안 별표 7 개정)

※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수산부류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다. 기타 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정비

- 시장도매인 재지정 시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6조제7항)

- 판매원표 보관방법 정비(안 제48조제4항)
- 상위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현행화(안 제52조제1항 및 안 제56조제2항)
- 강서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상한 수 조정(별표 3)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농수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유통과(전화: 02-2133-4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 768-8945

(2) 이메일: skunkgroove@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7층 농수산유통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를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로 한다.

제2조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하 “공사 사장“이라 한다)에게”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로, “공사 사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최저거래금액) 도매시장 부류별 법인의 월간 최저거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8조제5항 중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법」”을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반환은 법인”을 “반환은 법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공사사장을”을 “공사를”로, “공사사장은”을 “공사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공사 사장에게”를 “공사에”로, “공사 사장은”을 “공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도매인의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가락동도매시장 등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허가신청서 및 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법 제25조제2항의 적격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공사 사장에게” 를 “공사에”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가락동도매시장 등 외의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적격 여부 등을 법인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재허가 절차 등)” 을 “(갱신허가 절차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중도매업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에서 중도매업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제출한다.

③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가, 그 밖의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법인이 법·조례·개설자가 정한 갱신허가 조건에 따라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허가종료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단서 중 “공사 사장에게” 를 “공사에” 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공사 사장에게” 를 “공사에” 로, “공사 사장은” 을 “공사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4항 중 “디스켓, CD” 를 “정보저장매체” 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22조” 를 “제21조” 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밀수 또는” 을 “밀수 또는” 으로, “그 밖에”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56조제2항의 단서 중 “생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법 제32조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를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로 한다.

제63조제1항 본문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로 한다.

별표 3 중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란 중 “600명”을 “350명”으로 한다.

별표 7 및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수산부류의 중도매인란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7]

부류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기준

(제7조의2, 제20조, 제27조 관련)

시장명	부류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 도매인
				개인	법인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부류		법인별 직전 3개년 해당 월 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5,000만원 (특수품목은 2,000만원)	1억원 (특수품목은 8,000만원)	2억원
	수산부류	선어 패류		3,000만원 (4월~9월 2,500만원)	8,000만원 (4월~9월 6,500만원)	1억원
		건어		2,000만원 (4월~9월 1,600만원)	4,000만원 (4월~9월 3,200만원)	5천만원
서울특별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2,500만원 (특수품목은 1,500만원)	6,500만원	2억원
서울특별시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부류	선어 패류		2,500만원	6,500만원	-
		건어		1,600만원	3,200만원	-
서울특별시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양곡부류			24,000kg	80,000kg	96,000kg

[별지 제8호 서식](제24조제1항 관련)

<table>
<tr><td colspan="4">중도매업 허가신청서(개인, 법인)</td><td>처리기한 60일
※ 단, 갱신허가
처리기한 30일</td></tr>
<tr><td rowspan="5">신
청
인</td><td>성 명
(대표자)</td><td>※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기입</td><td>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td><td>※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상 호 명
(법 인 명)</td><td colspan="3">※법인인 경우 법인명 기입</td></tr>
<tr><td>참가 도매
시 장 명</td><td></td><td>주된 경매참가 희망
도매시장법인 명</td><td></td></tr>
<tr><td>거래 품목</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 하</td></tr>
<tr><td colspan="5">첨부서류 1. 공통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법인인 경우 임원)
나. 사진 1매(반명함판 3cm×4cm)
다. 기존 중도매인허가증(허가갱신 및 법인 전환시)
2. 개인의 경우
가. 은행의 잔고증명서
3.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다. 당해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허가 갱신 및 법인 전환의 경우 대차대조표)
라. 신규 법인 전환시 출자금 납입증명서 및 중도매업 폐업신고서</td></tr>
</tabl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 ---------- ----------.
제2조(도매시장의 개설 및 거래품목)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위치·면적 및 거래품목은 별표 1과 같고, 거래품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2조(도매시장의 개설 및 거래품목) ---------- ---------- ----------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제4조(지정절차 등) ① 「서울특	제4조(지정절차 등) ① --------

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영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강서농산물도매시장·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이하 "가락동도매시장 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하 "공사 사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사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 --- 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⑧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 제52조의2의 요건과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 ---.
제5조(상한 수) ① (생 략)	제5조(상한 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법인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 -- 고려하여 ---------- ---------- -----.
<신 설>	제7조의2(최저거래금액) 도매시장 부류별 법인의 월간 최저거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8조(보증금 납부 및 반환) ① ~ ④ (생 략)	제8조(보증금 납부 및 반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나 정액 보상의 특약 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하거나 시장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 ----------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 ---------- ---------- ---------- ---------- ----------.

⑥ 보증금의 반환은 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나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⑥ ------ 반환은 법인------ ----------. ---------- ---.
제12조(휴·폐업 신고) ①(생 략).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사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휴·폐업 신고) ① (현행 단서 외 부분과 같음) ------- 공사를 ---------- 공사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정절차 등) ① (생략).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의 경우에는 공사 사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사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절차 등) ① (현행 단서 외 부분과 같음) --------- 공사에 ---------- 공사는 -- ----------.
②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장도매인의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17조(상한 수) ① (생 략)	제17조(상한 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 -- 고려하여 ----------.
제23조(준용) ① 시장도매인의 휴·폐업신고, 시설사용면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3조(준용) ① ---------- ---------- 대해서는----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허가 절차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의2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의 경우에는 공사 사장(그 밖의 도매시장은 법인 대표)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사장(그 밖의 도매시장은 법인 대표)은	제24조(허가 절차 등) ① ------ ----------. 이 경우 가락동도매시장 등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법 제25조제2항의 적격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

법 제25조제2항의 적격여부 등에 대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의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공사 사장에게 제출한다.	② ----------. ---------- 공사에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가락동도매시장 등 외의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적격 여부 등을 법인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재허가 절차 등) ① 조례 제13조와 관련하여,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 사장이, 노량진시장은 법인이 법·조례·개설자가 정한 재허가 조건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시장에게 중도매업 재허가를 허가종료일	제26조(갱신허가 절차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중도매업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에서 중도매업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제출한

3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가, 그 밖의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법인이 법·조례·개설자가 정한 갱신허가 조건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허가종료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경매참가자를 두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 사장에게 제출한다.	제30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 ---------- 공사에 ----------.
제31조(매매참가인의 신고절차 등) ①·② (생 략)	제31조(매매참가인의 신고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매매참가인의 자격 요건, 도매시장내에서 판매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격자에 대하여는 별	③ ---------- 대해서는----

지 제10의3호서식의 신고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0의4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증 및 별지 제10의5호 서식의 거래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 ---------- ----------.
제35조(구매자 신고 등) ① (생략)	제35조(구매자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매자 신고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하자"는 "구매자"로 본다.	② ---------- 대해서는----------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 ① (생 략).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사장은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42조(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 ① (현행 단서 외 부분과 같음). ---------- ----- 공사에 ---------- ------ 공사는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제51조제1항 단서규정은	④ ---------- ------ 대해서는---------- ---------- ----------

제외한다), 제57조 및 조례 제36조를 준용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매매방법의 예외) 축산부산물의 가격은 법인별로 부산물가격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부산물가격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을 출하자와 구매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48조(판매원표 관리) ① ~ ③ (생 략)	제48조(판매원표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관리(문서, 디스켓, CD 등 포함)하여야 한다.	④ ---------- 정보저장매체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22조의 보증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법인, 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손해	제52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 제22조 ----------

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① (생 략)	제53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 -------- 밀수 또는 ------- --------- 그 밖의 -------- ---------- ---------- ---------- ---------- ---------- ----------.
제56조(시장사용료) ① (생 략)	제56조(시장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000분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나 생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2016년 12	② ---------- ---------- ---------- ---------- ---------- ----. ---------- ---------- ----------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

월 31일까지 법 제32조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장에 반입하여---------- ---------- ---------- ---------- ---------- ---------- ------.
제63조(규격출하품의 결정 등) ① 제62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규격출하품은 국내산 농수산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하는 "표준규격품"으로 한다. 단, 시장은 출하물품의 종류 및 특성을 감안하여 따로 규격출하품을 지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63조(규격출하품의 결정 등) ①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3]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상한 수

(제5조, 제17조, 제25조 관련)

시장명	부류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생 략)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청과부류	3개	60개	600명
(생 략)				

[별표 3]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상한 수

(제5조, 제17조, 제25조 관련)

시장명	부류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현행과 같음)				
----------	-----	--	---	350명
(현행과 같음)				

[별표 7]

부류별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기준(제20조, 제27조 관련)

시장명	부류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개인	법인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부류		<신 설>	4,000만원 (특수품목은 2,000만원)	8,000만원	2억원
	수산부류	선어패류		2,500만원	6,500만원	1억원
		건어		1,600만원	3,200만원	5천만원
·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곡 도매시장 · 서울특별시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부류		<신 설>	2,500만원 (특수품목은 1,500만원)	6,500만원	2억원
	수산부류	선어패류		2,500만원	6,500만원	-
		건어		1,600만원	3,200만원	-
	양곡부류			24,000kg	80,000kg	96,000kg
				축산부류		5,000만원
				화훼부류		200만원
				약용작물부류		200만원

[별지 제8호 서식](제24조제1항 관련)

중도매업 허가신청서(개인, 법인)	처리기한 60일
(이하 생략)	

[별표 7]

부류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기준(제7조의2, 제20조, 제27조 관련)

시장명	부류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개인	법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법인별 직전 3개년 해당 월 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5,000만원 (특수품목은 2,000만원)	1억원 (특수품목은 8,000만원)	(현행과 같음)
				3,000만원 (4월~9월 2,500만원)	8,000만원 (4월~9월 6,500만원)	
				2,000만원 (4월~9월 1,600만원)	4,000만원 (4월~9월 3,200만원)	
서울특별시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청과부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부류	선어패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곡 도매시장	양곡부류		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지 제8호 서식](제24조제1항 관련)

(현행과 같음)	처리기한 60일 ※ 단, 갱신허가 처리기한 30일
(현행과 같음)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table>
<tr><td>1. 규제사무명</td><td>도매시장 유통주체의 월간 최저거래 기준 설정(조정) 및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상한 수 조정</td><td colspan="8">2. 구 분</td></tr>
<tr><td></td><td></td><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 심사</td><td></td><td>존속 기한 연장</td><td></td></tr>
<tr><td>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9">민생노동국장 송호재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도매시장관리팀장 조미란, 담당 임경진</td></tr>
<tr><td>4. 근거법령명 등</td><td colspan="5">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td><td>관 련 규제수</td><td colspan="3">2건</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9">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3개 집단
2,300여명</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9">기한없음: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 폐지 시까지 유지</td></tr>
<tr><td>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td><td colspan="9">▸신설 규제
–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 기준 설정

▸강화 규제
– 가락시장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 기준 상향 조정
– 강서시장 중도매인 상한수 하향 조정</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도매시장 유통주체의 월간 최저거래기준 설정(조정)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도매시장 내 각 유통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게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거래규모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음

나. 서울 소재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서울시는 농안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업무규정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에 규정하면서 규칙 별표 7 (2015.7.1. 시행)에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 도매시장법인 최저거래기준의 경우,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9개 지자체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최저거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도매시장의 핵심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기준은 설정하고 있지 않아 도매시장 활성화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설하고자 함

라. 중도매인의 최저 거래기준의 경우, 2013년 1월(수산부류는 2001년 12월) 시행된 최저거래금액을 2024년 7월 현재까지 적용 중임. 이에 물가상승 및 제반 유통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내 대표적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중도매인 최저거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상한 수 조정

가. 농안법 제20조는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도매시장 유통주체인 중도매인이 편리하게 영업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나. 2004년 개장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인근 영등포청과시장 상인 전부를 수용한다는 목표로 당시 영등포청과시장 상인 수(600명)를 도매시장 중도매인 상한 수로 정하였으나,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구조 상 수용 가능한 중도매인 점포 수는 270여 개 정도임

다. 2004년 개장 시 441명이었던 중도매인 수는 2024년 7월 현재 27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중도매인 점포를 추가로 확보하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여건을 고려, 중도매인의 상한 수를 350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금번 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기준이 마련되고,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기준이 일부 상향, 강서시장의 중도매인 수는 하향 조정됨
- 월간 최저거래기준 신설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도매시장법인은 반대하는 입장이며, 월간 최

저거래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가락시장 중도매인은 시행 시기 조정(유예)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강서시장 중도매인은 규제 강화에 대해 중립적(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음) 입장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금번 개정에 앞서 각 이해관계자에 의견을 조회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규제의 수준도 도매시장법인 및 가락시장 중도매인이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임
- 해당 규제 이행여부 확인 등 도매시장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행정력(예산 및 인력)도 없기에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목적 실현이 가능하다 판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 본 규정 개정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나. 규제의 편익

(시 민)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따라 물가안정 등 부수적 효과 발생이 예상되며,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농수산물을 공급받는 등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행정편익) 도매시장법인의 최저거래기준 신설을 통해 도매시장 활성화 및 거래질서 확립 도모

다. 검토결과: 본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는 반면, 편익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기준 신설 또는 조정을 위해 연구용역(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을 시행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작성
- 도매시장법인 최저거래기준의 경우, 가격 폭락 또는 폭등이 발생할 수 있는 농수산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근 3개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 가락시장 수산부류에 대해서는 계절별 비수기가 있는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였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근 거: 농안법 제23조, 제25조, 제36조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 등에 따라 개설자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존속기한: 상위 법령 폐지 시까지 존속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해당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가능
  - 기존 도매시장 관리업무에 수반된 사업으로 기존 조직 · 인력 · 예산으로 대체 가능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해당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가. 도매시장법인 최저거래기준은 반기별 평가 및 지정조건 이행여부 평가
 나.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기준은 농안법 제25조제3항제6호에 따라 반기별 평가 및 행정처분

2. 기타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14호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 정비(안 제2조)
나.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근거 명시(안 제5조)
다. 용어 및 약칭 문구 등 정비(안 제2조, 제4~7조, 제10~12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133-7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이메일(E-mail) : health2133@seoul.go.kr
(2)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보건의료정책과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 “응급환자”라 함은”을 “ “응급환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 “응급의료”라 함은”을 “ “응급의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응급처치”라 함은”을 “ “응급처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을 “ “응급의료종사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을 “ “응급의료기관”이란”으로, “이 법”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 “구급차”라 함은”을 “ “구급차등”이란”으로, “자동차를”을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을 “법 제1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응급의료사업”을 “법 제13조의6제3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구급차 등”을 “구급차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4조 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다중 집합장소”를 “다중집합장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서울시에”를 각각 “시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서울시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을 “(시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도의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중 “구급차 등”을 각각 “구급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법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을 “자는”으로, “보건복지부령”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구급차 등”을 “구급차등”으로,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요청 할”을 “요청할”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증 응급환자”를 각각 “중증응급환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서울시”를 “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제7조제1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가목에 따른 장례식장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6. 그 밖에 구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응급환자”란 ---------- ---------- ---------- ---------- ---------- ---------- ---------- ---------- ---------- ----------.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 ---------- ---------- ---------- ---------- ---------- ---------- ----.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3. “응급처치”란 ---------- ---------- ----------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중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 ---------- ---------- --.
4.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 ---------- ---------- ---------- ----------.
5.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
6. “구급차”라 함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 ----------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4조(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제4조(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법 제13조의2제1항----------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① ---- 법 제13조의6제3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사업----------.
② 응급의료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서울시가 수행하는 응급의료관련 업무의 지원	8.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구급차등----------.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구조·응급처치 교육 및 보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구조·응급처치 교육 및 보급 등) ① ---- 법 제14조제2항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 ① ----------.
1.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1. 시---------- 다중집합장소 ----------
2.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	2. 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서울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 관리자, 설치 일시, 사용 등에 대한 정보	② ----- 시에 ----------

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 ---------- ----------.
③ 시장은 서울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시에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서울시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①·② (생 략)	제10조(시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수집정보의 내용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규칙----------.
제11조(응급환자 이송) ①·② (생 략)	제11조(응급환자 이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구급차 등을 응급환자의 수요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구급차등---------- ----------.
④ 시장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 구급차등----------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8조의2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	⑥ ---------- 자는 -------

의 운전자와 법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⑦ 응급의료기관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시장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⑦ ---------- 구급차등 ---------- 사유 없이 ---------- 요청할 ----.
제12조(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 ① 시장은 중증 응급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 ① ---- 중증응급환자 -------.
② 시장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시설을 지정하고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② ---------- 중증응급환자 -------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제14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서울시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자치구,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 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제7조 제1항관련)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제7조제1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6. 그 밖에 구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가목에 따른 장례식장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6. 그 밖에 구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18호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어울림플라자(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하는 복지문화시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조)
나. 어울림플라자의 주요 기능(안 제3조)
- 장애인, 지역주민 등에게 문화·체육 교육 및 여가 활동 공간 지원
- 장애인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다. 어울림플라자의 이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6조)
- 이용료 부과·징수, 납부·반환, 이용 제한 등
라. 어울림플라자의 대관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7~12조)
- 대관 허가·취소, 대관료 부과·감면, 대관 제한 및 대관자의 의무 등
마.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안 제13~16조)
-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 위탁 및 비용 지원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전화: 02-2133-7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메일(E-mail) : ifyouwon@seoul.go.kr

(2)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과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울림플라자”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등촌1동)에 설치한 복지문화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어울림플라자 내의 다목적강당, 공연장, 체육·문화공간, 회의실, 교육연수실, 수영장, 주차장 등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어울림플라자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대관료”란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을 위하여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어울림플라자의 기능) 어울림플라자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지역주민 등에게 문화·체육 교육 및 여가 활동 공간 지원
2. 장애인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시설의 이용

제4조(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원가·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7.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8. 65세 이상 어르신
9. 어울림플라자 운영으로 인해 소음과 빛 등 생활공해, 사생활 제한 등의 불편이 발생하는 곳으로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용료를 체납하거나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장 시설의 대관 등

제7조(대관 허가)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표 2의 시설에 대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대관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대관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대관자가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대관자가 사용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대관자가 이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대관료 부과 및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항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액
3. 대관자가 장애인 단체인 행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다만, 구체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해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대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정치 · 종교 단체가 개최하거나 정치 · 종교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대관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임의로 대관신청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대관신청인이 제8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대관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7. 대관신청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상 대관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대관자의 의무) ① 대관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대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4장 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 ·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 투자 · 출연기관,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 운영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관리 · 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어울림플라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도 · 감독)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 ·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 ·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울림플라자 이용료 부과기준 (제4조 제1항 관련)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연수교육		당일 - 반일 이내	15,000원~50,000원	○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당일 - 전일(8시간)	30,000원~100,000원	
		1박2일 (12시간)	45,000원~150,000원	
		2박3일 (18시간)	67,000원~225,000원	
생활문화·생활체육		당일	5,000원~50,000원	
		1개월	40,000원~100,000원	
수영장	수강료	1개월 (주3회)	60,000원~100,000원	
	자유수영	1회	5,000원~10,000원	
연수객실(숙박)		1박	100,000원~140,000원	

※ 일반 프로그램 이용료이며, 그 밖에 무료 또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별표 2]

어울림플라자 시설 대관료 부과기준(제9조 제1항 관련)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공연장	350,000원 ~ 550,000원	1. 1회(4시간) 단가로서, 1회는 오전(10:00~14:00), 오후(14:00~18:00), 야간(18:00~22:00)으로 함 2.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다목적강당	250,000원 ~ 450,000원	
문화교실	10,000원 ~ 60,000원	1. 시간당 단가이며,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2.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대회의실(식당)	60,000원 ~ 120,000원	
세미나실	40,000원 ~ 80,000원	
분임토의실	20,000원 ~ 40,000원	

※ 시설별 부속시설 이용료는 원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관료와 별도로 청구 가능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19호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규제영향 분석서 공고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안의 대관 관련 규정(조례안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안건 상정 전에 규제영향분석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table>
<tr><td>1. 규제사무명</td><td colspan="3">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안
① 대관 허가
② 대관 허가 취소
③ 대관자의 원상회복 의무</td><td colspan="6">2. 구 분</td></tr>
<tr><td></td><td></td><td></td><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심사</td><td></td><td>존속기한 연장</td><td></td></tr>
<tr><td>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9">서울특별시 복지실
장애인복지과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동은, 담당 원경진</td></tr>
<tr><td>4. 근거법령명등</td><td colspan="5">지방자치법</td><td colspan="2">관 련 규제수</td><td colspan="2">3건</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9">어울림플라자 시설(공연장, 다목적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대관 신청하는 자, 대관 허가를 받은 자, 대관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9">존속기한 없음</td></tr>
<tr><td>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td><td colspan="9">– 조례안 제7조(대관허가)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표 2의 시설에 대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대관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례안 제8조(대관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대관자가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대관자가 사용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대관자가 이 조례 또는 관리 ·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td></tr>
</table>

	5.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조례안 제12조(대관자의 의무)** ② 대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어울림플라자는 문화·체육·교육연수 등의 기능이 복합된 복지문화시설로, 다양한 활동과 참여가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체 프로그램 운영 외에 대관을 병행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대관에 대하여 규제하는 대관 허가 및 대관 허가 취소, 원상복구 의무 규정이 포함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시설의 부적합한 사용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대관허가 또는 허가취소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또한 대관자가 발생시킨 훼손에 대하여 대관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토록 책임을 규정하여, 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이용자의 편의 증대 및 안정적인 시설 유지관리

– 대관기준에 따른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대관 운영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명확한 기준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책임있는 대관 사용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으로 규제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부적정한 허가사용,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한 예방 및 조치를 통해, 규제 목적의 실현이 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부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규정에 따른 대관사용이 가능케 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비용 최소화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조례안의 규제는 시민의 복지문화 향유 증진 및 어울림플라자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됨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명확한 대관 기준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 및 편익 향상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대관 허가 및 취소 사유,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에 따라 조례에 허가 및 허가 취소사항, 원상복구 내용을 규정함
   - 대관운영 기간동안 대관규정이 필요하므로 존속기한을 두지 않고, 대관 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자치법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을 위탁 사무로 추진 예정(대관 포함)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기존 조직 운영시(시 직영시) 행정조직 확대 및 전문성이 저하되어, 위탁사무로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 도모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32호

봉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459호(1995.1.7.)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건설교통부 고시 제286호(1989.6.20.)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022-72호(2022.2.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봉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위　　치 : 은평구 수색동 129-4 일대
3. 공원면적 : 173,855.3㎡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67) 및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351-800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봉산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봉산 근린공원 총괄표

구분	기 정(봉산근린공원)						변 경(봉산근린공원)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73,394.20	46,594.08	3	187.32	187.32	136	173,855.30	48,807.10	4	270.09	270.09	161	증 461.10㎡
소계	173,394.20	46,594.08	3	187.32	187.32	136	173,855.30	48,807.10	4	270.09	270.09	161	증 461.10㎡
수국사 지구	79,147.70	27,263.32	2	135.12	135.12	28	79,147.70	27,263.32	2	135.12	135.12	28	
산새마을 2지구	10,062.50	1,396.86				35	10,062.50	1,396.86				35	
산새마을 1지구	17,417.70	2,124.35				18	17,417.70	2,124.35				18	
증산 지구	33,392.30	11,549.82	1	52.20	52.20	34	33,392.30	11,549.82	1	52.20	52.20	34	
수색 지구	33,374.00	4,259.73				21	33,835.10	6,472.75	1	82.77	82.77	46	증 461.10㎡
시설지구 외													
시설율 (법정40%)		26.87%						28.06%					
건폐율 (법정15%)		0.10%						0.15%					
특정시설율 (법정20%)													

나. 시설별 총괄표(시설지구)

구분		기 정(봉산근린공원)					변 경(봉산근린공원)					비고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6,594.08	3	187.32	187.32	136	48,807.10	4	270.09	270.09	161	
기반 시설	소계	9,208.43					11,102.06					
	도로	8,018.54					9,815.37					
	광장	1,189.89					1,286.69					
조경시설		22,275.98					22,323.52					
휴양시설		1,374.39				62	1,541.80				70	
유희시설		1,248.64				15	1,248.64				15	
운동시설		8,742.34				48	8,764.01				54	
교양시설		1,355.00					1,355.00					
편익시설		1,105.70	2	97.32	97.32	3	1,105.70	2	97.32	97.32	3	
관리시설		370.00	1	90.00	90.00	8	452.77	2	172.77	172.77	19	
도시농업시설		913.60					913.60					
녹지 및 기타												

다. <변경> 지구별 세부조서

1-1. 봉산 근린공원 수국사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 (수국사지구)						변 경 (수국사지구)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79,147.70	27,263.32	2	135.12	135.12	28	79,147.70	27,263.32	2	135.12	135.12	28	
기 시	소 계	2,546.53	2,546.53					2,546.53	2,546.53					
	도 로	2,227.40	2,227.40					2,227.40	2,227.40					
	광 장	319.13	319.13					319.13	319.13					
조경시설		21,912.66	21,912.66					21,912.66	21,912.66					
휴양시설		508.13	508.13				12	508.13	508.13				12	
유희시설		325.00	325.00					325.00	325.00					
운동시설							12						12	
교양시설		1,355.00	1,355.00					1,355.00	1,355.00					
편익시설		316.00	316.00	1	45.12	45.12		316.00	316.00	1	45.12	45.12		
관리시설		300.00	300.00	1	90.00	90.00	4	300.00	300.00	1	90.00	90.00	4	
녹지 및 기타		51,884.38						51,884.38						

1-2. 봉산근린공원 수국사지구 시설조서

구 분			기 정(수국사지구)								변 경(수국사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79,147.70	27,263.32								79,147.70	27,263.32						
기반시설	소 계			2,546.53	2,546.53								2,546.53	2,546.53						
	도 로			2,227.40	2,227.40								2,227.40	2,227.40						
	광 장	가	구산동 산136-5	319.13	319.13						가	구산동 산136-5	319.13	319.13						
조경시설	소 계			21,912.66	21,912.66								21,912.66	21,912.66						
	관상용식수대	나		21,912.66	21,912.66						나		21,912.66	21,912.66						
휴양시설	소 계			508.13	508.13								508.13	508.13						
	휴게소	다		508.13	508.13						다		508.13	508.13						
		다-1	구산동 산135-5	180.00	180.00						다-1	구산동 산135-5	180.00	180.00						
		다-2	구산동 산136-4	328.13	328.13						다-2	구산동 산136-4	328.13	328.13						
	파고라	①	광장							2	①	광장							2	
	평의자	②	광장							6	②	광장							6	
	앉음벽	③	광장							4	③	광장							4	
유희시설	소 계			325.00	325.00								325.00	325.00						
	어린이놀이터	라	구산동 산135-5	325.00	325.00						라	구산동 산135-5	325.00	325.00						

구 분		기 정(수국사지구)									변 경(수국사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 계									12									12	
	체력단련기구	④	광장							12	④	광장							12	
교양시설	소 계			1,355.00	1,355.00								1,355.00	1,355.00						
	전시관	마	구산동 산135-1	945.00	945.00						마	구산동 산135-1	945.00	945.00						
	야외극장	바	구산동 산135-5	410.00	410.00						바	구산동 산135-5	410.00	410.00						
편익시설	소 계			316.00	316.00		1	45.12	45.12				316.00	316.00		1	45.12	45.12		
	음수장	사	구산동 산135-5	80.00	80.00						사	구산동 산135-5	80.00	80.00						
	전망대	아	구산동 산135-5	156.00	156.00						아	구산동 산135-5	156.00	156.00						
	화장실	자	구산동 산135-5	80.00	80.00		1	45.12	45.12		자	구산동 산135-5	80.00	80.00		1	45.12	45.12		
관리시설	소 계			300.00	300.00	-	1	90.00	90.00	4			300.00	300.00	-	1	90.00	90.00	4	
	관리사무소	차	구산동 산135-1	300.00	300.00	-	1	90.00	90.00		차	구산동 산135-1	300.00	300.00	-	1	90.00	90.00		
	방향안내판	⑤	전지역							4	⑤	전지역							4	
녹지 및 기타	소 계			51,884.38									51,884.38							
	녹지			51,884.38									51,884.38							

1-3. 봉산근린공원 수국사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381.16	2,227.40				
변경					1,381.16	2,227.40				
당초	산책로	소 계			900.32	1,725.31				
변경					900.32	1,725.31				
당초		3	1	2.0	6.2	12.48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1	
변경		3	1	2.0	6.2	12.48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1	
당초		3	2	2.0	84.6	169.68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3	
변경		3	2	2.0	84.6	169.68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3	
당초		3	3	2.0	54.6	109.22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변경		3	3	2.0	54.6	109.22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	4	2.0	30.4	60.97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변경		3	4	2.0	30.4	60.97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	5	2.0	60.2	120.71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변경		3	5	2.0	60.2	120.71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	6	1.0	59.9	59.87	산책로	산책로 5	산책로 7	
변경		3	6	1.0	59.9	59.87	산책로	산책로 5	산책로 7	
당초		3	7	1.5	77.2	115.86	산책로	산책로 6	공원경계	
변경		3	7	1.5	77.2	115.86	산책로	산책로 6	공원경계	
당초		3	8	1.5	189.73	306.32	진입로	공원 경계	공원경계	
변경		3	8	1.5	189.73	306.32	진입로	공원 경계	공원경계	
당초		3	9	2.5-4.5	7.53	21.90	연결로	전시관 마	산책로 8	
변경		3	9	2.5-4.5	7.53	21.90	연결로	전시관 마	산책로 8	
당초		3	10	1.5	293.09	439.47	진입로	산책로 8	공원경계	
변경		3	10	1.5	293.09	439.47	진입로	산책로 8	공원경계	
당초		3	11	1.5	182.85	273.85	산책로	산책로 8	산책로 1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3	11	1.5	182.85	273.85	산책로	산책로 8	산책로 10	
당초		3	12	1.5	46.77	70.30	진입로	공원 경계	휴게소 다-2	
변경		3	12	1.5	46.77	70.30	진입로	공원 경계	휴게소 다-2	
당초		3	13	1.5	21.02	31.52	진입로	공원 경계	휴게소 다-2	
변경		3	13	1.5	21.02	31.52	진입로	공원 경계	휴게소 다-2	
당초		3	14	1.5	46.37	69.70	진입로	휴게소 다-2	공원경계	
변경		3	14	1.5	46.37	69.70	진입로	휴게소 다-2	공원경계	
당초		3	15	1.5	119.07	178.44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10	
변경		3	15	1.5	119.07	178.44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10	
당초		3	16	1.5	16.09	26.16	진입로	어린이놀이터 라	공원경계	
변경		3	16	1.5	16.09	26.16	진입로	어린이놀이터 라	공원경계	
당초		3	17	1.5-5.5	7.27	15.76	연결로	산책로 10	화장실 자	
변경		3	17	1.5-5.5	7.27	15.76	연결로	산책로 10	화장실 자	
당초		3	18	1.5-5.2	23.93	63.67	진입로	공원 경계	산책로 10	
변경		3	18	1.5-5.2	23.93	63.67	진입로	공원 경계	산책로 10	
당초		3	19	1.5	54.34	81.52	연결로	산책로 18	음수장 사	
변경		3	19	1.5	54.34	81.52	연결로	산책로 18	음수장 사	

2-1. 봉산 근린공원 산새마을2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 (산새마을2지구)						변 경 (산새마을2지구)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0,062.50	1,396.86				35	10,062.50	1,396.86				35	
기반시설	소 계	1,073.36	1,073.36					1,073.36	1,073.36					
	도 로	785.36	785.36					785.36	785.36					
	광 장	288.00	288.00					288.00	288.00					
휴양시설		86.50	86.50				16	86.50	86.50				16	
유희시설		116.00	116.00				8	116.00	116.00				8	
운동시설		51.00	51.00				6	51.00	51.00				6	
편익시설							1						1	
관리시설		70.00	70.00				4	70.00	70.00				4	
녹지 및 기타		8,665.64						8,665.64						

2-2. 봉산 근린공원 산새마을2지구 시설조서

구 분		기 정(산새마을2지구)									변 경(산새마을2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0,062.50	1,396.86								10,062.50	1,396.86						
기반시설	소 계			1,073.36	1,073.36								1,073.36	1,073.36						
	도 로			785.36	785.36								785.36	785.36						
	광 장	가		288.00	288.00						가		288.00	288.00						
		가-1	신사동 산55-5	153.00	153.00						가-1	신사동 산55-5	153.00	153.00						
		가-2	신사동 산55-5	68.00	68.00						가-2	신사동 산55-5	68.00	68.00						
		가-3	신사동 산55-5	67.00	67.00						가-3	신사동 산55-5	67.00	67.00						
휴양시설	소 계			86.50	86.50					16			86.50	86.50					16	
	쉼터	나	신사동 산55-5	86.50	86.50					-	나	신사동 산55-5	86.50	86.50					-	
	초가정자	①	쉼터							1	①	쉼터							1	
	팔각정자	②	쉼터							1	②	쉼터							1	
	평의자	③	전지역							3	③	전지역							3	
	등의자	④	전지역							11	④	전지역							11	
유희시설	소 계			116.00	116.00					8			116.00	116.00					8	
	어린이놀이터	다	신사동 산55-5	116.00	116.00						다	신사동 산55-5	116.00	116.00						
	조합놀이대	⑤	어린이놀이터							1	⑤	어린이놀이터							1	
	시소	⑥	어린이놀이터							1	⑥	어린이놀이터							1	
	스윙	⑦	어린이놀이터							1	⑦	어린이놀이터							1	
	통나무오르기	⑧	녹지대							2	⑧	녹지대							2	

구 분		기 정(산새마을2지구)									변 경(산새마을2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물 공작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물 공작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음집	⑨	녹지대							2	⑨	녹지대							2	
	밧줄다리	⑩	녹지대							1	⑩	녹지대							1	
운동시설	소 계			51.00	51.00								51.00	51.00						
	운동 마당	라		51.00	51.00						라		51.00	51.00						
		라-1	신사동 산55-5	37.00	37.00						라-1	신사동 산55-5	37.00	37.00						
		라-2	신사동 산55-5	7.00	7.00						라-2	신사동 산55-5	7.00	7.00						
		라-3	신사동 산55-5	7.00	7.00						라-3	신사동 산55-5	7.00	7.00						
	체력단련기구	⑪	전지역	60.00	60.00					6	⑪	전지역	60.00	60.00					6	
편익시설	소 계									1									1	
	음수전	⑫	광장							1	⑫	광장							1	
관리시설	소 계			70.00	70.00					4			70.00	70.00					4	
	관리 시설	마		70.00	70.00						마		70.00	70.00						
		마-1	신사동 산55-6	22.00	22.00						마-1	신사동 산55-6	22.00	22.00						
		마-2	신사동 산55-5	12.00	12.00						마-2	신사동 산55-5	12.00	12.00						
		마-3	신사동 산55-6	20.00	20.00						마-3	신사동 산55-6	20.00	20.00						
		마-4	신사동 산55-5	16.00	16.00						마-4	신사동 산55-5	16.00	16.00						
	안내판	⑬	녹지대							4	⑬	녹지대							4	
녹지 및 기타	소 계			8,665.64									8,665.64							
	녹지			8,665.64									8,665.64							

2-3. 봉산근린공원 산새마을2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205.40	785.36				
변경					205.40	785.36				
당초	소로	소계			59.00	536.80	진입로	공원경계	화장실 1	
변경					59.00	536.80				
당초		2류	2-1	8.0~10.0	47.0	448.00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	
변경		2류	2-1	8.0~10.0	47.0	448.00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	
당초		3류	3-1	7.4	12.0	88.80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	
변경		3류	3-1	7.4	12.0	88.80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	
당초	산책로	소 계			146.40	248.56				
변경					146.40	248.56				
당초		3	1	1.3	5.0	6.50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2-1	
변경		3	1	1.3	5.0	6.50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2-1	
당초		3	2	1.5	6.4	9.60	산책로	소로 2-1	쉼터 나	
변경		3	2	1.5	6.4	9.60	산책로	소로 2-1	쉼터 나	
당초		3	3	2.6	20.0	52.00	산책로	소로 2-1	광장 가-1	
변경		3	3	2.6	20.0	52.00	산책로	소로 2-1	광장 가-1	
당초		3	4	1.6	34.0	54.40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2	
변경		3	4	1.6	34.0	54.40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2	
당초		3	5	1.6	16.5	26.40	산책로	운동마당 라-1	광장 가-2	
변경		3	5	1.6	16.5	26.40	산책로	운동마당 라-1	광장 가-2	
당초		3	6	1.5	11.0	19.40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3	
변경		3	6	1.5	11.0	19.40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3	
당초		3	7	1.5	53.5	80.26	산책로	광장 가-3	공원경계	
변경		3	7	1.5	53.5	80.26	산책로	광장 가-3	공원경계	

3-1. 봉산근린공원 산새마을1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산새마을1지구)						변 경(산새마을1지구)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7,417.70	2,124.35				18	17,417.70	2,124.35				18	
기반시설	소계	665.25	665.25					665.25	665.25					
	도로	555.95	555.95					555.95	555.95					
	광장	109.30	109.30					109.30	109.30					
휴양시설		119.90	119.90				12	119.90	119.90				12	
유희시설		401.00	401.00				2	401.00	401.00				2	
운동시설		24.60	24.60				3	24.60	24.60				3	
편익시설							1						1	
도시농업시설		913.60	913.60					913.60	913.60					
녹지 및 기타		15,293.35						15,293.35						

3-2. 봉산 근린공원 산새마을1지구 시설조서

구 분		기 정(산새마을1지구)									변 경(산새마을1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7,417.70	2,124.35					18			17,417.70	2,124.35					18	
기반시설	소 계			665.25	665.25								665.25	665.25						
	도 로			555.95	555.95								555.95	555.95						
	광 장	가	신사동 산51-3	109.30	109.30						가	신사동 산51-3	109.30	109.30						
휴양시설	소 계			119.90	119.90					12			119.90	119.90					12	
	쉼터	나		119.90	119.90						나		119.90	119.90						
		나-1	신사동 산51-3	70.90	70.90						나-1	신사동 산51-3	70.90	70.90						
		나-2	신사동 237-177	49.00	49.00						나-2	신사동 237-177	49.00	49.00						
	파고라	①	쉼터							1	①	쉼터							1	
	평의자	②	쉼터							3	②	쉼터							3	
	등의자	③	전지역							5	③	전지역							5	
	평상	④	광장							3	④	광장							3	
유희시설	소 계			401.00	401.00					2			401.00	401.00					2	
	어린이놀이터	다	신사동 237-177	401.00	401.00						다	신사동 237-177	401.00	401.00						
	조합놀이대	⑤	어린이놀이터							1	⑤	어린이놀이터							1	
	흔들놀이대	⑥	어린이놀이터							1	⑥	어린이놀이터							1	
운동시설	소 계			24.60	24.60								24.60	24.60						
	체력단련장	라	사동 237-177	24.60	24.60						라	사동 237-177	24.60	24.60						

구 분		기 정(산새마을1지구)									변 경(산새마을1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체력단련기구	⑦	체력단련장								⑦	체력단련장								
편익시설	소 계									1									1	
	개수대	⑧	광장							1	⑧	광장							1	
관리시설	소 계			913.60	913.60								913.60	913.60						
	관리시설	마		913.60	913.60						마		913.60	913.60						
		마-1	신사동 산51-3	522.80	522.80						마-1	신사동 산51-3	522.80	522.80						
		마-2	신사동 산51-3	382.00	382.00						마-2	신사동 산51-3	382.00	382.00						
		마-3	신사동 산51-3	8.80	8.80						마-3	신사동 산51-3	8.80	8.80						
녹지 및 기타	소 계			15,293.35									15,293.35							
	녹지			15,293.35									15,293.35							

3-3. 봉산 근린공원 산새마을1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276.90	555.95	-	-	-	
변경					276.90	555.95		-	-	-
당초	산책로	소계			276.90	555.95	-	-	-	
변경					276.90	555.95		-	-	-
당초		3	1	1.5	18.5	27.75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변경		3	1	1.5	18.5	27.75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당초		3	2	1.5	10.9	16.35	산책로	공원경계	쉼터 나-1	
변경		3	2	1.5	10.9	16.35	산책로	공원경계	쉼터 나-1	
당초		3	3	1.5	43.9	65.85	산책로	쉼터 나-1	광장 가	
변경		3	3	1.5	43.9	65.85	산책로	쉼터 나-1	광장 가	
당초		3	4	1.5	49.4	74.10	산책로	산책로 5	광장 가	
변경		3	4	1.5	49.4	74.10	산책로	산책로 5	광장 가	
당초		3	5	2.0	44.4	88.80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변경		3	5	2.0	44.4	88.80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	6	3.0	75.8	227.40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	공원경계	
변경		3	6	3.0	75.8	227.40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	공원경계	
당초		3	7	1.5	4.5	6.75	산책로	공원경계	쉼터 나-2	
변경		3	7	1.5	4.5	6.75	산책로	공원경계	쉼터 나-2	
당초		3	8	2.5	4.7	11.75	산책로	쉼터 나-2	어린이놀이터 다	
변경		3	8	2.5	4.7	11.75	산책로	쉼터 나-2	어린이놀이터 다	
당초		3	9	1.5	24.8	37.20	산책로	공원경계	어린이놀이터 다	
변경		3	9	1.5	24.8	37.20	산책로	공원경계	어린이놀이터 다	

4-1. 봉산근린공원 증산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 (증산지구)						변 경 (증산지구)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3,392.30	11,549.82	1	52.20	52.20	34	33,392.30	11,549.82	1	52.20	52.20	34	
기반 시설	소계	2,224.41	2,224.41					2,224.41	2,224.41					
	도로	1,854.90	1,854.90					1,854.90	1,854.90					
	광장	369.51	369.51					369.51	369.51					
휴양시설							11						11	
유희시설		406.64	406.64				5	406.64	406.64				5	
교양시설														
운동시설		8,129.07	8,129.07				17	8,129.07	8,129.07				17	
편익시설		789.70	789.70	1	52.20	52.20	1	789.70	789.70	1	52.20	52.20	1	
녹지 및 기타		21,842.48						21,842.48						

4-2. 봉산근린공원 증산지구 시설조서

구 분		기 정 (증산지구)									변 경 (증산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33,392.30	11,549.82								33,392.30	11,549.82						
기반시설	소 계			2,224.41	2,224.41								2,224.41	2,224.41						
	도 로			1,854.90	1,854.90								1,854.90	1,854.90						
	광 장	가	증산동 산18-6	369.51	369.51						가	증산동 산18-6	369.51	369.51						
휴양시설	소 계									11									11	
	파고라	①	전지역							2	①	전지역							2	
	평상형파고라	②	다목적 운동구장							1	②	다목적 운동구장							1	
	평의자	③	전지역							8	③	전지역							8	
유희시설	소 계			406.64	406.64					5			406.64	406.64					5	
	어린이놀이터	나	증산동 산18-6	406.64	406.64						나	증산동 산18-6	406.64	406.64						
	조합놀이대	④	어린이놀이터							1	④	어린이놀이터							1	
	그네	⑤	어린이놀이터							1	⑤	어린이놀이터							1	
	시소	⑥	어린이놀이터							1	⑥	어린이놀이터							1	
	흔들놀이대	⑦	어린이놀이터							2	⑦	어린이놀이터							2	
운동시설	소 계			8,129.07	8,129.07					17			8,129.07	8,129.07					17	
	족구장	다	증산동 산18-6	1,488.42	1,488.42						다	증산동 산18-6	1,488.42	1,488.42						
	축구장	라	증산동 산18-6	2,548.10	2,548.10						라	증산동 산18-6	2,548.10	2,548.10						
	배구장	마	증산동 산18-6	1,984.74	1,984.74						마	증산동 산18-6	1,984.74	1,984.74						

구 분		기 정 (증산지구)									변 경 (증산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농구장	바	증산동 산18-6	957.18	957.18						바	증산동 산18-6	957.18	957.18						
	체력 단련장	아	증산동 산18-6	144.63	144.63						아	증산동 산18-6	144.63	144.63						
	풋살구장	사	증산동 산18-6	1,006.00	1,006.00						사	증산동 산18-6	1,006.00	1,006.00						
	체력단련시설	⑧								17	⑧								17	
편익 시설	소 계			789.70	789.70		1	52.20	52.20	1			789.70	789.70		1	52.20	52.20	1	
	주차장	자	증산동 산18-6	673.68	673.68						자	증산동 산18-6	673.68	673.68						
	화장실	1	증산동 산18-6	102.00	102.00	조적	1	52.20	52.20		1	증산동 산18-6	102.00	102.00	조적	1	52.20	52.20		
	음수대	⑨	전지역	14.02	14.02					1	⑨	전지역	14.02	14.02					1	
녹지 및 기타	소 계			21,842.48									21,842.48							
	녹 지			21,776.98									21,776.98							
	기 타			65.50									65.50							

4-3. 봉산근린공원 증산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546.35	1,854.9				
변경					546.35	1,854.9				
당초	소로	소 계			243.72	1,437.10				
변경					243.72	1,437.10				
당초		3류	1	6.0	159.76	1,023.78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	
변경		3류	1	6.0	159.76	1,023.78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	
당초		3류	2	4.0	83.96	413.32	진입로	광장 가	산책로 9	
변경		3류	2	4.0	83.96	413.32	진입로	광장 가	산책로 9	
당초	산책로	소계			302.63	417.8				
변경					302.63	417.8				
당초			1	1.5	47.19	73.28	진입로	소로 3-1	체력단련장아	
변경			1	1.5	47.19	73.28	진입로	소로 3-1	체력단련장 아	
당초			2	1.5	21.61	32.73	진입로	공원경계	체력단련장 아	
변경			2	1.5	21.61	32.73	진입로	공원경계	체력단련장 아	
당초			3	1.5	47.09	74.91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1	
변경			3	1.5	47.09	74.91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1	
당초			4	1.2	8.16	9.79	연결로	광장 가	족구장 다	
변경			4	1.2	8.16	9.79	연결로	광장 가	족구장 다	
당초			5	1.5	4.81	7.23	연결로	광장 가	족구장 다	
변경			5	1.5	4.81	7.23	연결로	광장 가	족구장 다	
당초			6	1.5	4.32	6.85	산책로	공원경계	족구장 다	
변경			6	1.5	4.32	6.85	산책로	공원경계	족구장 다	
당초			7	1.5	12.63	18.97	산책로	공원경계	족구장 다	
변경			7	1.5	12.63	18.97	산책로	공원경계	족구장 다	
당초			8	1.5	5.49	8.23	산책로	공원경계	축구장 라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8	1.5	5.49	8.23	산책로	공원경계	축구장 라	
당초			9	1.2	19.22	23.06	연결로	소로 3-2	배구장 마	
변경			9	1.2	19.22	23.06	연결로	소로 3-2	배구장 마	
당초			10	1.2	114.17	137.84	산책로	산책로 9	배구장 마	
변경			10	1.2	114.17	137.84	산책로	산책로 9	배구장 마	
당초			11	1.5	17.94	26.91	산책로	공원경계	농구장 바	
변경			11	1.5	17.94	26.91	산책로	공원경계	농구장 바	

5-1. 봉산근린공원 수색지구 총괄표

구 분		기정(수색지구)						변경(수색지구)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33,374.00	4,259.73				21	33,835.10	6,472.75	1	82.77	82.77	46	증)2,213.02㎡
기반시설	소 계	2,698.88	2,698.88					4,592.51	4,592.51					증)1,893.63㎡
	도 로	2,594.93	2,594.93					4,391.76	4,391.76					증)1,796.83㎡
	광 장	103.95	103.95					200.75	200.75					증)86.80㎡
조경시설		363.32	363.32					410.86	410.86					증)47.54㎡
휴양시설		659.86	659.86				11	827.27	827.27				19	증)167.41㎡
운동시설		537.67	537.67				10	559.34	559.34				16	증)21.67㎡
관리시설								82.77	82.77	1	82.77	82.77	11	증)82.77㎡
녹지 및 기타		29,114.27						27,362.35						감)1,751.92㎡

5-2. 봉산근린공원 수색지구 시설조서

구 분		기 정 (수색지구)									변 경 (수색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33,374.00	4,259.73					21			33,835.10	6,472.75			82.77	82.77	46	증)2,213.02㎡
기반시설	소 계			2,698.88	2,698.88								4,592.51	4,592.51						증)1,893.63㎡
	도 로			2,594.93	2,594.93								4,391.76	4,391.76						증)1,796.83㎡
	광 장	가	수색동 129-4	103.95	103.95						가	수색동 129-24	200.75	200.75						증)96.80㎡
조경시설	소 계			363.32	363.32								410.86	410.86						증)47.54㎡
	생태연못	나	수색동 산21-1	217.22	217.22						나		232.69	232.69						증) 15.47㎡
	생태연못-1										나-1	수색동 산 21-1	123.30	123.30						증) 123.30㎡
	생태연못-2										나-2	수색동 129-4	109.39	109.39						증) 109.39㎡
	초화원	다		146.10	146.10						다		146.10	146.10						
	초화원-1	다-1	수색동 129-15	67.14	67.14						다-1	수색동 129-15	67.14	67.14						
	초화원-2	다-2	수색동 129-15	78.96	78.96						다-2	수색동 129-15	78.96	78.96						
	연못데크										라		32.07	32.07						증) 32.07㎡
휴양시설	소 계			659.86	659.86					11			827.27	827.27					19	증) 167.41㎡
	휴게소	라.		659.86	659.86						마.		822.75	822.75						증) 162.89㎡
	휴게소-1	라-1	수색동 129-15	46.64	46.64						마-1	수색동 129-15	60.71	60.71						증) 14.07㎡
	휴게소-2	라-2	수색동 129-15	20.00	20.00						마-2	수색동 129-15	17.72	17.72						감) 2.28㎡
	휴게소-3	라-3	수색동 산21-1	267.33	267.33						마-3	수색동 산21-1	304.64	304.64						증) 37.31㎡
	휴게소-4	라-4	수색동 산21-1	325.89	325.89						마-4	수색동 산21-1	363.21	363.21						증) 37.32㎡

구 분		기 정 (수색지구)									변 경 (수색지구)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휴게소-5										마-5	수색동 129-4	39.25	39.25						증) 39.25㎡
	휴게소-6										마-6	수색동 129-4	37.22	37.22						증) 37.22㎡
	파고라	①	전지역							2									3	
	평의자	②	전지역							6									13	
	야외테이블	③	휴게소							3									3	
	플랜터												4.52	4.52						증) 4.52㎡
운동시설	소 계			537.67	537.67					10			559.34	559.34					16	증) 21.67㎡
	배드민턴장	마	수색동 산21-1	493.44	493.44						바	수색동 산21-1	493.44	493.44						
	체력단련장	바	수색동 산21-1	44.23	44.23						사		65.90	65.90						증) 21.67㎡
											사-1	수색동 산21-1	28.75	28.75						증) 28.75㎡
											사-2	수색동 129-24	24.00	24.00						증) 24.00㎡
											사-3	수색동 129-15	13.15	13.15						증) 13.15㎡
	체력단련시설	④	전지역							10	⑤	전지역							16	
관리시설	소 계												82.77	82.77			82.77	82.77	11	증) 82.77㎡
	관리사무소											수색동 129-4	82.77	82.77						증) 82.77㎡
	공원등											전지역							9	
	CCTV											전지역							2	
녹지 및 기타	소 계			29,114.27									27,362.35							감)1,751.92㎡
	녹지			29,114.27									27,362.35							감)1,75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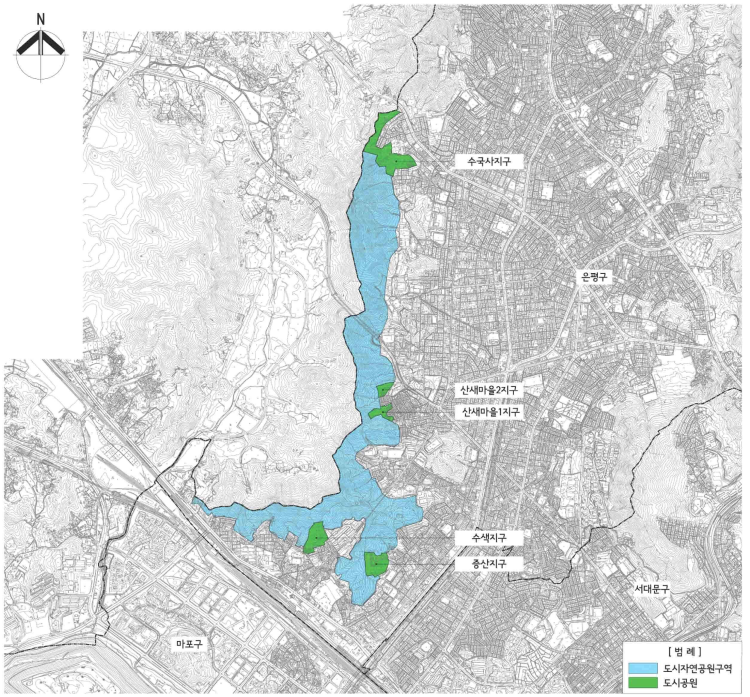
5-3. 봉산근린공원 수색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292.20	2,594.93				
변경					2,177.34	4,391.76				
당초	산책로	소 계			1,292.20	2,594.93				
변경					2,177.34	4,391.76				
당초		-	1	2.5-4.5	282.8	979.42	진입로	공원경계	배드민턴장 마	
변경				2.5-4.5	314.10	1108.22	진입로	가. 광장	배드민턴장 마	
당초		-	2	1.5	29.1	43.62	연결로	광장 가	휴게소 라-1	
변경				1.5	17.69	34.85	연결로	광장 가	산책로 22	
당초		-	3	1.5	8.1	12.08	연결로	휴게소 라-1	휴게소 라-2	
변경				1.1	5.6	6.26	연결로	휴게소 마-1	휴게소 마-2	
당초		-	4	1.5	24	36.4	산책로	휴게소 라-2	산책로 1	
변경				1.5	24	36.4	산책로	휴게소 마-2	산책로 1	
당초		-	5	1.5	25.2	39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4	
변경				1.5	25.2	39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4	
당초		-	6	1.5	23.7	36.69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4	
변경				1.5	23.7	36.69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4	
당초		-	7	1.5	83.1	126.83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변경				1.5	83.1	126.83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당초		-	8	1.5	39.5	60.12	진입로	공원경계	휴게소 라-3	
변경				1.5	39.5	60.12	진입로	공원경계	휴게소 마-3	
당초		-	9	1.5	16.9	26.12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1	
변경				1.5	16.9	26.12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1	
당초		-	10	1.5	43.4	65.54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1	
변경				1.5	43.4	65.54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1	
당초		-	11	2.5	111.3	258.1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변경				2.5	111.3	258.1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당초		-	12	1.5-3.0	6.1	12.19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1	
변경				1.5-3.0	6.1	12.19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1	
당초		-	13	1.5	12.8	20.28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1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1.5	12.8	20.28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14	
당초		-	14	1.5	18.8	28.55	연결로	산책로 11	체력단련장 바	
변경				1.5	18.8	28.55	연결로	산책로 11	체력단련장 사-1	
당초		-	15	1.5	8	12.02	진입로	공원경계	체력단련장 바	
변경				1.5	8	12.02	진입로	공원경계	체력단련장 사-1	
당초		-	16	1.5	95.4	143.08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1	
변경				1.5	95.4	143.08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1	
당초		-	17	1.5	11.3	17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6	
변경				1.5	11.3	17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6	
당초		-	18	1.5	11.8	19.16	연결로	배드민턴장 마	산책로 21	
변경				1.5	11.8	19.16	연결로	배드민턴장 바	산책로 21	
당초		-	19	1.5	38	57.38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1	
변경				1.5	38	57.38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1	
삭제		-	20	1.5	150.2	225.83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1	
당초		-	21	1.5	252.7	375.5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변경				1.5	252.7	375.5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신설		-	22	1.5	32.3	47.53	연결로	휴게소 마-1	연못데크 라	
신설		-	23	1.5	46.2	75	산책로	광장 가	산책로 22	
신설		-	24	2.0	6	12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	
신설		-	25	2.0	841.27	1,645.02	무장애데크	무장애데크	광장 가	
신설		-	26	1.6	10.53	21.32	진입로	광장 가	대지경계	
신설		-	27	1.2	74.01	93.31	연결로	광장 가	광장 가	
신설		-	28	2.0	2.69	6.12	연결로	광장 가	광장 가	
신설		-	29	2.0	4.95	8.15	진입로	광장 가	대지경계	

위 치 도

봉산 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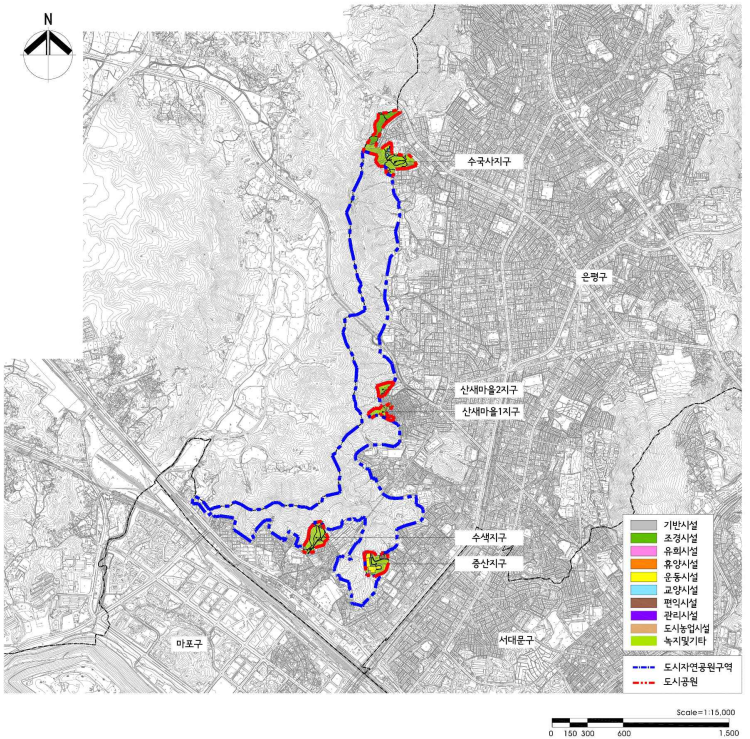
■ 개요

구분		위치	면적(㎡)	비고
01	수국사지구	은평구 구산동 산136-5	79,147,70	
02	산새마을2지구	은평구 신사동 산55-5	10,062,50	
03	산새마을1지구	은평구 신사동 산51-3	17,417,70	
04	증산지구	은평구 증산동 산18-6	33,392,30	
05	수색지구	은평구 수색동 산21-1	33,835,10	

Scale=1:15,000
0 150 300 600 1,500

봉산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도

변 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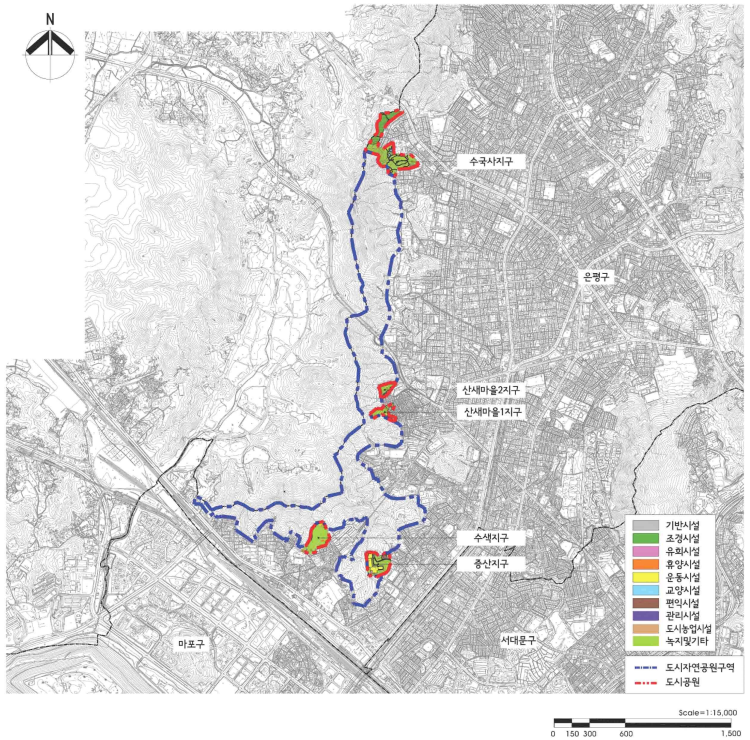
■ 총괄표

구분		총계	수국사지구	산새마을2지구	산새마을1지구	증산지구	수색지구
부지 총 면적		173,394.20	79,147.70	10,062.50	17,417.70	33,392.30	33,374.00
시설 총 면적		46,594.08	27,263.32	1,396.86	2,124.35	11,549.82	4,259.73
기반시설	소계	9,208.43	2,546.53	1,073.36	665.25	2,224.41	2,698.88
	도로	8,018.54	2,227.40	785.36	555.95	1,854.90	2,594.93
	광장	1,189.89	319.13	288.00	109.30	369.51	103.95
조경시설		22,275.98	21,912.66	-	-	-	363.32
휴양시설		1,374.39	508.13	86.50	119.90	-	659.86
유희시설		1,248.64	325.00	116.00	401.00	406.64	-
운동시설		8,742.34	-	51.00	24.60	8,129.07	537.67
교양시설		1,355.00	1,355.00	-	-	-	-
편익시설		1,105.70	316.00	-	-	789.70	-
관리시설		370.00	300.00	70.00	-	-	-
도시농업시설		913.60	-	-	913.60	-	-
녹지 및 기타		126,800.12	51,884.38	8,665.64	15,293.35	21,842.48	29,114.27
동수(동)		3	2	-	-	1	-
건축물 바닥면적		187.32	135.12	-	-	52.20	-
연면적		187.32	135.12	-	-	52.20	-
공작물(기)		136	28	35	18	34	21
비고							

* 공원시설율 : 46,594.08 / 173,394.20 = 26.87%
*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율 : 8,742.34 / 46,594.08 = 18.76%
* 건폐율 : 187.32 / 173,394.20 = 0.11%

봉산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도

변 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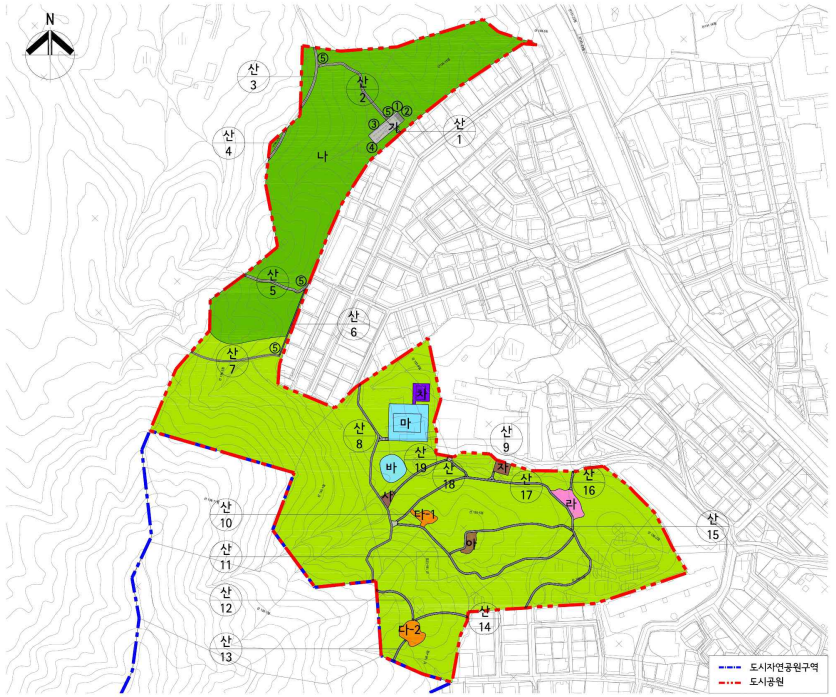
■ 총괄표

구분		총계	수국사지구	산새마을2지구	산새마을1지구	증산지구	수색지구
부지 총 면적		173,855.30	79,147.70	10,062.50	17,417.70	33,392.30	33,835.10
시설 총 면적		48,807.07	27,263.32	1,396.86	2,124.35	11,549.82	6,472.75
기반시설	소계	11,102.06	2,546.53	1,073.36	665.25	2,224.41	4,592.51
	도로	9,815.37	2,227.40	785.36	555.95	1,854.90	4,391.76
	광장	1,286.69	319.13	288.00	109.30	369.51	200.75
조경시설		22,323.52	21,912.66	-	-	-	410.86
휴양시설		1,541.80	508.13	86.50	119.90	-	827.27
유희시설		1,248.64	325.00	116.00	401.00	406.64	-
운동시설		8,764.01	-	51.00	24.60	8,129.07	559.34
교양시설		1,355.00	1,355.00	-	-	-	-
편익시설		1,105.70	316.00	-	-	789.70	-
관리시설		452.77	300.00	70.00	-	-	82.77
도시농업시설		913.60	-	-	913.60	-	-
녹지 및 기타		125,048.20	51,884.38	8,665.64	15,293.35	21,842.48	27,362.35
동수(동)		4	2	-	-	1	1
건축물 바닥면적		270.09	135.12	-	-	52.20	82.77
	연면적	270.09	135.12	-	-	52.20	82.77
공작물(기)		161	28	35	18	34	46
비고							

* 공원시설율 : 48,807.07/ 173,855.20 =28.07%
*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율 : 8,742.34 / 46,594.08 = 18.76%
* 건폐율 : 270.09 / 173,855.20 = 0.15%

조성계획도

수국사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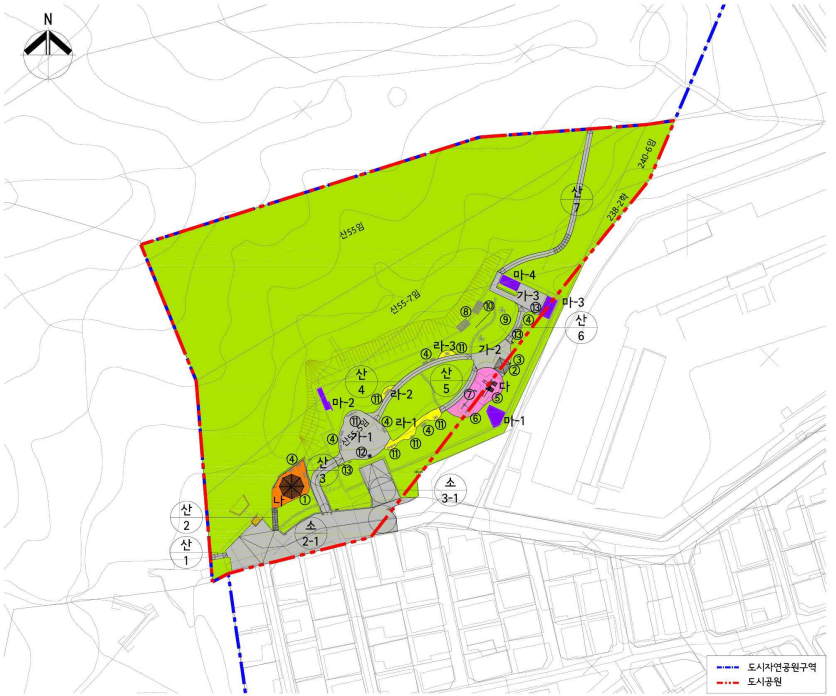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79,147.70	27,263.32	-	2	135.12	135.12	28	
기반시설	소계		2,546.53	2,546.53	-	-	-	-	-	
	도로		2,227.40	2,227.40	-	-	-	-	-	
	광장	가	319.13	319.13	-	-	-	-	-	
조경시설	소계		21,912.66	21,912.66	-	-	-	-	-	
	관상용식수대	나	21,912.66	21,912.66	-	-	-	-	-	
휴양시설	소계		508.13	508.13	-	-	-	-	12	
	휴게소	다	508.13	508.13	-	-	-	-	-	
		다-1	180.00	180.00	-	-	-	-	-	
		다-2	328.13	328.13	-	-	-	-	-	
	파고라	①	-	-	-	-	-	-	2	
	평의자	②	-	-	-	-	-	-	6	
	앉음벽	③	-	-	-	-	-	-	4	
유희시설	소계		325.00	325.00	-	-	-	-	-	
	어린이놀이터	라	325.00	325.00	-	-	-	-	-	
운동시설	소계		-	-	-	-	-	-	12	
	체력단련기구	④	-	-	-	-	-	-	12	
교양시설	소계		1,355.00	1,355.00	-	-	-	-	-	
	전시관	마	945.00	945.00	-	-	-	-	-	
	야외극장	바	410.00	410.00	-	-	-	-	-	
편익시설	소계		316.00	316.00	-	1	45.12	45.12	-	
	음수장	사	80.00	80.00	-	-	-	-	-	
	전망대	아	156.00	156.00	-	-	-	-	-	
	화장실	자	80.00	80.00	-	1	45.12	45.12	-	
관리시설	소계		300.00	300.00	-	1	90.00	90.00	4	
	관리사무소	차	300.00	300.00	-	1	90.00	90.00	-	
	방향안내판	⑤	-	-	-	-	-	-	4	
녹지 및 기타	소계		51,884.38	-	-	-	-	-	-	
	녹지		51,884.38	-	-	-	-	-	-	

Scale=1:1,500
0 10 40 80 150

조성계획도

산새마을2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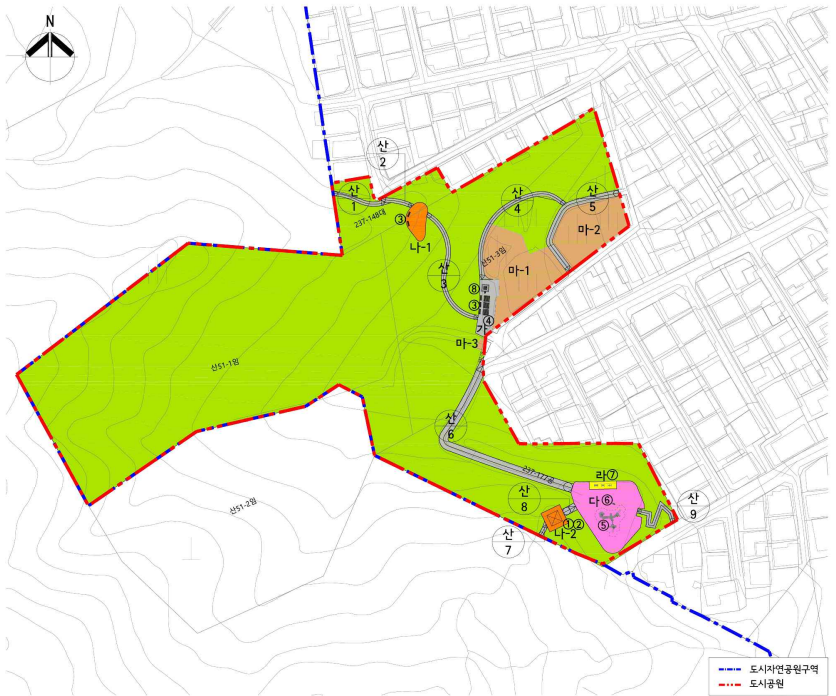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0,062.50	1,396.86	-	-	-	-	35	
기반시설	소계		1,073.36	1,073.36	-	-	-	-	-	
	도로		785.36	785.36	-	-	-	-	-	
	광장	가	288.00	288.00	-	-	-	-	-	
		가-1	153.00	153.00	-	-	-	-	-	
		가-2	68.00	68.00	-	-	-	-	-	
		가-3	67.00	67.00	-	-	-	-	-	
휴양시설	소계		86.50	86.50	-	-	-	-	16	
	쉼터	나	86.50	86.50	-	-	-	-	-	
	초가정자	①	-	-	-	-	-	-	1	
	팔각정자	②	-	-	-	-	-	-	1	
	평의자	③	-	-	-	-	-	-	3	
	등의자	④	-	-	-	-	-	-	11	
유희시설	소계		116.00	116.00	-	-	-	-	8	
	어린이놀이터	1	116.00	116.00	-	-	-	-	-	
	조합놀이대	⑤	-	-	-	-	-	-	1	
	시소	⑥	-	-	-	-	-	-	1	
	스윙	⑦	-	-	-	-	-	-	1	
	통나무오르기	⑧	-	-	-	-	-	-	2	
	옴짐	⑨	-	-	-	-	-	-	2	
	밧줄다리	⑩	-	-	-	-	-	-	1	
운동시설	소계		51.00	51.00	-	-	-	-	6	
	운동마당	라	51.00	51.00	-	-	-	-	-	
		라-1	37.00	37.00	-	-	-	-	-	
		라-2	7.00	7.00	-	-	-	-	-	
		라-3	7.00	7.00	-	-	-	-	-	
	체력단련기구	⑪	60.00	60.00	-	-	-	-	6	
편익시설	소계		-	-	-	-	-	-	1	
	음수전	⑫	-	-	-	-	-	-	1	
관리시설	소계		70.00	70.00	-	-	-	-	4	
	관리시설	마	70.00	70.00	-	-	-	-	-	
		마-1	22.00	22.00	-	-	-	-	-	
		마-2	12.00	12.00	-	-	-	-	-	
		마-3	20.00	20.00	-	-	-	-	-	
		마-4	16.00	16.00	-	-	-	-	-	
	안내판	⑬	-	-	-	-	-	-	4	
녹지 및 기타	소계		8,665.64	-	-	-	-	-	-	
	녹지		8,665.64	-	-	-	-	-	-	

Scale = 1:500
0 5 10 20 50

조성계획도

산새마을1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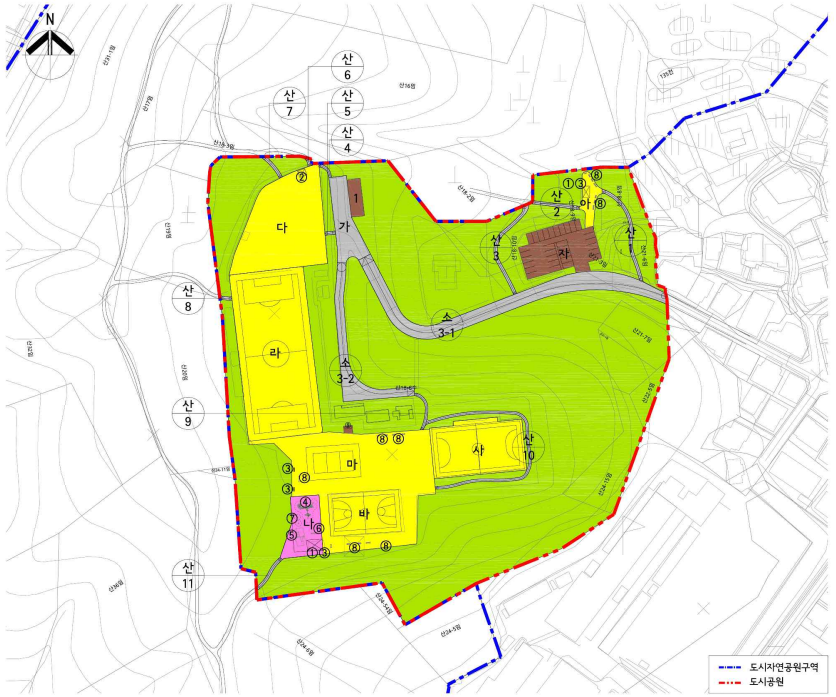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7,417.70	2,124.35	-	-	-	-	18	
기반시설	소계		665.25	665.25	-	-	-	-	-	
	도로		555.95	555.95	-	-	-	-	-	
	광장	가	109.30	109.30	-	-	-	-	-	
휴양시설	소계		119.90	119.90	-	-	-	-	12	
	쉼터	나	119.90	119.90	-	-	-	-	-	
		나-1	70.90	70.90	-	-	-	-	-	
		나-2	49.00	49.00	-	-	-	-	-	
	파고라	①	-	-	-	-	-	-	1	
	평의자	②	-	-	-	-	-	-	3	
	등의자	③	-	-	-	-	-	-	5	
	평상	④	-	-	-	-	-	-	3	
유희시설	소계		401.00	401.00	-	-	-	-	2	
	어린이놀이터	다	401.00	401.00	-	-	-	-	-	
	조합놀이대	⑤	-	-	-	-	-	-	1	
	흔들놀이대	⑥	-	-	-	-	-	-	1	
운동시설	소계		24.60	24.60	-	-	-	-	3	
	체력단련장	라	24.60	24.60	-	-	-	-	-	
	체력단련기구	⑦	-	-	-	-	-	-	3	
편익시설	소계		-	-	-	-	-	-	1	
	게수대	⑧	-	-	-	-	-	-	1	
도시농업시설	소계		913.60	913.60	-	-	-	-	-	
	도시텃밭	마	913.60	913.60	-	-	-	-	-	
		마-1	522.80	522.80	-	-	-	-	-	
		마-2	382.00	382.00	-	-	-	-	-	
		마-3	8.80	8.80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15,293.35	-	-	-	-	-	-	
	녹지		15,293.35	-	-	-	-	-	-	

Scale = 1:600
0 5 10 20 60

조성계획도

증산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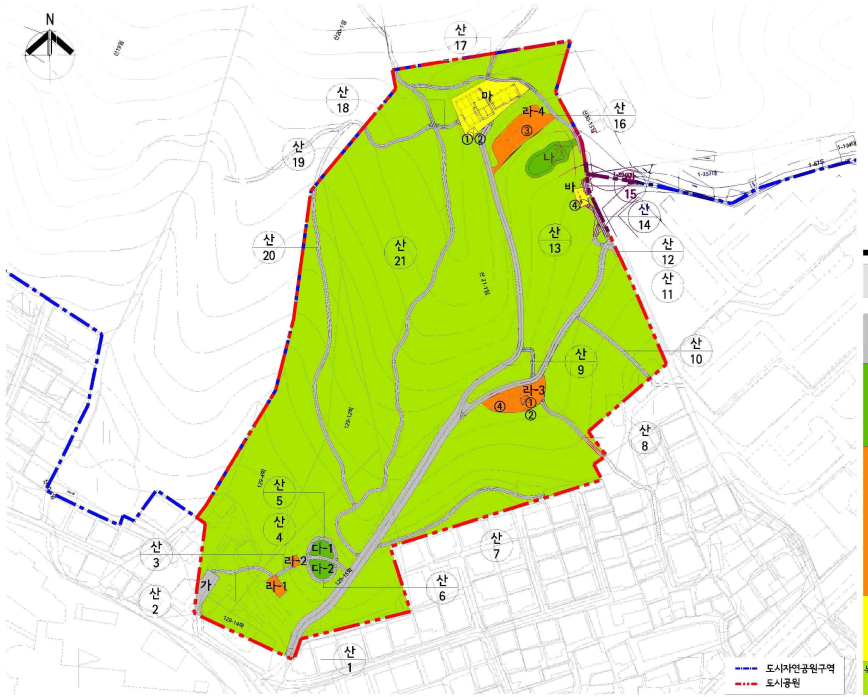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33,392.30	11,549.82	-	1동	52.20	52.20	34	
기반시설	소계		2,224.41	2,224.41	-	-	-	-	-	
	도로		1,854.90	1,854.90	-	-	-	-	-	
	광장	가	369.51	369.51	-	-	-	-	-	
휴양시설	소계		-	-	-	-	-	-	11	
	파고라	①	-	-	-	-	-	-	2	
	평상형파고라	②	-	-	-	-	-	-	1	
	평의자	③	-	-	-	-	-	-	8	
유희시설	소계		406.64	406.64	-	-	-	-	5	
	어린이놀이터	나	406.64	406.64	-	-	-	-	-	
	조합놀이대	④	-	-	-	-	-	-	1	
	그네	⑤	-	-	-	-	-	-	1	
	시소	⑥	-	-	-	-	-	-	1	
	흔들놀이대	⑦	-	-	-	-	-	-	2	
운동시설	소계		8,129.07	8,129.07	-	-	-	-	17	
	족구장	다	1,488.42	1,488.42	-	-	-	-	-	
	축구장	라	2,548.10	2,548.10	-	-	-	-	-	
	배구장	마	1,984.74	1,984.74	-	-	-	-	-	
	농구장	바	957.18	957.18	-	-	-	-	-	
	풋살구장	사	1,006.00	1,006.00	-	-	-	-	-	
	체력단련장	아	144.63	144.63	-	-	-	-	-	
	체력단련시설	⑧	-	-	-	-	-	-	17	
편익시설	소계		789.70	789.70	-	1동	52.20	52.20	1	
	주차장	자	673.68	673.68	-	-	-	-	-	
	화장실	1	102.00	102.00	조적	1동	52.20	52.20	-	
	음수대	⑨	14.02	14.02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21,842.48	-	-	-	-	-	-	
	녹지		21,776.98	-	-	-	-	-	-	
	기타		65.50	-	-	-	-	-	-	배수지

Scale = 1:800
0 10 20 40 80

조성계획도 [변경전]

수색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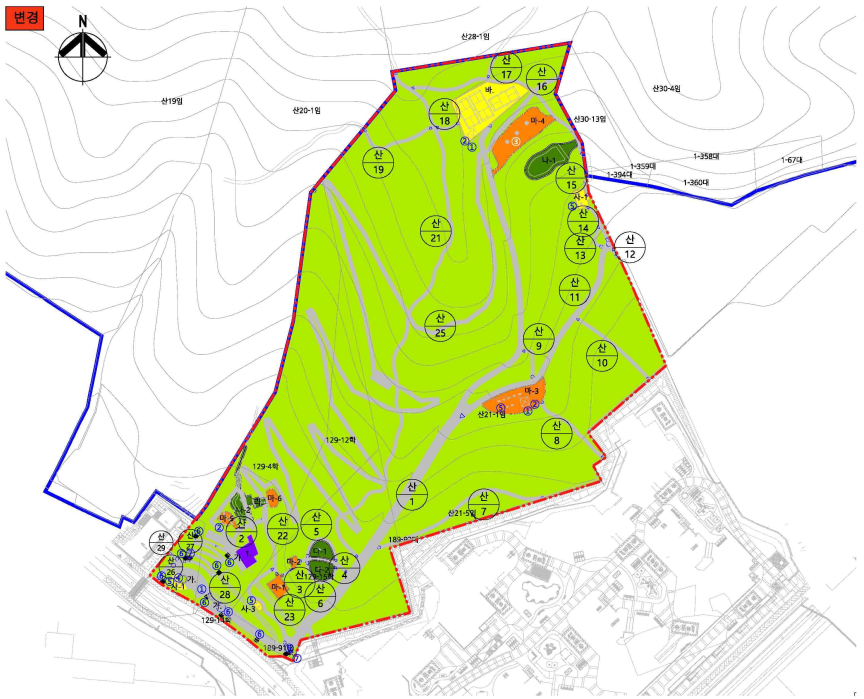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33,374.00	4,259.73	-	-	-	-	21	
기반시설	소계		2,698.88	2,698.88	-	-	-	-	-	
	도로		2,594.93	2,594.93	-	-	-	-	-	
	광장	가	103.95	103.95	-	-	-	-	-	
조경시설	소계		363.32	363.32	-	-	-	-	-	
	생태연못	나	217.22	217.22	-	-	-	-	-	
	초화원	다	146.10	146.10	-	-	-	-	-	
		다-1	67.14	67.14	-	-	-	-	-	
		다-2	78.96	78.96	-	-	-	-	-	
휴양시설	소계		659.86	659.86	-	-	-	-	11	
	휴게소	라	659.86	659.86	-	-	-	-	-	
		라-1	46.64	46.64	-	-	-	-	-	
		라-2	20.00	20.00	-	-	-	-	-	
		라-3	267.33	267.33	-	-	-	-	-	
		라-4	325.89	325.89	-	-	-	-	-	
	파고라	①	-	-	-	-	-	-	2	
	평의자	②	-	-	-	-	-	-	6	
	야외테이블	③	-	-	-	-	-	-	3	
운동시설	소계		537.67	537.67	-	-	-	-	10	
	배드민턴장	마	493.44	493.44	-	-	-	-	-	
	체력단련장	바	44.23	44.23	-	-	-	-	-	
	체력단련시설	④	-	-	-	-	-	-	10	
녹지 및 기타	소계		29,114.27	-	-	-	-	-	-	
	녹지		29,114.27	-	-	-	-	-	-	

Scale = 1:800
0 10 20 40 80

조성계획도[변경후]

수색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변경후 부지 면적 (㎡)	변경후 시설 면적 (㎡)	변경후 건축물 (㎡) 바닥면적	변경후 건축물 (㎡) 연면적	변경후 공작물 (기)	비 고
	합계		33,835.10	6,472.75	82.77	82.77	46	
기반시설	소 계		4,592.51	4,592.51				
	도 로		4,391.76	4,391.76				
	광 장	가.	200.75	200.75				
자연녹지지역	소 계		410.86	410.86				
	생태연못	나.	232.69	232.69				
	생태연못-1	나-1	123.3	123.30				
	생태연못-2	나-2	109.39	109.39				
	초화원	다.	146.10	146.10				
	초화원-1	다-1	67.14	67.14				
	초화원-2	다-2	78.96	78.96				
	연못데크	라.	32.07	32.07				
도시계획시설	소 계		827.27	827.27			19	
	휴게소	마.	822.75	822.75				
	휴게소-1	마-1	60.71	60.71				
	휴게소-2	마-2	17.72	17.72				
	휴게소-3	마-3	304.64	304.64				
	휴게소-4	마-4	363.21	363.21				
	휴게소-5	마-5	39.25	39.25				
	휴게소-6	마-6	37.22	37.22				
	파고라	①		0.00			3	
	평의자	②		0.00			13	
	아외테이블	③		0.00			3	
	플랜터	④	4.52	4.52				
생활SOC시설	소 계		559.34	559.34			16	
	네드민턴장	바.	493.44	493.44				
	체력단련장	사.	65.90	65.90				
		사-1	28.75	28.75				
		사-2	24.00	24.00				
		사-3	13.15	13.15				
	체력단련시설	⑤		0.00			16	
유료시설	소 계		82.77	82.77	82.77	82.77	11	
	관리사무소	1.	82.77	82.77				
	공원등	⑥		0.00			9	
	CCTV	⑦		0.00			2	
녹지및기타	소 계		27,362.35	27,362.35				
	녹지 및 기타		27,362.35	27,362.35				

Scale=1:800
0 10 20 40 8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2호

제기4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및 재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9호(2017.11.2.)로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동대문구 제기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대하여 「건축법」 제71조10항에 의거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하고, 「건축법」 제72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24.5.28.) 심의를 거쳐,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 역 명	위 치	범 위	대지면적
제기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	제기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3,485.70㎡

2. 특별건축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

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일: 2017. 11. 2.

2) 특별건축구역의 해제일: 2024. 7.18.

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건축법」 제71조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건축물 및 특례해제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변경사항 없음

구 역 명	용 도	대지면적	최고층수
제기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택용지	29,916.00㎡	25층
	도 로	3,569.70㎡	-
	합 계	33,485.70㎡	

2) 특례해제사항

구 역 명	특례해제사항	해제사유
제기4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한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특례적용의 해제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마.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3. 특별건축구역 재지정에 관한 사항

가. 특별건축구역의 재지정일: 2024. 7.18.

나.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변경사항 없음

구 역 명	용 도	대지면적	최고층수
제기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택용지	29,850.30㎡	25층
	도 로	3,635.40㎡	-
	합 계	33,485.70㎡	

다. 특례적용사항

구 역 명	특례적용사항	적용취지
제기4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배제	- 특례 적용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로 고층과 중·저층이 배치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동 형태구현 및 통경축 확보가능 - 특례 적용 시 단지 내 주거기능 및 거주민 프라이버시를 저해하지 않고 주거성능 기준을 만족하게 하며, 다양한 주동 및 휴먼스케일의 외부 공간 계획 가능

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마.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4.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붙임 지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가.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89),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66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고시문 및 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가. 특별건축구역 해제 및 재지정 지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48호

동작구 노량진동 56-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6호(2023.1.19.)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54(2023.10.19.)로 변경 승인 고시된 동작구 노량진동 56-1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사업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동작구 노량진동 56-1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촉진지구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기정]
○ 명 칭 : 주식회사 대한제36호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대표자 성명 : 양 동 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 법인등록번호 : 110111-7917466
[변경]
○ 명 칭 : 주식회사 엘비더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대표자 성명 : 이 윤 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20층(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 법인등록번호 : 110111-8789294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1) 토지세목조서(변경)

[기정]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지분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동작구 노량진동	56-1	대	2,541	2,541	주식회사 대한제36호 오피스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서울시강남구 영동대로517	100.0	-	-	-	
합계				2,541	2,541	-	-	-	-	-	-	

[변경]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지분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동작구 노량진동	56-1	대	2,541	2,541	주식회사 엘비더함제1호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00.0	-	-	-	
합계				2,541	2,541	-	-	-	-	-	-	

2) 물건조서(변경)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비고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동작구 노량진동	56-1	대	건물 (1동)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2001. 02.07	19,723.43	5	10	주식회사 대한 제36호 오피스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	-	-
합 계							19,723.43	-	-	-	-	-	-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비고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동작구 노량진동	56-1	대	건물 (1동)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001. 02.07	19,723.43	5	10	주식회사 엘비더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합 계							19,723.43	-	-	-	-	-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전략주택공급과(20-2133-6297)와 동작구청 도시정비2과(☎02-820-1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기정]

○ 명 칭 : 주식회사 대한제36호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대표자 성명 : 양 동 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 법인등록번호 : 110111-7917466

[변경]

○ 명 칭 : 주식회사 엘비더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대표자 성명 : 이 윤 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20층(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 법인등록번호 : 110111-8789294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해당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없음)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Ⅰ. 도시・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Ⅲ. 방재계획(변경없음)

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

1) 토지세목조서(변경)

[기정]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지분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동작구 노량진동	56-1	대	2,541	2,541	주식회사 대한제36호 오피스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서울시강남구 영동대로517	100.0	-	-	-	
합계				2,541	2,541	-	-	-	-	-	-	

[변경]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지분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동작구 노량진동	56-1	대	2,541	2,541	주식회사 엘비더함제1호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00.0	-	-	-	
합계				2,541	2,541	-	-	-	-	-	-	

2) 물건조서(변경)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비고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동작구 노량진동	56-1	대	건물 (1동)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2001. 02.07	19,723.43	5	10	주식회사 대한 제36호 오피스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	-	-
합 계							19,723.43	-	-	-	-	-	-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비고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동작구 노량진동	56-1	대	건물 (1동)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2001. 02.07	19,723.43	5	10	주식회사 엘비더함제1호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	-	-	-
합 계							19,723.43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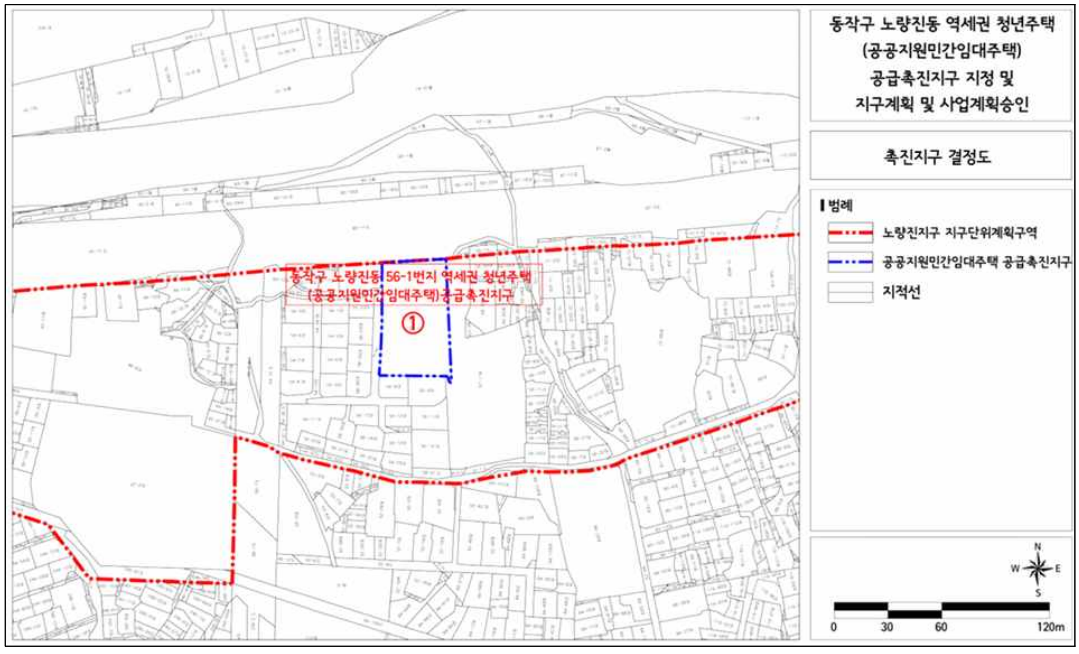
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Ⅵ.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동작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변경없음)

Ⅶ.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Ⅷ. 관계도면(변경없음)

■ 공급촉진지구 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4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7호(2023.1.19.)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55호(2023.10.19.)로 변경 승인 고시된 동작구 노량진동 56-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처리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동작구 노량진동 56-1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변경)

[기정]

명 칭	대표자	주 소
주식회사 대한제36호오피스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양 동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변경]

명 칭	대표자	주 소
주식회사 엘비더함제1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 윤 형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20층 (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 2027년 12월 31일

5.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56-1필지
나. 대지면적 : 2,541.0㎡
다. 건 폐 율 : 57.44% (건축면적 : 1,459.62㎡)
라. 용 적 률 : 977.28%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24,832.85㎡)
마. 용 도 : 공동주택(공공임대 68세대/ SH선매입 29세대 / 민간임대 300세대), 근린생활시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바. 규　　모 : 1개동, 지하7층/지상22층, 연면적 37,546.58㎡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신고

6.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 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 결정 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1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00번지 일대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2022년 제2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 목적

○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및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

-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동 배치 축 및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사람과 장소 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을 계획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 유도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역 명	위 치	면적(㎡)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00번지 일대	64,712.10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 역 명	획지	용 도	대지면적	최고층수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4,712.10	23층이하

※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82,071.70㎡
※ 추후 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 특례적용사항

구 역 명	특례적용사항	적용취지
신정4재정비 촉진구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배제	·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에 따른 오픈스페이스 및 통경축 계획으로 쾌적한 거주환경 및 경관의 공공성 확보 · 남고북저의 취약한 내부 일조권을 자유로운 배치 및 형태 계획과 외부 가로변 등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창출 · 주거동의 일조를 위하여 세대의 채광 방향을 남동, 남서로 배치 · 단지 내 주거 성능 및 거주민 프라이버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용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 방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정4재정비촉진구역)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37호, 2024. 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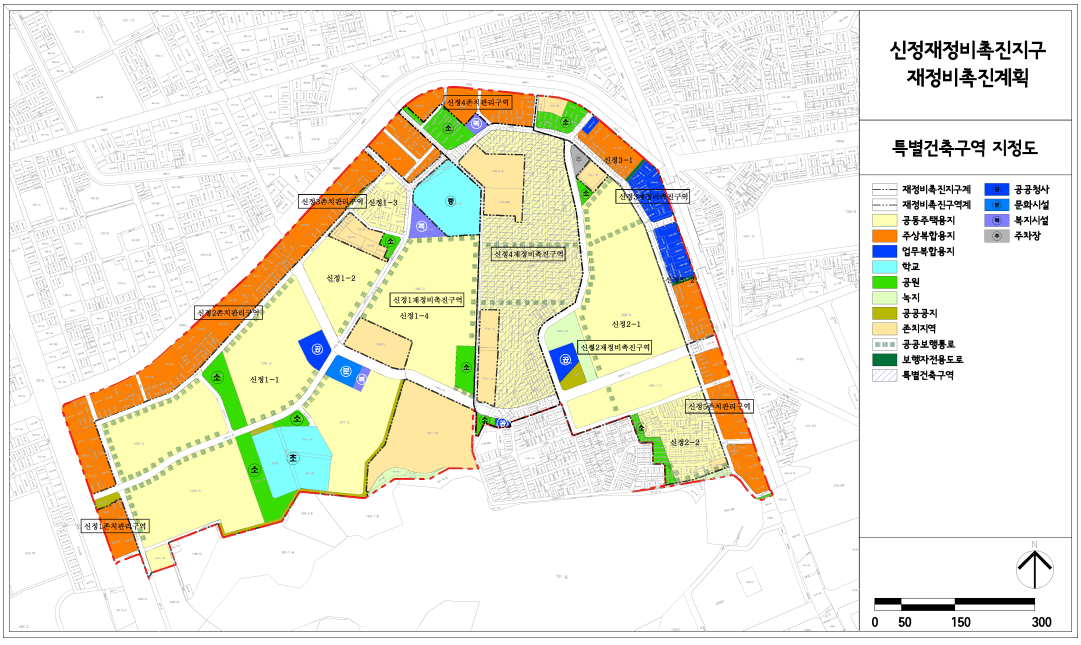
※추후 신정재정비촉진계획(신정4구역) 변경 시 해당 내용에 따름

6. 기타사항

○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7), 양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0-3516)에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3호

24년 5차 모아타운 수시공모 대상지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24년 제5차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 신청지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권리산정기준일 및 설정지역
   가. 대상지: ‘24년 5차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 신청지역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 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관악구	난곡동 697-20	41,935	’ 24.02.26.	자치구 접수일
2	동작구	상도4동 202	82,714	’ 24.04.11.	
3	광진구	자양1동 799	73,362	’ 24.05.01.	
4	강서구	화곡본동 98-88(1구역)	50,000	’ 24.05.17.	
5	강서구	화곡본동 56-25(2구역)	70,500	’ 24.05.17.	
6	강서구	화곡본동 56-3(3구역)	91,000	’ 24.05.17.	
7	강서구	화곡본동 772(4구역)	93,000	’ 24.05.17.	
8	강서구	화곡본동 46-148(5구역)	90,000	’ 24.05.17.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2.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3.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2~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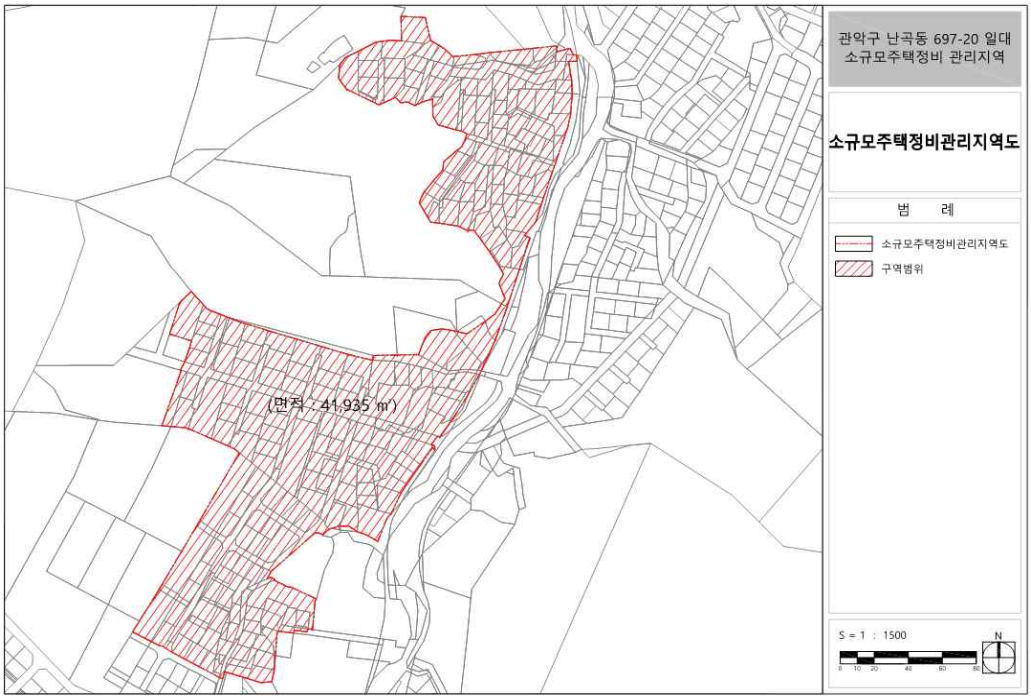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며 소유권 매매, 건축허가 행위 등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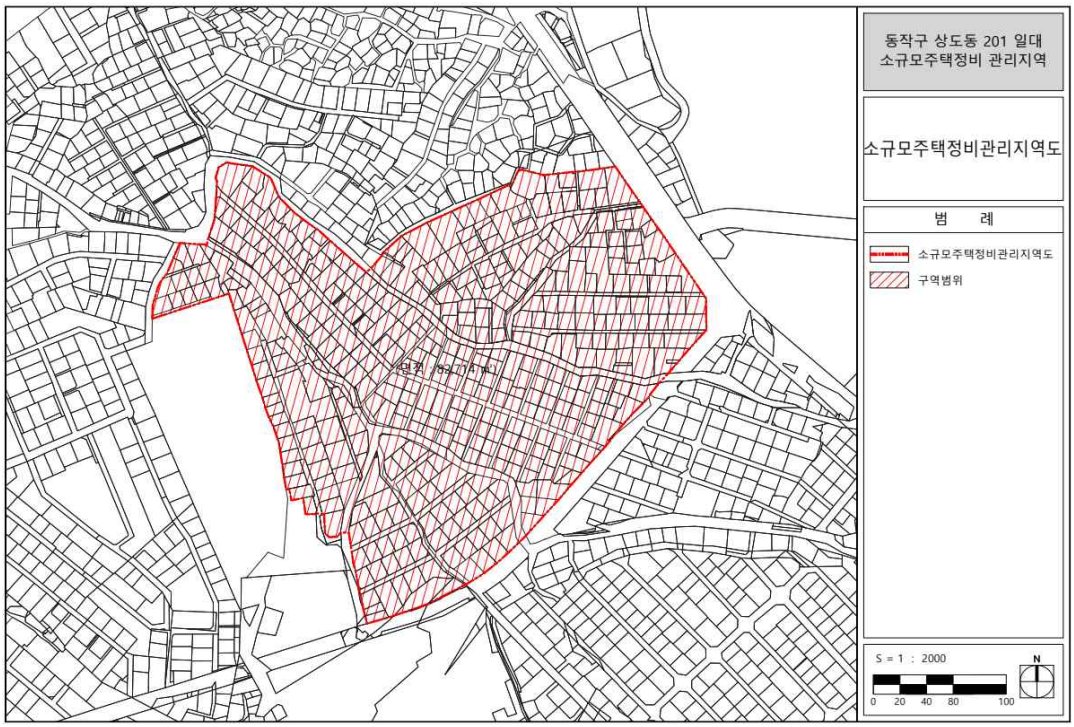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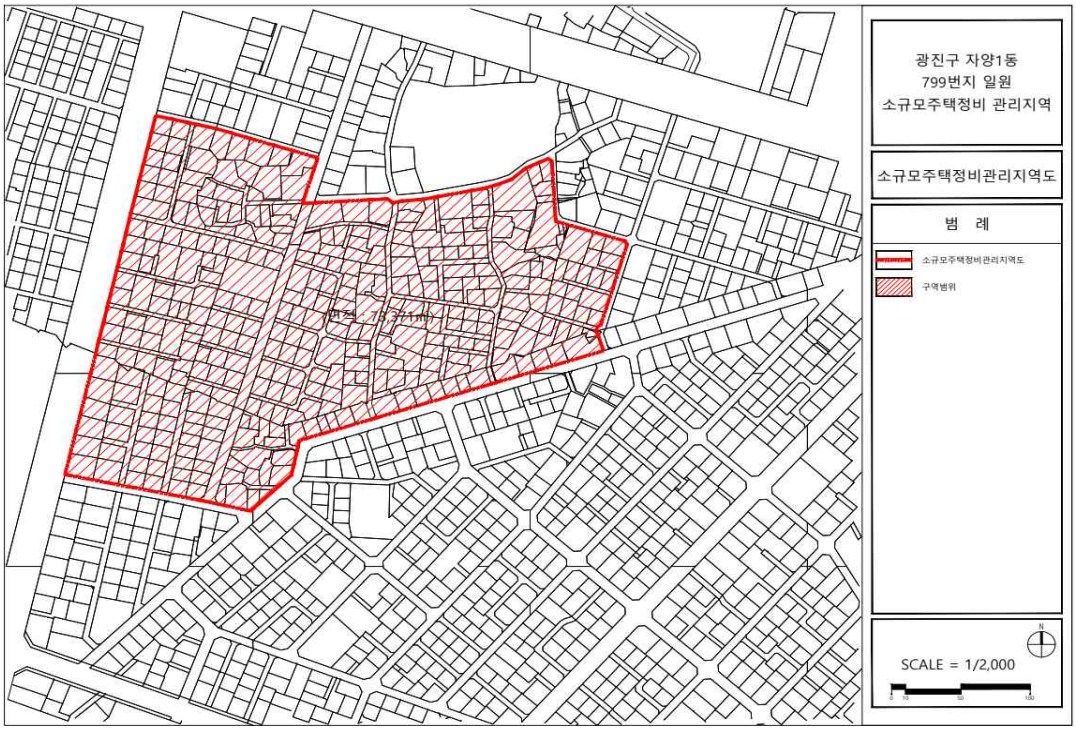
○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 동작구 상도동 202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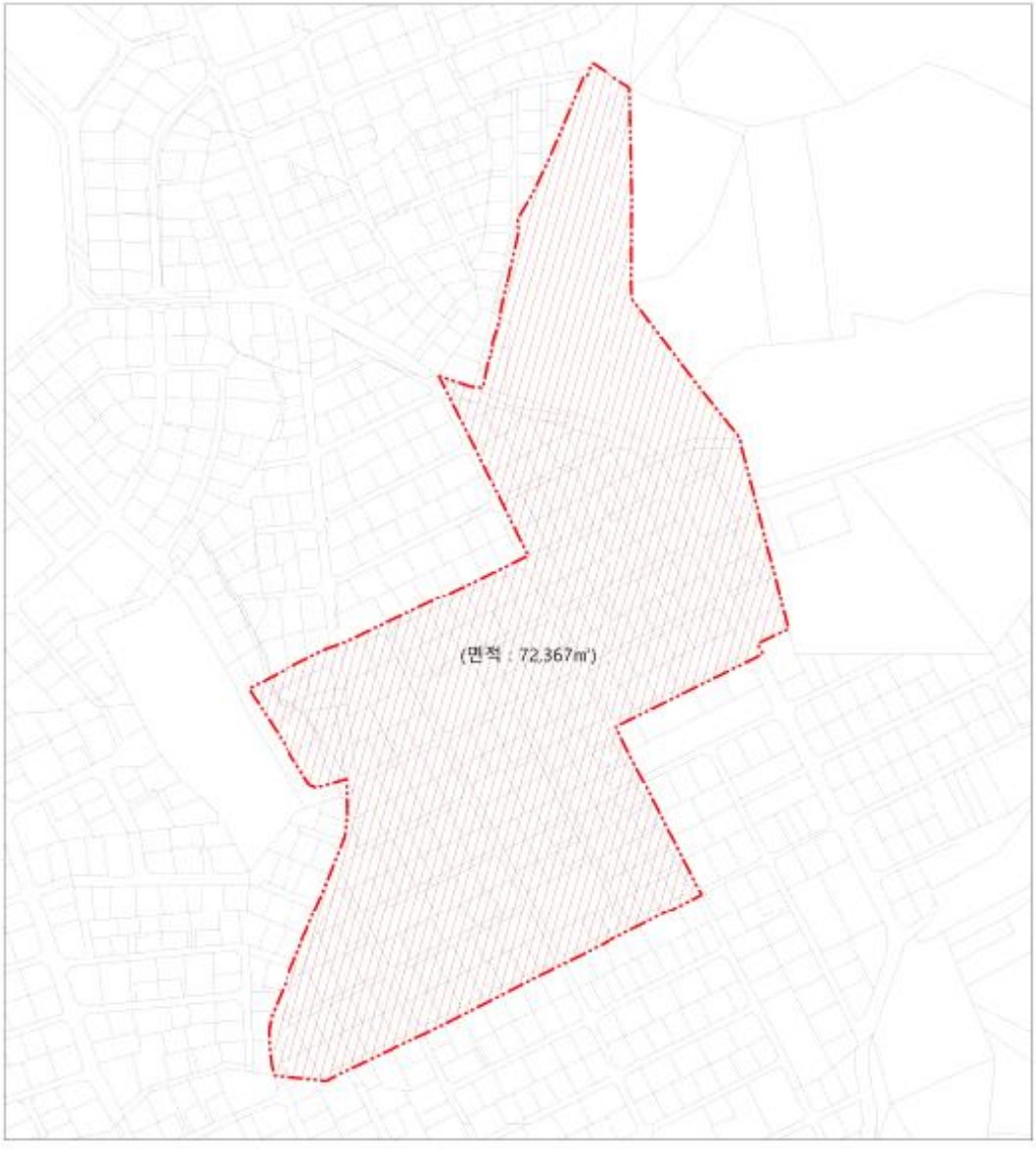
○ 광진구 자양1동 799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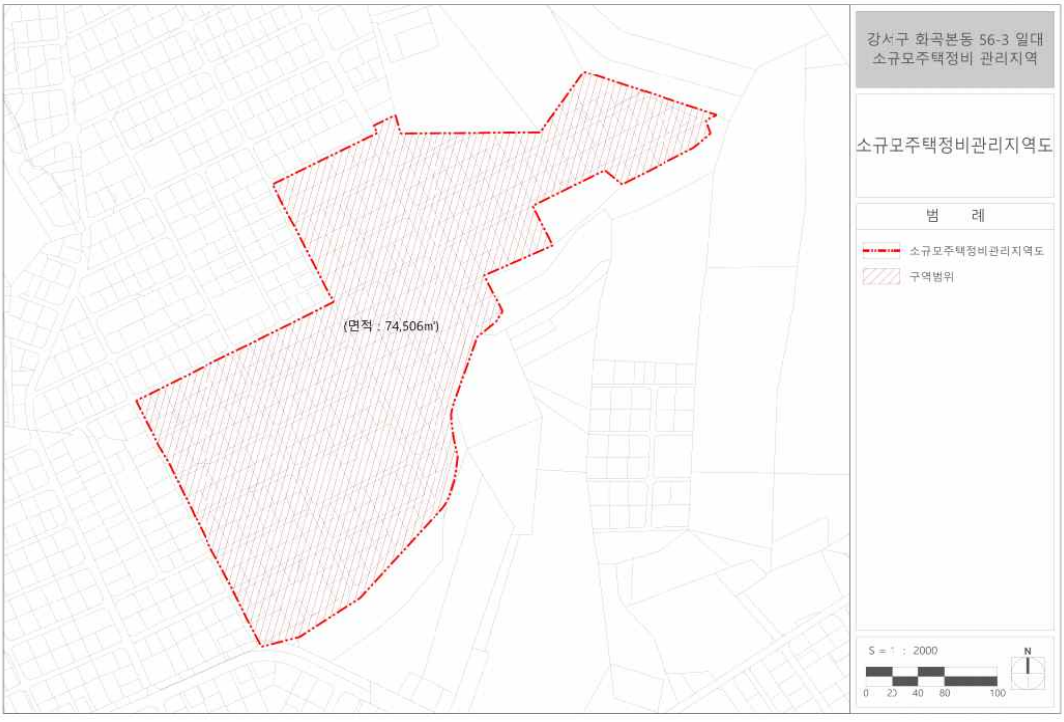
○ 강서구 화곡본동 98-88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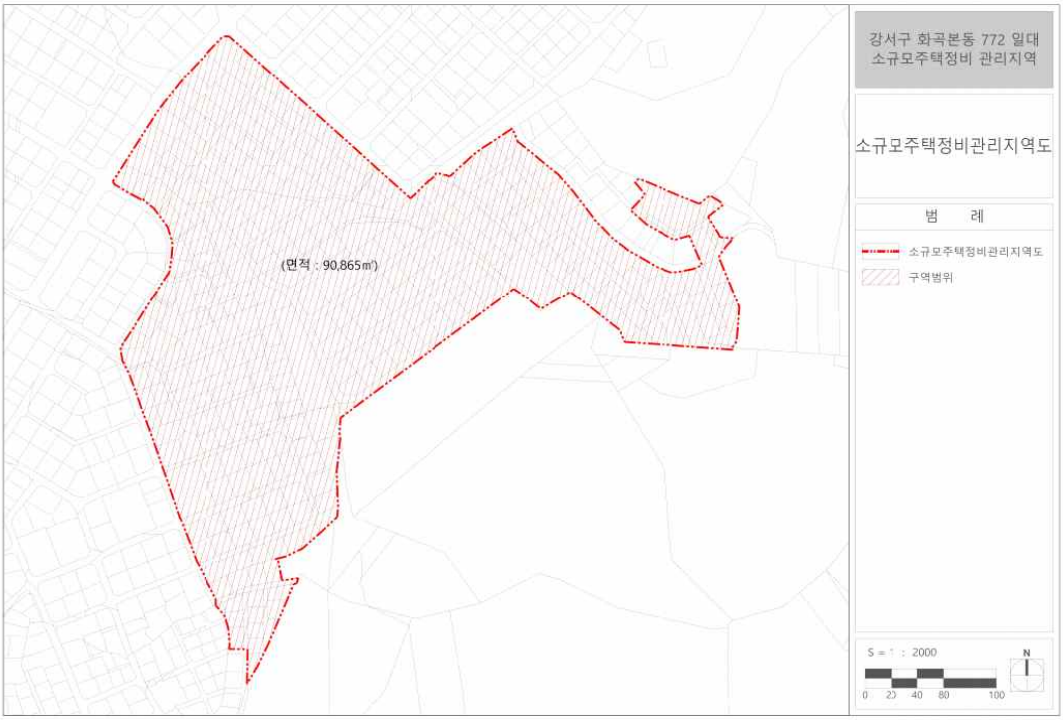
○ 강서구 화곡본동 56-25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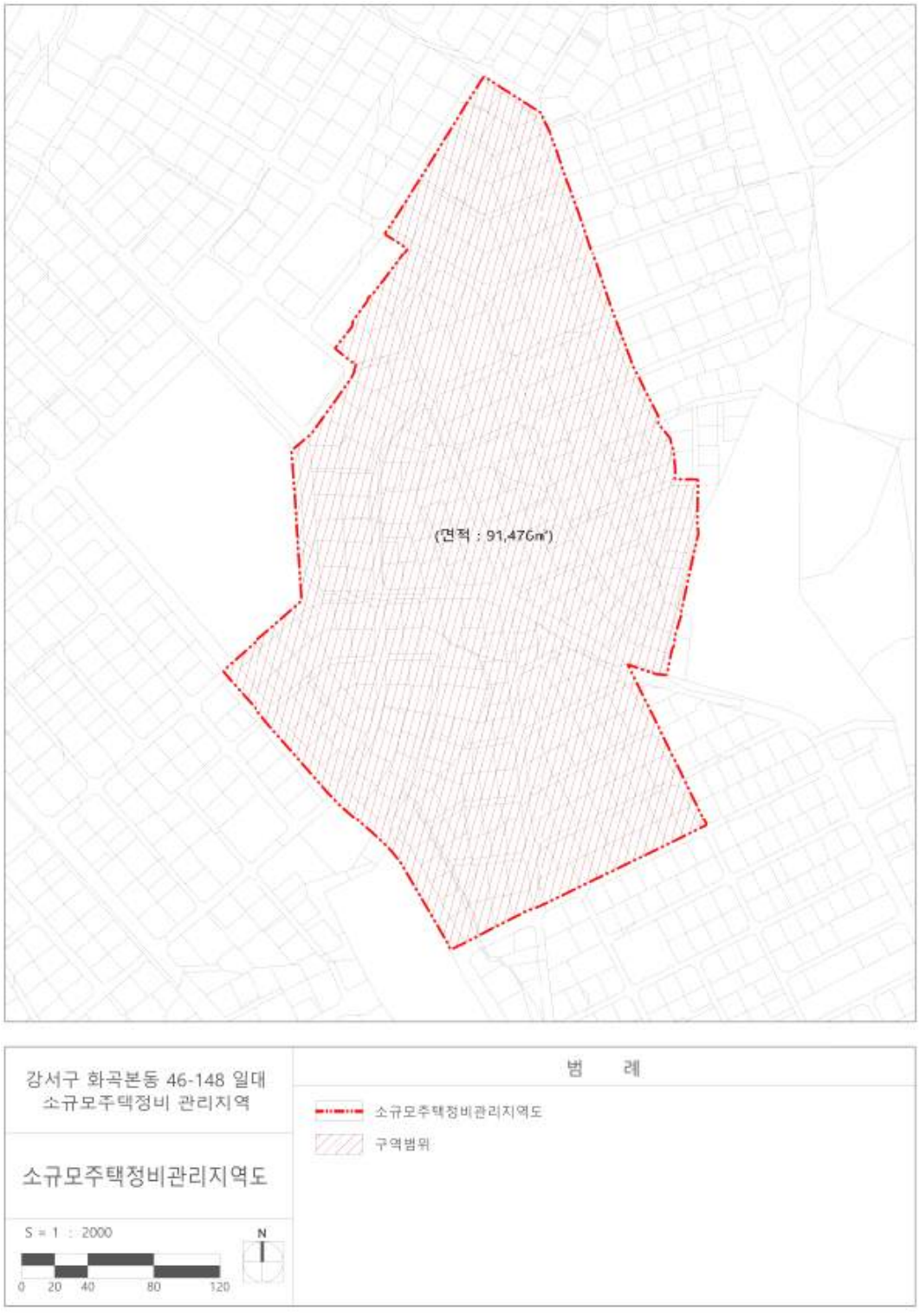
○ 강서구 화곡본동 56-3 일원



○ 강서구 화곡본동 772 일원



○ 강서구 화곡본동 46-148 일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4호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24호(2023.06.0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수립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567-1번지) 일원
   나. 면적 : 267,466.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 형성되어 화재 및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구룡마을에 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나. 또한, 현지 거주민의 재정착 유도, 개발이익 공공환수, 투기세력 차단 및 현지거주민과의 협조체계 유지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나. 사무소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6.12.08. ~ 2025.12.31.
   - 변경 : 2016.12.08. ~ 2027.12.31.
   나.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계		267,466.4	267,466.4	-	100.0	-
주거용지	소계	119,280.0	117,145.0	감) 2,135.0	43.8	-
	공동주택	91,933.0	90,705.0	감) 1,228.0	33.9	-
	주상복합	23,159.0	23,159.0	-	8.7	-
	근린생활시설	4,188.0	3,281.0	감) 907.0	1.2	-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계	135,530.0	137,004.0	증) 1,474.0	51.2	-
	공원	88,536.0	88,679.0	증) 143.0	33.2	-
	근린공원	77,467.0	77,722.0	증) 255.0	29.1	-
	소공원	11,069.0	10,957.0	감) 112.0	4.1	-
	녹지	1,446.0	1,446.0	-	0.5	-
	연결녹지	1,446.0	1,446.0	-	0.5	-
	공공공지	594.0	526.0	감) 68.0	0.2	-
	광장	513.0	513.0	-	0.2	-
	교육시설	9,740.0	9,740.0	-	3.6	-
	공공복합시설	4,150.0	4,150.0	-	1.6	-
	주차장	1,593.0	1,606.0	증) 13.0	0.6	-
	저류지	(6,958.0)	(6,958.0)	-	(2.6)	공원내 중복결정
	도로	28,958.0	30,344.0	증) 1,386.0	11.3	-
기타시설 용지	소계	12,656.4	13,317.4	증) 661.0	5.0	-
	의료, 연구 등	11,302.4	11,302.4	-	4.2	-
	편익시설	660.0	1,321.0	증) 661.0	0.5	-
	유보지	694.0	694.0	-	0.3	-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9	1,861	28,958	3	474	5,228	2	930	17,700	4	457	6,030
	변경	9	1,861	30,344	3	474	5,228	2	930	19,086	4	457	6,030
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1	375	4,030	1	375	4,030	-	-	-	-	-	-
대로	기정	2	518	7,929	1	375	4,030	-	-	-	1	143	3,899
	변경	1	143	3,899	-	-	-	-	-	-	1	143	3,899
중로	기정	2	930	17,700	-	-	-	2	930	17,700	-	-	-
	변경	2	930	19,086	-	-	-	2	930	19,086	-	-	-
소로	기정	5	413	3,329	2	99	1,198	-	-	-	3	314	2,131

(2) 주차장(변경)

구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차장	1	1,593	증) 13	1,606	

2) 공간시설(변경)

(1) 광장(변경없음)

(2) 공원(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88,536	증) 143	88,679	-
근린공원	1	개포동 621 일원	77,467	증) 255	77,722	-
소공원	소계	3개소	11,069	감) 112	10,957	-
	1	개포동 599 일원	1,083	-	1,083	-
	2	개포동 586 일원	6,361	-	6,361	-
	3	개포동 573 일원	3,625	감) 112	3,513	-

(3) 녹지(변경없음)

(4) 공공공지(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개소	594	감) 68	526	-
공공공지	1	개포동 598-1 일원	300	-	300	-
	2	개포동 573-6 일원	283	감) 68	215	-
	3	개포동 568-32 일원	11	-	11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4) 방재시설(변경없음)

7. 토지의 명세 및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가.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 간선시설(우수관로 등)

(2) 방재시설(산지사방, 계류보전사업 등)

(3) 보행브릿지

나.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계획(변경)

-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수립 도서 「개발계획서 – Ⅳ.부문별계획 – 구역 외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계획」 내용에 포함

9.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1)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명칭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567-1번지) 일원	267,466.4	-	267,466.4	서울시 고시 제2016-397호 (2016.12.08.)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명칭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개포(구룡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567-1번지) 일원	267,466.4	-	267,466.4	서울시 고시 제2016-397호 (2016.12.08.)	-

다.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67,466.4	-	267,466.4	100.0	-
주거지역	소계		189,801.4	감)1,101.0	188,700.4	70.6	-
	일반주거지역		134,936.0	증)134.0	135,070.0	50.5	-
		제2종일반주거지역	134,936.0	감)99,269.0	35,667.0	13.3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99,403.0	99,403.0	37.2	-
	준주거지역		54,865.4	감)1,235.0	53,630.4	20.1	-
녹지지역	소계		77,665.0	증)1,101.0	78,766.0	29.4	-
	자연녹지지역		77,665.0	증)1,101.0	78,766.0	29.4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	강남구 양재대로 478 (개포동 567-1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134,936.0	감) 99,269.0	35,667.0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99,403.0	99,403.0	
		준주거지역	54,865.4	감) 1,235.0	53,630.4	
		자연녹지지역	77,665.0	증) 1,101.0	78,766.0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변경)

(1)도로(변경)

• 도로총괄표(기정)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9	1,861	28,958	3	474	5,228	2	930	17,700	4	457	6,030
대로	2	518	7,929	1	375	4,030	-	-	-	1	143	3,899
중로	2	930	17,700	-	-	-	2	930	17,700	-	-	-
소로	5	413	3,329	2	99	1,198	-	-	-	3	314	2,131

•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9	1,861	30,344	3	474	5,228	2	930	19,086	4	457	6,030
광로	1	375	4,030	1	375	4,030	-	-	-	-	-	-
대로	1	143	3,899	-	-	-	-	-	-	1	143	3,899
중로	2	930	19,086	-	-	-	2	930	19,086	-	-	-
소로	5	413	3,329	2	99	1,198	-	-	-	3	314	2,131

주1) 광로1류(양재대로) 연장 및 면적은 대상지내 면적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8	50~60	주간선 도로	13,250 (375)	천호동 광6	과천시계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238호 (20.06.11)	양재대로 완화차로
변경	광로	1	28	50~60	주간선 도로	13,250 (375)	천호동 광6	과천시계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198호 (71.04.07.)	양재대로 완화차로
기정	대로	3	1	26	집산 도로	143	양재대로	중로1-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238호 (20.06.11)	
기정	중로	2	1	19.15	집산 도로	409	양재대로	대로3-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238호 (20.06.11)	
기정	중로	2	2	16.15	집산 도로	521	대로3-1	중로2-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238호 (20.06.11)	
변경	중로	2	2	19.15	집산 도로	521	대로3-1	중로2-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238호 (20.06.11)	
기정	소로	1	1	11.15	국지 도로	65	대로3-1	주상복합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238호 (20.06.11)	
기정	소로	1	2	11.15	국지 도로	34	중로2-2	공공복합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238호 (20.06.11)	
기정	소로	3	1	7	국지 도로	107	대로3-1	지구계 경계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238호 (20.06.11)	
기정	소로	3	2	4	국지 도로	192	중로2-2	지구계 경계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238호 (20.06.11)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5	대로3-1	지구계 경계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238호 (20.06.11)	

주1) 광로1류 ( )는 대상지내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28호선	광로1-28호선	· 도로 등급 변경 - 등급 = 대로 → 광로	오기 정정
중로2-2호선	중로2-2호선	· 도로 폭원 변경 - B = 16.15m → 19.15m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도로 폭원 변경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1,593	증) 13	1,606	-	
변경	1	주차장	-	개포동 126-2 일원	1,593	증) 13	1,606	서울시고시 제2020-238호 (20.06.11)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1	주차장	· 주차장 면적 변경 - 면적 : 1,593㎡ → 1,606㎡ (증 13㎡)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주차장 면적 변경

2)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8,536	증) 143	88,679	-	유수지 (저류지) 6,958㎡ 중복결정
근린공원 소계					77,467	증) 255	77,722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개포동 621 일원	77,467	증) 255	77,722	서울시고시 제2020-238호 (20.06.11)	
소공원 소계					11,069	감) 112	10,957	-	
기정	1	공원	소공원	개포동 599 일원	1,083	-	1,083	서울시고시 제2020-238호 (20.06.11)	
기정	2	공원	소공원	개포동 586 일원	6,361	-	6,361	서울시고시 제2020-238호 (20.06.11)	
변경	3	공원	소공원	개포동 573 일원	3,625	감) 112	3,513	서울시고시 제2020-238호 (20.06.11)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1	근린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77,467㎡ → 77,722㎡ (증 255㎡)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3	소공원	· 소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3,625㎡ → 3,513㎡ (감 11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2) 녹지(변경없음)

(3)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개소	594	감) 68	526	-	
기정	1	공공공지	개포동 598-1 일원	300	-	300	서울시고시 제2020-238호 (20.06.11)	
변경	2	공공공지	개포동 573-6 일원	283	감) 68	215	서울시고시 제2020-238호 (20.06.11)	
기정	3	공공공지	개포동 568-32 일원	11	-	11	서울시고시 제2020-238호 (20.06.11)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2	공공공지	· 공공공지 면적 변경 - 면적 : 283㎡ → 215㎡ (감 68㎡)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공공공지 면적 변경

(4) 광장(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4) 방재시설(변경없음)

10. 관계도서(지형도면 고시 사항 포함)의 열람 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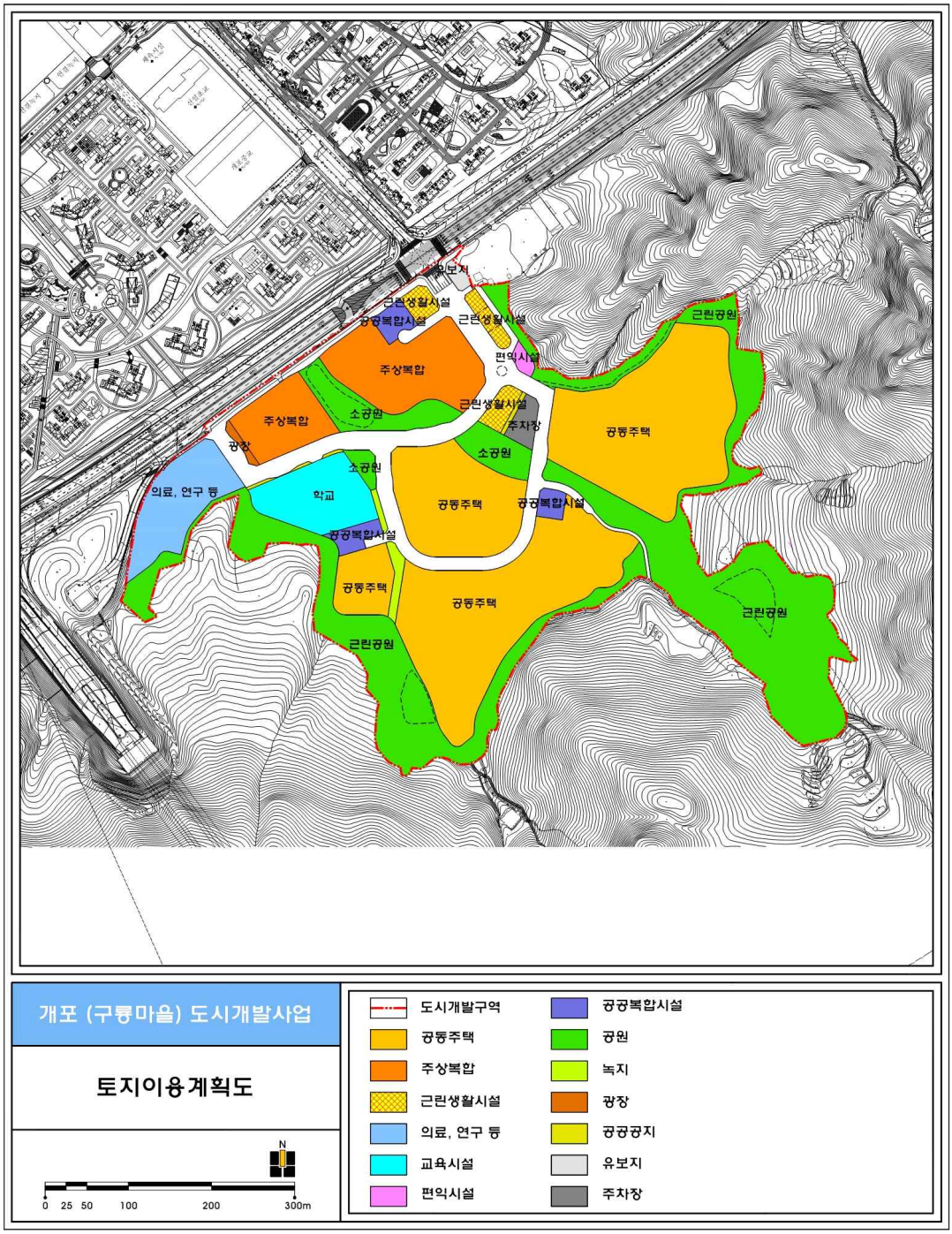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 02)2133-8495)

- 강남구청 공간개발과 (☎ 02)3423-6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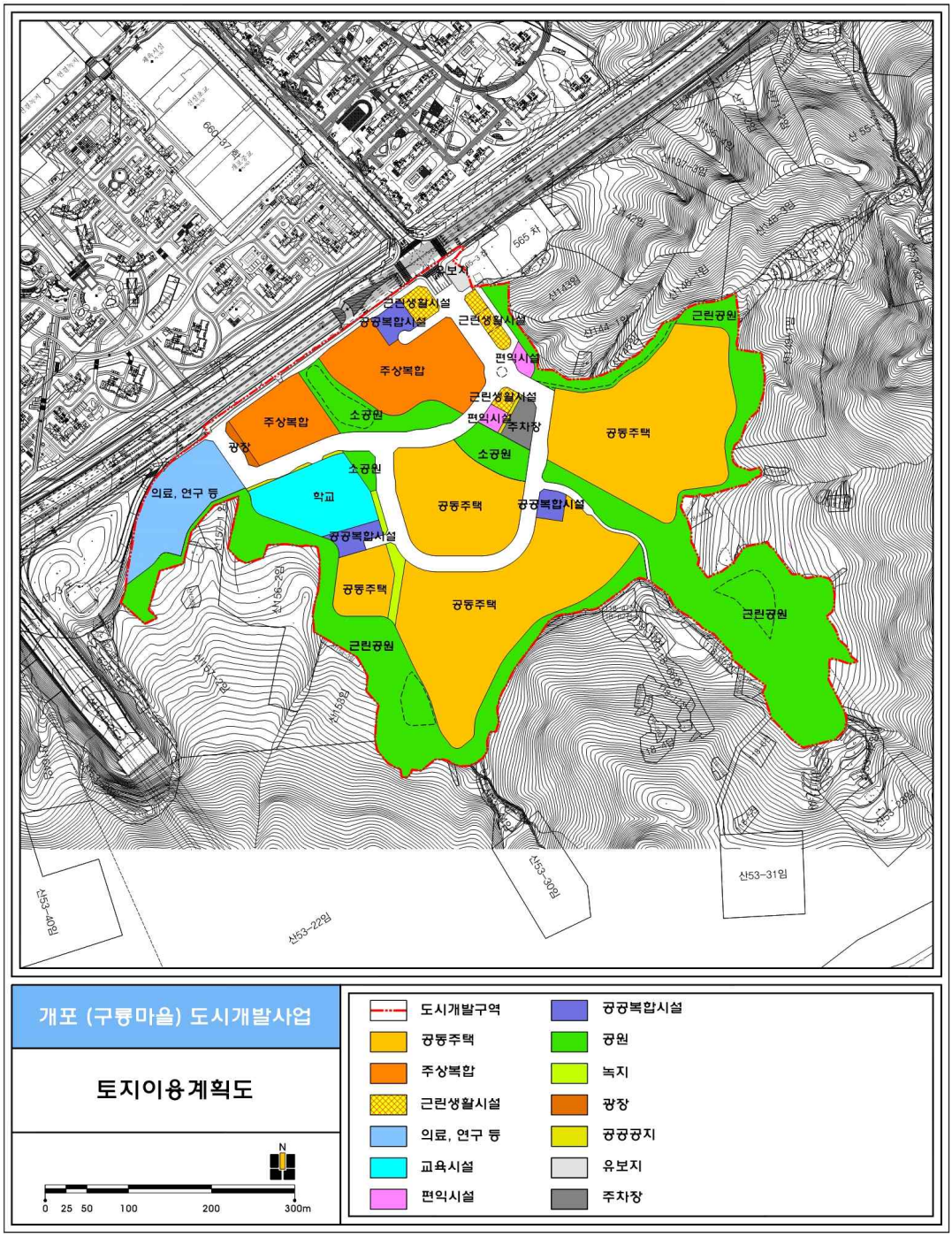
-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 02)3410-7589, 7595)

별첨1. 토지이용계획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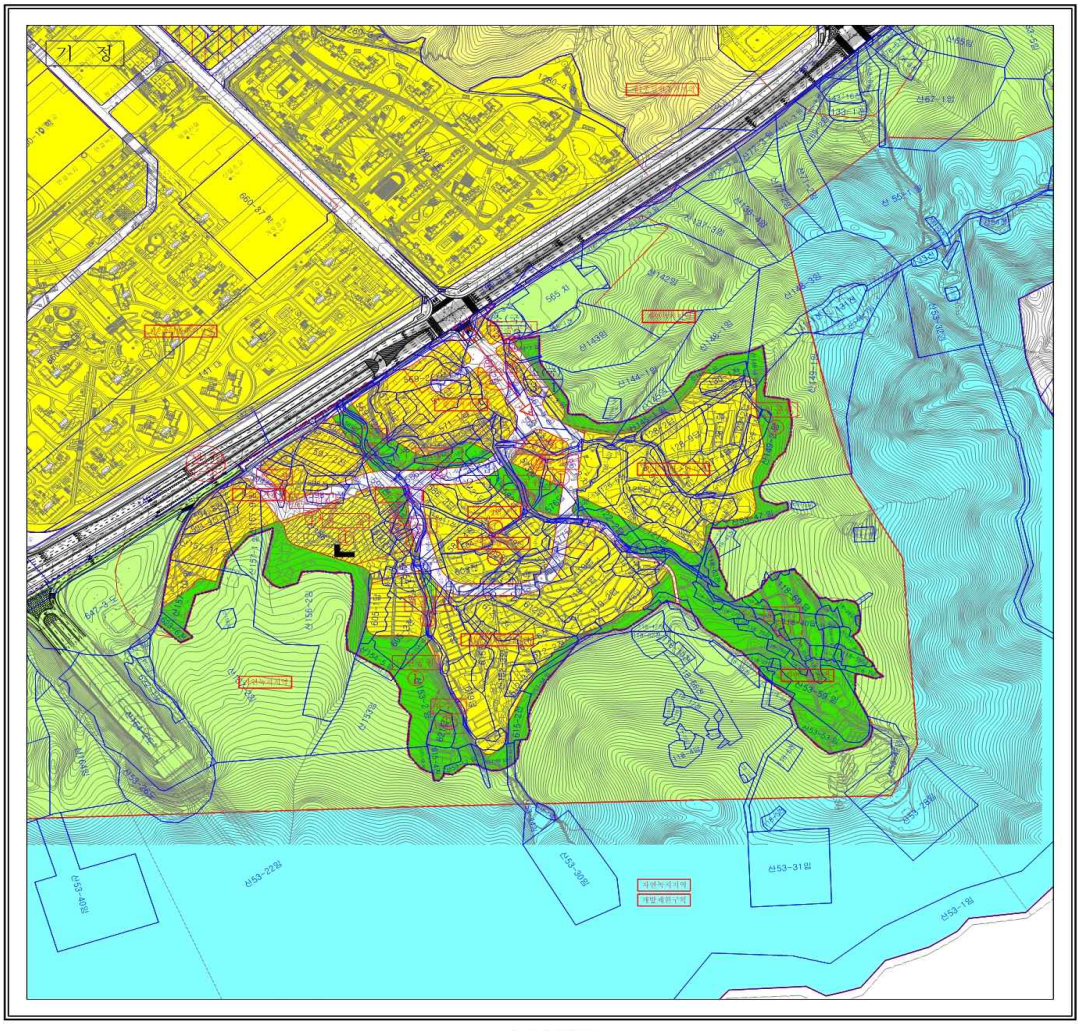
• 변경


근린생활시설
공공복합시설
주상복합
편익시설
소공원
주차창
광장
공동주택
근린공원
의료, 연구 등
학교
유보지
산53-40임
산53-22임
산53-30임
산53-31임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N
0 25 50 100 200 300m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
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
의료, 연구 등
교육시설
편익시설
공공복합시설
공원
녹지
광장
공공공지
유보지
주차장

별첨2. 지형도면 고시도

• 기정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Scale 1 : 3,000

100 0 100 200 300 400미터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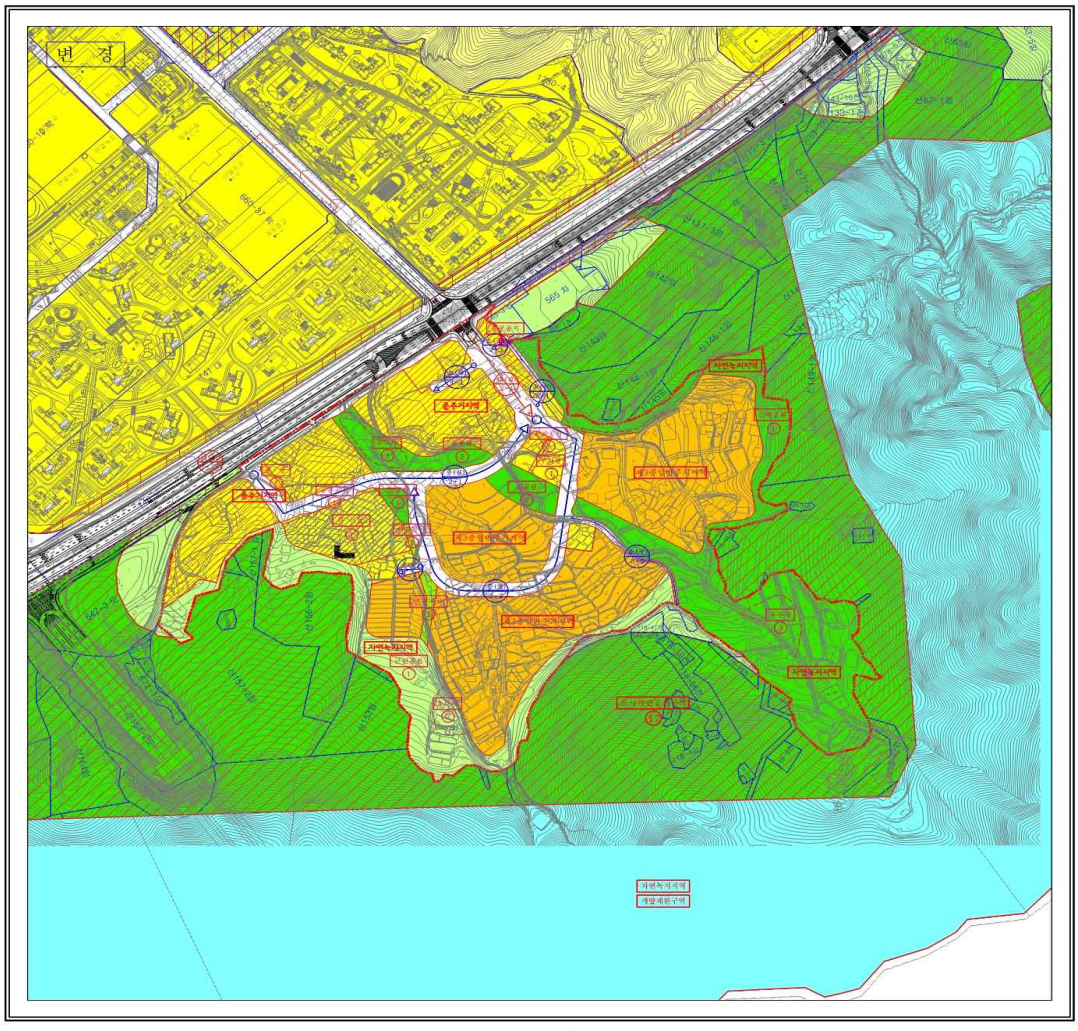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대로
중로
소로
주 차 장
근린공원
소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광장
초등학교
유 수 지

색 인 도

1 2 3 4

• 변경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5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하천공사의 목적

- 올림픽대로 잠실운동장 인근 지하화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통합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등 사람중심의 인프라 체계 구추과 올림픽대로 구조개선을 통한 주행환경 개선, 탄천 및 신천나들목 개선을 통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접근성 및 지역주민 이동 편의성 향상

○ 하천공사의 개요

- 1공구

구분		수량	비고
설계연장		올림픽대로 김포방향:1,320m, 하남방향:1,140m	
폭원		20.25 ~ 23.2m	
차로		8~10차로	
보도		-	
노선측량		1.32km	
1.	토공	깎기 : 84,031㎥, 쌓기 : 65,287㎥(노체), 23,515㎥(노상)	교통처리우회도로 포함
2.	배수공	VR관(600):8m, VR관(1,000):253m 흄관(300):16m, 흄관(450):1,290m, 흄관(600):616m, 흄관(800):58m	
3.	구조물공	신천지하차도 515m	
4.	포장공	표층 : 48,931㎡, 기층 : 41,203㎡, 보조기층 : 9,193㎡	
5.	교통안전시설공	1식	
6.	부대공	1식	

- 2공구

구분		수량	비고
설계연장		하남방향 : 1.286km, 김포방향 : 1.266km	
폭원		방향별 16.5~20.0m	
차로		4~5차로	
보도		-	
노선측량		1.286km	
1.	토공	깎기 : 15,419㎥, 쌓기 : 9,278㎥(노체), 11,779㎥(노상)	
2.	배수공	횡배수관(VR, D800) : 18m	
3.	구조물공	청담나들목(통로암거 5.5X3.5, L=96.9m)	
4.	포장공	아스콘포장 : 32,453㎡	
5.	교통안전시설공	1식	
6.	부대공	1식	

- 3공구

구분		수량	비고
설계연장		탄천동로 : U-TYPE (260m), BOX-TYPE (550m) 탄천나들목 : U-TYPE : 130.0m(RA), 85.6m(RB), 100.0m(RB1), 52.9m(RC), 79.8m(RD) BOX : 280.0m(RA), 341.5m(RB), 68.0(RB1), 80.0m(R-C), 80.0m(R-D)	
폭원		탄천동로 : U-TYPE : 13.5m~27.4m / BOX : 22.6m~31.7m 탄천나들목 : U-TYPE : 7.7m~12.5m / BOX : 8.3m~19.0m	
차로		1~2차로	
보도		510m	확장(봉은교)
노선측량		2.398km	
1.	토공	깎기 : 193,107㎥, 쌓기 : 80,915㎥(노체), 3,122㎥(노상)	
2.	배수공	VR관: D=800mm(23.6m), D600mm(17.5m), D450mm(14.5m)	
3.	구조물공	U-TYPE : 708m, BOX : 1,400m	
4.	포장공	1식	
5.	교통안전시설공	1식	
6.	부대공	1식	

- 4공구

구 분		수 량	비 고
설계연장		동부간선도로 진출연결로 (김포) 625.0m 동부간선도로 진출연결로 (하남) 65.0m 램프C교 철거 330.0m	
폭원		진출연결로 5.5m	
차로		진출연결로 1차로 탄천서로 부분 1개차로 축소 봉은사로 114 1~2차로 확장	
보도		기존도로 준용	테헤란로115 봉은사로114
노선측량		3.8km	
1.	토공	깎기 : 35,525㎥, 쌓기 : 4,597㎥(노체), 35,135㎥(노상)	
2.	배수공	VR관: D=600mm(4.4m), D900mm(25.4m), D1,000mm(13.3m)	
3.	구조물공	교량 : 동부간선도로 진출연결로 (김포) 625.0m 교량 : 동부간선도로 Ramp-F1교 (재설치) 65.0m	
4.	포장공	1식	
5.	교통안전시설공	1식	
6.	부대공	1식	

- 상수도 이설공사

구 분		수 량	비 고
설계연장		D2400mm L=1,106.27m D2200mm L=1,590.45m D1800mm L=743.90m D1500mm L=981.69m D900mm L=88.57m D1350mm L = 300m D500mm L = 985m	
관로추진		D500~2600mm L=296.41m	
부단수차단및천공		D500~2600 8개 관로	
1.	토공	터파기 115,247㎥, 되메우기 106,154, 사토 49,139	
2.	관로공	관접합 및 부설 752개소	
3.	구조물공	공기밸브실 11개소 이토밸브실 10개소 제수밸브실 7개소	
4.	가시설공	자립식가시설 L=2,893.11 TS판넬 L=1,165.36m Sheet Pile L=126.20m	
5.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하천공사 시행자 : 현대자동차 외 2개사
  ○ 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4.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일 : 2024.06.
  ○ 준공일 : 2029.1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조서와 같음

6. 관계도서(실시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지형도면 등) 열람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6438-2165)
  ○ 강남구청 치수과(☎ 02-3423-6606)

7.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재원계획

구 분	사 업 비 (원)				비 고
	합 계	국비(양여금)	도 비	자 비	
전 체 분	606,234,699,000	-	-	606,234,699,000	
금 회 분	606,234,699,000	-	-	606,234,699,000	

  ○ 자금투자계획

구 분		사 업 비 (원)				비 고
		합 계	국비(양여금)	도 비	자 비	
전체분	계	606,234,699,000	-	-	606,234,699,000	
	보상비	-	-	-	-	
	공사비	606,234,699,000	-	-	606,234,699,000	
금회분	계	606,234,699,000	-	-	606,234,699,000	
	보상비	-	-	-	-	
	공사비	606,234,699,000	-	-	606,234,699,000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전 체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사업비	606,234	60,623	121,246	121,246	121,246	121,246	60,627

8. 공사예정표

공 종	물량	기 간 (일)										비고
		착수 6개월	착수 12개월	착수 18개월	착수 24개월	착수 30개월	착수 36개월	착수 42개월	착수 48개월	착수 54개월	착수 60개월	착수 65개월	
공사준비	1식	—											
토공	1식				—								
배수공	1식					—							
교량공	1식		—	—	—	—	—	—	—	—			
포장공	1식										—	—	
교통안전시설공	1식											—	
부대공	1식									—	—	—	

9. 하천시설에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0. 폐천부지 등 발생 예상 면적 : 해당사항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하 천 조 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련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하천명	점용목적		소 유 자		비고
						영구점용	임시점용	성 명	주 소	
1	111-11	도	11,614.7	3,068.0	탄천	3,068.0	-	공	서울특별시	
2	81-4	제	6,826.3	5,197.0	탄천	5,187.0	10.0	공	서울특별시	
3	185-3	도	21,733.0	8,114.0	탄천	6,964.0	4,756.0	국	건설부	
4	185-2	천	23,398.0	676.0	탄천	533.0	676.0	국	건설부	
5	186-2	천	2,628.0	630.0	탄천	387.0	514.0	국	건설부	
6	186-1	천	25,989.0	1,269.0	탄천	1,269.0	-	국	건설부	
7	186-3	천	10,437.0	8,853.0	탄천	8,518.0	2,340.0	국	건설부	
8	111-30	도	3,874.4	3,123.0	탄천	3,123.0	-	공	서울특별시	
9	186-7	천	3,830.0	3,536.0	탄천	683.0	2,851.0	국	건설부	
10	186-6	천	56,748.0	17,520.0	탄천	5,102.0	13,831.0	국	건설부	
11	111-186	도	1,870.7	133.0	탄천	133.0	-	공	서울특별시	
12	172-2	도	2,186.7	2,110.0	탄천	2,110.0	-	공	서울특별시 강남구	
13	172-11	도	2,266.5	2,266.5	탄천	2,266.5	-	공	서울특별시 강남구	
14	186-5	천	54,455.0	13,166.0	탄천	114.0	13,052.0	국	건설부	
15	172-25	도	2,267.2	2,227.0	탄천	2,227.0	-	공	서울특별시 강남구	
16	172-43	도	2,268.0	2,233.0	탄천	2,233.0	-	공	서울특별시 강남구	
17	172-69	도	1,281.8	894.0	탄천	894.0	-	공	서울특별시 강남구	
18	186-4	천	7,132.0	790.0	탄천	19.0	771.0	국	건설부	
합 계				75,805.5		44,830.5	38,801.0			

하 천 조 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일련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하천명	점용목적		소 유 자		비고
						영구 점용	임시 점용	성 명	주 소	
1	78-25	천	43,039.0	706.0	탄천	-	706.0	국	건설부	
합 계				706.0		-	706.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6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0호(2002.7.2.)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4호(2003.11.18.)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558호(2005.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2호(2008.04.03.)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52호(2010.10.14.)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80호(2014.03.06.)로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5-160호(2015.0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 변경 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강북구 미아동 70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478,515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함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 변경 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 없음
4.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

구분	재정비촉진사업명칭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12,870	감) 7	12,863	전기공급설비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 촉진계획 변경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호나목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

나. 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1)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78,515.0	-	478,515.0	100.0	
소계		259,760.5	증) 793.0	260,553.5	54.5	
복합용지	소계	204,147.1	증) 793.0	204,940.1	42.8	
	상업 · 주거	152,129.1	증) 793.0	152,922.1	32.0	
	업무 · 주거	7,666.0	-	7,666.0	1.6	
	상업 · 업무	21,627.0	-	21,627.0	4.5	
	상업 · 문화	22,725.0	-	22,725.0	4.7	
상업 및 업무용지	소계	53,995.4	-	53,995.4	11.3	
	일반상업	30,520.0	-	30,520.0	6.4	
	근린생활시설	2,914.4	-	2,914.4	0.6	
	업무	20,561.0	-	20,561.0	4.3	
기타	소계	1,618.0	-	1,618.0	0.3	
	종교	1,618.0	-	1,618.0	0.3	
소계		218,754.5	감) 793.0	217,961.5	45.5	
기반시설	공원	9,911.0	감) 377.0	9,534.0	2.0	
	공공공지	200.0	-	200.0	0.04	
	공공청사	554.0	-	554.0	0.1	
	전기공급설비	(2,263.)	-	(2,263.0)	-	
	도시철도	(17,810.6)	-	(17,810.6)	-	
	주차장	(3,999.7)	-	(3,999.7)	-	신월곡1구역 공원(하월곡동 104-88)과 중복결정
	도로	208,089.5	감) 416.0	207,673.5	43.4	

※ ( )는 면적에 미포함.

※ 도시철도는 도로와 중복결정

2) 인구 · 주택수용 계획 : 변경

구분			계획세대(세대)	인구수(인)	비고
합계		기정	5,458	15,285	
		변경	5,918	16,573	
촉진구역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333	933	2.8인/세대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기정	922	2,582	2.8인/세대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28	639	2.8인/세대
		변경	688	1,927	2.8인/세대
	강북6재정비촉진구역	기정	-	-	-
	강북7재정비촉진구역	기정	68	191	2.8인/세대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기정	855	2,394	2.8인/세대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410	1,148	2.8인/세대
	신월곡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206	6,177	2.8인/세대
	신월곡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436	1,221	2.8인/세대

3)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계획 : 변경

구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교통시설	도로	208,089.5	감) 416	207,673.5	43.4	
	도시철도	(17,810.6)	-	(17,810.6)	-	-
	소계	208,089.5	감) 416	207,673.5	43.4	
공간시설	공원	9,911.0	감) 377	9,534.0	2.0	
	공공공지	200.0	-	200.0	0.04	
	공공청사	554.0	-	554.0	0.1	신길음
	전기공급설비	(2,263.0)	-	(2,263.0)	-	
	문화시설	(10,052.1)	-	(10,052.1)	-	강북2 건축물 기부채납 (연면적)
	소계	10,665.0	감) 377	10,288.0	2.1	

구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18,754.5	감) 793	217,961.5	45.5	
기반시설 이외 토지이용	259,760.5	감) 793	260,553.5	54.5	
총계	478,515.0	-	478,515.0	100.00	

※ ( )는 면적에 미포함.
※ 도시철도는 도로와 중복결정
※ 강북2구역 해제("21.05.06)에 따른 변경 미반영

나) 구역별 기반시설계획 : 변경

구분	구역명	내용	비고
기정	강북2 재정비촉진구역	- 도봉로 완화차로 확폭·정비 - 소공원 조성 및 문화시설(공연장) 설치	변경없음
기정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 월계로3길(도시계획시설 결정) 개설 및 도봉로8길 확폭	변경없음
기정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	- 도봉로 이면도로 확폭·정비 - 소공원 정비	-
변경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	- 도봉로 이면도로 확폭·정비	공원 폐지
기정	강북6 재정비촉진구역	- 북측 소공원 조성	변경없음
기정	강북7 재정비촉진구역	- 도봉로 이면도로 개설	변경없음
기정	신길음 재정비촉진구역	- 미아로 이면도로 확폭·정비 - 공공공지 및 공원 조성	변경없음
기정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 미아로 이면도로 확폭·정비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내용	비고
기정	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	- 종암로 이면도로 개설 - 남측 공원 조성	변경없음
기정	신월곡2 재정비촉진구역	- 북측과 남측 공원 조성	변경없음
기정	존치관리구역	-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4) 공원 · 녹지계획 : 변경

구분		시설세분	시설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공원 녹지시설	기정	소공원	11	미아동 862-1 일원	377	
	변경	소공원	11	미아동 862-1 일원	-	폐지

5) 교통계획 : 변경 없음

6) 경관계획 : 변경 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구역별 계획 : 변경

구분		구역명	면 적(㎡)			사업 방식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478,515.0	-	478,515.0	-	
미아중심	소계		180,877.3	감) 7	180,870.3	-	9개구역
	촉진구역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18,958	-	18,958	도시환경정비사업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24,348.9	-	24,348.9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12,870	감)7	12,863		
		강북6재정비촉진구역	2,574.1	-	2,574.1		
		강북7재정비촉진구역	11,526	-	11,526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28,499.8	-	28,499.8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8,390	-	8,390		
		신월곡1재정비촉진구역	56,024.5	-	56,024.5		
		신월곡2재정비촉진구역	17,686	-	17,686		준공

구분		구역명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사업 방식	비고
	소계		297,637.7	증)7	297,644.7	-	-
	존치 관리 구역	존치관리구역	297,637.7	증)7	297,644.7	-	-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

가) 강북2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나)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다)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

구 분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율(%)	비고
합 계		12,870	감) 7	12,863	100.0	
주거지역	소 계	12,870	감) 9,986	2,884	22.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33	감) 8	125	1.0	
	제3종일반주거지역	2,379	감) 711	1,668	13.0	
	준주거지역	10,358	감) 9,267	1,091	8.5	
상업지역	소 계	-	증) 9,979	9,979	77.6	
	일반상업지역	-	증) 9,979	9,979	77.6	

라) 강북6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마) 강북7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바) 신길음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사)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아) 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자) 신월곡2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 건축계획 : 변경

구 분		구역명	건폐율(%)	용적률(%) 기준	허용	상한	최고높이 (m)	주용도
촉진 구역	기정	강북21) 재정비촉진구역	60이하	430 이하	600 이하	698이하	150이하	문화, 판매, 업무, 주거
	기정	강북3	60이하	300 이하	397 이하	500이하	130이하	주거 95%미만

구 분		구역명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m)	주용도
					기준	허용	상한		
		재정비촉진구역					(법적상한)		
	기정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		60이하	295 이하	500 이하	589이하	100이하	판매, 업무, 주거 (50%미만)
	변경			60이하	300 이하	630 이하	900이하 (법적상한)	150이하	판매,주거 (80%미만)
	기정	강북62) 재정비촉진구역		60이하	300 이하	487 이하	-	100이하	판매, 업무
	기정	강북73) 재정비촉진구역	7-1	60이하	296 이하	500 이하	661이하	100이하	판매, 업무, 교육, 주거
			7-2	60이하	300 이하	360 이하	-	40이하	근린 생활시설
	기정	신길음 재정비촉진구역		60이하	300 이하	350 이하	500이하 (법적상한)	120이하	주거, 판매, 운동
	기정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60이하	300 이하	500 이하	813이하 (법적상한)	140이하	판매, 주거
	기정	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		60이하	350 이하	580 이하	-	160이하	판매, 주거, 업무 또는 숙박
	기정	신월곡2 재정비촉진구역		60이하	350 이하	500 이하	-	120이하	판매, 업무, 주거

-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을 준용함

1) 강북2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6호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강북구 고시 제2021-93호)되었으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반영될 예정

2) 강북6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준공된 지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예정

3) 강북7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구역 해제예정

-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계획 : 변경없음

나) 구역별 기반시설부담 계획 : 변경

구분	구역명	내용	비고
기정	강북2 재정비촉진구역	- 도봉로 이면 P턴도로 개설 및 완화차로 확폭·정비 - 소공원 조성 및 문화시설(공연장) 설치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14.2%이상	변경없음
기정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 월계로3길(도시계획시설 결정) 개설 및 도봉로 8길 확폭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13.7%이상	-
기정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	- 도봉로 이면도로 확폭·정비 - 소공원 정비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15.5%이상(계획18.66%)	-
변경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	- 도봉로 이면도로 확폭·정비 - 기부채납 공공임대 확보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15.5%이상(계획15.51%)	공원 폐지
기정	강북6 재정비촉진구역	- 북측 소공원 조성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15%이상	변경없음
기정	강북7 재정비촉진구역	- 도봉로 이면도로 개설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24.9%이상	변경없음
기정	신길음 재정비촉진구역	- 미아로 이면도로 확폭·정비 - 공공공지 및 공원 조성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15.9%이상	변경없음
기정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 미아로 이면도로 확폭·정비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20.7%이상	변경없음
기정	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	- 종암로 이면도로 개설 - 남측 공원 조성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17.0%이상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내용	비고
기정	신월곡2 재정비촉진구역	- 북측과 남측 공원 조성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16.6%이상	변경없음
기정	존치관리구역	-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1) 강북2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6호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강북구 고시 제2021-93호)되었으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반영될 예정
2) 강북6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준공된 지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예정
3) 강북7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구역 해제예정
-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

구분	구역명	기획세대수(세대)	분양주택(세대)	임대주택(세대)	비고
기정	합계	5,458	4,620	838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333	297	36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922	692	230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228	208	20	
	강북6재정비촉진구역	-	-	-	
	강북7재정비촉진구역	68	68	-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855	650	205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410	298	112	
	신월곡1재정비촉진구역	2,206	2,009	197	
	신월곡2재정비촉진구역	436	398	38	
변경	합계	5,918	4,802	1,116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333	297	36	해제예정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922	692	230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688 (증 460)	390 (증 182)	298 (증 278)	
	강북6재정비촉진구역	-	-	-	해제예정
	강북7재정비촉진구역	68	68	-	해제예정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855	650	205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410	298	112	
	신월곡1재정비촉진구역	2,206	2,009	197	
	신월곡2재정비촉진구역	436	398	38	

※ 세대수 → 건축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1) 강북2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6호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강북구 고시 제2021-93호)되었으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반영될 예정
2) 강북6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준공된 지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예정
3) 강북7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구역 해제예정
-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 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5)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 변경없음
16)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
가) 강북2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나)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다)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구분	재정비촉진사업명칭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일대	12,870	감) 7	12,863	전기공급설비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 촉진계획 변경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호나목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

(2) 추정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변경

<table>
<tr><td>추정
비례율</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79.47%</td></tr>
<tr><td>개별종전자산
추정액</td><td>•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시가격 확인
• 단독주택, 상가 소유자 = 개별공시지가 x 토지면적 x 보정률(2.3)
• 공동주택 = 개별 공동주택공시가격 x 보정률(2.6)</td></tr>
<tr><td>공동주택
추정 분담금
산정</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 인근 유사 주택형별 시세를 고려하여 일반분양가를 추정하고, 권리자 분양가는 별도 추정함. 분양가 추정시 층별,향별,동별 차이는 미반영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
<tr><td>전용84㎡형</td><td>7.97억</td><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79.47%)</td><td>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부담 / -: 환급)</td></tr>
<tr><td>전용120㎡형</td><td>10.59억</td><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79.47%)</td><td>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부담 / -: 환급)</td></tr>
</table></td></tr>
<tr><td>근린생활시설
추정 분담금
산정</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 권리자분양 · 일반분양구분,배치 및 공용면적 배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근 시세를 고려하여 일반분양가를 추정하고, 권리자분양가는 시세의 65%수준으로 추정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
<tr><td>전용33㎡형</td><td>1층 :
4.29억</td><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79.47%)</td><td>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부담 / -: 환급)</td></tr>
</table></td></tr>
</table>

(3)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870	감) 7	12,863	100.0	
주거지역	소 계	12,870	감) 9,986	2,884	22.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33	감) 8	125	1.0	
	제3종일반주거지역	2,379	감) 711	1,668	13.0	
	준주거지역	10,358	감) 9,267	1,091	8.5	
상업지역	소 계	-	증) 9,979	9,979	77.6	
	일반상업지역	-	증) 9,979	9,979	77.6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명칭	면 적(㎡)			비 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870	감) 7	12,863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3,684	감) 800	2,884	22.4	-
	도로	3,300	감) 416	2,884	22.4	-
	공원	377	감) 377	-	-	
	전기공급설비	7	감) 7	-	-	
획지		9,186	증) 793	9,979	77.6	-

※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8	35	주간선도로	6,100 (134)	제기동 정릉천	수유동 우이교	-	건고 제177호 (1968.12.08.)	-
기정	중로	1	1	22	집산도로	71	미아동 62-28	미아동 62-21	-	-	-
변경	중로	3	1	12	집산도로	80	미아동 62-28	미아동 62-21	-	서고 제2014-80호 (2014.03.06)	-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257 (122)	미아동 61-12	미아동 465-6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2	7	12~27	집산도로	257 (122)	미아동 61-12	미아동 465-6	-	서고 제2014-80호 (2014.03.06.)	-
폐지	중로	2	6	15	집산도로	72	미아동 61-81	미아동 61-82	-	서고 제2014-80호 (2014.03.06)	-

※ ( )는 강북5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나)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4호선 미아사거리진출입구)	강북구 미아동 60-5번지 일대	242	-	242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표시	시설명	위치	입체적 결정규모		구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층	면적 (㎡)				
기정	-	철도	미아동61-85 일부 미아동61-88 일부 미아동862-1 일부 미아동862-2 일부 미아동862-53 일부 미아동864-23 일부 미아동864-39 일부	지상1층 ~ 지하2층	242	길이 : 39m 폭 : 5.6~m5.1 높이 : 20.93~31.15m (해발고도) 층 : 지하2 ~ 지상1층	242	-	강북5 구역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원	소공원	강북구 미아동 862-1번지 일대	377	감) 377	-	-

(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전기공급설비	강북구 미아동 465-4번지 일대	7	감) 7	-	-

※ ( )는 강북5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6)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분	구역명	내용	비고
기정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	• 도봉로 이면도로 정비 및 소공원 개설 • 공공용지 확보 비율: 순부담율 15.5%이상(계획:18.66%)	
변경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	• 도봉로 이면도로 확폭·정비 • 기부채납 공공임대 확보 • 공공용지 확보 비율 : 순부담율 15.5%이상(계획:15.51%)	공원폐지

(7)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강북5 도시환경 정비사업	12,870	택지	9,186	미아동 61-79번지 일대	37	-	-	37	-	-
변경	강북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863	택지	9,979	미아동 61-79번지 일대	37	-	-	37	-	-

② 건축시설계획(기정)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된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th><th rowspan="2">높이/
최고층수</th><th rowspan="2">연면적</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기정</td><td>강북5
도시환경
정비사업</td><td>12,870</td><td>택지</td><td>9,186</td><td>미아동
61-79번지
일대</td><td>판매
업무
주거
(50%미만)</td><td>60
이하</td><td>기준:295.17이하
허용:500이하
상한:589.02이하</td><td>100
이하/
27층</td><td>89,665.21이하</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0"><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세대수</th><th rowspan="2">연면적</th></tr>
<tr><th>계</th><th>일반</th><th>임대</th></tr>
<tr><td>합계</td><td>228</td><td>208</td><td>20</td><td>44,113.12</td></tr>
<tr><td>전용 85㎡이하</td><td>144(63.2%)</td><td>124</td><td>20</td><td>25,565.12(58.0%)</td></tr>
<tr><td>전용 85㎡초과</td><td>84(36.8%)</td><td>84</td><td>-</td><td>18,548.00(42.0%)</td></tr>
</table></td></tr>
<tr><td>심의 완화 사항</td><td colspan="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2014.2.5.)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 제2종일반(7층)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역 변경내역은 사업시행인가 전 고시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교통영향평가 시 이면도로변 진출입구의 위치 및 개소수에 대해 검토</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0">• 건축한계선
- 도봉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 중로1-1, 중로2-6 : 대지경계로부터 3m
- 중로2-7 : 대지경계로부터 5m
- 소공원변 :대지경계로부터 2m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도봉로변 :대지경계로부터 11m</td></tr>
</table>

주)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연면적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강북5 도시환경 정비사업	12,863	택지	9,979	미아동 61-79번지 일대	판매 주거 (80%미만)	60 이하	기준:300이하 허용:630이하 상한:725이하 법적상한:900이하	150 이하/ 48층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세대수			연면적
	계	일반	임대	
합계	688	390	298	105,776.98
전용 60㎡미만	240(34.8%)	60(8.8%)	180(26.2%)	20,283.41(19.2%)
전용 60~85㎡이하	320(46.6%)	202(29.3%)	118(17.1%)	54,603.91(51.6%)
전용 85㎡초과	128(18.6%)	128(18.6%)	-	30,889.66(29.2%)

심의 완화 사항

- 공공재개발사업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
  - 법적상한용적률 900%(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도봉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5m
  - 중로1-1 : 대지경계로부터 3m
  - 중로2-7 : 대지경계로부터 3m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도봉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11m

주)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③ 용적률계획(기정)

<table>
<tr><th>구분</th><th colspan="6">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구역면적
(A)</td><td>획지</td><td>계획기반
시설면적(B)</td><td>전체
국공유지(C)</td><td>기반시설
순부담면적
(B-C)</td><td>순부담율
(B-C/A-C)</td></tr>
<tr><td>12,870㎡</td><td>9,186㎡</td><td>3,677㎡
(전기공급설비 7㎡제외)</td><td>1,568㎡</td><td>2,109㎡</td><td>18.66%</td></tr>
<tr><td>순부담
면적(㎡)</td><td colspan="6">• 순부담 면적(B-C)
= 계획기반시설면적 - 전체 국·공유지
= 3,677㎡-1,568㎡ = 2,109㎡</td></tr>
<tr><td>순부담율(㎡)</td><td colspan="6">• 순부담율(B-C/A-C)
= 순부담 면적 / 전체 구역면적
= 2,109㎡ / (12,870㎡-1,568㎡) = 18.66%</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6">•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
[(444×200) + (8,742×300)] / 9,186 = 295.17(300%이하)</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6">•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인한 용적률
= 295.17% + 224.07% = 519.24% 〉 500% 이므로 500.0% 적용</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6">• 상한용적률 : 기부채납에 따라 완화받는 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500% × (1 + 1.3 × 0.5965 × 0.2296) = 589.02% 이하
<table><tr><td>α</td><td>=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3,684-1,568.0-7.0) / (12,870-3,684) = 0.2296</td></tr><tr><td>가중치</td><td>○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 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비율
= [(3종 공공시설부지 x 3종허용용적률)+(준주거 공공시설부지 x 준주거허용용적률) / 기반시설면적
= [(2,068.0㎡ x 250%)+(1,616.0㎡ x 360%) / 3,684.0㎡ = 298.25% 가중치
= 298.25% / 500.0% = 0.5965</td></tr></table></td></tr>
</table>

용적률계획(변경)

<table>
<tr><th>구분</th><th colspan="8">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 rowspan="2">계
(구역)</td><td rowspan="2">획지</td><td colspan="4">기반시설 부지 제공면적(㎡)</td><td rowspan="2">순부담
면적
(㎡)</td><td rowspan="2">순부담율
(%)</td></tr>
<tr><td>계획기반
시설면적</td><td colspan="2">건축물 기부채납(임대주택)</td><td>계획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td><td>기존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td></tr>
<tr><td></td><td></td><td></td><td>①토지지분1)</td><td>②설치비용 환산2)</td><td></td><td></td><td></td><td></td></tr>
<tr><td></td><td>12,863㎡</td><td>9,979㎡</td><td>2,884㎡</td><td>363.91㎡</td><td>314.14㎡</td><td>371㎡</td><td>1,196㎡</td><td>1,995.05㎡</td><td>15.51%</td></tr>
<tr><td>순부담면적
(㎡)</td><td colspan="9">• 순부담 면적
= 계획기반시설면적 -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①토지지분 + ②설치비용 환산)
= 2,884㎡ + 678.05㎡ - 371㎡ - 1,196㎡ + (363.91㎡ + 314.14㎡) = 1,995.05㎡</td></tr>
<tr><td>순부담율
(%)</td><td colspan="9">• 순부담율
= 순부담 면적 / 전체 구역면적
= 1,995.05㎡ / 12,863.0㎡ = 15.51%</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9">• 기준용적률 : 300%</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9">• 허용용적률 : 63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변경 입안중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의 항목을 반영함</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9">• 상한용적률 : 기부채납에 따라 완화받는 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α토지 + 1.0 X α(현금·건축물)
= 630% X (1 + 1.3 X 0.52 X 0.175 + 1.0 X0.033) = 725%
<table>
<tr><td>가중치</td><td>= 공공시설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 327.6% ÷ 630% = 0.52
<table>
<tr><td>공공시설
부지 용적률</td><td>=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공공시설면적x200% +
3종일반주거지역 공공시설면적×250% +
준주거지역 공공시설면적×360% + 건축물 기부채납(①토지지분) x 630%) ÷ [공공시설면적+
지지분)]
= (125㎡x200% + 1,668㎡×250% + 1,091㎡×360% + 363.91㎡x630%) ÷ (2,884㎡+363.</td></tr>
<tr><td>사업부지
용적률</td><td>=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630%) ÷ 전체대지면적
= (9,979㎡×630%) ÷ 9,979㎡ = 630%</td></tr>
</table></td></tr>
<tr><td>α토지</td><td>=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2,884㎡ - 1,567㎡ + 363.91㎡) / (9,979㎡ - 363.91㎡)
= 1,680.91㎡ / 9,615.09㎡ = 0.175</td></tr>
<tr><td>α현금·건축
물</td><td>= ②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314.14㎡ / 9,615.09㎡ = 0.033</td></tr>
</table></td></tr>
<tr><td rowspan="2">법적상한
용적률</td><td colspan="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적용
(증가용적률의 1/2이상 임대주택공급(국민주택규모 주택))</td></tr>
<tr><td colspan="9">• 법적상한용적률 = 900% 이하</td></tr>
</table>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순부담면적 및 용적률 변경

※ 법적상한용적률은 기부채납에 따른 완화 받은 상한용적률(725%)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완화용적률을 추가하여 적용

1) ① 토지지분 = 세대수 x 대지지분
   - 대지지분 = 대지지분율 x 대지면적
2) ②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 = 세대수 x 환산부지
   - 환산부지 = {표준건축비(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2023) x 계약면적) / 대지단가
   ※ 대지단가: 심의 시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출. 향후 건축 허가 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변경

(8)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변경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강북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현황 : 120세대 계획 : 228세대 (증 : 108세대)	-
변경	도시정비형 재개발 (공공재개발)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서울주택도시공사	현황 : 120세대 계획 : 688세대 (증 : 568세대)	-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가구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9,186	증) 793	9,979	-

(10)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세대)	세대규모(전용, ㎡)		비고
기정	구역내	9,186	-	3,550.68	20 (8.8%)	84.9㎡	20세대 (8.8%)	
변경	구역내	9,979	-	34,933.25	298 (43.3%)	40㎡이하 (39.5㎡)	90세대 (13.1%)	
						40㎡~50㎡ (44.55㎡)	90세대 (13.1%)	
						60㎡~85㎡ (84.85㎡)	118세대 (17.2%)	

○ 주택 규모별 건설계획(안)

구분		합계	토지등 소유자	분양	임대					비고
					소계	재개발 임대1)	국민주택 임대2)	기부채납 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3)	
총세대수		688	93	297	298	23	111	47	117	-
60㎡이하	39㎡	120	-	30	90	23	32	35	-	-
	44㎡	120	-	30	90	-	49	-	41	-
84㎡		320	50	152	118	-	30	12	76	-
120㎡		128	43	85	-	-	-	-	-	-

1) 재개발임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라 계획, 제79조제⑤항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2) 국민주택임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계획·처분
3)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라 계획

라) 강북6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마) 강북7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바) 신길음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사)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아) 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자) 신월곡2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870	감) 7	12,863	100.0	
주거지역	소 계	12,870	감) 9,986	2,884	22.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33	감) 8	125	1.0	
	제3종일반주거지역	2,379	감) 711	1,668	13.0	
	준주거지역	10,358	감) 9,267	1,091	8.5	
상업지역	소 계	-	증) 9,979	9,979	77.6	
	일반상업지역	-	증) 9,979	9,979	77.6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8	35	주간선도로	6,100 (134)	제기동 정릉천	수유동 우이교	-	건고 제177호 (1968.12.08.)	-
기정	중로	1	1	22	집산도로	71	미아동 62-28	미아동 62-21	-	-	-
변경	중로	3	1	12	집산도로	80	미아동 62-28	미아동 62-21	-	서고 제2014-80호 (2014.03.06)	-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257 (122)	미아동 61-12	미아동 465-6	-	-	-
변경	중로	2	7	12~27	집산도로	257 (122)	미아동 61-12	미아동 465-6	-	서고 제2014-80호 (2014.03.06.)	-
폐지	중로	2	6	15	집산도로	72	미아동 61-81	미아동 61-82	-	서고 제2014-80호 (2014.03.06)	-

※ ( )는 강북5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	중로 3-1	•변경 - 폭원변경(B=22m → 12m)	•연접한 강북4구역 해제에 따른 도로 폭원 조정
중로 2-7	중로 2-7	•변경 - 폭원 변경 (B=15 → 12~27m)	•연접한 북측도로의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현황도로와 교차로 선형의 일치를 위한 도로 선형조정 •계획변경에 따른 폭원 조정
중로 2-6	중로 2-6	•폐지	•계획변경 및 연접구역인 강북7구역 해제 예정에 따른 도로 폐지

2) 철도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4호선 미아사거리진출입구)	강북구 미아동 60-5번지 일대	242	-	242	-

※ ( )는 강북5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표시	시설명	위치	입체적 결정규모		구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층	면적(㎡)				
기정	-	철도	미아동61-85 일부 미아동61-88 일부 미아동862-1 일부 미아동862-2 일부 미아동862-53 일부 미아동864-23 일부 미아동864-39 일부	지상1층 ~ 지하2층	242	길이 : 39m 폭 : 5.6~5.1m 높이 : 20.93~31.15m (해발고도) 층 : 지하2 ~ 지상1층	242	-	강북5 구역

3) 공원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원	소공원	강북구 미아동 862-1번지 일대	377	감) 377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 원	• 폐지(377㎡)	• 공원 의무 부담 기준의 변경에 따라 획지 정형화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위해 소공원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개공지로 대체하여 조성함

4) 전기공급시설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전기공급설비	강북구 미아동 465-4번지 일대	7	감) 7	-	-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전기공급설비	구역내 면적 7㎡ 감소	• 전기공급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강북5구역 내 포함 부분을 제척함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구분	위 치	획지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	택지1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9,186	증) 793	9,979	공동주택 판매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내용		비 고
	기정	변경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	주용도 연계
불허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 제1호의 단독주택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6호의 종교시설(단, 연면적 30%미만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단, 방송국, 전신전화국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공통〉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건축물1)제외)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제17호 공장 제18호 창고시설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간선도로변〉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밖의 범죄자의 갱생 · 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권장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제9호의 의료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병원 포함) - 교육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전층용도〉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및 제13호 운동장 중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의 체육 활동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 관리 · 운영하는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제7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제11호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11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기타 구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및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는 소매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서점, 공연장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기타 구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및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	-

2)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높이)	비고
기정	일반상업지역 (택지1)	60% 이하	기준: 295.17% 이하 허용: 500% 이하 상한: 589.02% 이하	100m 이하 (27층)	
변경	일반상업지역 (택지1)	60% 이하	기준: 300% 이하 허용: 630% 이하 상한: 725% 이하 법적상한: 900% 이하	150m 이하 (48층)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4-2. (1)용적률 계획기준에 따라 기정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 [(종전)일반주거지역 → (변경)일반상업지역]
- 용도지역 변경 기준시점: 기준/허용용적률 - 1991.5.11. 이후 (도시설계지구 법제화 시점)

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 한계선	기정	도봉로변	대지경계로부터 3m	
		중로 1-1, 중로2-6	대지경계로부터 3m	
		중로 2-7	대지경계로부터 5m	
		소공원변	대지경계로부터 2m	
	변경	도봉로변	대지경계로부터 5m	
		중로 1-1	대지경계로부터 3m	
		중로 2-7	대지경계로부터 3m	
고층부 벽면한계선	기정	도봉로변	대지경계로부터 11m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결 정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공개공지	•도봉로변 2개소 설치(1,077.44㎡) - 도봉로변, 북측 : 657.44㎡ - 도봉로변 : 420㎡	•도봉로변 2개소 설치(1,000㎡) - 북측: 325㎡ - 남측: 675㎡	
공공보행통로	•소공원과 연계(873.87㎡)	•2개소 설치(963㎡) - 북측 : 폭원8m(기존가로 유지) - 남측 : 폭원4m(긴급차량 이용 가능)	-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결정내용		비 고
	기정	변경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도봉로 이면도로 차량진출입구 외 구간	•도봉로 이면도로 차량진출입구 외 구간	-

3) 환경관리계획 : 변경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예측 및 반영사항
자연생태환경	비오톱	3등급	○	•대지: 비오톱유형평가 4~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녹지, 식재, 투수성포장 등으로 비오톱 기능 향상 예정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계 연결성 확보	○	•녹지공간이 미미함	•공원 및 녹지훼손 없음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해당사항 없음	-
		자연환경보전	-	•해당사항 없음	-
	자연환경자산	-	○	•사업대상지의 비오톱유형현황도는 상업 및 업무지비오톱 지역임.	•조경녹지와 투수성 포장의 조성으로 인해 비오톱의 기능이 향상될 것임.
생활환경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사업부지는 녹지가 없는 시가화지역	•조경공간확보, 공개공지 조성을 통한 녹지 공원, 녹지 기능 확보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시가화지역	•개발시 토양오염 최소화 필요
	지형·지질·토양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지형·지질변동 미발생	-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자연지반 포장률 - 공원: 10% 미만 - 대지: 90% 이상으로 대지 내 자연지반 및 녹지공간 부족	•생태면적율 30% 이상을 확보토록 하겠음
	수질	수질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북동측에 우이천과 중랑천 위치	•공사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 유출저감 •서울시 우·오수처리계획과 연계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서울시 주풍향은 서풍으로 나타남	•녹지면은 바람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을 조성할 계획임
	악취	악취공해 해결	-	•해당사항 없음	-
	대기질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PM-2.5를 제외한 전 항목이 장기기준을 만족	•공사시 살수 및 이동식 방진망 등의 저감대책 수립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해당사항 없음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예측 및 반영사항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인부에 의한 분뇨 및 건설 폐기물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 • 구 처리체계와 연계처리
	소음진동	소음, 진동 최소화	○	• 대상지 주변으로 인접하게 동측으로 약 30m의 도로가 위치함.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 준수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 사업대상지는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지역은 도로와 상가들이 위치하고 있어 정온시설에 대한 일조의 피해는 없음.	• 사업시행 후 고층의 건물이 신축될 계획이나,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북방향의 정온시설과의 이격 거리를 충분히 계획하여 일조 장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함
사회경제환경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수립	-	• 해당사항 없음	-

4)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세대)	세대규모(전용, ㎡)		비고
기정	구역내	9,186	-	3,550.68	20 (8.8%)	84.9㎡	20세대 (8.8%)	
변경	구역내	9,979	-	34,933.25	298 (43.3%)	40㎡이하 (39.5㎡)	90세대 (13.1%)	
						40㎡~50㎡ (44.55㎡)	90세대 (13.1%)	
						60㎡~85㎡ (84.85㎡)	118세대 (17.2%)	

○ 주택의 규모별 건설계획(안)

구분		합계	토지등 소유자	분양	임대					비고
					소계	재개발 임대1)	국민주택 임대2)	기부채납 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3)	
총세대수		688	93	297	298	23	111	47	117	-
60㎡이하	39㎡	120	-	30	90	23	32	35	-	-
	44㎡	120	-	30	90	-	49	-	41	-
84㎡		320	50	152	118	-	30	12	76	-
120㎡		128	43	85	-	-	-	-	-	-

1) 재개발임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에 따라 계획, 제79조제⑤항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2) 국민주택임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5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계획·처분
3)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라 계획

4. 존치관리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2024년 제2차(′ 24.04.15)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심의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은 사업시행 인가시까지 서울시와 인수 주체와 조건을 협의할 것
미아사거리역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6번 출입구를 지상부까지 연장(도봉로에 접속)하는 방안 검토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
공개공지는 공원에 준하도록 녹지를 풍부하게 조성하고, 지하층 공개공지는 지상연결부(계단)를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교차로(사업지 북서측)에 계획한 보행공간(349㎡)은, 교통 흐름(도봉로13길)과 보행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 선형을 계획할 것
고층부 벽면 한계선(11m)을 유지하여 도봉로변에 위압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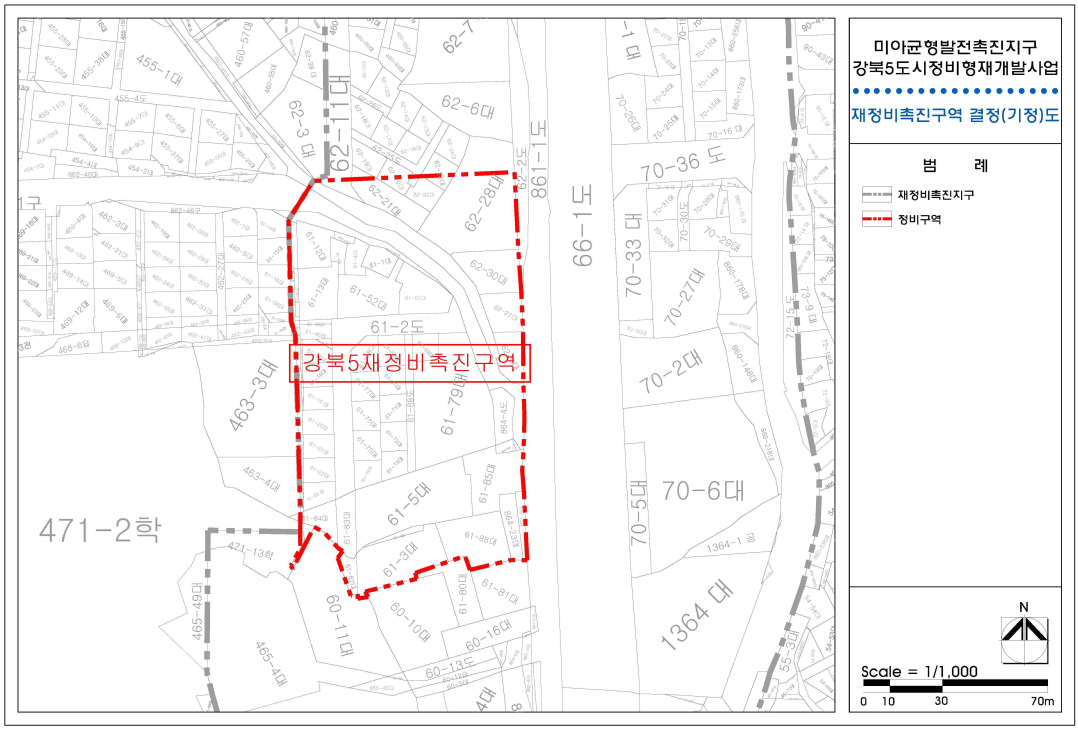
Ⅱ. 관련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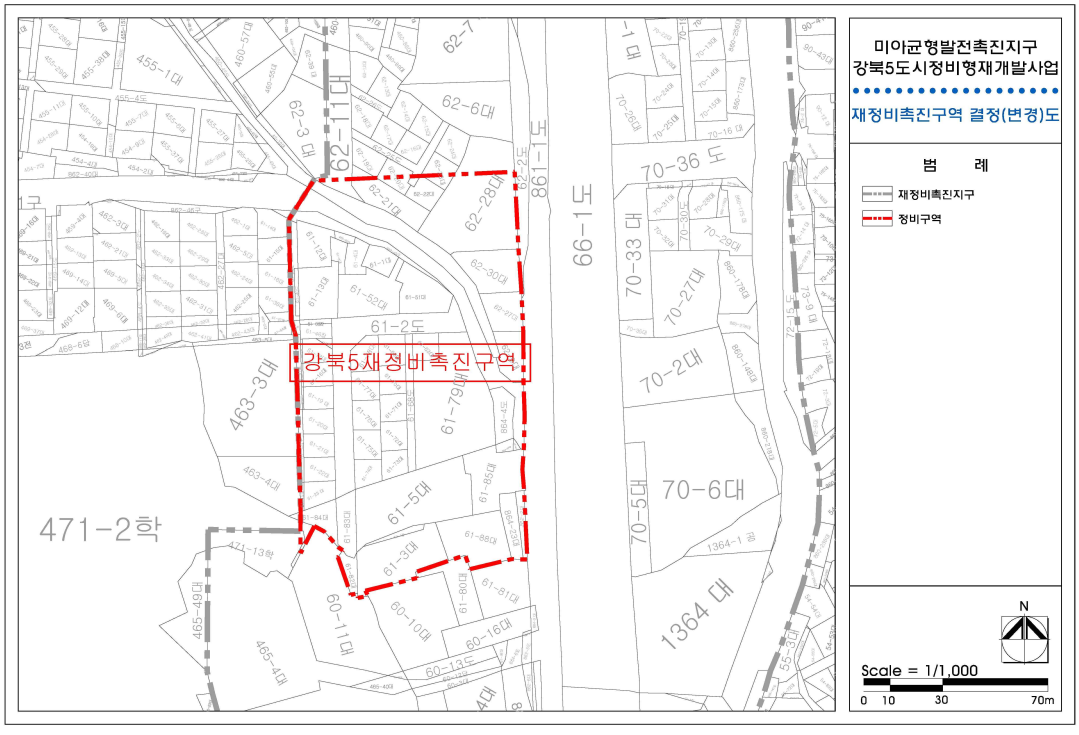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Ⅲ.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02-2133-7226) 및 강북구청 도시계획과(☎02-901-685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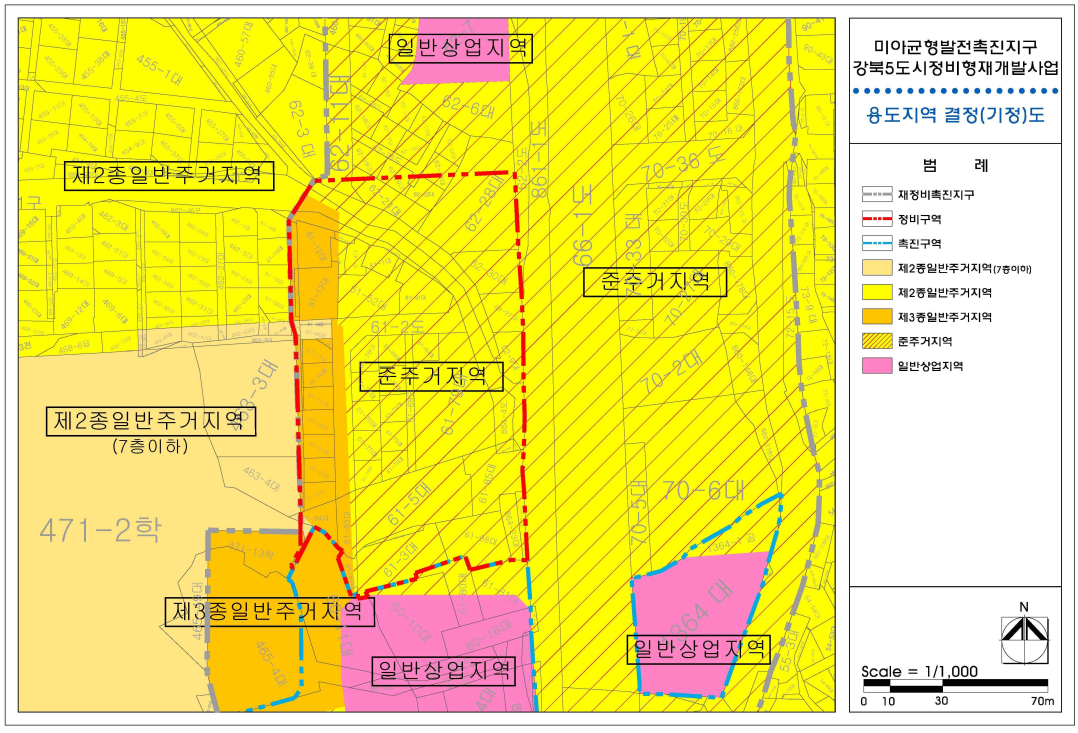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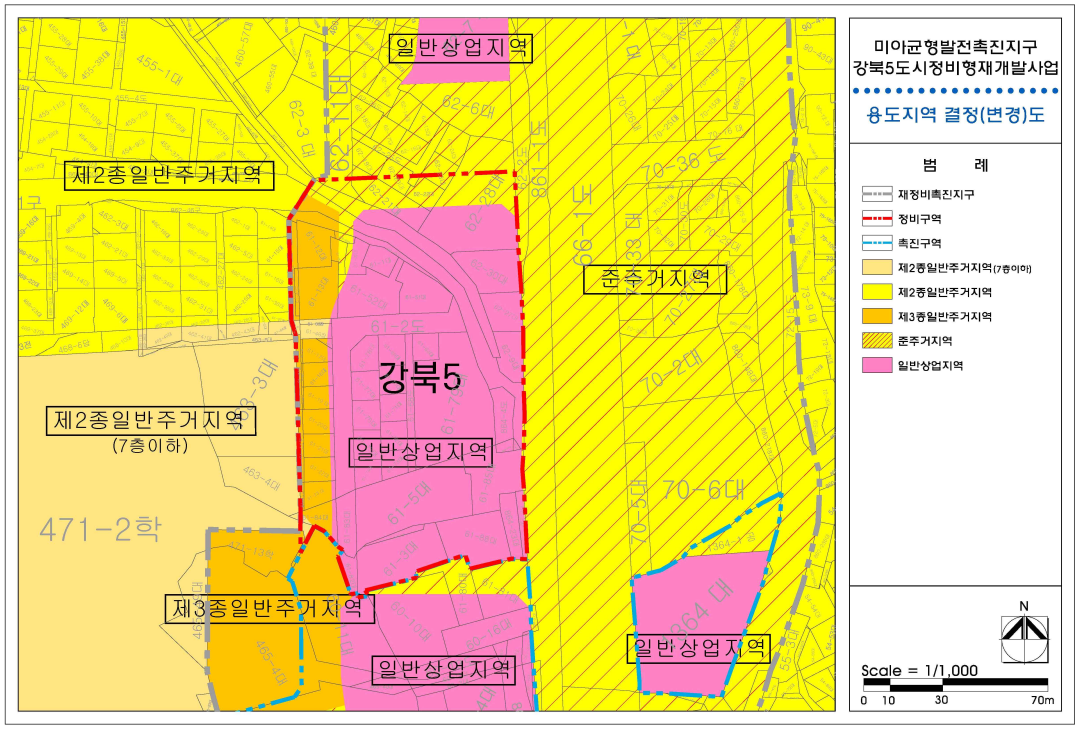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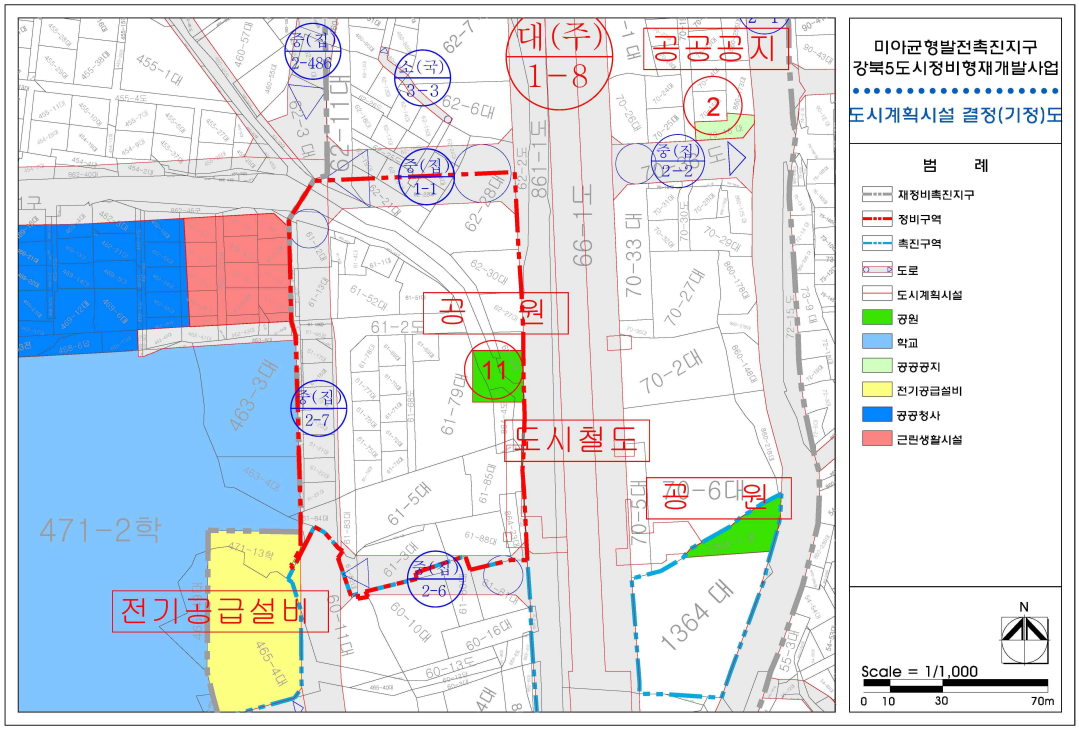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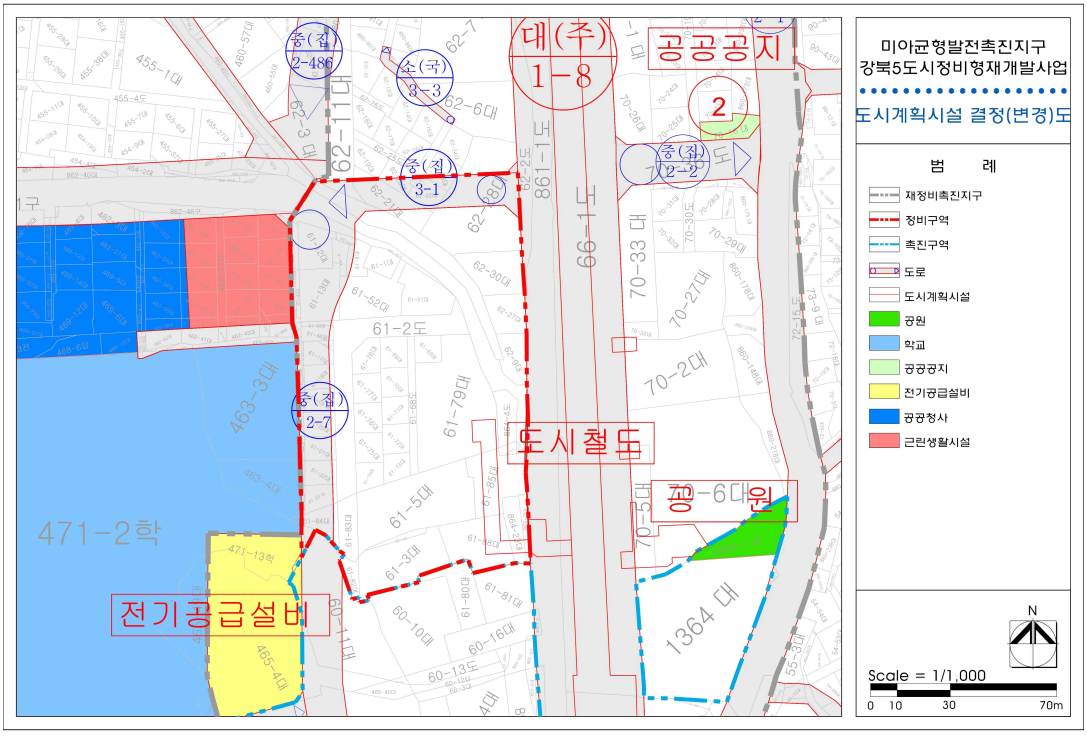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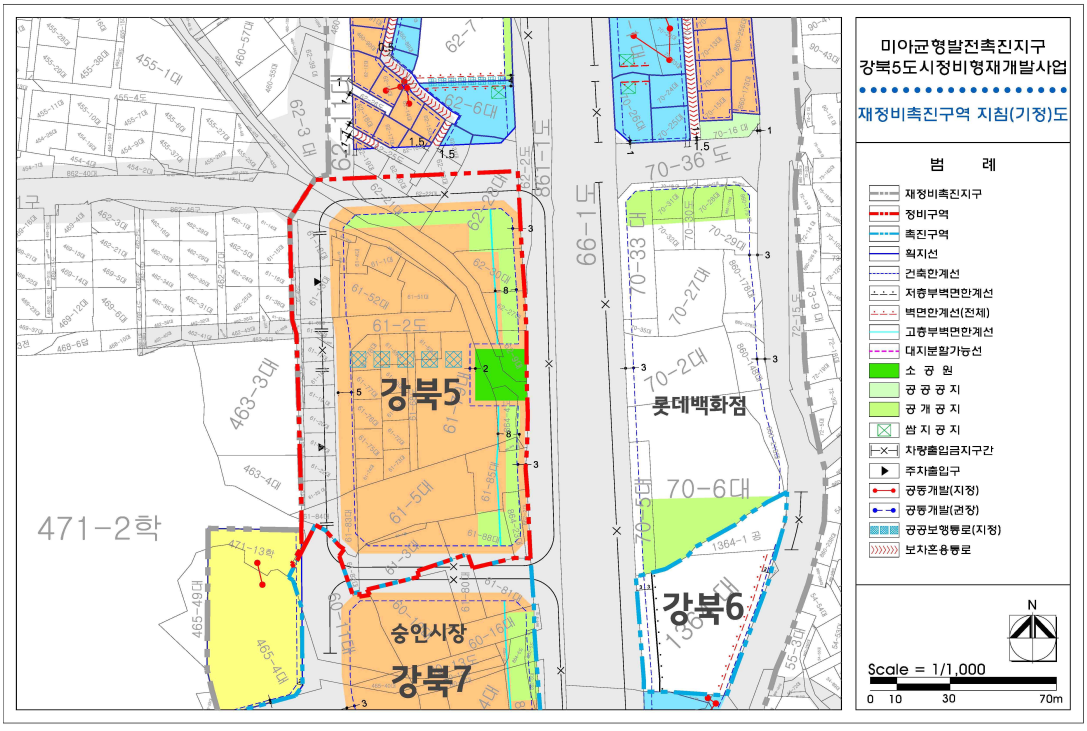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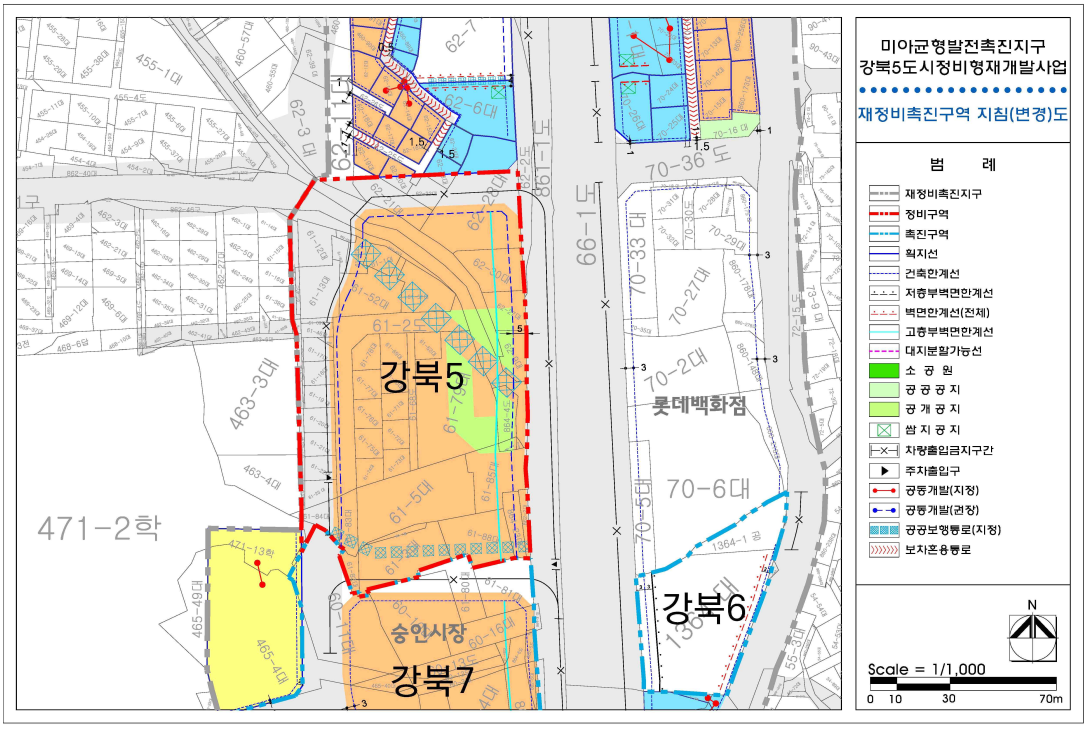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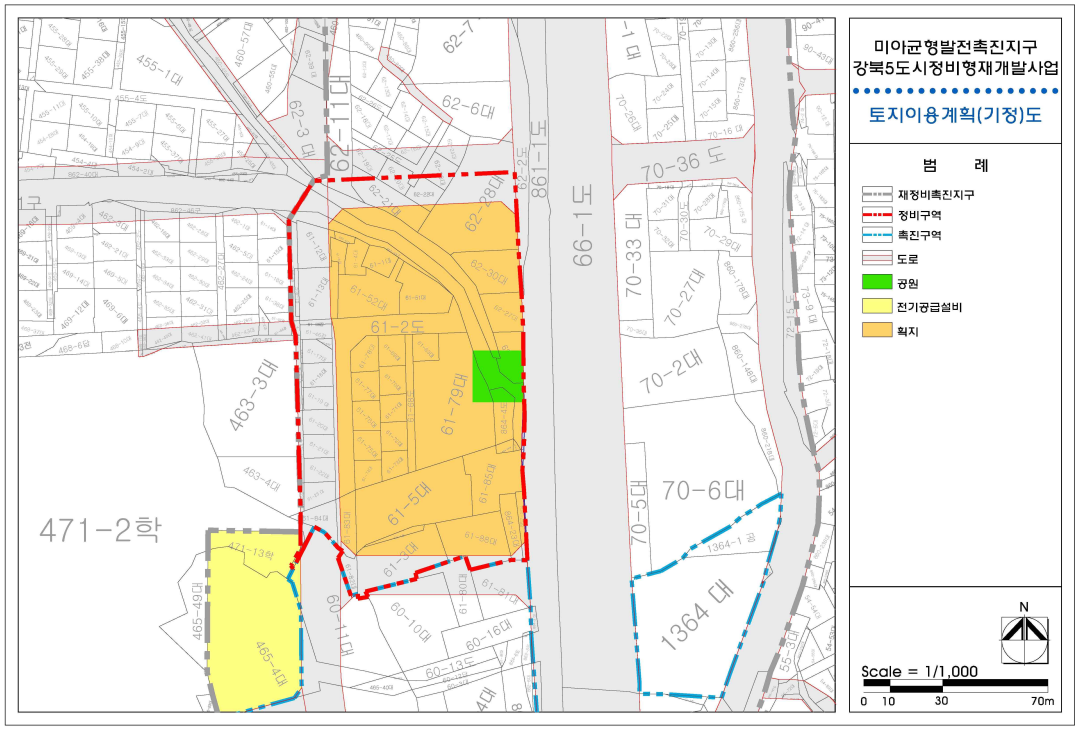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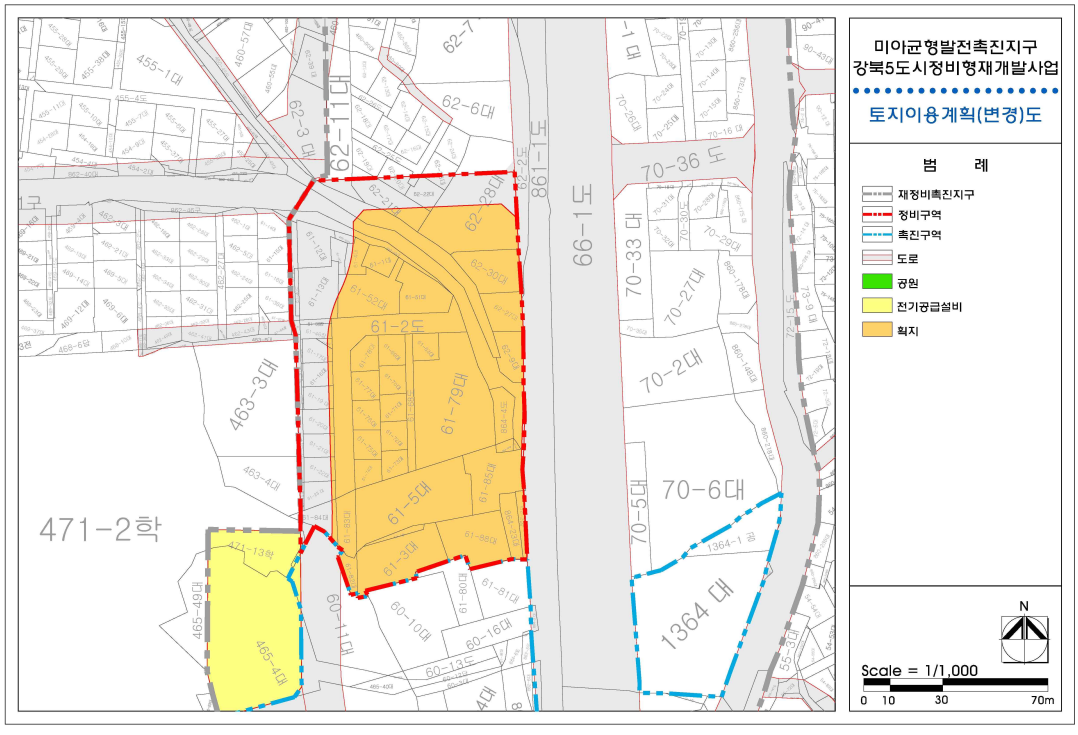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지침(기정/변경)도





○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7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36호(1976. 3. 26.), 서울특별시고시 제338호(1976. 12. 2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신구로유수지 내 체육시설을 중복결정하는 사항으로 2024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4. 4. 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구로구 구로동 689-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의 상부공간을 이용하여 주민을 위한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신설)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체육시설	체육시설	구로구 구로동 689-7일대	-	증)25,029	25,029	-	▪ 중복결정 - 지상: 체육시설 - 지하: 유수지, 대로2류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체육시설	▪ 시설 신설(25,029㎡)	▪ 대상지 일대 생활체육시설 수요 충족 및 럭비구장 이전에 따른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 체육시설 중복결정(유수지 25,029㎡, 대로2류 709㎡)	▪ 유수지 방재기능 및 지하도로 기능을 유지 하면서, 대상지 상부를 활용하여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지하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대로2류와 지상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중복결정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없음)

■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07	33~ 143	주 간선 도로	10,330 (105)※	영등포구 양화동 10-2	금천구 독산동 706-1	자동차 전용도로	서부 간선도로, 안양천	서고 제2014-69호 ('14.2.27)	체육시설(709㎡), 문화시설(844㎡) 중복결정

※ ( )는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내 연장

다.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없음)

■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신구로유수지	유수지	구로구 구로동 689-7일대	52,800	-	52,800	서울시고시 제36호(1976. 3. 26.)	▪ 중복결정 - 지상: 체육시설 - 지하: 유수지, 대로2류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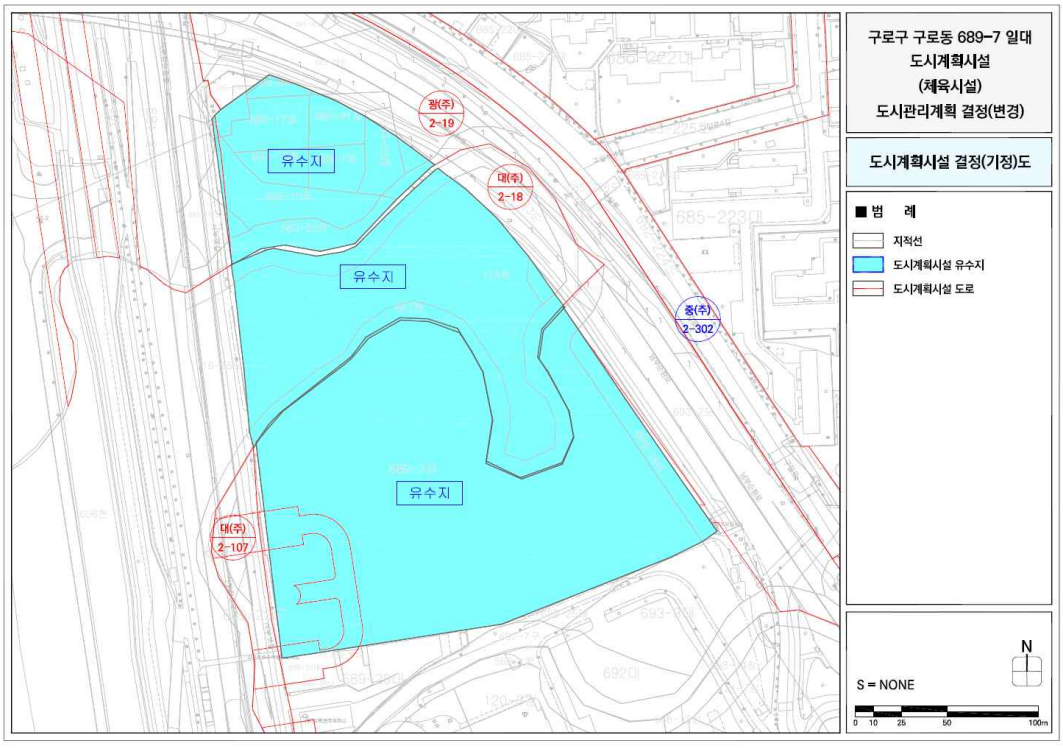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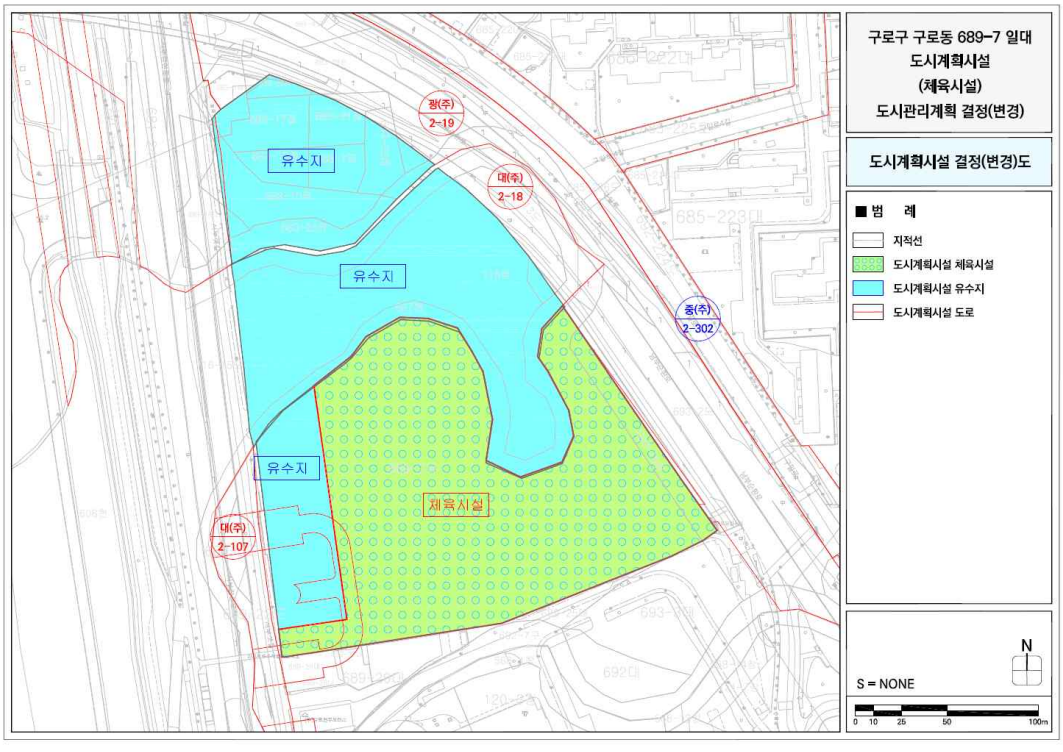
4.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08),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295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도면


광(주)
2-19
유수지
대(주)
2-18
유수지
중(주)
2-302
유수지
대(주)
2-107
구로구 구로동 689-7 일대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범 례
지적선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도시계획시설 도로
N
S = NONE
0 10 25 50 100m


광(주)
2-19
유수지
대(주)
2-18
유수지
중(주)
2-302
유수지
체육시설
대(주)
2-107
구로구 구로동 689-7 일대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범 례
지적선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도시계획시설 도로
N
S = NONE
0 10 25 50 100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8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구 대치유수지 내 강남구민의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유수지 복개 후 상부공간을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건축하고자,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강남구민의 문화, 체육, 복지 등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공간을 복개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중복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체육시설	공공 체육시설	대치동 1010-1번지 일대	-	증) 10,079.4	10,079.4	-	▪ 중복결정 - 유수지(10,079.4㎡)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체육시설	▪ 중복결정 (10,079.4㎡) - 유수지 - 체육시설	강남구민의 문화, 체육, 복지 등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정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 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중복결정하는 사항임

- 건축물 범위 결정조서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층수)	비 고
체육시설	20% 이하	100% 이하	4층 이하	-

나.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	유수지	유수시설	대치동 74번지 일대	84,216.3	-	84,216.3	서울특별시 고시 제70호 (1980. 2. 22.)	▪ 중복결정 - 철도 - 체육시설

다.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면 적(㎡)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고속철도 (삼성~동탄)	강남구 대치동995	강남구 세곡동13-4	-	7,144	125,68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35호 (2017. 3. 9.)	▪ 중복결정 - 유수지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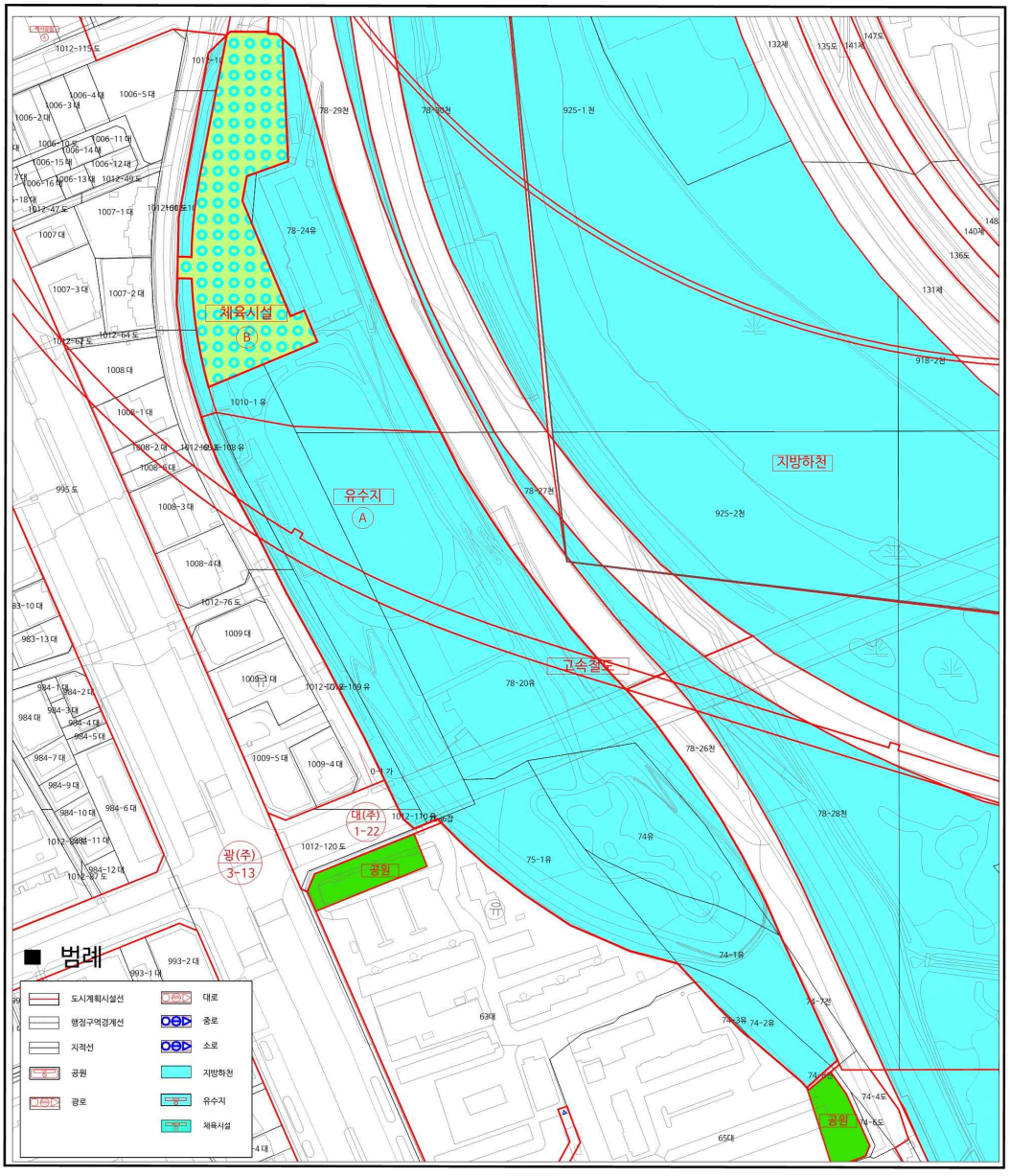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08),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1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도면


채육시설
B
유수지
A
지방하천
고속철도
대(주)
1-22
광(주)
3-13
공원
범례
도시계획시설선
행정구역경계선
지적선
공원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지방하천
유수지
체육시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9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1호(2023. 11. 23.)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31호(2023. 11. 30) 및 제2024-180호(2024. 4. 4.)로 경미한 변경 고시된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의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에 대하여 2024년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관련위원회 및 관계부서 의견 반영 등 일부 계획 내용을 변경코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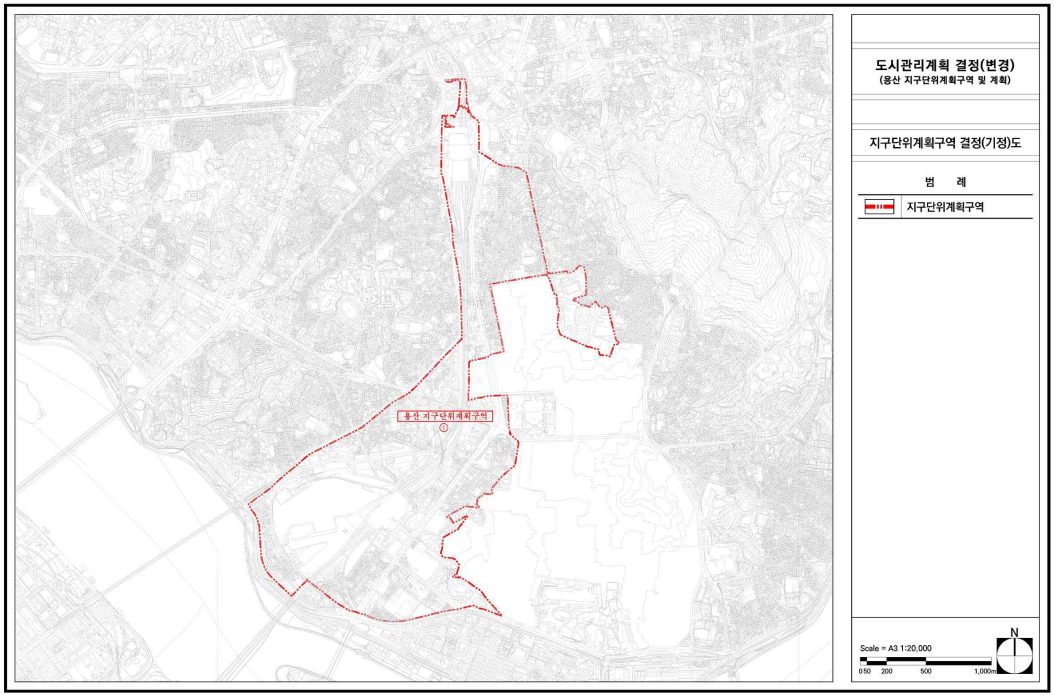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	3,472,349.71	증) 330.6	3,472,680.31	1995.3.10. (서고시 제1995-5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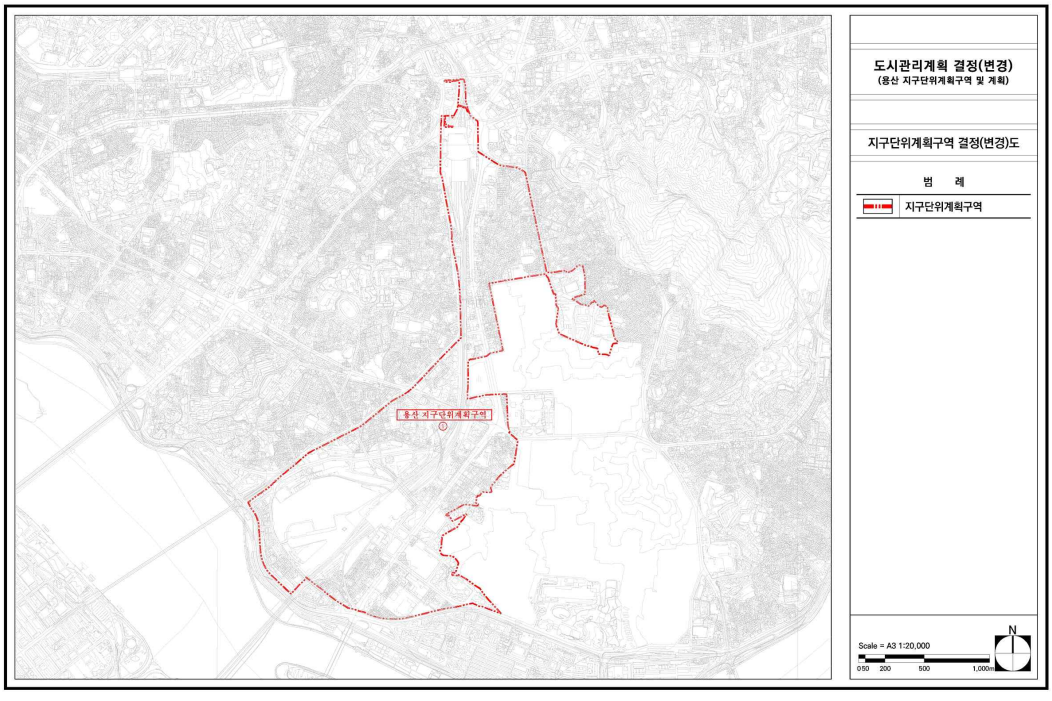
○ 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증가 - 면적 : 3,472,349.71㎡→3,472,680.31㎡ 증) 330.6㎡	•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에 따른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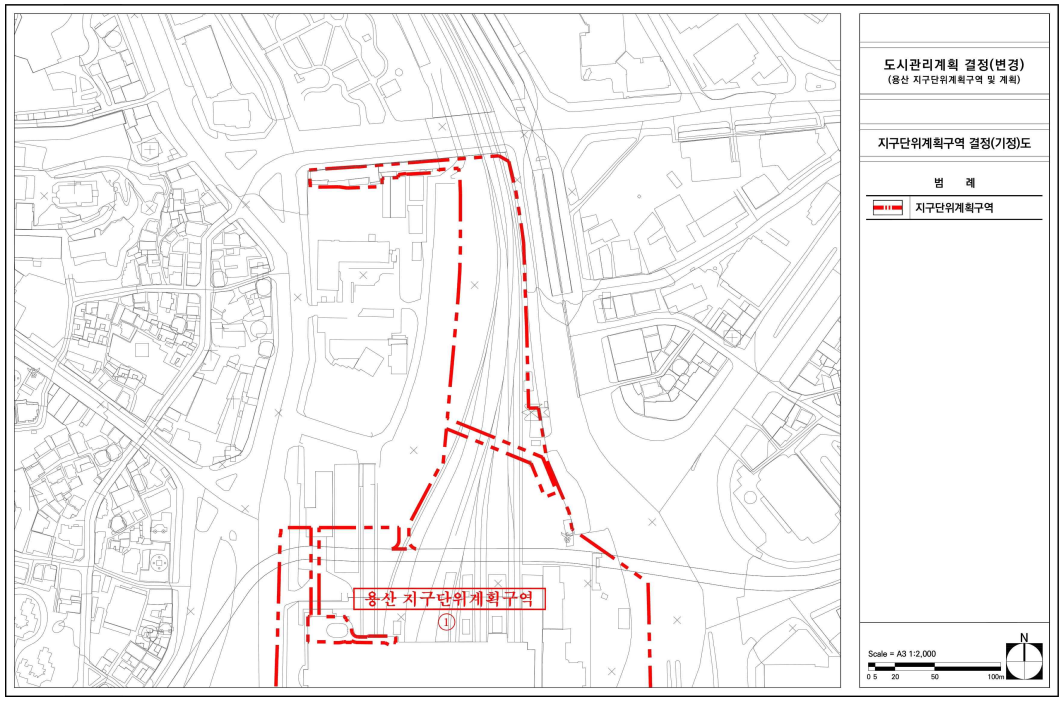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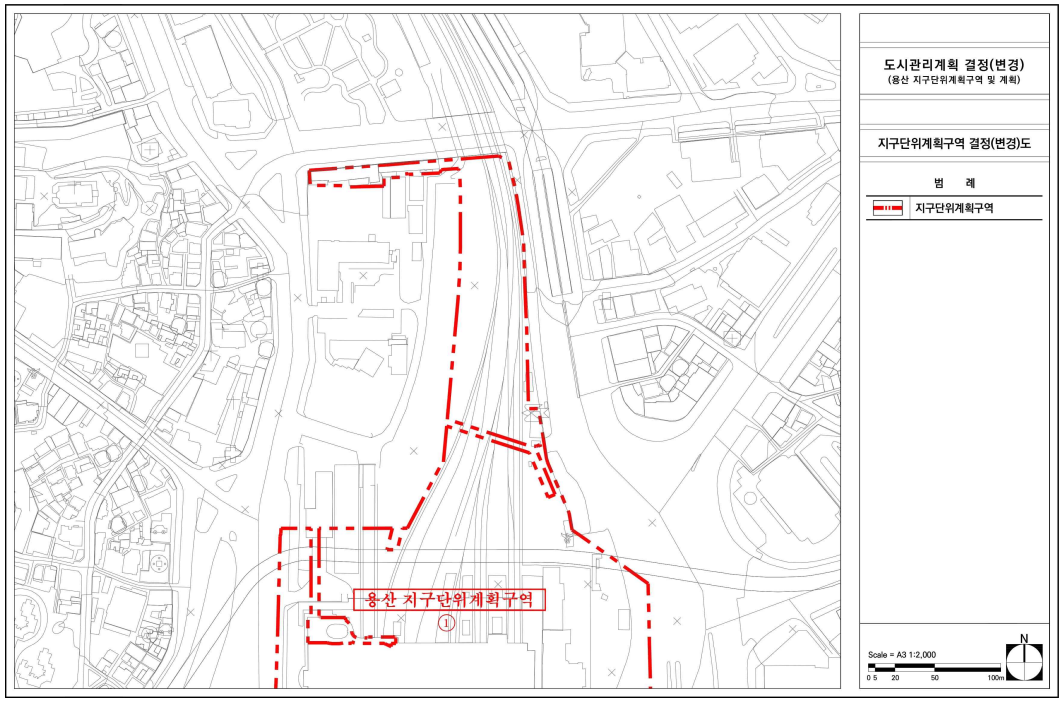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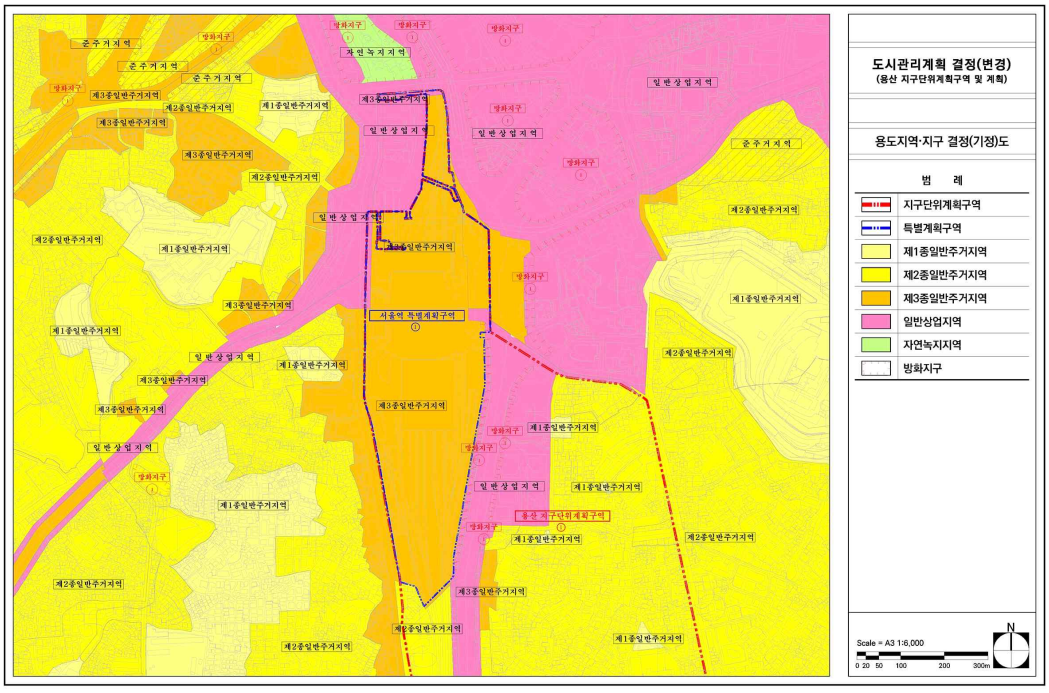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472,349.71	증) 330.6	3,472,680.31	100.0	
주거지역	소계	2,361,715.61	증) 278	2,361,993.61	68.0	
	제1종일반주거지역	84,972.40	-	84,972.40	2.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509,382.80	-	509,382.80	14.7	
	제2종일반주거지역	492,168.00	-	492,168.00	14.2	
	제3종일반주거지역	1,104,208.31	증) 278	1,104,486.31	31.8	
	준주거지역	170,984.10	-	170,984.10	4.9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78,329.10	증) 52.6	978,381.70	28.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2,305.00	-	132,305.00	3.8	

○ 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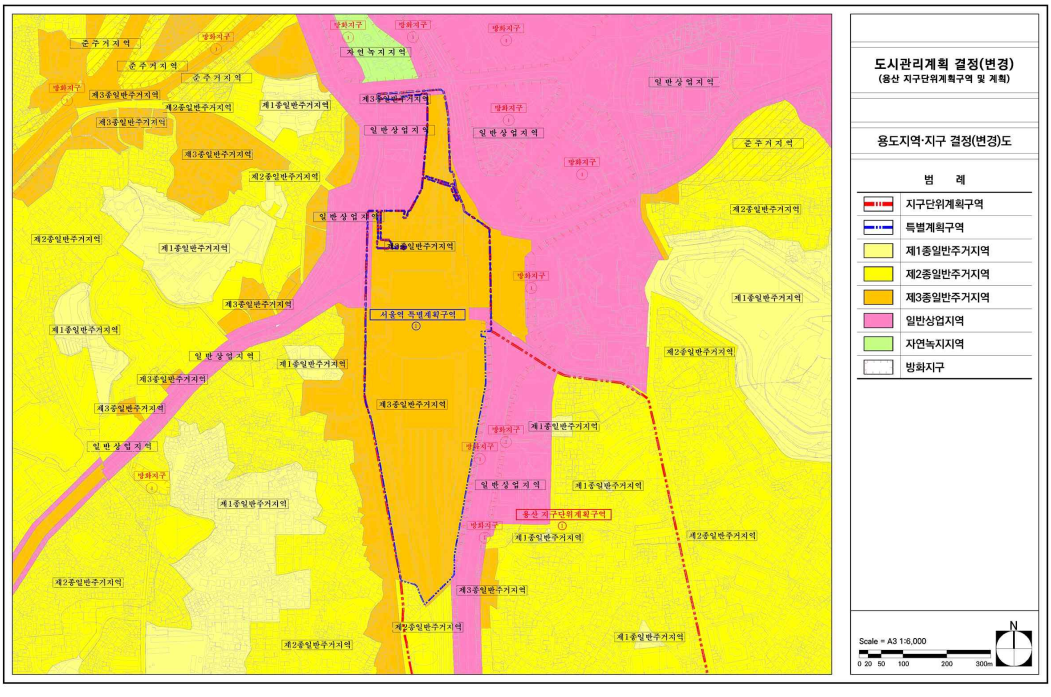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중구 봉래동2가 122-16번지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78	250%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증가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편입면적 변경
-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2.6	800%	•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편입면적 변경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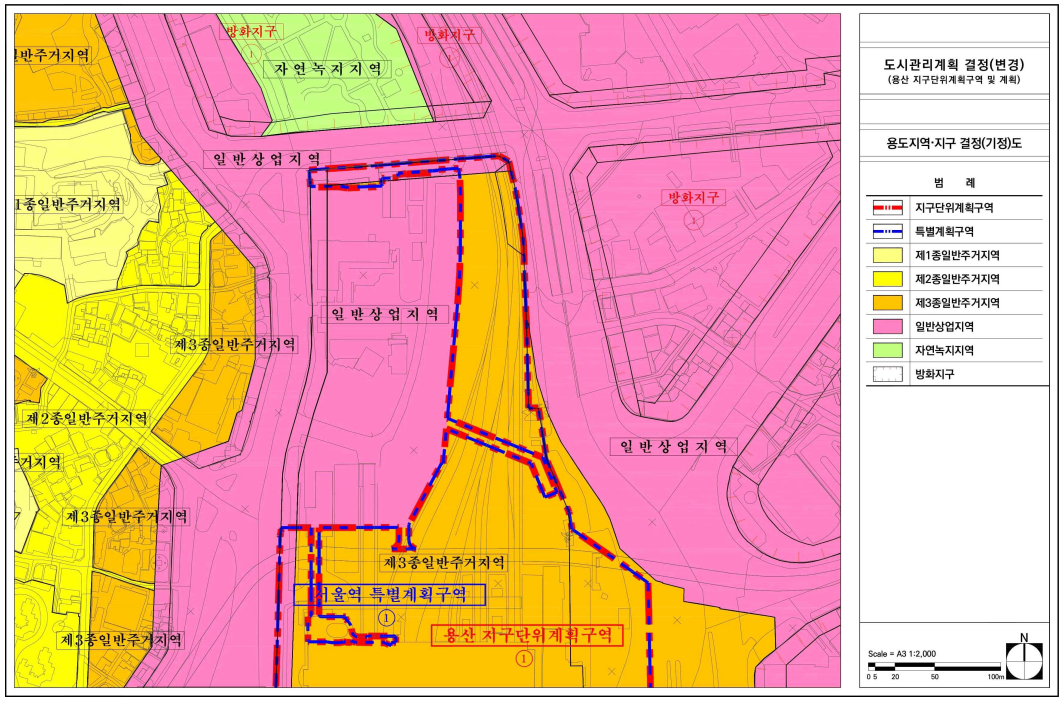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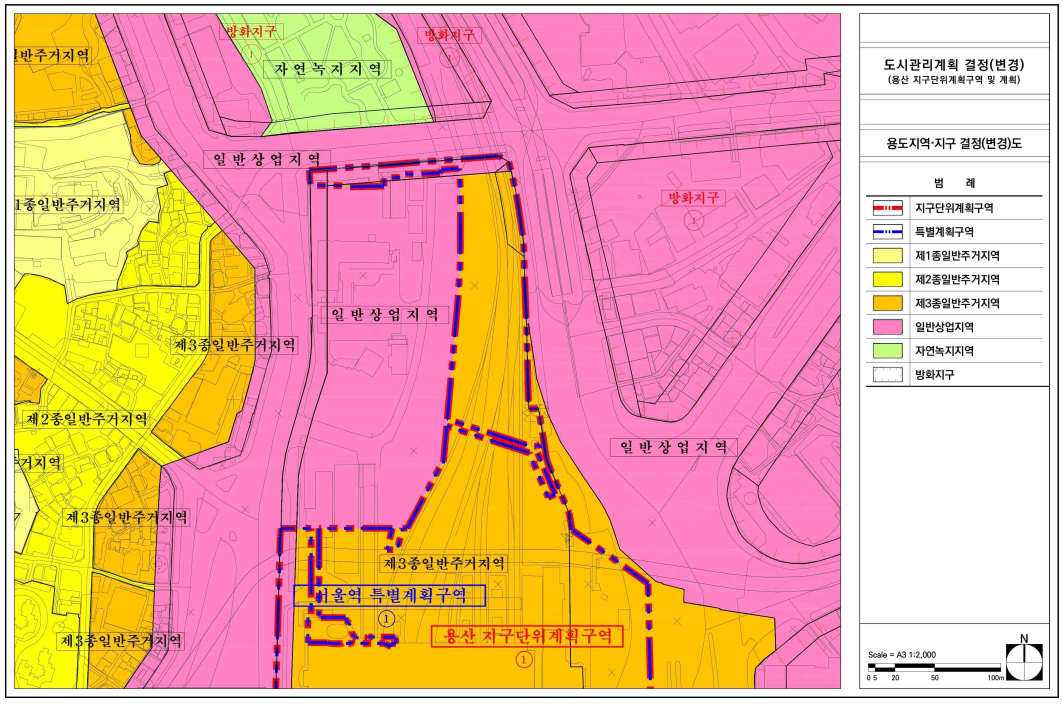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소로1(서울로701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	10.3	특수 도로	810	남대문로 5가 281	만리동 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 철도, 도로 중복결정 · 연결통로 (일부 중복 및 입체적 결정) ① 서울로7017~서울역북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길이: 38.06m -폭: 7.5m -높이: 지상 0m~13.4m (-23.74m~13.4m) -면적: 315.98㎡ -입체적 결정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70.88㎡ -중복결정 :철도③(서울역)과 3,560.12㎡ :철도②(인천국제공항철도)와 161.67㎡
변경	소로	1	-	10.3	특수 도로	810	남대문로 5가 281	만리동 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 철도, 도로 중복결정 · 연결통로 변경 (일부 중복 및 입체적 결정) ① 서울로7017~서울역북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길이: 40.54m -폭: 7.5m -높이: 지상 0m~13.6m (-15.97m~13.6m) -면적: 304.03㎡ -입체적 결정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92.82㎡ -중복결정 :철도③(서울역)과 3,544.10㎡ :철도②(인천국제공항철도)와 161.67㎡

주) 1. 금회 변경되는 부분만 기재
2. ( )은 지하구조물을 포함한 값

- 소로3-A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A	7.5	특수 도로	109.92	봉래동2가 122-17	봉래동2가 122-15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3-511호 (23.11.23.)	· 서울역철도 중복결정 · 연결보행통로 (일부 입체적 결정) ①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통일로 -길이: 109.92m -폭: 7.5m -높이: 지상 0m~12.0m (-20.46m~12.0m) -면적: 888.71㎡ -입체적 결정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64.28㎡ -중복결정 :철도③(서울역)과 824.43㎡
변경	소로	3	A	5~5.7	특수 도로	108.6	봉래동2가 122-35	봉래동2가 122-15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3-511호 (23.11.23.)	· 서울역철도 중복결정 · 연결보행통로 변경 (일부 입체적 결정) ①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통일로 -길이: 108.6m -폭: 5~5.7m -높이: 지상 0m~13.6m (-21.28m~13.6m) -면적: 584.25㎡ -입체적 결정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18.24㎡ -중복결정 :철도③(서울역)과 566.01㎡

주) 1. 금회 변경되는 부분만 기재
2. ( )은 지하구조물을 포함한 값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소로1(서울로7017)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연결통로 1	남대문로 5가 526일대	길이	3.15m	–	3.15m	–	변경없음 (대우재단빌딩)
			폭	6m	–	6m		
			높이 (지표면기준)	4.8~5.8m	–	4.8~5.8m		
			면적	18.3㎡	–	18.3㎡		
기정	연결통로 2	남대문로 5가 526일대	길이	12.25m	–	12.25m	–	변경없음 (호텔마누)
			폭	1.8~2.75m	–	1.8~2.75m		
			높이 (지표면기준)	0~5.62m	–	0~5.62m		
			면적	24.9㎡	–	24.9㎡		
기정	연결통로 3	남대문로 5가 537일대	길이	6.88m	–	6.88m	–	변경없음 (메트로타워)
			폭	4.15m	–	4.15m		
			높이 (지표면기준)	0~8.92m	–	0~8.92m		
			면적	28.56㎡	–	28.56㎡		
기정	연결통로 4	봉래동2가 122-11일대	길이	33.17m	–	33.17m	–	변경없음 (구서울역사)
			폭	6.0m	–	6.0m		
			높이 (지표면기준)	0~13.47m (-22.37~13.47)	–	0~13.47m (-22.37~13.47)		
			면적	286.36㎡	–	286.36㎡		
기정	연결통로 5	남대문로5가 84-17일대	길이	3.32m	–	3.32m	–	변경없음 (에너지플러스 서울로)
			폭	4m	–	4m		
			높이 (지표면기준)	0~8.05m (-1.95~8.05m)	–	0~8.05m (-1.95~8.05m)		
			면적	13.28㎡	–	13.28㎡		
변경	연결통로 ㉮	봉래동2가 122-31일대	길이	38.06m	증) 2.48m	40.54m	서울시고시 제2023-511호 (23.11.23.)	(서울로7017~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폭	7.5m	–	7.5m		
			높이 (지표면기준)	0m~13.4m (-23.74m~13.4m)	증) 0.2m [증)7.77m~0.2m]	0m~13.6m (-15.97m~13.6m)		
			면적	315.98㎡	감) 11.95㎡	304.03㎡		

주) 1. ( )는 지하구조물을 포함한 값

– 소로3-A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소로 3-A	봉래동2가 122-16일대	길이	109.92m	감) 1.32m	108.6m	서울시고시 제2023-511호 (23.11.23.)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통일로)
			폭	7.5m	감) 1.8~2.5m	5~5.7m		
			높이 (지표면기준)	0m~12.0m (-20.46m~12.0m)	증) 1.6m [감)0.82m~증)1.6m]	0m~13.6m (-21.28m~13.6m)		
			면적	888.71㎡	감) 304.46㎡	58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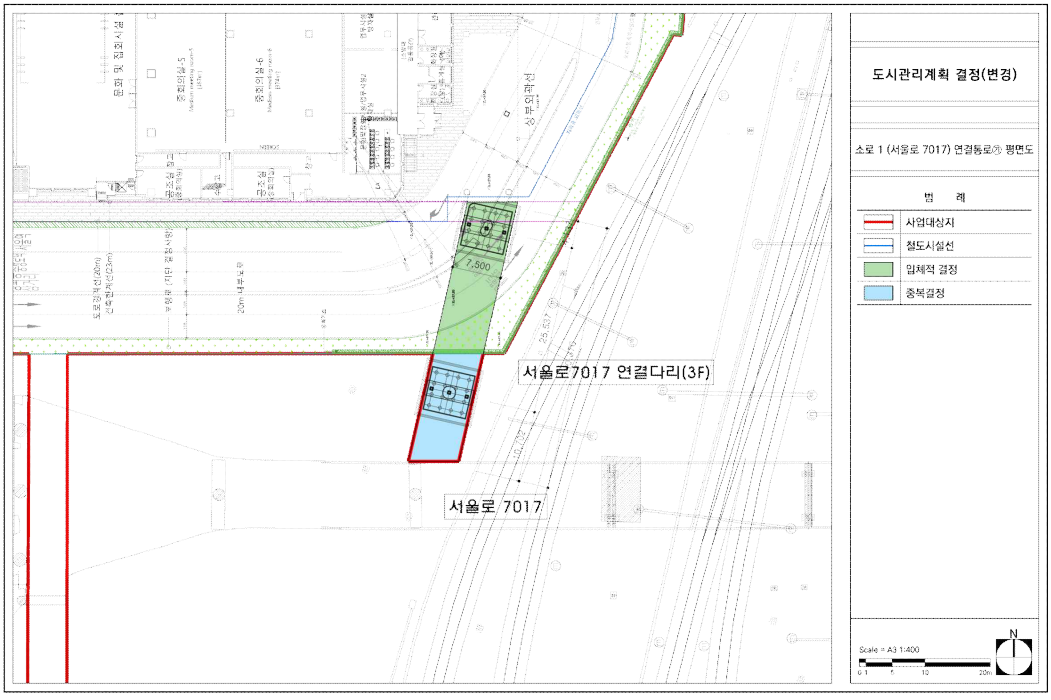
주) 1. ( )는 지하구조물을 포함한 값

○ 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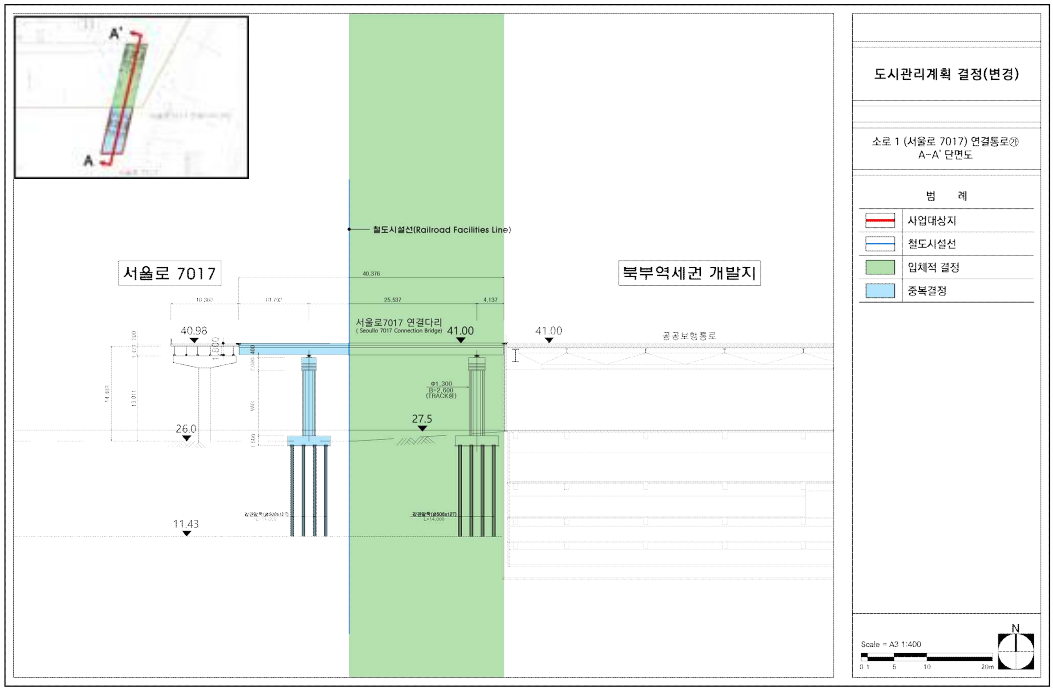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	소로1	• 서울로7017~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연결통로 변경 - 연장 : 38.06m → 40.54m, 증) 2.48m - 폭원 : 7.5m - 높이 : 0m~13.4m(-23.74m~13.4m) → 0m~13.6m(-15.97m~13.6m), 증) 0.2m [증)7.77m~증)0.2m], - 면적 : 315.98㎡ → 304.03㎡, 감) 11.95㎡ • 중복 및 입체적 결정 면적변경 -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입체적 결정 면적 : 170.88㎡ → 192.82㎡, 증) 21.94㎡ - 철도③(서울역)과 중복결정 면적 : 3,560.12㎡ → 3,544.10㎡, 감) 16.02㎡	• 연결통로 설치 시 인근 선로 및 하부 지장물을 고려하여 도로 선형 변경
소로3-A	소로3-A	• 기점 변경 - 봉래동2가 122-17 → 봉래동2가 122-35	•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변경
		•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통일로 연결보행통로 변경 - 연장 : 109.92m → 108.6m, 감) 1.32m - 폭원 : 7.5m → 5~5.7m, 감) 1.8~2.5m - 높이 : 0m~12.0m(-20.46m~12.0m) → 0m~13.6m(-21.28m~13.6m), 증) 1.6m [감)0.82m~증)1.6m], - 면적 : 888.71㎡ → 584.25㎡, 감) 304.46㎡ • 중복 및 입체적 결정 면적변경 -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입체적 결정 면적 : 64.28㎡ → 18.24㎡, 감) 46.04㎡ - 철도③(서울역)과 중복결정 면적 : 824.43㎡ → 566.01㎡, 감) 258.42㎡	• 역사문화(구 서울역사) 환경을 고려한 연결보행통로 규모 축소 및 선형 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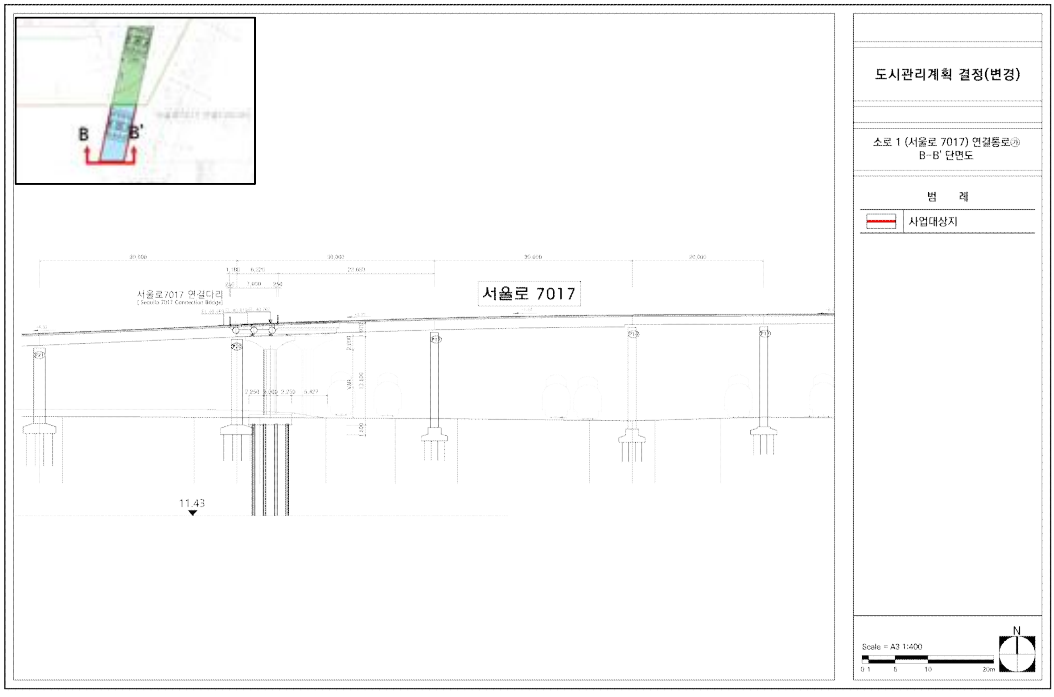
– 소로1(서울로7017) 연결통로㉮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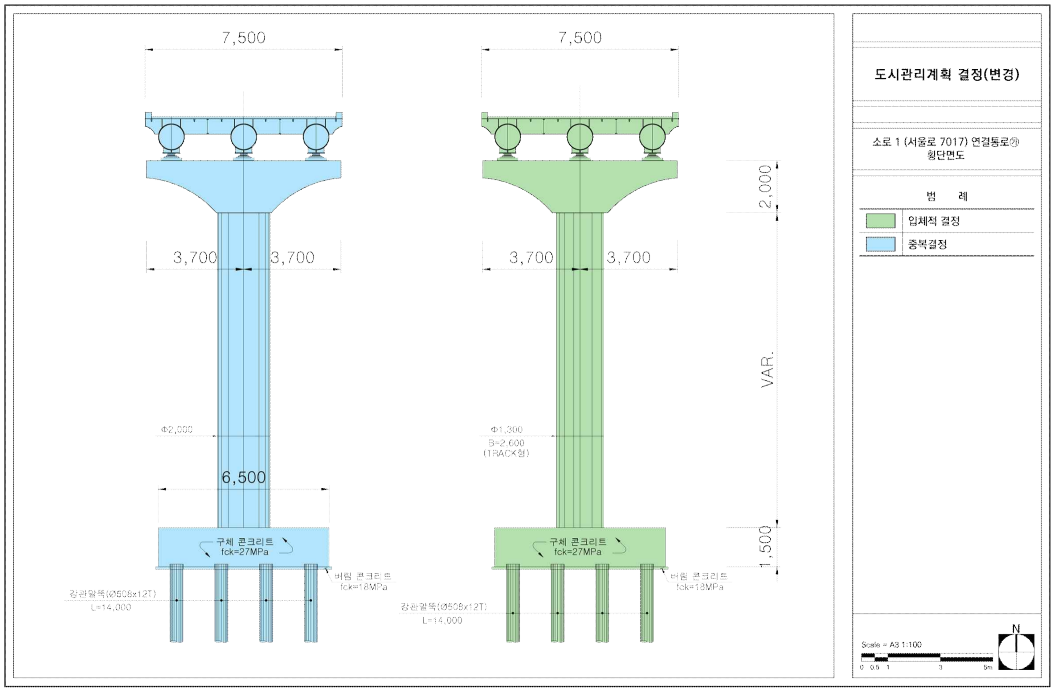
– 소로1(서울로 7017) 연결통로㉮ A–A’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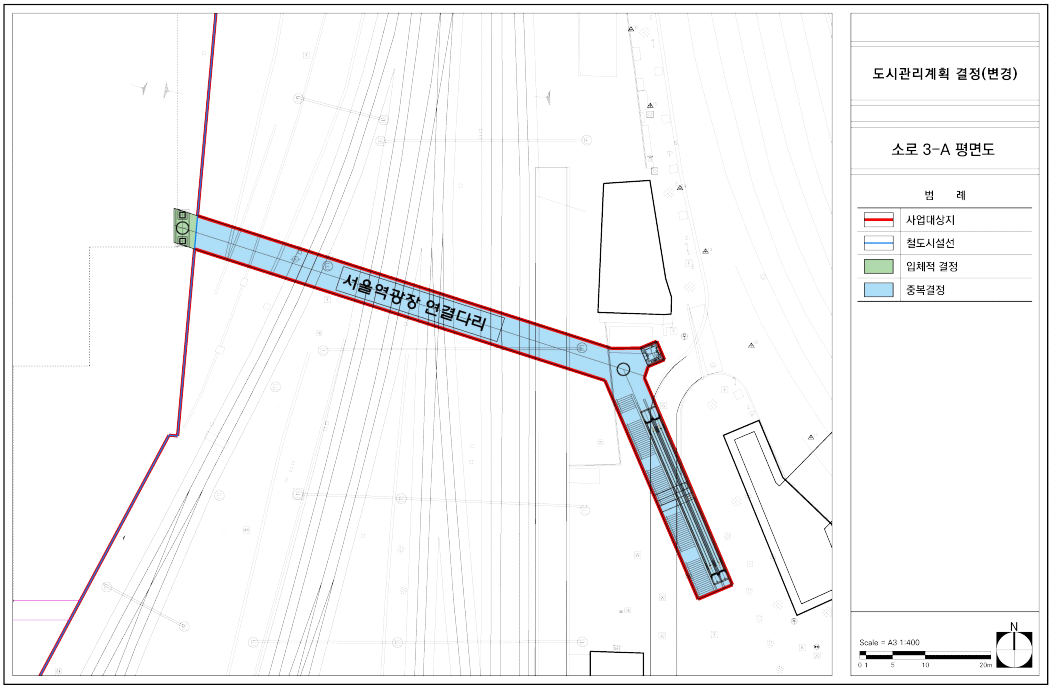
- 소로1(서울로 7017) 연결통로㉮ B-B'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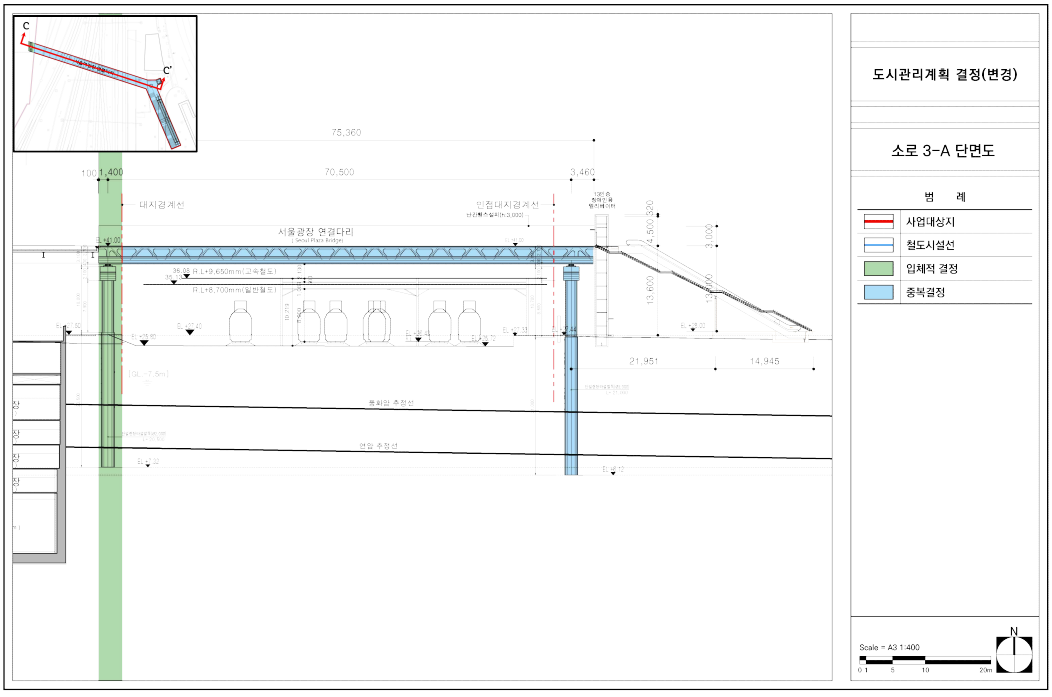
- 소로1(서울로 7017) 연결통로㉮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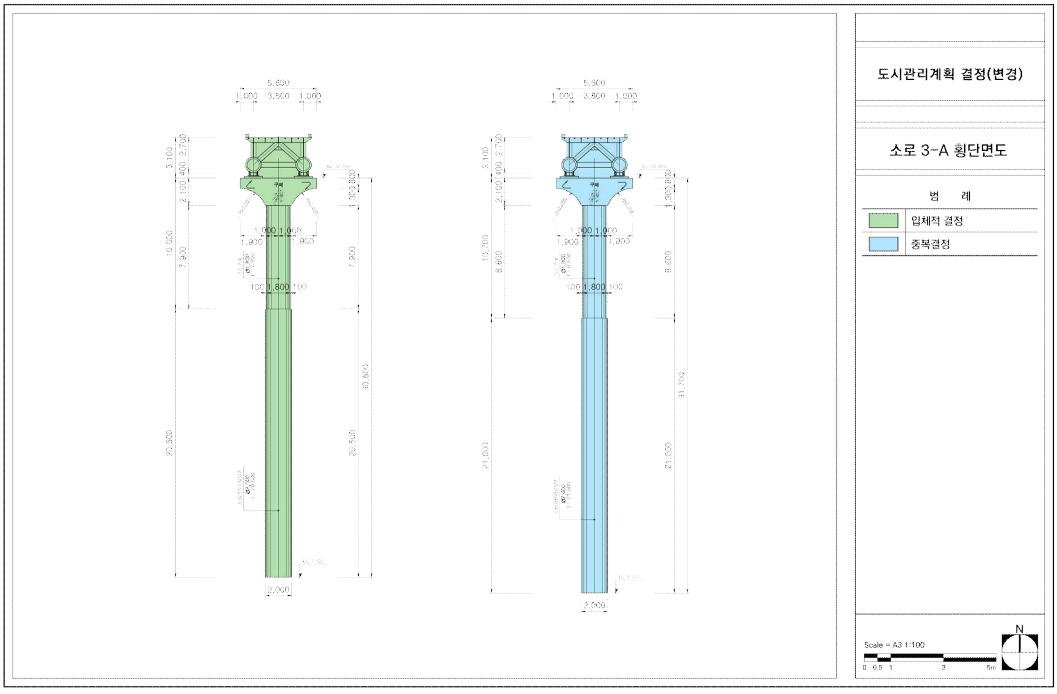
- 소로 3-A 평면도



- 소로 3-A 단면도



- 소로 3-A 횡단면도



2) 철도 결정(변경)조서

- 공항철도 : 변경없음
- 서울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③	철도	일반 철도	서울역 일대	219,669.9 [217,520.5]	-	· 철도②(공항철도), 대로3-13, 소로1(서울로7017), 광장①, 소3-A 중복결정
변경	③	철도	일반 철도	서울역 일대	219,669.9 [217,798.5]	-	· 철도②(공항철도), 대로3-13, 소로1(서울로7017), 광장①, 소3-A 중복결정

주) 1. [ ] 부분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철도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면적 증가 - 편입면적 증가 : 217,520.5㎡ → 217,798.5㎡, 증) 278㎡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증가에 따른 철도시설 편입면적 변경

3)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1) 광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녹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공공공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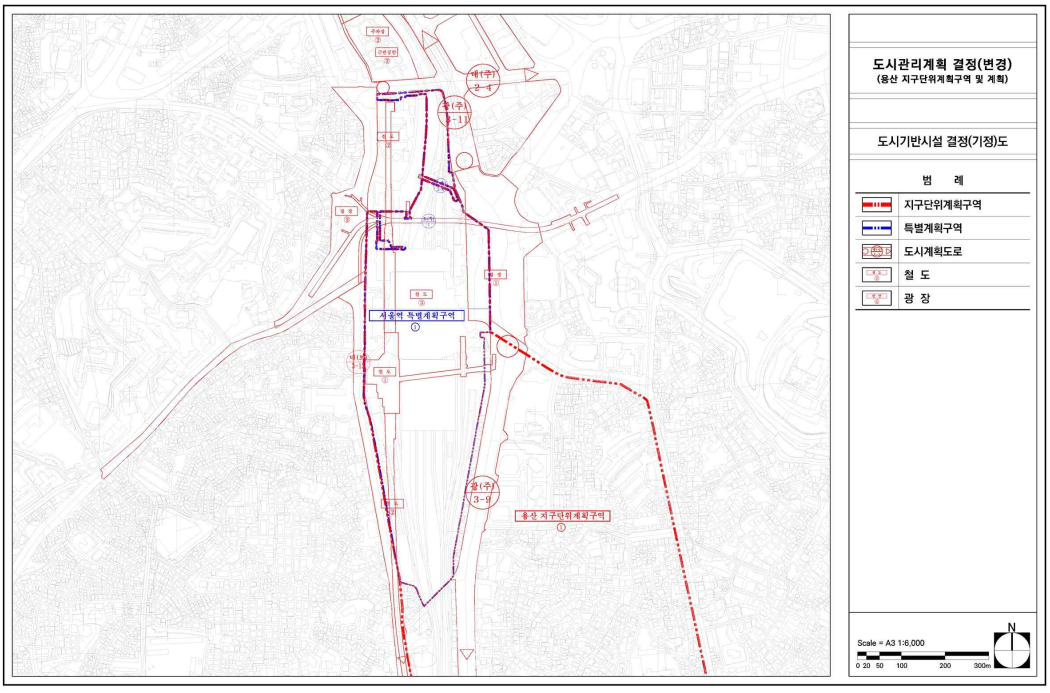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1) 시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유통업무설비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1) 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공공청사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문화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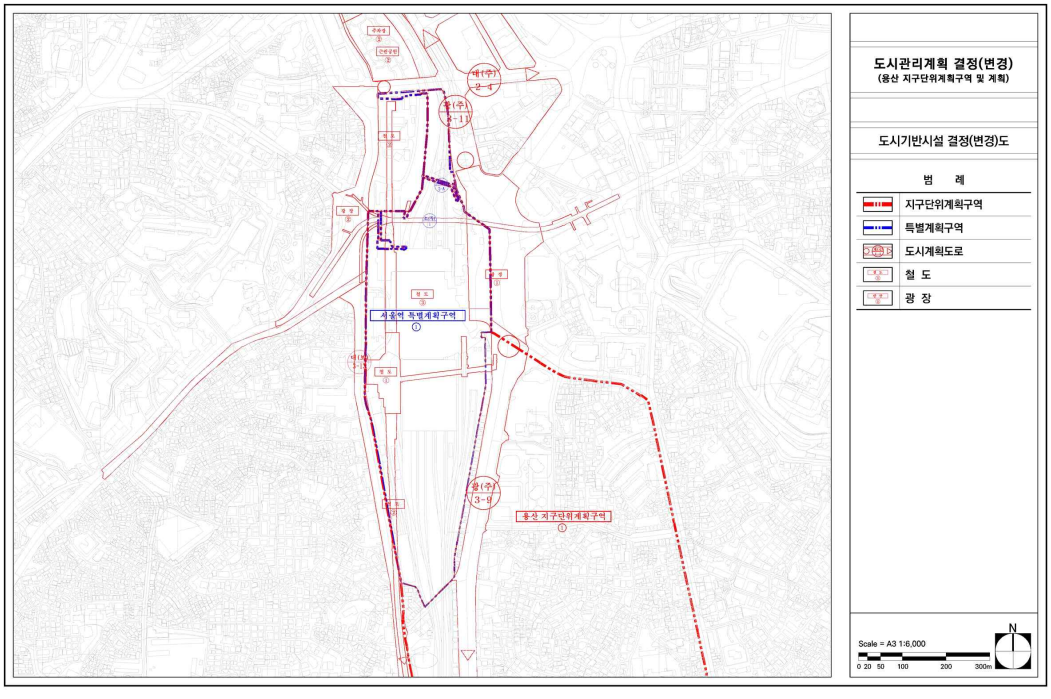
마.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1) 종합의료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이 하 여 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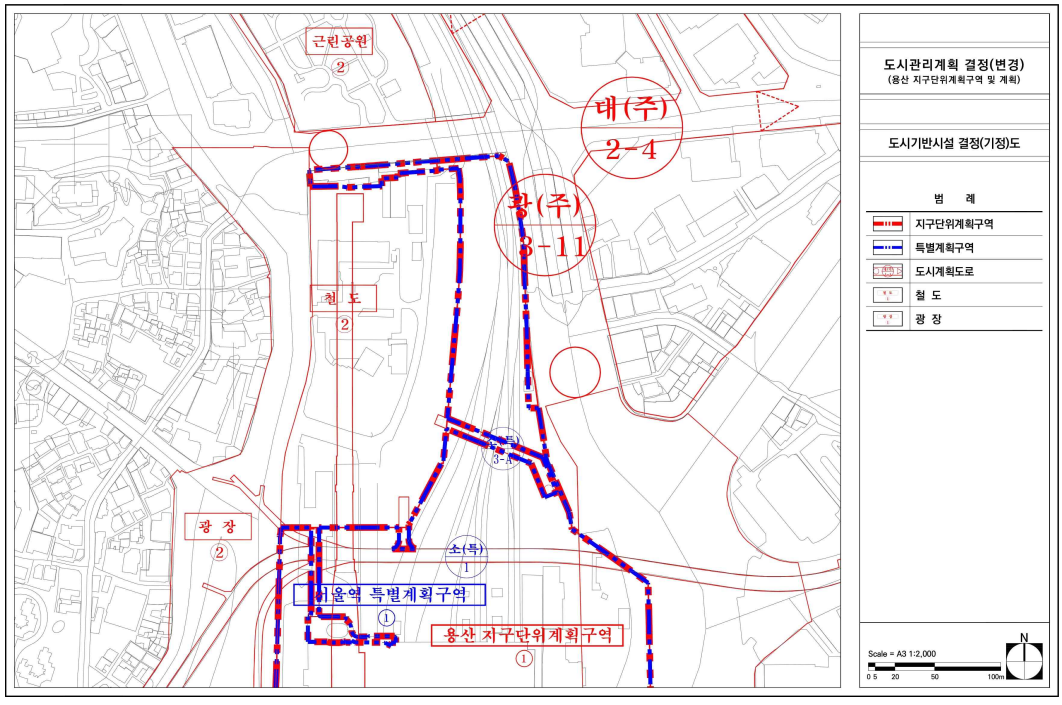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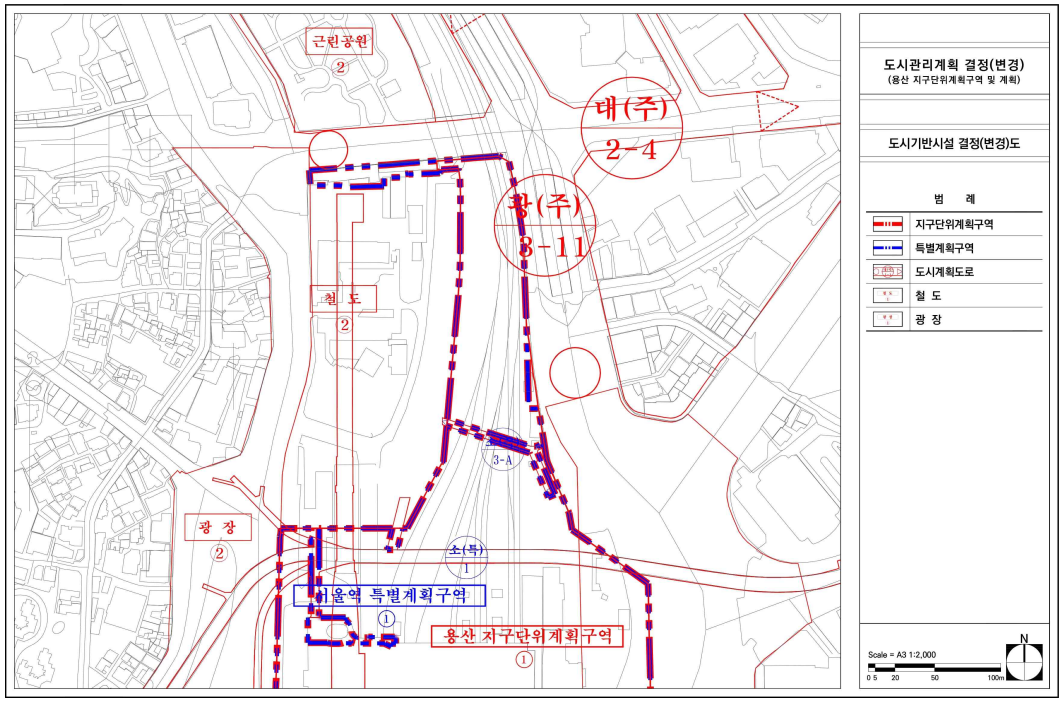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①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동자동 43-205 일원	216,711.31	증) 330.6	217,041.91	서울시고시 제2001-229호 (2001.0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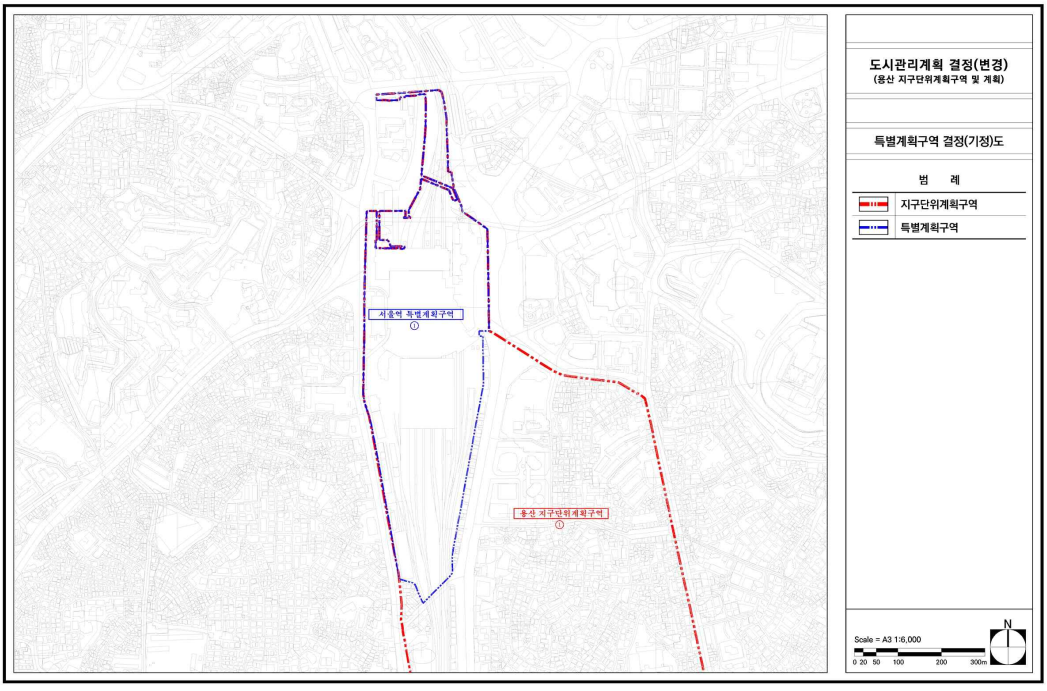
○ 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 면적 증가 : 216,711.31㎡ → 217,041.91㎡, 증) 330.6㎡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증가에 따른 서울역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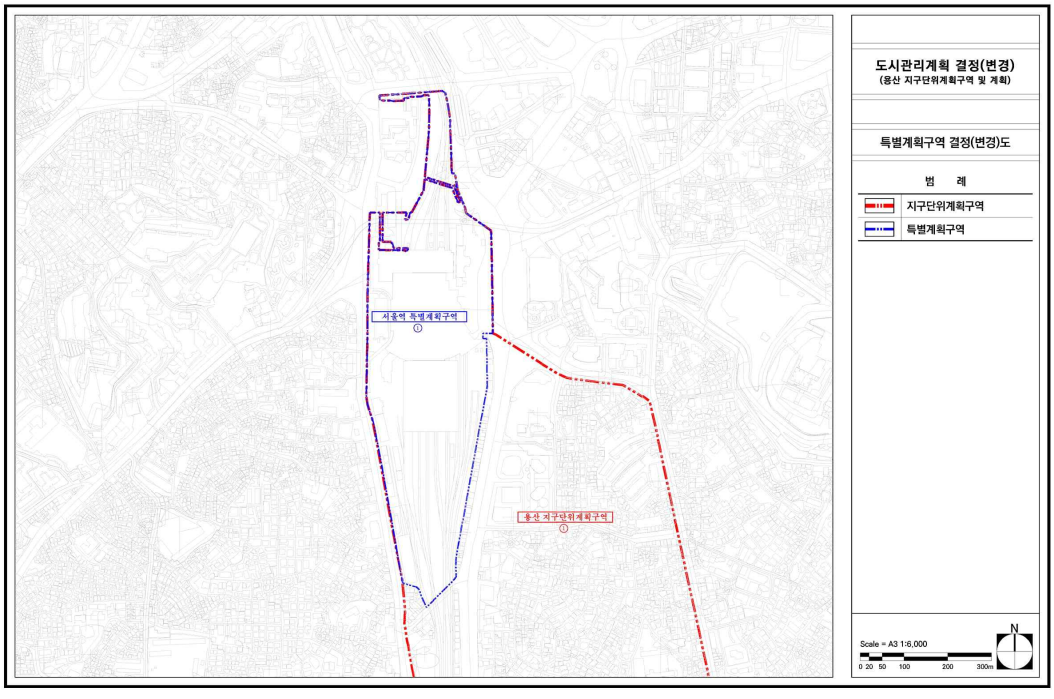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 동자동 특별계획구역 ② ~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㊵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5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S=1:20,00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S=1:20,000)
3.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S=1:6,000)
4.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S=1:6,000)
5.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S=1:6,000)
6.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S=1:6,000)
7. 특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S=1:6,000)
8.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S=1:6,000)

– 이 하 여 백 –

Ⅲ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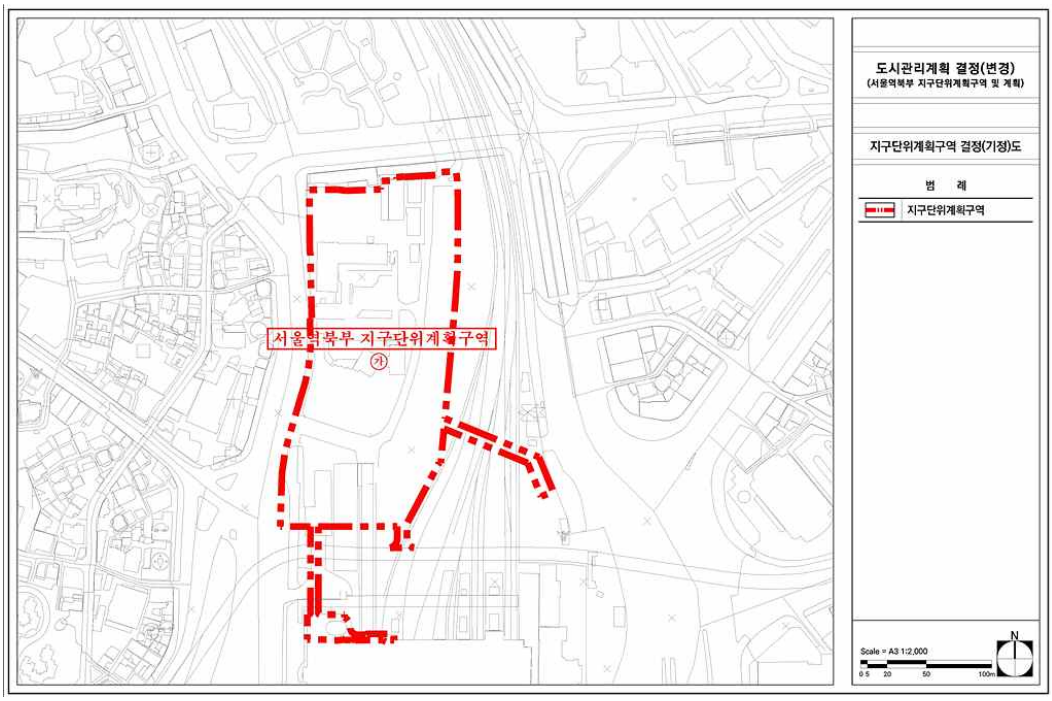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2가 122 일원	31,250.9	감) 330.6	30,920.3	2023.11.23. (서울시고시 제2023-511호)	

○ 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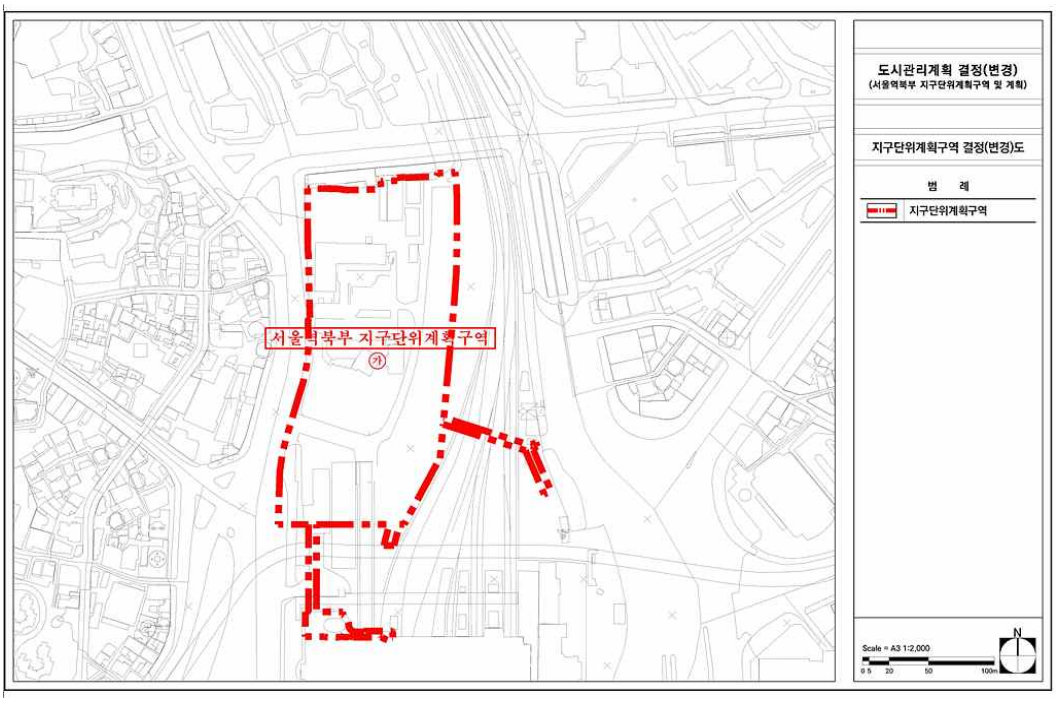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감소 - 측량결과 반영 면적 : 31,250.9㎡ → 31,198.3㎡, 감) 52.6㎡ - 연결로 변경 면적 : 31,198.3㎡ → 30,920.3㎡, 감) 278㎡	• 측량결과 반영 • 서울로7017 연결통로 및 서울역북부 지구단위 계획구역~통일로 연결보행통로 선형 변경에 따른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이 하 여 백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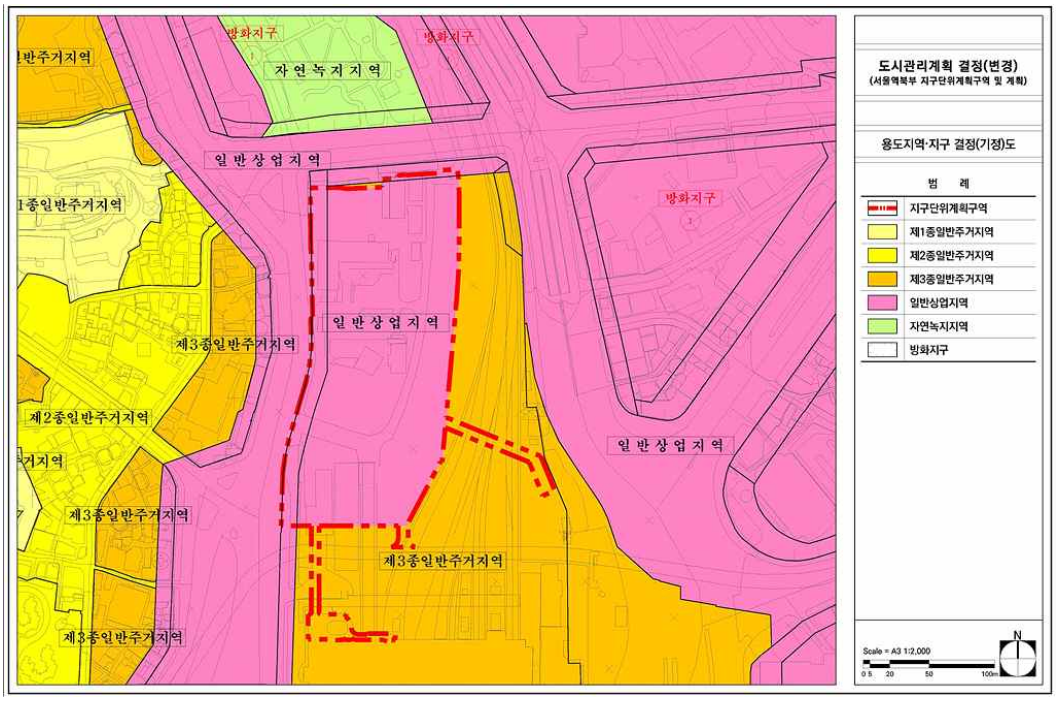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1,250.9	감) 330.6	30,920.3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149.4	감) 278	1,871.4	6.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9,101.5	감) 52.6	29,048.9	93.9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중구 봉래동2가 122-16번지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78	250%	•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편입면적 변경
-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2.6	800%	•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편입면적 변경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소로1(서울로701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	10.3	특수 도로	810	남대문로 5가 281	만리동 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 철도, 도로 중복결정 · 연결통로 (일부 중복 및 입체적 결정) ① 서울로7017~서울역북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길이: 38.06m -폭: 7.5m -높이: 지상 0m~13.4m (-23.74m~13.4m) -면적: 315.98㎡ -입체적 결정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70.88㎡ -중복결정 :철도③(서울역)과 3,560.12㎡ :철도②(인천국제공항철도)와 161.67㎡
변경	소로	1	-	10.3	특수 도로	810	남대문로 5가 281	만리동 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 철도, 도로 중복결정 · 연결통로 변경 (일부 중복 및 입체적 결정) ① 서울로7017~서울역북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길이: 40.54m -폭: 7.5m -높이: 지상 0m~13.6m (-15.97m~13.6m) -면적: 304.03㎡ -입체적 결정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92.82㎡ -중복결정 :철도③(서울역)과 3,544.10㎡ :철도②(인천국제공항철도)와 161.67㎡

주) 1.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해당 부분만 기재
2. ( )은 지하구조물을 포함한 값

- 소로3-A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A	7.5	특수 도로	109.92	봉래동2가 122-17	봉래동2가 122-15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3-511호 (23.11.23.)	· 서울역철도 중복결정 · 연결보행통로 (일부 입체적 결정) ①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통일로 -길이: 109.92m -폭: 7.5m -높이: 지상 0m~12.0m (-20.46m~12.0m) -면적: 888.71㎡ -입체적 결정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64.28㎡ -중복결정 :철도③(서울역)과 824.43㎡
변경	소로	3	A	5~5.7	특수 도로	108.6	봉래동2가 122-35	봉래동2가 122-15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3-511호 (23.11.23.)	· 서울역철도 중복결정 · 연결보행통로 변경 (일부 입체적 결정) ①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통일로 -길이: 108.6m -폭: 5~5.7m -높이: 지상 0m~13.6m (-21.28m~13.6m) -면적: 584.25㎡ -입체적 결정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18.24㎡ -중복결정 :철도③(서울역)과 566.01㎡

주) 1. 금회 변경되는 부분만 기재
2. ( )은 지하구조물을 포함한 값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소로1(서울로7017)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연결통로 1	남대문로 5가 526일대	길이	3.15m	–	3.15m	–	변경없음 (대우재단빌딩)
			폭	6m	–	6m		
			높이 (지표면기준)	4.8~5.8m	–	4.8~5.8m		
			면적	18.3㎡	–	18.3㎡		
기정	연결통로 2	남대문로 5가 526일대	길이	12.25m	–	12.25m	–	변경없음 (호텔마누)
			폭	1.8~2.75m	–	1.8~2.75m		
			높이 (지표면기준)	0~5.62m	–	0~5.62m		
			면적	24.9㎡	–	24.9㎡		
기정	연결통로 3	남대문로 5가 537일대	길이	6.88m	–	6.88m	–	변경없음 (메트로타워)
			폭	4.15m	–	4.15m		
			높이 (지표면기준)	0~8.92m	–	0~8.92m		
			면적	28.56㎡	–	28.56㎡		
기정	연결통로 4	봉래동2가 122-11일대	길이	33.17m	–	33.17m	–	변경없음 (구서울역사)
			폭	6.0m	–	6.0m		
			높이 (지표면기준)	0~13.47m (-22.37~13.47)	–	0~13.47m (-22.37~13.47)		
			면적	286.36㎡	–	286.36㎡		
기정	연결통로 5	남대문로5가 84-17일대	길이	3.32m	–	3.32m	–	변경없음 (에너지플러스 서울로)
			폭	4m	–	4m		
			높이 (지표면기준)	0~8.05m (-1.95~8.05m)	–	0~8.05m (-1.95~8.05m)		
			면적	13.28㎡	–	13.28㎡		
변경	연결통로 ㉮	봉래동2가 122-31일대	길이	38.06m	증) 2.48m	40.54m	서울시고시 제2023-511호 (23.11.23.)	(서울로7017~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폭	7.5m	–	7.5m		
			높이 (지표면기준)	0m~13.4m (-23.74m~13.4m)	증) 0.2m (증 7.77m~0.2m)	0m~13.6m (-15.97m~13.6m)		
			면적	315.98㎡ [315.98㎡]	감) 11.95㎡	304.03㎡ [304.03㎡]		

주) 1. ( )는 지하구조물을 포함한 값
2. [ ] 부분은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 소로3-A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소로 3-A	봉래동2가 122-16일대	길이	109.92m	감) 1.32m	108.6m	서울시고시 제2023-511호 (23.11.23.)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통일로)
			폭	7.5m	감) 1.8~2.5m	5~5.7m		
			높이 (지표면기준)	0m~12.0m (-20.46m~12.0m)	증) 1.6m [감)0.82m~증)1.6m]	0m~13.6m (-21.28m~13.6m)		
			면적	888.71㎡	감) 304.46㎡	58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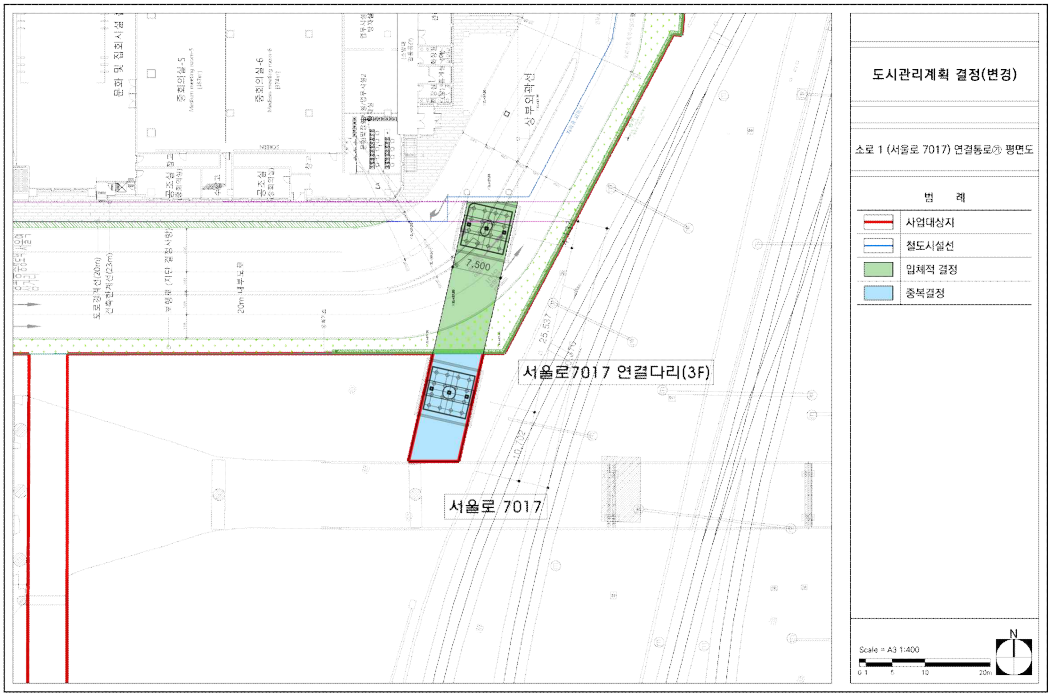
주) 1. ( )는 지하구조물을 포함한 값

○ 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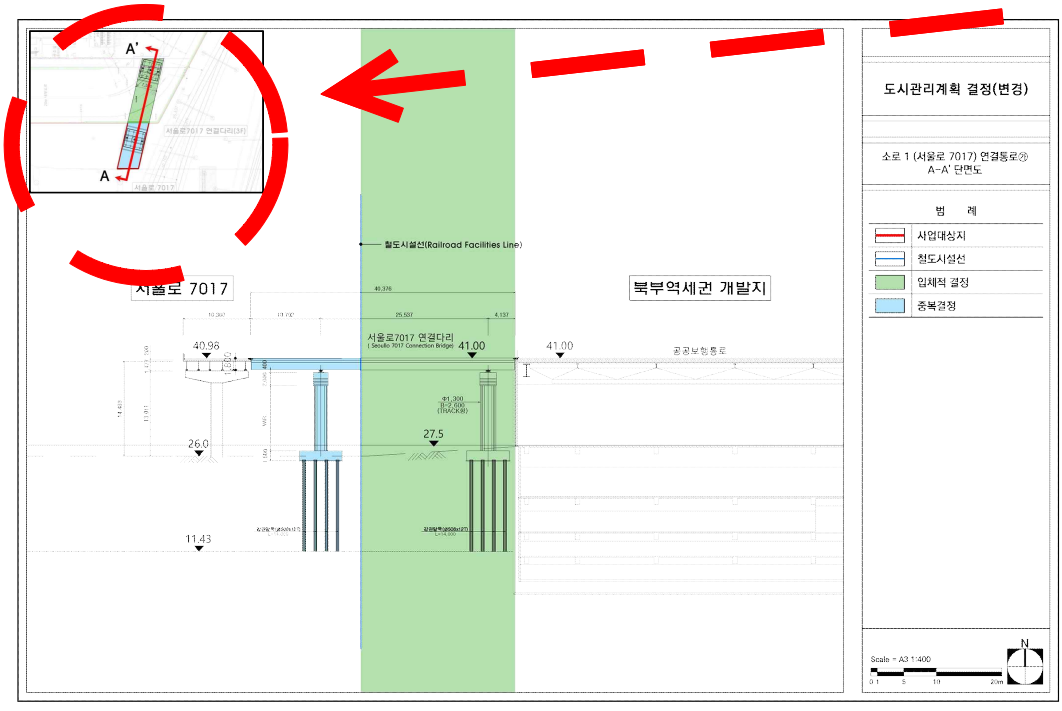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	소로1	• 서울로7017~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연결통로 변경 - 연장 : 38.06m → 40.54m, 증) 2.48m - 폭원 : 7.5m - 높이 : 0m~13.4m(-23.74m~13.4m) → 0m~13.6m(-15.97m~13.6m), 증) 0.2m [증)7.77m~증)0.2m], - 면적 : 315.98㎡ → 304.03㎡, 감) 11.95㎡ • 중복 및 입체적 결정 면적변경 -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입체적 결정 면적 : 170.88㎡ → 192.82㎡, 증) 21.94㎡ - 철도③(서울역)과 중복결정 면적 : 3,560.12㎡ → 3,544.10㎡, 감) 16.02㎡	• 연결통로 설치 시 인근 선로 및 하부 지장물을 고려하여 도로 선형 변경
소로3-A	소로3-A	• 기점 변경 - 봉래동2가 122-17 → 봉래동2가 122-35	•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변경
		•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통일로 연결보행통로 변경 - 연장 : 109.92m → 108.6m, 감) 1.32m - 폭원 : 7.5m → 5~5.7m, 감) 1.8~2.5m - 높이 : 0m~12.0m(-20.46m~12.0m) → 0m~13.6m(-21.28m~13.6m), 증) 1.6m [감)0.82m~증)1.6m], - 면적 : 888.71㎡ → 584.25㎡, 감) 304.46㎡ • 중복 및 입체적 결정 면적변경 -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입체적 결정 면적 : 64.28㎡ → 18.24㎡, 감) 46.04㎡ - 철도③(서울역)과 중복결정 면적 : 824.43㎡ → 566.01㎡, 감) 258.42㎡	• 역사문화(구 서울역사) 환경을 고려한 연결보행통로 규모 축소 및 선형 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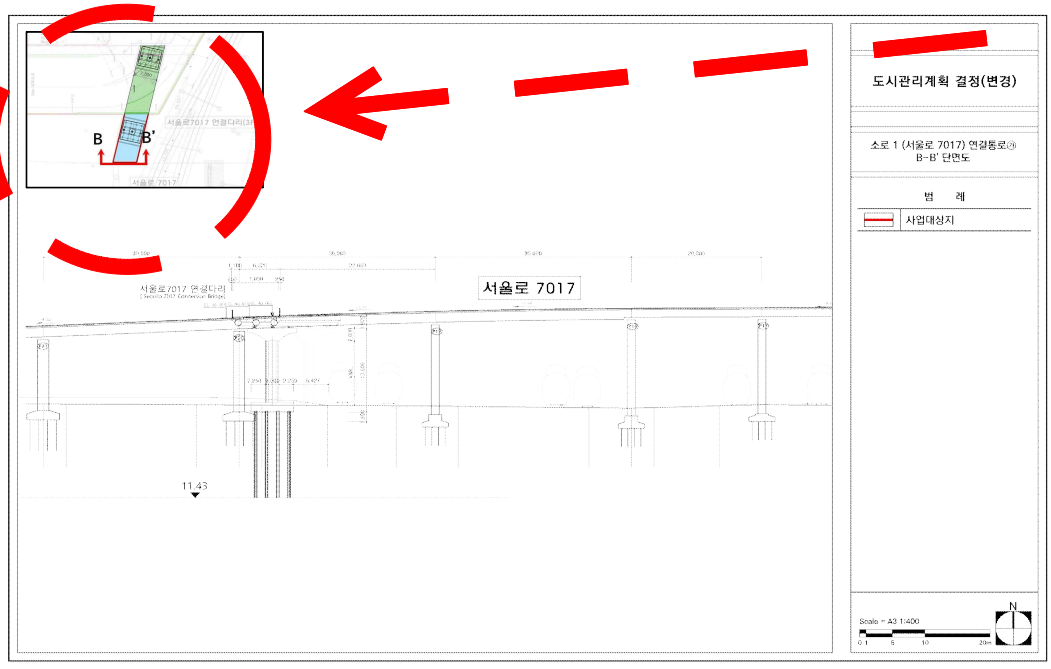
– 소로1(서울로7017) 연결통로㉮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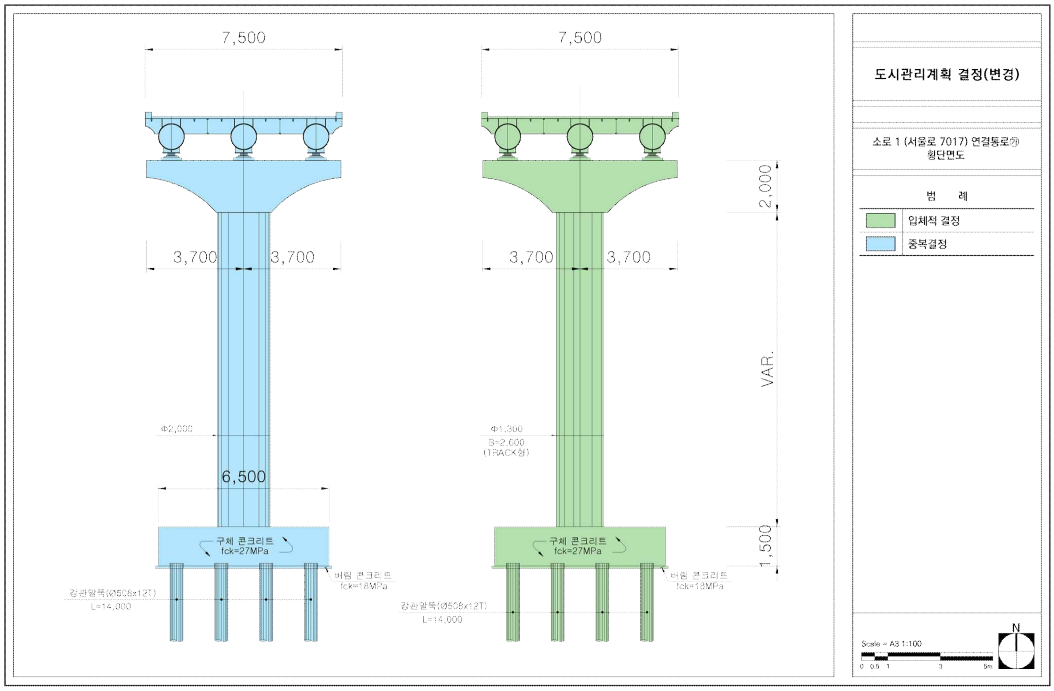
– 소로1(서울로 7017) 연결통로㉮ A–A’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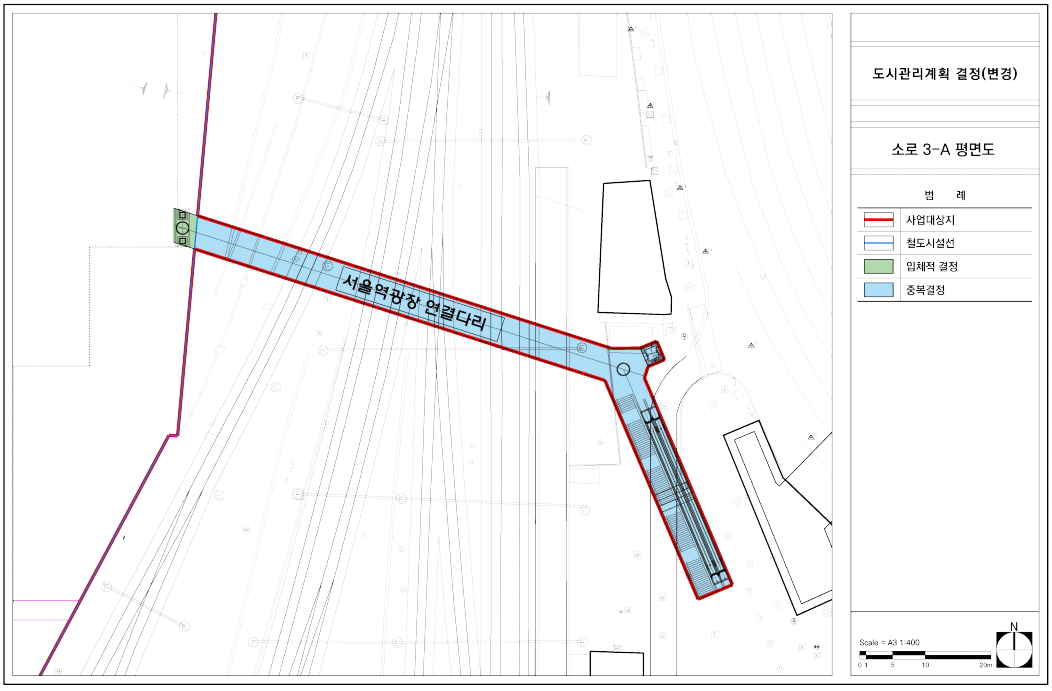
- 소로1(서울로 7017) 연결통로㉮ B-B'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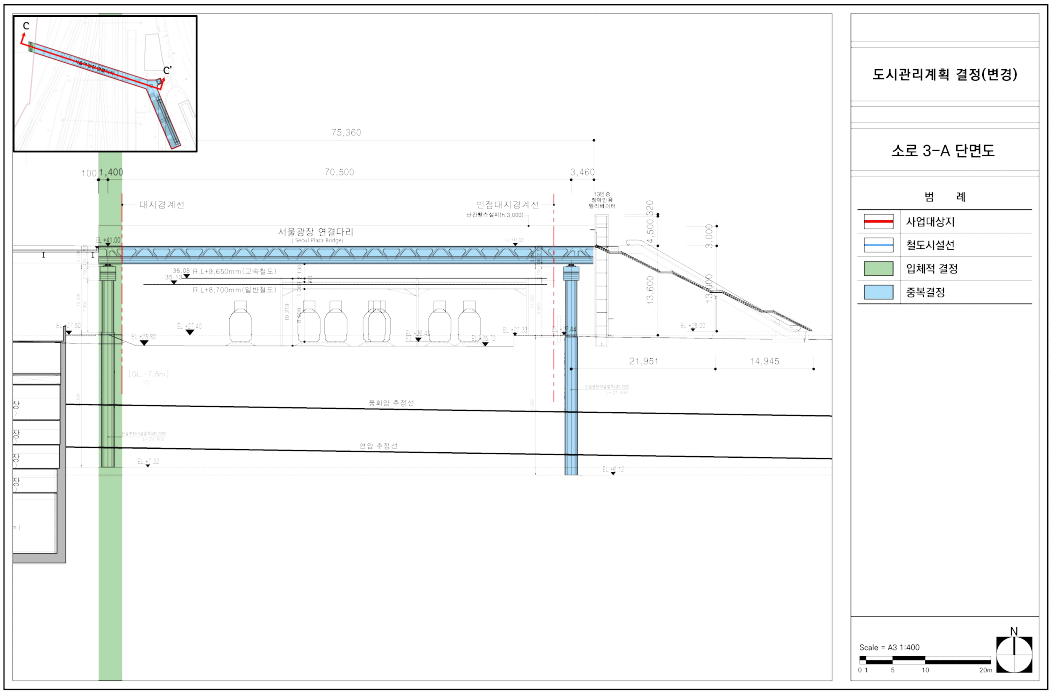
- 소로1(서울로 7017) 연결통로㉮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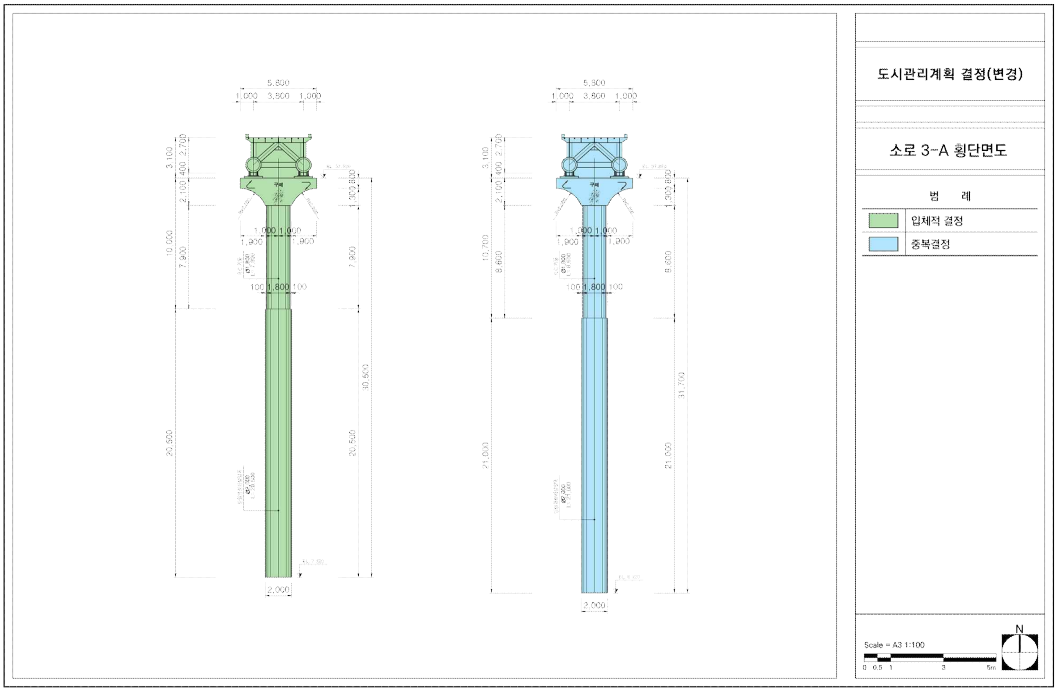
- 소로 3-A 평면도



- 소로 3-A 단면도



- 소로 3-A 횡단면도



- 이 하 여 백 -

2) 철도 결정(변경)조서

– 공항철도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중요경과지				
기정	②	철도	일반 철도 (본선)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 2가 15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143-1	중구:봉래동2가 용산구:동자동,서계동, 청파동1가,청파동2가, 청파동3가,원효로1가, 원효로2가,용문동,도원동 마포구:도화동,공덕동, 신공덕동,노고산동, 대흥동,동교동,서교동,염리동, 신수동,창전동, 연남동,성산동,중동, 상암동 고양시:덕은동,현천동 강서구:마곡동,가양동, 공항동,방화동,과해동	23,417 [252]	353,620.61 [3,142.88]	철도청 고시 제2003-49호 (2004. 01.10.)	※ 입체구역 봉래동2가 122-14번지 -터널구간 : 지하 53m~지하 43m -환기구조물 : 지하 53m~지하 4m 봉래동2가 122-15번지 -환기구(34) : 지하 4m~지상 2m -환기구조물(500) : 지하 53m~지하 4m · 입체적결정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3,142.88㎡] · 중복결정 -철도③(서울역), 소로1류(서울로7017)

주) 1. [ ] 부분은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 서울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③	철도	일반 철도	서울역 일대	219,669.9 [2,149.4]	–	· 철도②(공항철도), 대로3-13, 소로1(서울로7017), 광장①, 소3-A 중복결정
변경	③	철도	일반 철도	서울역 일대	219,669.9 [1,871.4]	–	· 철도②(공항철도), 대로3-13, 소로1(서울로7017), 광장①, 소3-A 중복결정

주) 1. [ ] 부분은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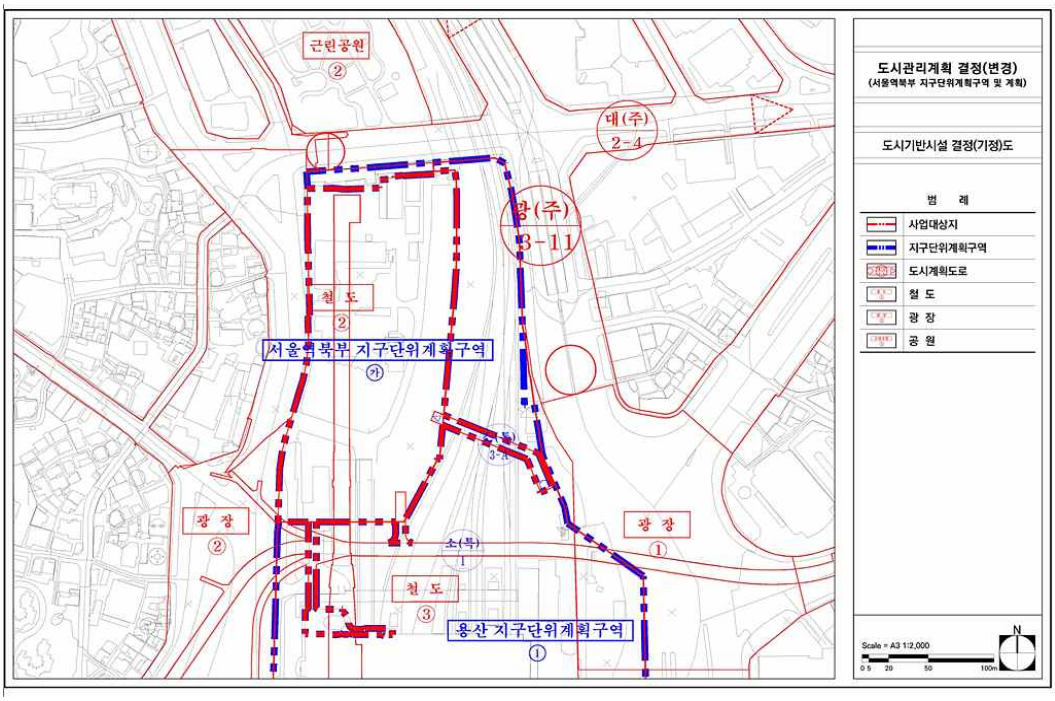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터널구간	봉래동2가 122-14번지	길이	240m	-	240m	-	(인천국제공항철도~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폭	10m	-	10m		
			높이 (지표면기준)	(-53m~-43m)	-	(-53m~-43m)		
			면적	2,400㎡	-	2,400㎡		
기정	환기 구조물	봉래동2가 122-14번지 122-15번지	길이	21.3m	-	21.3m	-	(인천국제공항철도~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폭	20m	-	20m		
			높이 (지표면기준)	(-53m~-4m)	-	(-53m~-4m)		
			면적	426㎡	-	426㎡		
기정	환기구	봉래동2가 122-15번지	길이	9.2m	-	9.2m	-	(인천국제공항철도~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폭	5.2m	-	5.2m		
			높이 (지표면기준)	(-4m~2m)	-	(-4m~2m)		
			면적	47.84㎡	-	4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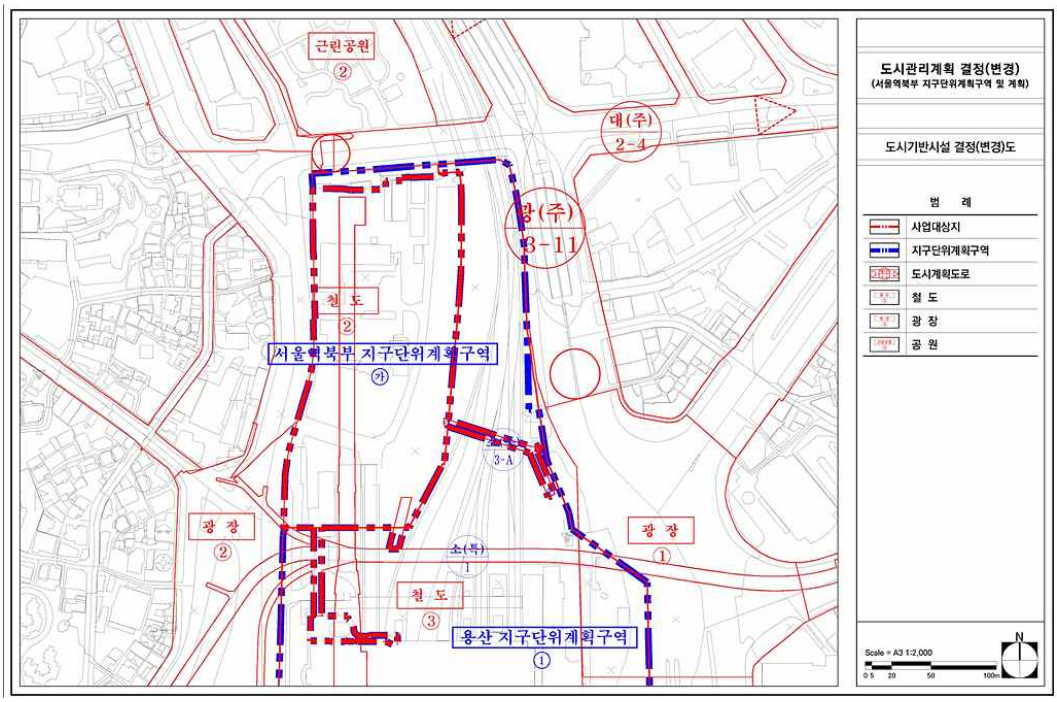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철도	•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면적 축소 - 2,149.4㎡ → 1,871.4㎡, 감) 278㎡	•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에 따른 철도시설 편입면적 변경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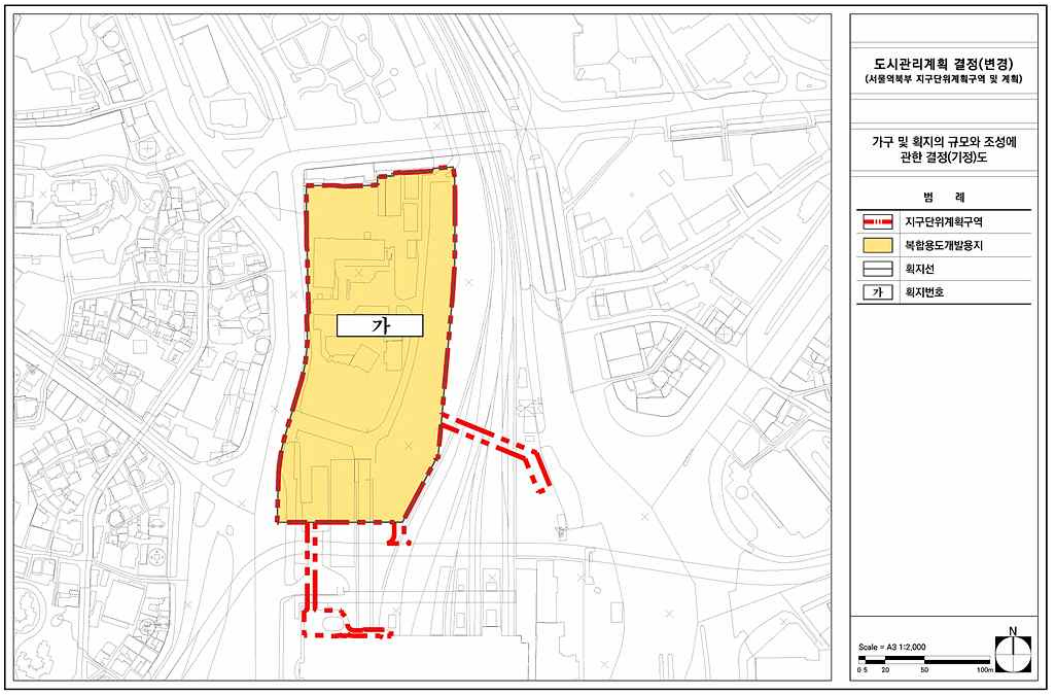
구분	구역명	도면표시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기정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중구 봉래동2가 122일원	29,101.5	
변경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중구 봉래동2가 122일원	29,048.9	

○ 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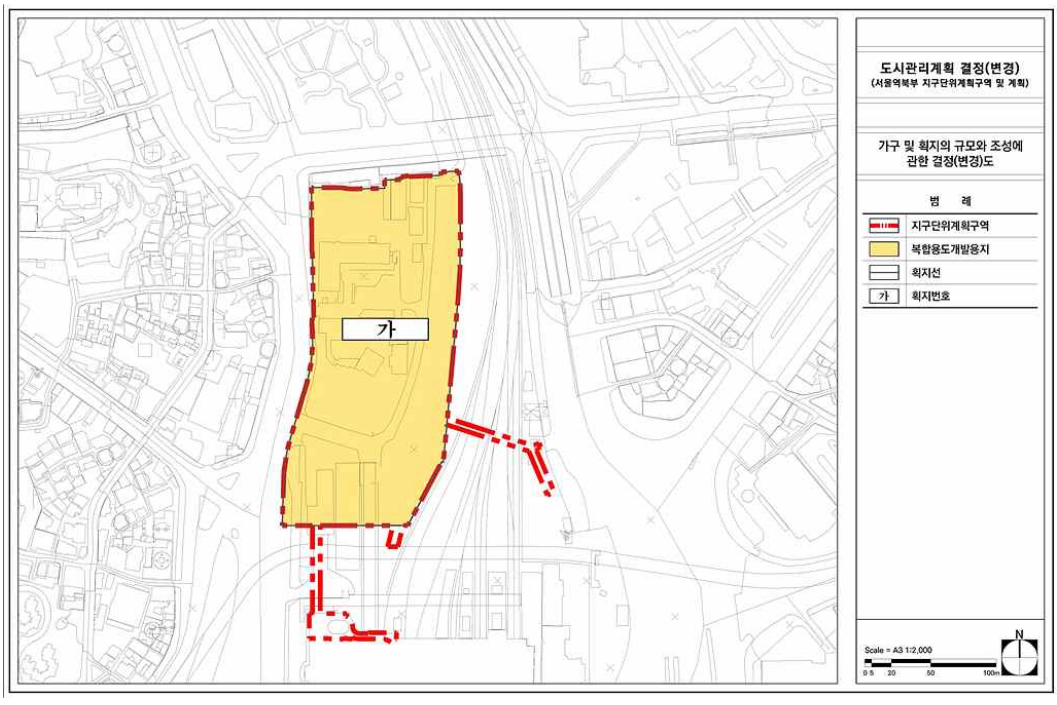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가	• 면적 감소 - 29,101.5㎡ → 29,048.9㎡, 감) 52.6㎡	• 측량결과 반영

- 이 하 여 백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기정)도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획지㉮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 공공임대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전체연면적의 30%이내인 경우 제외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항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서 26,069㎡ 초과인 경우에 한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장례시설 • 종교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지정용도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전용면적 8,000㎡ 이상) ※ 지정용도는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 변경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획지㉮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 공공임대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전체연면적의 30%이내인 경우 제외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항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서 26,069㎡ 초과인 경우에 한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장례시설 • 종교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지정용도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전시장 - 전용면적 8,000㎡ 이상 ※ 지정용도는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 변경 사유서

위치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획지㉮	지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전용면적 8,0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전시장 - 전용면적 8,000㎡ 이상	• 컨벤션 전시공간 확보를 위해 변경

나.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획지㉮	건폐율	60% 이하	

다. 용적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획지㉮	기준용적률	• 310% 이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용
	허용용적률	• 500% 이하	
	상한용적률	• 800% 이하	

주) 1.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용적률 체계 적용
- 기준 용적률 (용도지역 혼재에 따른 가중평균값 적용)
: (제3종일반주거지역 25,593.3㎡ x 250%) + (일반상업지역 3,455.6㎡ x 800%) / (29,048.9㎡) = 315.4% ≒ 310%
- 허용 용적률 : 기준용적률 310% + (800% - 310%) x 4/10 = 506% ≒ 500%
- 상한 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조례 용적률 800%

1)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내용

■ 기정

구분	세분		완화기준	비고
중점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기준용적률×(지정용도면적/연면적) ×3.0	· 북부역세권 입지 및 도입기능을 고려한 MICE용도 지정(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 α=3.0
계획 유도	대기환경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기준용적률×0.1	· 전체 주차면수의 7%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7%이상 전기차충전기 설치시(법적 기준 5%, 5% 이상) · α=0.1
	건축물 용도	특정층(꼭대기) 개방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5.0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 α=5.0
	지능형건축물인증		기준용적률×0.1	· 1등급~4등급으로 인증된 경우(5등급 제외) · α=0.1

구분	세분		완화기준	비고
	에너지(친환경)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용적률×0.1	· 서울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사항 초과 인증 시 – 에너지효율등급(서울시 기준: 1+ 등급) : 1++ 등급 적용 · α=0.1
	대지내 공지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5	· 조성형태에 따라 계수 조정 가능 · 건물내 : α=0.5 · 옥상형 : α=0.5 · 개방형 : α=1.2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5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1.2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1.2	· α=1.2

■ 변경

구분	세분		완화기준	비고
중점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기준용적률×(지정용도면적/연면적) ×3.0	· 북부역세권 입지 및 도입기능을 고려한 MICE용도 지정(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 α=3.0
계획 유도	대기환경(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기준용적률×0.1	· 전체 주차면수의 7%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7%이상 전기차충전기 설치시(법적 기준 5%, 5% 이상) · α=0.1
	건축물 용도	특정층(꼭대기) 개방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5.0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옥상설치면적을 포함) · α=5.0
	지능형건축물인증		기준용적률×0.1	· 1등급~4등급으로 인증된 경우(5등급 제외) · α=0.1
	에너지(친환경)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용적률×0.1	· 서울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사항 초과 인증 시 – 에너지효율등급(서울시 기준: 1+ 등급) : 1++ 등급 적용 · α=0.1
	대지내 공지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5	· 조성형태에 따라 계수 조정 가능 · 건물내 : α=0.5 · 옥상형 : α=0.5 · 개방형 : α=1.2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5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1.2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1.2	· α=1.2

○ 변경 사유서

구분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계획 유도	건축물 용도	특정층(꼭대기) 개방	•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옥상설치면적을 포함'	• 관련기관 의견에 따라 개방공간 마련을 위해 인센티브 완화내용 변경

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획지㉮	높이	• 최고높이 150m 이하 (랜드마크 특화를 위한 1개동 180m이하 적용)	

마.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획지㉮	건축한계선	• 청파로변 : 3m • 대상지 북측 : 경계로부터 3m • 대상지 남측 : 경계로부터 23m(보차혼용통로 지하구간은 건축 제한) • 대상지 서측 : 청파로변 버스정류장 부근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경계로부터 3m~6.5m	
	주동배치구간	• 높이계획을 완화 받는 주동은 북동측 대상지 ¼구간에 입지할 수 있도록 계획	
	고층배치 금지구간	• 고층부 통경축 확보를 위해 고층배치금지구간 지정 (폭 23m이상 확보, 건축물 5층 초과 금지)	

바. 형태·색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획지㉮	주변 건물과의 조화 및 개방감	•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건축물 입면계획 • 조망점을 고려하여 고층부 개방감 부여 • 경관상 위압감 저감을 위해 타워별 높이 변화 형성	
	저층부 형태	• 서울역광장, 서울로7017, 서소문역사공원을 대지내에서 연결할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공공보행통로 형성 • 저층부 건물 높이 변화 형성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료 / 색채	• 다채로운 입면 형성을 위해 저 · 고층부 Mass 분리가 구분되도록 색채 및 외장재 변화 계획 수립	
	자연친화적 공간	• 도시에서 자연을 느낄수 있도록 녹지공간 형성	
	1층 바닥높이	• 보도와 1층 바닥 높이를 맞추어 계획하여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조명	• 공공보행로를 중심으로 가로변 외벽에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설치	

■ 건축물 형태 · 외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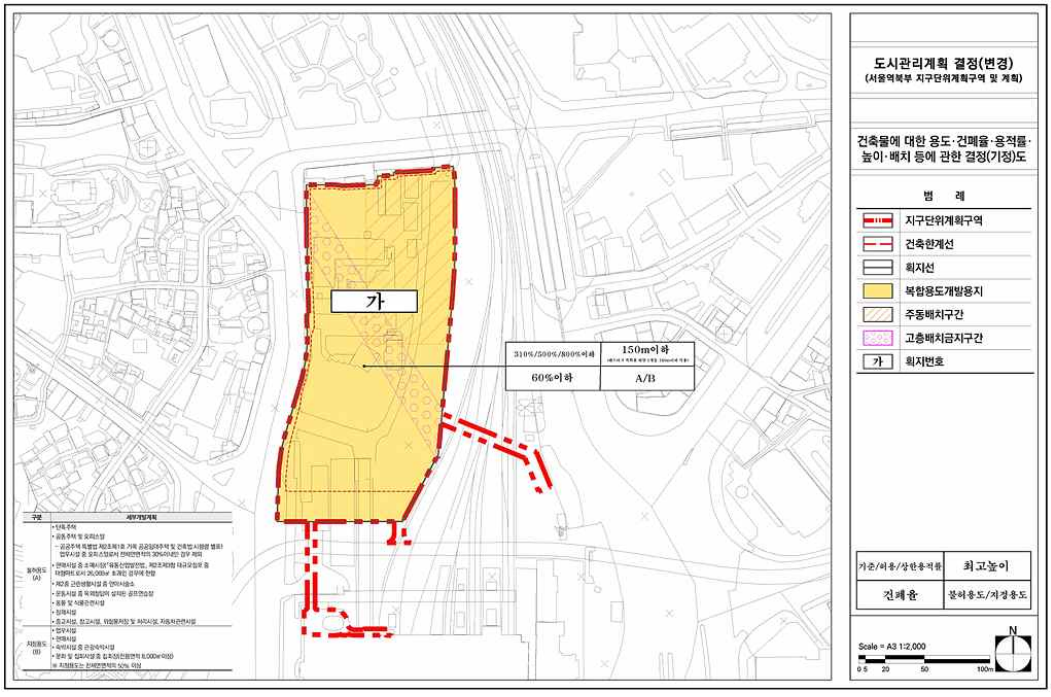
■ 최상층 공간개방에 따른 설치 및 운영계획(변경)

구분		적용위치	운영계획	비고
기정	최상층 공간	랜드마크동 최상층 (업무시설 38층)	• 세부시설 : 카페, 옥상정원 계획 및 전망대 활용(전용 엘리베이터 운영) • 운영시간 : 건물 운영시간 내	
변경	최상층 공간	랜드마크동 최상층, 옥상	• 세부시설 : 카페, 옥상정원 계획 및 전망대 활용(전용 엘리베이터 운영) • 운영시간 : 건물 운영시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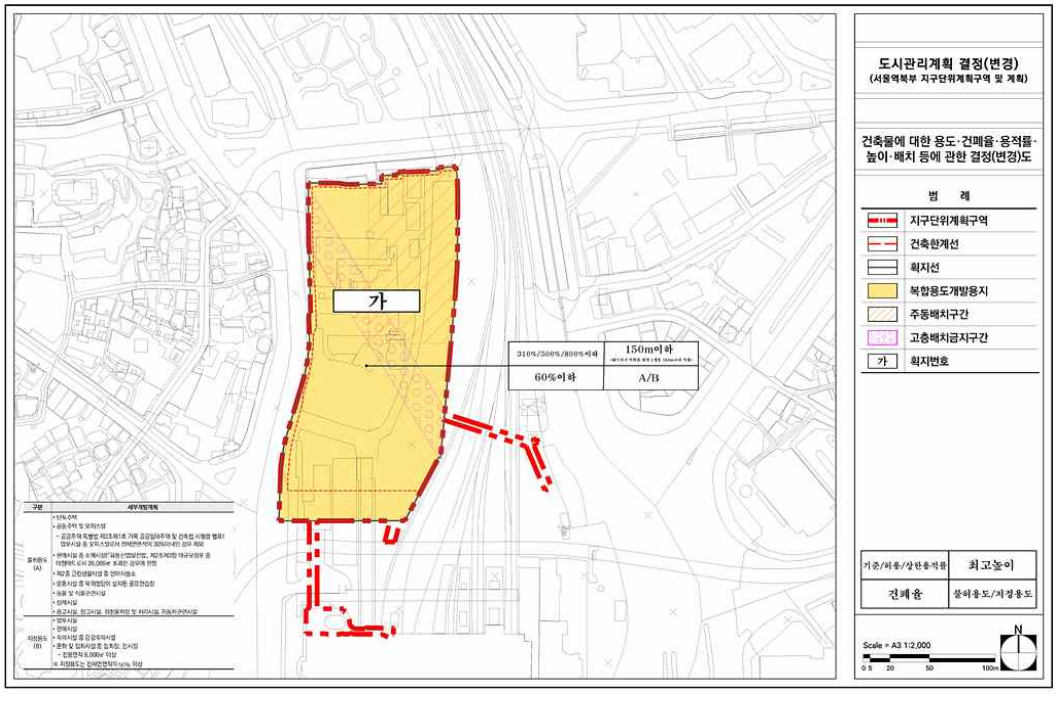
○ 변경 사유서

구분	적용위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최상층 공간	랜드마크동 최상층, 옥상	• 랜드마크동 최상층(업무시설 38층) → 랜드마크동 최상층, 옥상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랜드마크동 적용위치 변경

■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획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 전면공지 조성	
	공개공지	•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공개공지 설치 • 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 보행동선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북측 청파로변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 지정	
	공공 보행통로	• 개방형(1층) : 청파로변 대중교통수단(버스정류장)과 건물 내 공공보행통로 연결 (폭 10m이상, 24시간 개방) • 건물내(1~3층) :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한 층간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폭 5m이상, 높이 4m이상, 24시간 개방) • 옥상형(3층) : 서울역북부~서울로7017~서울역의 연계 보행로 확보 및 건물 내 공공보행통로와 연결체계 구축(폭 5m 이상, 24시간 개방)	
	보차혼용 통로	• 청파로변 차량 진·출입구 설치 및 대지 내 폭원 20m의 보·차가 분리된 내부통행로를 조성하여 향후 철도지하화시 동서연결도로로 이용 • 일반 대중에게 상시개방하여 보행자와 차량 24시간 이용 가능 • 보행공간 : 좌우 포함 6.5m, 차도 : 5차로(16.5m) -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 반영	

나.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획지㉮	차량출입 불허구간	• 공공통행로 외 청파로변 차량 진·출입 불허 (단, 비상시 북측 청파로변은 비상차량 출구 허용)	

다. 공공기여계획(변경)

■ 기정

<table>
<tr><th>구 분</th><th>계 획 내 용</th><th>비 고</th></tr>
<tr><td>공공시설 부지 제공율</td><td>• 도시계획 변경(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범위내 최고 금액 3,390억원 적용('23.11. 감정평가)

• 공공시설 설치내역
- 구역 내(시설) : 689억원
① 서울역 공공성강화사업 (39억원) - 연결 브릿지 및 폐쇄램프 등
② 대상지~서울로7017 연결브릿지 (46억원)
③ 대상지~통일로(서울역광장) 연결브릿지 (241억원)
④ 북부역세권 내 건축물 (363억원)
<table>
<tr><th>위치</th><th>규모(㎡)</th><th>용도</th><th>금액</th><th>비고</th></tr>
<tr><td>업무시설2,
6,7층</td><td>- 전용면적: 3,831.42
- 연 면 적: 5,595.36</td><td>공공업무시설</td><td>363억원</td><td></td></tr>
</table>
- 구역 외(비용) : 2,701억원
⑤ 관할자치구 미집행(중구, 540.2억원, 20.0%)
⑥ 장기미집행(270.1억원, 10%)
⑦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균형개발, 1,890.7억원)
- 소외낙후지역 내 광역철도 건설 및 생활체육시설
- 청파공원(도시정비과, 293억원)
- 청파로 89길 조성(304억원)
- 대상지~서소문공원 보행로 (5억원)

※ 주1) 시설설치제공시설,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여건변화 및 협의 내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주2) ④ : 사업시행계획,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대상지 내 공공업무시설 규모 변동 가능
주3) ⑤ : 관할 자치구 장기미집행시설 설치비용은 자치구에 귀속됨
주4) ⑤, ⑥ :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은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며, 세부 시설의 종류는 변동될 수 있음
주5) 경미한 계획의 변경사항
- 사전협상 지침에 따라 감정평가 시점보정 등에 의한 공공기여 총량의 변경
-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은 각 사업별 금액의 30%이내 범위내의 금액 변경
-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사업의 배제(삭제),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자하는 장기미집행시설의 변경</td><td>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 산정기준 및 공공기여 제공금액 인정기준 준용 (감정평가 기준)</td></tr>
</table>

1)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4차 개정)(2018.11.13.)」에서 정한 '공공기여기준' 준수

2) 상기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등)와 사전협상 결과(도시계획과-4729, '21.04.05.) 및 전문가 자문회의('21.09.17.)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함

○ 공공기여 내용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위치</th><th>면적 및 금액</th><th>비 고</th></tr>
<tr><td colspan="3">합계</td><td>3,390억원</td><td></td></tr>
<tr><td rowspan="2">구역 내
(시설)</td><td colspan="2">소계</td><td>689억원</td><td></td></tr>
<tr><td>서울역 공공성강화사업</td><td>연결 브릿지 및 폐쇄램프 등</td><td>연결브릿지: 286.36㎡,
폐쇄램프: 1,378.2㎡</td><td>39억원</td><td></td></tr>
</table>

구 분			위치	면적 및 금액		비 고
	대상지~서울로7017 연결브릿지		대상지 남측	315.98㎡	46억원	
	대상지~통일로(서울역광장) 연결브릿지		대상지 동측	888.71㎡	241억원	
	북부역세권 내 건축물		업무시설2(6, 7층)	전용면적 : 3,831.42㎡, 연면적 : 5,595.36㎡	363억원	공공업무시설
구역 외 (비용)	소계				2,701억원	
	관할자치구 미집행		중구	20%	540.2억원	
	장기미집행		서울특별시	10%	270.1억원	
	공공시설등 설치비용(균형개발)		서울특별시	-	1,890.7억원	
		소외낙후지역 내 광역철도 건설 및 생활체육시설	서울특별시	-	1,288.7억원	
		청파공원	용산구 서계동	공원 : 4,013㎡ 지하주차장 : 2,680㎡ 도로 : 1,867㎡	293억원	도시정비과
		청파로 89길	용산구 서계동	총연장 332m (공사구간 216m) 폭원 15m	304억원	
		대상지~서소문공원 보행로	대상지 북측	404㎡	5억원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 도시계획 변경(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범위내 최고금액 3,384억원 적용('23.11. 감정평가) • 공공시설 설치내역 - 구역 내(시설) : 689억원 ① 서울역 공공성강화사업 (39억원) - 연결 브릿지 및 폐쇄램프 등 ② 대상지~서울로7017 연결브릿지 (46억원) ③ 대상지~통일로(서울역광장) 연결브릿지 (241억원) ④ 북부역세권 내 건축물 (363억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 산정기준 및 공공기여 제공금액 인정기준 준용 (감정평가 기준)

위치	규모(㎡)	용도	금액	비고
업무시설2, 6,7층	- 전용면적: 3,831.42 - 연 면 적: 5,595.36	공공업무시설	363억원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구역 외(비용) : 2,695억원 ⑤ 관할자치구 미집행(중구, 539억원, 20.0%) ⑥ 장기미집행(270억원, 10%) ⑦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균형개발, 1,886억원) - 소외낙후지역 내 광역철도 건설 및 생활체육시설 - 청파공원(도시정비과, 560억원) - 청파로 89길 조성(385억원) - 대상지~서소문공원 보행로 (5억원) ※ 주1) 시설설치제공시설,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여건변화 및 협의 내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주2) ④ : 사업시행계획,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대상지 내 공공업무시설 규모 변동 가능 주3) ⑤ : 관할 자치구 장기미집행시설 설치비용은 자치구에 귀속됨 주4) ⑤, ⑥ :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은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며, 세부 시설의 종류는 변동될 수 있음 주5) 경미한 계획의 변경사항 - 사전협상 지침에 따라 감정평가 시점보정 등에 의한 공공기여 총량의 변경 -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은 각 사업별 금액의 30%이내 범위내의 금액 변경 -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사업의 배제(삭제),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자하는 장기미집행시설의 변경	

1)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4차 개정)(2018.11.13.)」에서 정한 '공공기여기준' 준수
2) 상기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등)와 사전협상 결과(도시계획과-4729, '21.04.05.) 및 전문가 자문회의('21.09.17.)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함

○ 공공기여 내용

구 분		위치	면적 및 금액		비 고
합계				3,384억원	
구역 내 (시설)	소계			689억원	
	서울역 공공성강화사업	연결 브릿지 및 폐쇄램프 등	연결브릿지: 286.36㎡, 폐쇄램프: 1,378.2㎡	39억원	
	대상지~서울로7017 연결브릿지	대상지 남측	304.03㎡	46억원	
	대상지~통일로(서울역광장) 연결브릿지	대상지 동측	584.25㎡	241억원	
	북부역세권 내 건축물	업무시설2(6, 7층)	전용면적 : 3,831.42㎡, 연면적 : 5,595.36㎡	363억원	공공업무시설
구역 외 (비용)	소계			2,695억원	
	관할자치구 미집행	중구	20%	539억원	

구 분	위치	면적 및 금액		비 고
장기미집행	서울특별시	10%	270억원	
공공시설등 설치비용(균형개발)	서울특별시	-	1,886억원	
소외낙후지역 내 광역철도 건설 및 생활체육시설	서울특별시	-	936억원	
청파공원	용산구 서계동	공원 : 4,013㎡ 지하주차장 : 2,680㎡ 도로 : 1,867㎡	560억원	도시정비과
청파로 89길	용산구 서계동	총연장 332m (공사구간 216m) 폭원 15m	385억원	
대상지~서소문공원 보행로	대상지 북측	404㎡	5억원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내 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2. 대지내·외 통로(공공보행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사전협상 지침에 따라 감정평가 시점보정 등에 의한 공공기여 총량의 변경
4.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은 각 사업별 금액의 30%이내 범위내의 금액 변경
5.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사업의 배제(삭제),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자하는 장기미집행시설의 변경

5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S=1:2,00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S=1:2,000)
3.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S=1:2,000)
4.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S=1:2,000)
5.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S=1:2,000)
6.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S=1:2,000)
7.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기정)도 (S=1:2,000)
8.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S=1:2,000)
9.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S=1:2,000)
10.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S=1:2,000)
11.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S=1:2,000)

Ⅳ. 관계도면 :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참조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용산구 도시계획과, 중구 도심정비과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5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고

소방시설업 관련법령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를 해당 소방시설업체로 통보하여야 하나 영업소재지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4. 7. 18.(목) ~ 2024. 8. 1.(목)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귀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통보합니다.

<table>
<tr><td>확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5">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 명</td><td colspan="4">대표 김학○ [삼○홈이엔씨 - 전문소방시설공사업]</td></tr>
<tr><td>주 소</td><td colspan="4">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6층 1630호(서초동, 강남빌딩)</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5">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td></tr>
<tr><td>행정처분 일자</td><td colspan="5">2024. 8. 6.(화)</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5">○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2.개별기준 나목 3차</td></tr>
<tr><td rowspan="2">기관 및 담당자</td><td>기관명</td><td>서초소방서</td><td>부서명</td><td>예방과</td><td>담당자</td><td>김보미</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td><td>전화번호</td><td>02-6981-5904</td></tr>
</table>

<행정심판 등의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066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법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2024. 7. 1.字)

2. 직인 등록 및 폐기 일자 : 2024. 7. 1.字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내용

가. 직인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디지털도시국 데이터전략과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데이터전략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0㎝X2.0㎝		2024. 7.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4.7.1.)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데이터전략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데이터전략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데이터전략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나. 직인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폐기일자	사유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빅데이터담당관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0㎝X2.0㎝		2024. 7.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4.7. 1.)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빅데이터담당관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빅데이터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빅데이터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069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법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 등록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024.7.1.字)

2. 직인 등록일자 : 2024.7.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가. 직인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공공의료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0㎝X2.0㎝		2024.7.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024.7.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공공의료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2024.7.1.	
	서울특별시 공공의료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2024.7.1.	
	서울특별시 공공의료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2024.7.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074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2024. 7. 1.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 공인(회계직인)을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8조(공인의 등록),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고)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 등록
○ 공인등록 사유 : 2024. 7. 1. 조직개편으로 부서명 변경
○ 공인종류 :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공인등록 일자 : 2024. 7. 1.
○ 공인등록 내용

공인 명	규격	인영	전자이미지 인영
미래공간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	1.8㎝×1.8㎝ 훈민정음체		없음
미래공간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	1.8㎝×1.8㎝ 훈민정음체		없음

□ 공인 폐기

○ 공인폐기 사유 : 2024. 7. 1. 조직개편으로 부서명 변경

○ 공인종류 :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공인폐기 일자 : 2024. 6. 30.

○ 공인폐기 내용

공인 명	규격	인영	전자이미지 인영
미래공간기획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	1.8㎝×1.8㎝ 훈민정음체		없음
미래공간기획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	1.8㎝×1.8㎝ 훈민정음체		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079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4. 7. 18. ~ 2024. 8. 1.(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 기간 :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간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1건																
1	20224145	172허4128	그랜저 하이브리드(GRAND EUR HYBRID)	000047339214201 20240425000240	학여울역	0000:31	2024-03-14	14:16	2024-03-14	14:47	1,800	0	1,800	홍0양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30번길17- 12	21399	2024-07-1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081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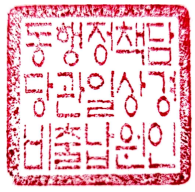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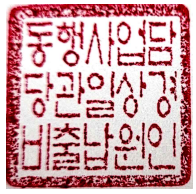
1. 직인 등록 사유 : 2024. 7.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2. 직인 등록 일자 : 2024. 7. 10.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기획조정실 약자동행담당관	약자동행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X1.8㎝		2024.7.10.	
	약자동행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X1.8㎝			

4.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내용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폐기일자	비고
약자와의동행 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동행정책담당관 일상경비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2024.7.10.	
	동행정책담당관 분임물품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2024.7.10.	
약자와의동행 추진단 동행사업담당관	동행사업담당관 일상경비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2024.7.10.	
	동행사업담당관 분임물품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X1.8㎝		2024.7.1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086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실시(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청문실시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을 등기우편 송달시도하였으나 조합 사업장폐쇄 및 대표자 연락두절,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대표자)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ㅇ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8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2. 청문 당사자(조합)
 ㅇ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정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번	인가번호	조합명	조합 소재지	대표자	청문사유
1	서울특별시 제2011-10호	참누리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비동 1420호	남문식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정지
2	서울특별시 제2011-17호	국민복지의료 생활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1-27 삼미뉴타워 2층	전완식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정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5. 법적근거
 ㅇ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82조 제1항 제4호

6. 청문실시
 ㅇ 일 시 : 2024. 8. 26.(월) 14:00 ~ 16:00
 ㅇ 장 소 : 서울시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1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20층)
  ※ 출입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ㅇ 기관명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02-2133-5364, xhfldbs328@seoul.go.kr)
 ㅇ 주재자(소속, 성명, 직위) : 법부법인 천지인 배수진 변호사

7. 공고기간 : 2024. 7. 12.(금) ~ 8. 2.(금)

〈청문시 유의사항〉

1. 귀 조합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또한,「행정절차법」제22조제4항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에 의견진술(청문)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의견란에 작성하여 2024. 8. 23.(금)까지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업무 담당자 앞

4. 청문 진술을 위한 참석자(조합 대표자 또는 대리인)는 아래 필요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참석자 신분증 및 단체인감증명서, 단체인감도장, 기타 청문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2) 대리인의 경우 사전에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 후 대리인 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자격 입증서류) 지참 후 참석

5. 귀 조합은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경제과(담당자 ☎02-2133-53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087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 등록 사유 : ’ 24. 7.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록
2. 직인 등록 일자 : ’ 24. 7.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미래공간기획관 용산입체도시 담당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4.7.1.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4.7.1.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4.7.1.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4.7.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내용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폐기일자	비고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 담당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4.6.30.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4.6.30.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4.6.30.	
	공공개발사업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4.6.3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089호

공인등록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등록
- ○ 공인등록 사유 : 2024년 07.0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신설
- ○ 최초 사용일자 : 2024년 07월 18일
-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글로벌도시정책관의인	2.4㎝×2.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09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당 사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및 대표자	소재지		
1	202386	㈜제이에스티앤씨/송정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라길 48, 202호(묵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기술계1)	영업정지 (24.07.11.~ 24.08.09.)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영업정지, 등록취소),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의13
3. 문의 : 정보통신과, 담당자: 김수환(☎(02)2133-2897, 전자우편 kimswan0409@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096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등록번호	모집자 / 대표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백만원)	모집지역	모집기간 / 사용기간
2023-131-1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문화육성회 / 김경선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74 1층	○ 청소년 문화창조 및 육성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지원 사업	3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3.11.13. ~ 2024.11.12. / 2023.11.13. ~ 2025.11.12.
2024-51-1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 이장호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길 37 302호	○ 취약계층 자립 지원	300 (현금)	전국	2024.1.19. ~ 2024.12.31. / 2024.1.19. ~ 2025.3.31.
2024-16-1	사단법인 굿피플 인터내셔널 / 이영훈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210 굿피플빌딩	○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자립을 위한 지원	1,0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1.1. ~ 2024.12.31. / 2024.1.1. ~ 2025.12.31.

등록번호	모집자 대표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24-108-1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허인영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277	○ 위기수용자 자녀 및 가족 지원, 인권 옹호 등의 사업	5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5.6. ~ 2024.12.31. 2024.5.6. ~ 2025.12.31.
2024-31-1	김복동의 희망 김서경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27 401호	○ 재일조선학교 차별 철폐 활동 및 장학 사업 ○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기림 활동, 문화 홍보 활동 등	224 (현금)	전국	2024.1.1. ~ 2024.12.17. 2024.1.1. ~ 2025.12.17.
2024-28-1	사단법인 열린의사회 고병석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49, 6층	○ 국내 의료취약계층 및 해외 저개발국가 의료지원 ○ 국내외 긴급구호 활동	1,0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1.1. ~ 2024.12.31. 2024.1.1. ~ 2024.12.31.
2024-73-2	사단법인 임팩트비즈니스 재단 박철수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3 2004호	○ 복지사각지대 지원, 공익활동 발굴 및 지원	5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2.3. ~ 2024.12.31. 2024.2.3. ~ 2025.3.31.

□ 기부금품 모집등록

등록번호	모집자 대표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백만원)	모집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24-110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김용덕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35길 40 2,3층	○ 금융 취약계층의 자활, 자립을 위한 지원	145.8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5.11. ~ 2025.5.10. 2024.5.11. ~ 2026.5.10.
2024-111	사단법인 한국소방단체 총연합회 박종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6길37 2층 201호	○ 소방 관련 물품 지원 및 소방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	75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5.10. ~ 2025.4.30. 2024.1.1. ~ 2025.12.31.
2024-112	사단법인 용산구의정회 윤종철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81길 14	○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 대상 식품지원	50 (현금)	전국	2024.5.10. ~ 2025.5.6. 2024.5.10. ~ 2025.5.6.
2024-113	재단법인 이랜드재단 장광규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204호	○ 가정밖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지원	100 (현금)	전국	2024.5.18. ~ 2025.5.1. 2024.5.18. ~ 2026.5.1.
2024-114	사단법인 비전플랫폼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08-5 102호	○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마	97.5 (현금)	전국	2024.5.18. ~

등록번호	모집자 대표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음 건강 취약청년 지원			2024.12.27.
	김의겸					2024.5.18. ~ 2025.12.31.
2024 -115	사단법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2 6층	○ 법치주의 구현, 북한의 인권 개선과 성공적인 통일을 위한 사업	500 (현금)	전국	2024.5.22. ~ 2025.5.21.
	이재원					2024.5.22. ~ 2026.5.21.
2024 -116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3층	○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환경문제 대응 및 시민참여 활성화	200 (현금)	전국	2024.5.18. ~ 2024.12.31.
	노진철					2024.5.18. ~ 2025.12.31.
2024 -117	사단법인 푸른나눔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43, 4층	○ 국내 저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 가정 지원	9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6.1. ~ 2025.5.31.
	문희곤					2024.6.1. ~ 2026.5.31.
2024 -118	사단법인 지평법정책 연구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4 그랜드센트럴A동23층	○ 법정책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해 법정책 발전 및 사회 발전에 기여	50 (현금)	전국	2024.6.1. ~ 2025.5.31.

등록번호	모집자 대표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이공현					2024.6.1. ~ 2026.5.31.
2024 -119	재단법인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3층	○ 법제도 보호권 사각 지대에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안전 및 환경 개선	1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6.1. ~ 2024.12.31.
	김동만					2024.6.1. ~ 2025.5.31.
2024 -120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63, 2층	○ 취약계층 청소년 발굴 및 지원	500 (현금)	전국	2024.6.15. ~ 2025.6.10.
	민일영					2024.6.15. ~ 2026.6.10.
2024 -121	사단법인 비전라이프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13길 7, 4층	○ 국내외 빈곤 가정, 아동 및 취약계층 지원	5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6.15. ~ 2025.5.27.
	윤길수					2024.6.15. ~ 2026.5.27.
2024 -122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135, 4층	○ 낙태예방과 생명 존중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 미혼모 지원	1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6.18. ~ 2025.5.31.
	최아란					2024.6.18. ~ 2026.6.17.
2024	해외주민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300	전국	2024.7.1.

등록번호	모집자 대표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123	운동연대 나승구	32-8	○ 미얀마 피난시민 인도적 지원	(현금 및 물품)		~ 2025.6.30. 2024.7.1. ~ 2026.6.30.
2024-124	스마일 송명희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416 1519호 R-46	○ 동물보호 활동 (구조, 치료, 입양 캠페인 등)	425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6.18. ~ 2025.6.4. 2024.6.18. ~ 2025.12.31.
2024-125	재단법인 한국기증자 유가족지원본부 김황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9길 28	○ 장기기증자 유가족 지원 사업	5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7.1. ~ 2025.6.30. 2024.7.1. ~ 2026.6.30.
2024-126	사단법인 한국조혈모 세포은행협회 이홍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17 2층	○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 개선 및 활성화 사업	3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6.28. ~ 2024.12.31. 2024.6.28. ~ 2024.12.31.
2024-127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 김선태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717	○ 시각장애인의 의료 적 개안수술 지원	330 (현금)	전국	2024.7.1. ~ 2025.6.30. 2024.7.1. ~ 2025.8.31.
2024-128	재단법인 옥스팜코리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본관 301호	○ 전 세계 51개 국가 에서 긴급구호, 국제적 구제 사업 및 개발 사	1,000 (현금)	전국	2024.7.5. ~

등록번호	모집자 대표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자넷 올드필드		업			2025.3.31. 2024.7.5. ~ 2026.3.31.
2024 -129	재단법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국민재단 이충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8층	○ 취약계층 청소년 장학금 및 물품 지원	5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7.5. ~ 2025.6.30. 2024.7.5. ~ 2026.6.30.
2024 -130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양희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 901호	○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연구, 캠페인 등	8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7.5. ~ 2024.12.31. 2024.7.5. ~ 2026.7.4.
2024 -131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정세균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73노무현시민센터	○ 청년 리더십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1,000 (현금)	전국	2024.7.5. ~ 2025.6.30. 2024.7.5. ~ 2026.6.30.
2024 -132	사단법인 글로벌케어 박용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1차 302호	○ 국내외 주민 대상 긴급구호	1,0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8.1. ~ 2025.7.31. 2024.8.1. ~ 2026.7.31.

등록번호	모집자 대표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24-133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정상율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67전법회관 6층	○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3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7.12. ~ 2025.7.11. 2024.7.12. ~ 2026.7.11.
2024-134	재단법인 국제구조위원회 이은영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432 13층	○ 전세계 난민과 실향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 사업	9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8.1. ~ 2025.7.31. 2024.8.1. ~ 2025.12.31.
2024-135	사단법인 동물사랑네스트 김진아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가길 7-3 3층	○ 위기동물 구조, 치료, 입양, 유기묘 쉼터 운영 등	67.2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7.12. ~ 2024.12.31. 2024.7.12. ~ 2026.5.15.
2024-136	유사천 입양하우스 최희호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85 201호	○ 유기동물 구조, 치료, 보호시설 운영	98.8 (현금 및 물품)	전국	2024.7.12. ~ 2025.6.30. 2024.7.12. ~ 2025.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02-2133-63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099호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감경부과 고지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를 법인의 본점 및 소재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7. 25. ~ 2024. 8. 8.(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공사명)	예정된 처분내용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한	처분 근거
파브이앤씨㈜ (이현석)	건축공사업 01-44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8길 9, 202호(오금동)	건설공사대장 미등보 (서교동 327-1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과태료	2024. 8. 9.(금)	법 제99조 제3호
남방건설산업㈜ (석두균)	건축공사업 01-43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4길 35 , 301호(문정동, 자양빌딩) (문정동)	건설공사대장 미등보 (안동 풍천면 기산리 1069 농산물 공장 신축공사)	과태료	2024. 8. 9.(금)	법 제99조 제3호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 감경된 과태료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메일, 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00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인셀덤 김병애 대리점	서울 후 제1230호	김병애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230-28, 802호 (오류동, 예일아트빌)	폐업 ('24.7.4)		
2	영원한 공주	서울 후 제2506호	김병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1가길 7, 302호 (암사동, 벽담주택)	폐업 ('24.7.4)		
3	인셀덤 샤인셀	서울 후 제1825호	김애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76, 지하1층 (잠원동, 이미지업빌딩)	폐업 ('24.7.5)		
4	애기피부1호	서울 후 제2526호	안인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26길 23, 2층(신창동)	폐업 ('24.7.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03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법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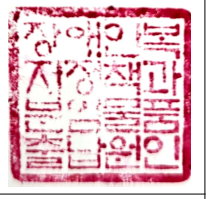
1. 직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2024.7.1.字)

2. 직인 등록 및 폐기 일자 : 2024.7.12.(일반회계) / 2024.7.12.(기금)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내용
가. 직인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장애인복지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0㎝ X 2.0㎝		2024.7.1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4.7.1.)
	장애인복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 X 1.8㎝			
	장애인복지과분임물품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 X 1.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 X 1.8㎝			

나. 직인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폐기일자	사유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장애인복지정책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0㎝ X 2.0㎝		2024.7.1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4.7.1.)
	장애인복지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 X 1.8㎝			
	장애인복지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 X 1.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정책과 기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 X 1.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05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922호(2024. 6. 27.),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단체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2. 처분 당사자 및 예정 내용
○ 당 사 자: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나눔은행	노원구 동일로 1063	장창영	2012. 7. 6.
2	햇살을 나르는 사람들	종로구 난계로25길 32, 405호	이계정	2011. 1. 26.
3	복나눔 사람들	중구 을지로17길 30, 205호	장재호	2010. 10. 21.
4	녹색한국사회복지국민연합	강남구 봉은사로49길 21-7	황지하	2009. 3. 2.
5	한국복지회	영등포구 경인로 882	양창부	2006. 2. 15.
6	이웃을 돕는 사람들	강북구 미아동 645-112	김동흔	2003. 3. 27.
7	SOS기금회	관악구 신림동 655-1	임현주	2002. 3. 20.
8	참전유공자회	강동구 풍성로 295, 1층	유천수	2000. 5. 25.
9	참사랑봉사회	종로구 혜화로10길 15-9	소규원	2000. 5. 18.

○ 처분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 말소사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 근거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정정요구 기간
○ 열람·확인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4. 7. 18.(목) ~ 2024. 8. 1.(목)

4.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7. 11.>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116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 등록사유 : 2024. 7.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 직인 등록일자 : 2024. 7.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내용
   가. 등록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 인 등록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복지실 고독대응과	고독대응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1.8㎝ X 1.8㎝		2024.7.1.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고독대응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 X 1.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 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260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2-132호(2022. 4. 21.)로 공고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구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2024~2029)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건수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국비	시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4	'25	'26	'27	'28	'29년 이후	
총계	23	278,683.8	2,371,802	2,371,802		1,085,778		1,286,024	222,730 (128,830)	628,651 (577,350)	322,917 (261,257)	314,550 (194,769)	93,577 (13,073)	789,377 (110,745)	
신규	해 당 없 음														
변경	23	278,683.8	2,371,802	2,371,802		1,085,778		1,286,024	222,730 (128,830)	628,651 (577,350)	322,917 (261,257)	314,550 (194,769)	93,577 (13,073)	789,377 (110,745)	

2.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 별첨
3. 관계도면 : 생략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02-399-9607)에 해당 시설의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시설부문	우선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24~2029)													실효시기	비고
		사업명(위치)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국비	시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투자	공공기여	'24	'25	'26	'27	'28	'29년 이후		
학교	총 계			278,683.8	2,371,802	2,371,802		1,085,778				1,286,024	222,730 (128,830)	628,651 (577,350)	322,917 (261,257)	314,550 (194,769)	93,577 (13,073)	789,377 (110,745)		
	1	잠원동 71-10	2023~2025	11,608.0	108,900	108,900		78,900				30,000	87,900 (9,000)	21,000 (21,000)						고
	2	흑석동 60일대	2023~2025	14,047.0	104,000	104,000						104,000	89,600 (89,600)	14,400 (14,400)					2028	고
	3	장지동 17 일원	2023~2026	11,030.0	75,033	75,033		44,803				30,230	45,230 (30,230)	19,422	10,381				2030	초
	4	마천동 613	2025~2027	6,903.0	53,005	53,005		53,005						31,879	15,844	5,282			2025	초
	5	반포동 1300 일원	2025~2027	12,277.0	326,230	326,230						326,230		291,437 (291,437)	26,095 (26,095)	8,698 (8,698)			2037	초
	6	반포동 1305 일원	2025~2027	10,615.0	274,714	274,714						274,714		250,513 (250,513)	18,151 (18,151)	6,050 (6,050)			2037	중
	7	증산동 131-98	2026~2028	12,681.3	57,668	57,668		36,535				21,133			11,534 (4,227)	34,600 (12,679)	11,534 (4,227)		2028	중
	8	북가좌동 80-36 일원	2026~2028	7,438.0	48,895	48,895		48,895							9,779	29,337	9,779		2032	초
	9	강일동 산22-101	2026~2028	11,194.0	54,415	54,415		24,000				30,415			35,215 (30,415)	14,400	4,800		2032	초
	10	강일동 53-1	2026~2028	12,000.0	57,312	57,312		24,707				32,605			37,546 (32,605)	14,825	4,941		2032	초
	11	개포동 산156-2 일원	2026~2028	9,740.0	22,805	22,805		21,475				1,330			5,625 (1,330)	12,885	4,295		2036	초
	12	자곡동 102 일원	2026~2028	10,624.0	73,570	73,570		7,759				65,811			51,363 (51,363)	16,655 (14,448)	5,552		2038	중

사업·시설부문	우선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24~2029)													실효시기	비고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규모 (㎡)	총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국비	시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투자	공공기여	'24	'25	'26	'27	'28	'29년 이후		
	13	한남동 665-9 일원	2026~2029	10,763.0	127,147	127,147						127,147			2,949 (2,949)	105,875 (105,875)	8,846 (8,846)	9,477 (9,477)	2029	초
	14	둔촌동 180-1 일원	2026~2029	16,124.9	137,261	137,261		43,139				94,122			98,435 (94,122)	8,628	12,942	17,256	2026	중
	15	휘경동 118-1	2027~	10,000.0	65,889	65,889		26,409				39,480				5,282	15,845	44,762 (39,480)	2028	초
	16	북아현동 544 일원	2027~	9,070.1	72,090	72,090		25,071				47,019				52,033 (47,019)	15,043	5,014	2028	초
	17	압구정동 423, 424	2029~	14,999.8	273,156	273,156		273,156										273,156		초
	18	천왕동 14-137	2029~	12,293.0	61,084	61,084		61,084										61,084	2026	고
	19	강일동 473-4 일원	2029~	11,000.0	51,742	51,742		20,447				31,295						51,742 (31,295)	2032	중
	20	마천동 590(223)	2029~	23,678.0	68,190	68,190		68,190										68,190	2028	중
	21	잠원동 61-6, 61-18	2029~	10,556.1	100,302	100,302		100,302										100,302		초
	22	일원동 737	2029~	12,291.6	120,612	120,612		120,612										120,612		초
	23	미아동 438 일원	2029~	17,750.0	37,782	37,782		7,289				30,493						37,782 (30,493)	2030	초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24-85호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9호(2008.11.20.)로 결정(변경)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충신동 179-12 외 2필지에 대하여 2024년 제2차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06.13.)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종 로 구 청 장

1.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 공동개발(지정/권장) : 변경
   - 결정도 참조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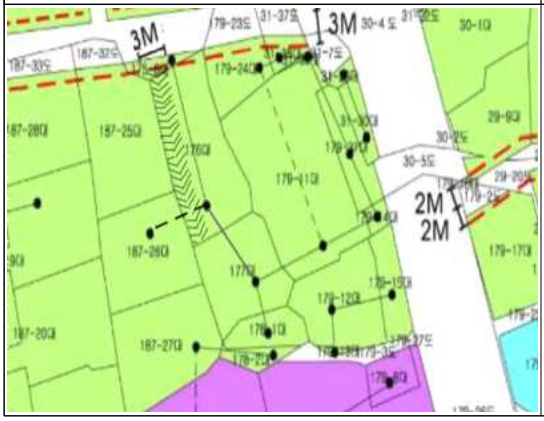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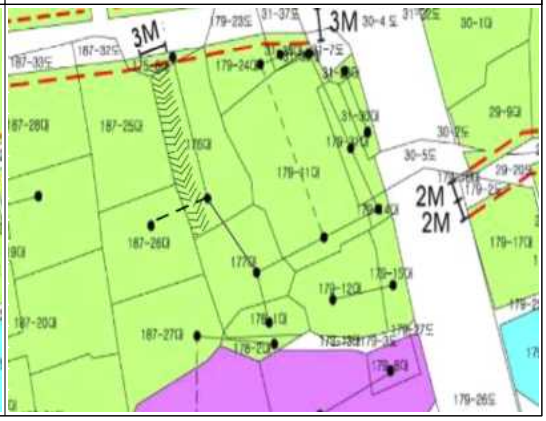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C-16	25	127.3	충신동 179-12	91.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79-13	2.3	
				충신동 179-15	33.4	
변경	C-16	25	125	충신동 179-12	91.6	공동개발 지정
				충신동 179-15	33.4	
	-	-	-	충신동 179-13	2.3	※현황도로 기능 유지를 위해 획지계획 변경(삭제)

※금회 변경사항 외 기재생략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종로구청 건축과(☎02-2148-281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 중랑구고시 제2024-70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주차장,문화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68-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유수지,주차장,문화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4년 제1차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국토계획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중 랑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現 용마지구대 시설노후화에 따른 근무여건 악화 여건을 개선코자 공공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계획시설(유수지,주차장,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도시계획시설(유수지,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유수지	유수시설	면목동 168-2번지 일대	68,624.9	감) 1,100	67,524.9	1972. 2. 9. (건설부공고 제9호)	중복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53,428.4	감) 900	52,528.4	1991. 8. 3. (市고시 제234호)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입체적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 치	규모 및 범위				최초결정일	비 고
			구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문화시설	면목동 168-2번지 일대	면적(㎡)	8,167	-	8,167	2023. 6. 8. (市고시 제2023-21호)	수평투영면적: 8,167.㎡ 연면적: 8,936㎡ (2층 8,167㎡/3층 769㎡)
			층수	2~3층	-	2~3층		

■ 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유수지	◦면적변경 감) 1,100㎡	◦용마지구대 신축부지 제척
	주차장	◦면적변경 감) 900㎡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및 사유서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공공청사	파출소	면목동 168-4	-	증) 1,100	1,100	-	

■ 건축범위 결정조서(공공청사)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신설	20%	50%	4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 결정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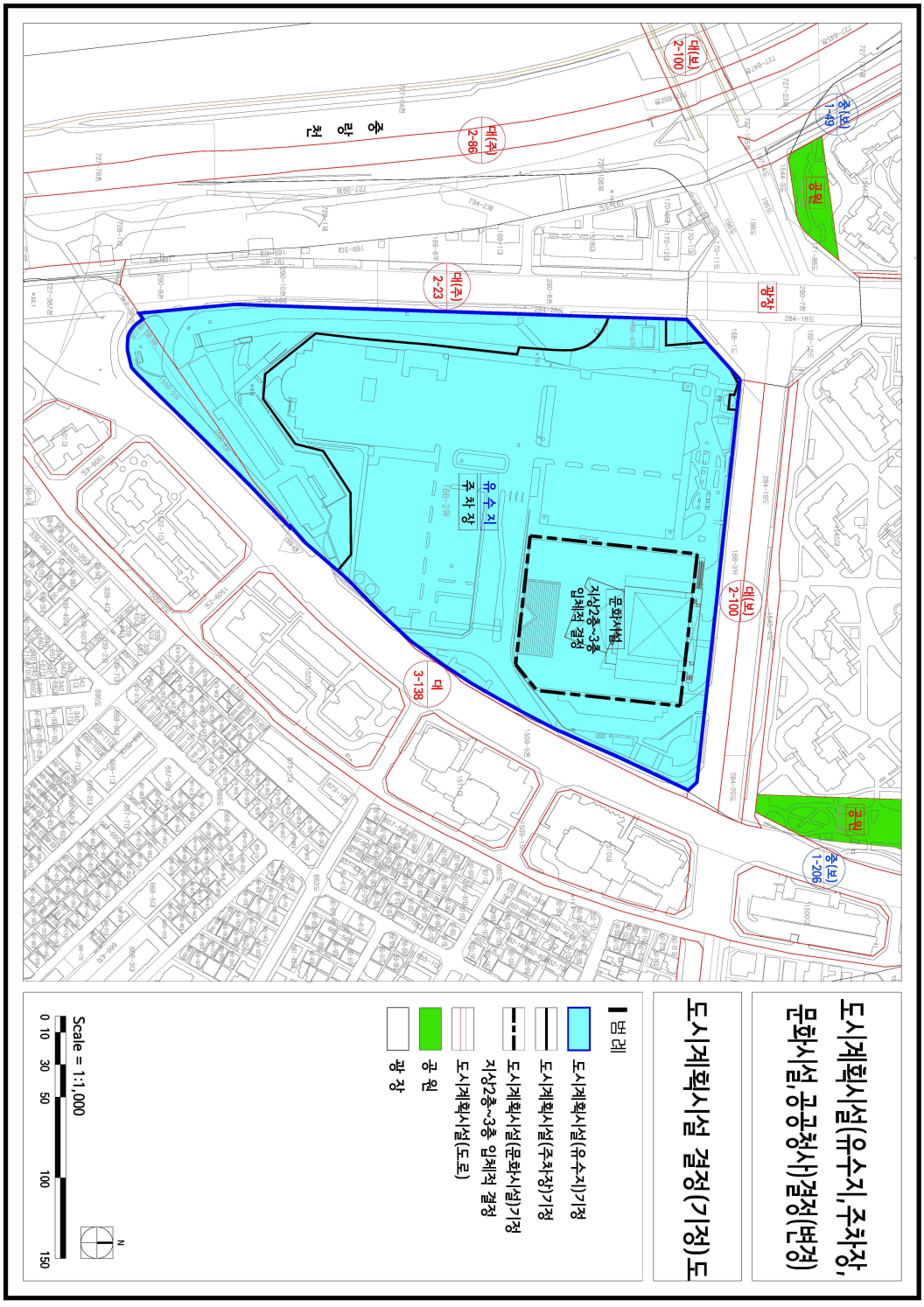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공공청사	▪ 신설 증) 1,100㎡	▪ 노후된 용마지구대 시설환경개선

다.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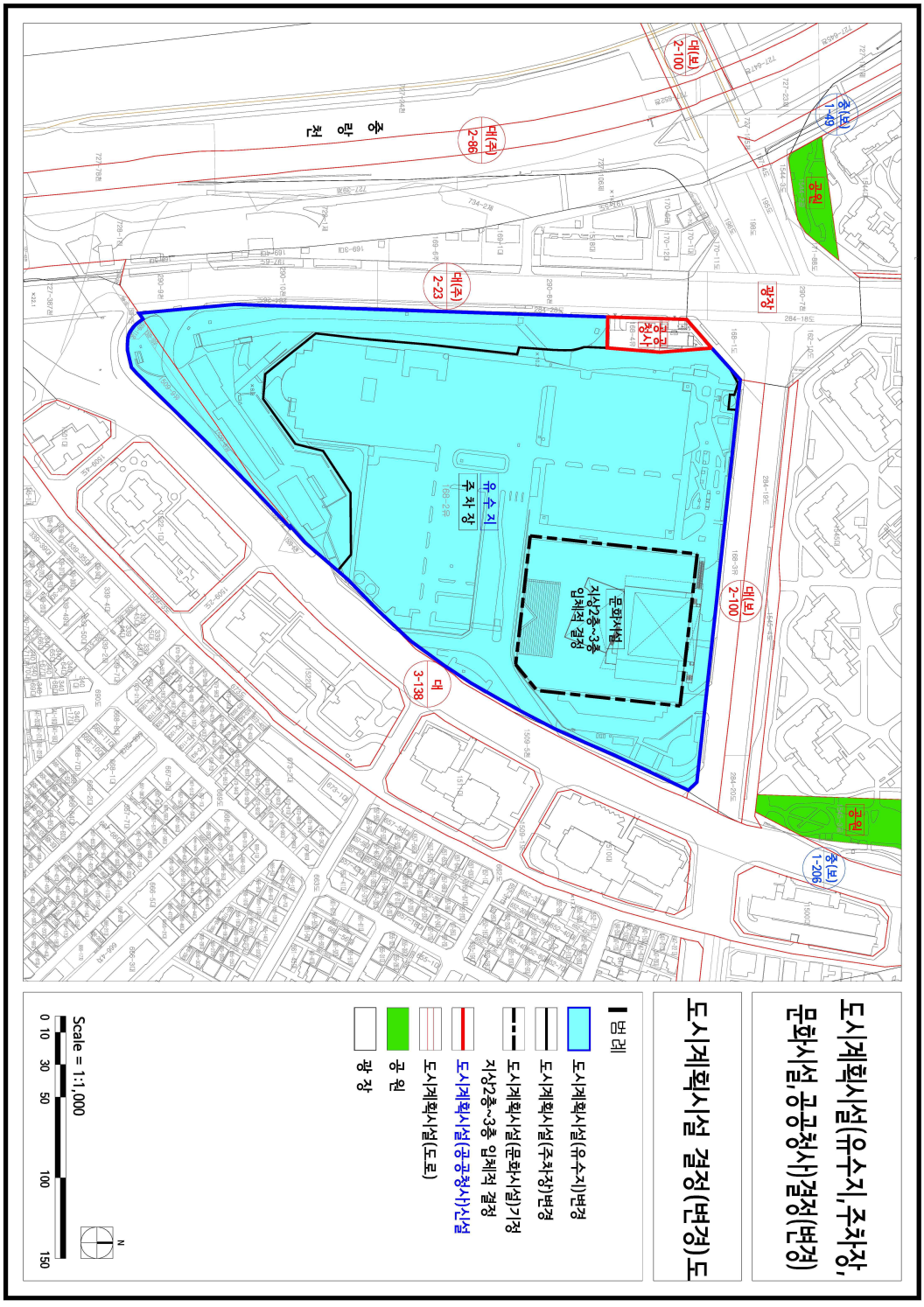
라.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중랑구청 도시계획과(☎2094-2173)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변경 –



◈ 양천구고시 제2024-6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공공청사,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천구고시 제2004-57(2004.7.26.)호로 결정되고, 양천구고시 제2004-72(2004.09.10.)호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공공청사,주차장)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양 천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주차장	양천구 신월동 129-6번지	1,993	-	1,993	2004.7.26.	공공청사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중복결정 변경 -면적: 1,993㎡ (변경 없음) -중복결정시설의 변경 :공공공지→공공청사	· 기결정된 주차장 시설의 면적변경 없이 공공공지 중복결정 시설을 공공청사 중복결정으로 변경

○ 공간시설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공공지	양천구 신월동 129-6번지	1,993	감)1,993	-	2004.7.26.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면적: 1,993m² (폐지)	· 신월1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하여 공공공지 시설 폐지

○ 공공 · 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공공청사	양천구 신월동 129-6번지	-	증)1,993	1,993	-	주차장 중복결정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면적: 1,993m² (신설) -주차장시설과 중복결정	· 기결정된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신월1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공공청사를 신설하고, 기결정된 주차장시설과 중복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건축물의 범위(건폐율, 용적률, 높이)결정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60% 이하	200% 이하	4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 관계도면: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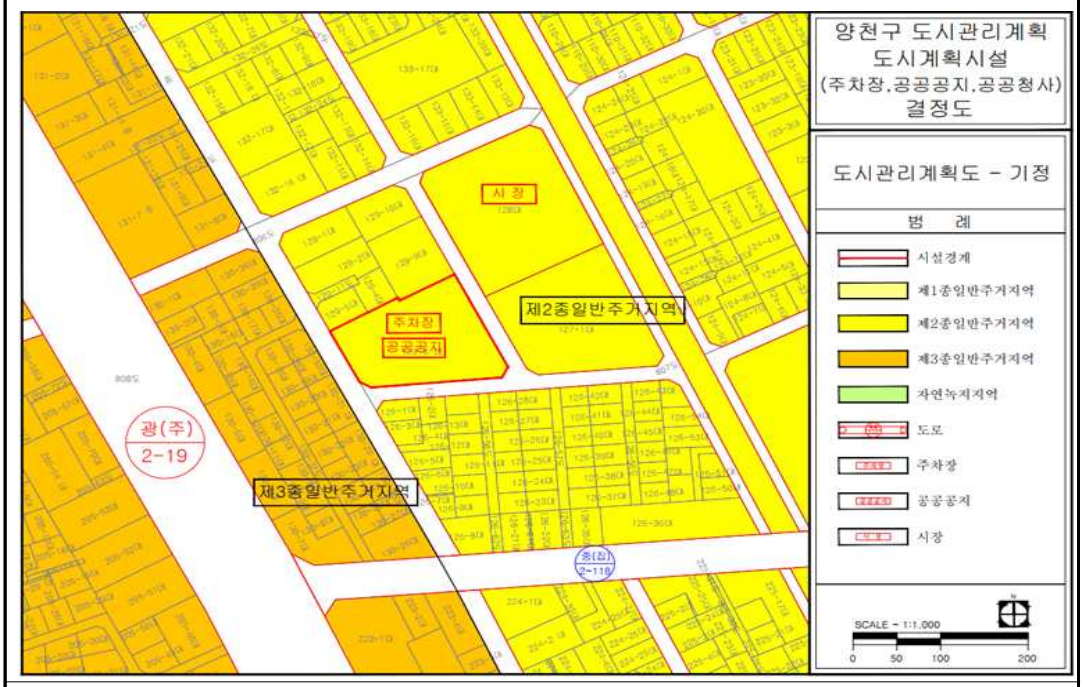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양천구 도시계획과(☎02-2620-350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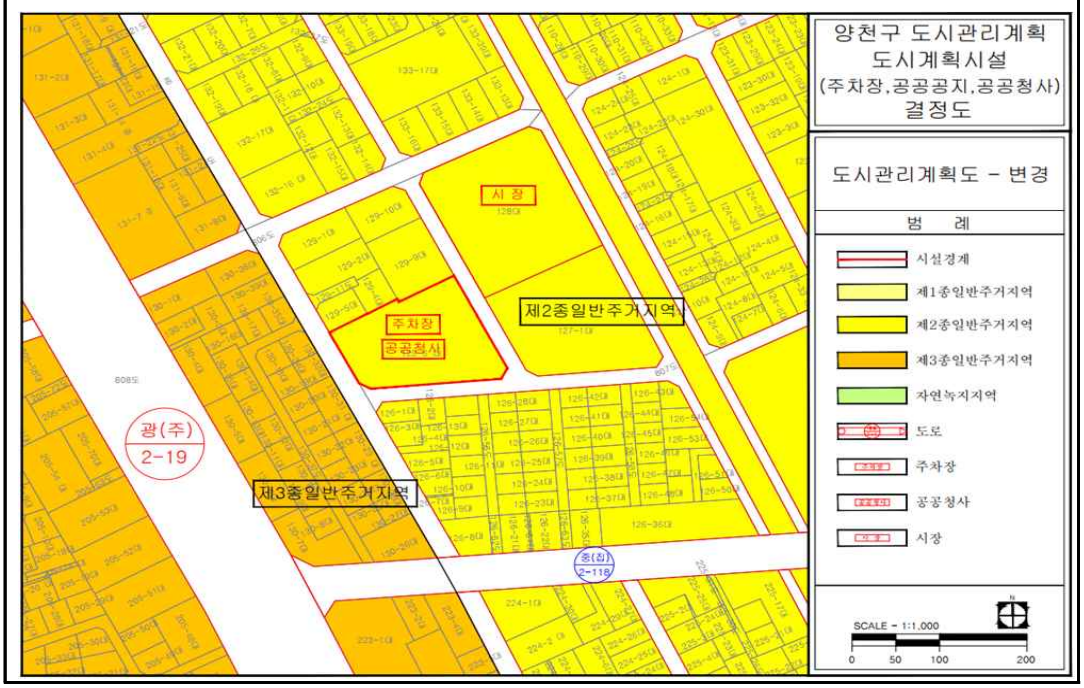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구로구고시 제2024-13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 문화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36호(1976.3.26)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38호(1976.12.2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9-7 일대 신구로 유수지에 대하여 2024년 제3차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4.4.1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문화시설, 도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구 로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구로구 구로동 689-7 일대 기결정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의 상부공간을 이용하여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문화시설, 도로)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07	33~143	주간선도로	10,330 (105)※	영등포구 양화동 10-2	금천구 독산동 706-1	자동차 전용도로	서부간선도로, 안양천	서고 제2014-69호 ('14.2.27)	-
변경	대로	2	107	33~143	주간선도로	10,330 (105)※	영등포구 양화동 10-2	금천구 독산동 706-1	자동차 전용도로	서부간선도로, 안양천	서고 제2014-69호 ('14.2.27)	문화시설(844㎡) 중복결정
신설	소로	3	1	2.5	특수도로	50	남부순환로	신구로 유수지	보행자 전용도로	구일로, 남부순환로	-	유수지(40㎡), 도로(129㎡) 중복결정

※ ( )는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내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대로 2-107 (서부간선 지하도로)	대로 2-107 (서부간선 지하도로)	- 중복결정 (문화시설 844㎡)	- 지상부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과 지하 도시계획시설 대로2류 중복결정
-	소로3-1 (보행자 전용도로)	- 특수도로 신설 (B=2.5m, L=50m) 특수도로 결정 면적 209㎡ 중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40㎡, 도시계획시설 도로 129㎡ 중복결정	- 동측 주거지와 유수지의 보행 연결을 위한 보도육교 조성에 따른 특수도로 신설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문화 시설	-	구로구 구로동 689-7	-	증)2,525	2,525	-	• 중복결정 - 지상: 문화시설 - 지하: 유수지, 대로2류

○ 문화시설 결정 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문화시설	- 시설 신설(2,525㎡)	-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대상지 일대 지역필요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조성
	- 문화시설 중복결정 (유수지 2,525㎡, 대로2류 844㎡)	- 유수지 방재기능 및 지하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대상지 상부를 활용하여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지하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대로 2류와 지상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중복결정

○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문화시설)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내용	60% 이하	400% 이하	4층 이하	

다.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유수지	유수시설	구로구 구로동 689-7 일대	52,800	감)593	52,207	'76.03.26 (서고 36호)	• 면적 변경 • 중복결정 - 지상: 문화시설, 체육시설 - 지하: 유수지

※ 유수지 내 중복결정되는 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00호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

○ 유수지 변경 사유서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구로유수지	- 면적 변경(감 593㎡)	- 현황에 따른 면적 변경
	중복결정 (문화시설 2,525㎡, 체육시설 25,029㎡, 도로40㎡)	- 유수지 방재기능을 유지하면서 대상지 상부를 활용하여 복합문화시설,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지하 도시계획 시설 유수지와 지상 도시계획 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중복결정 - 동측 주거지와 유수지의 보행 연결을 위한 보도육교 조성에 따른 특수도로 신설

※ 1976년 3월 서고 제36호에 의거 영등포구 구로동 689 일대 62,300㎡면적의 철산유수지로 최초 고시
※ 1976년 12월 서고 제338호에 의거 52,800㎡로 면적 변경고시
※ 이후 영등포구 구로동에서 구로구 구로동으로 변경, 철산유수지에서 신구로유수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고시자료 확인 불가
※ 신구로유수지 도시계획시설 경계는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 행정구역에 따라 분리되어 결정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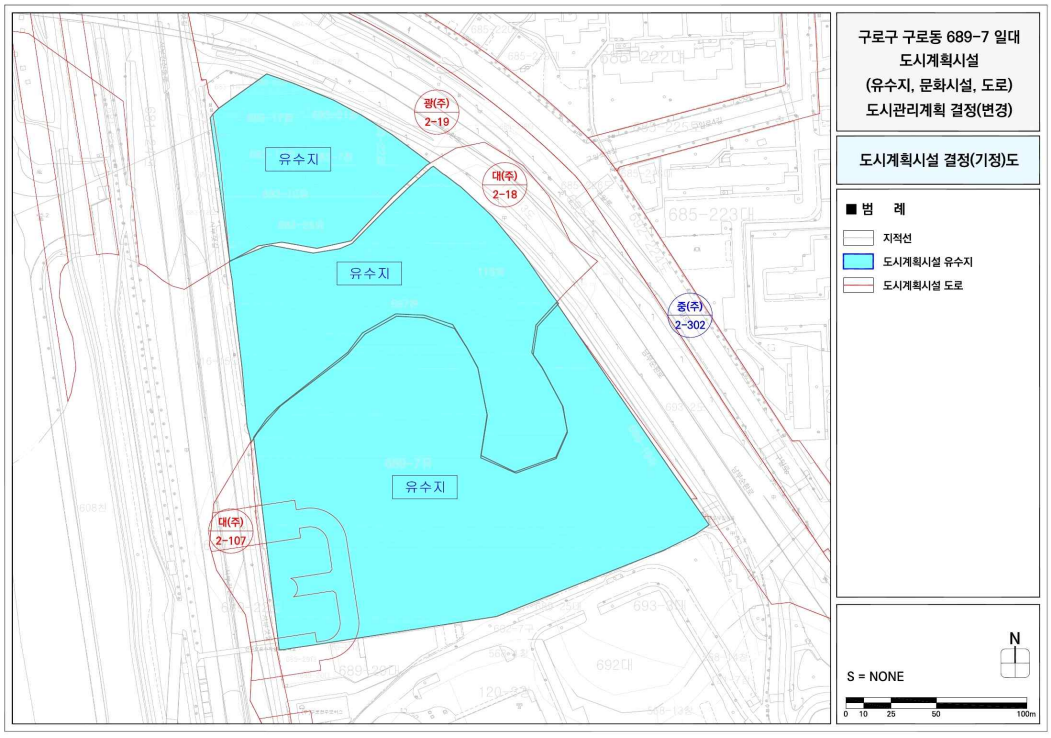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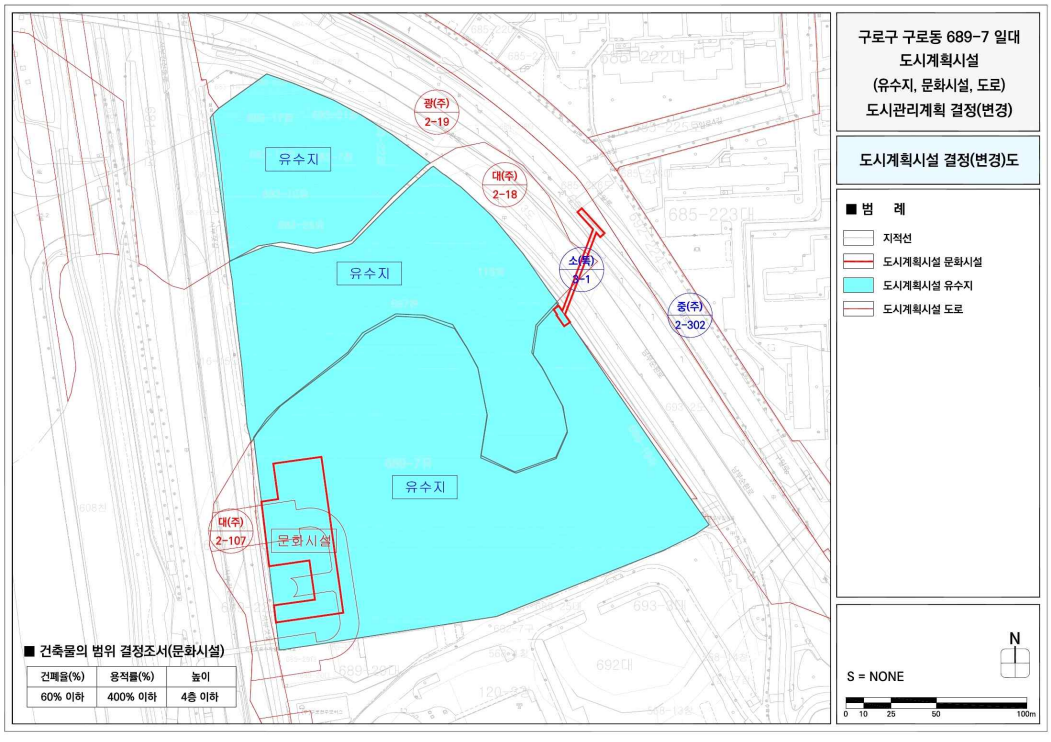
4.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08),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5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도면


구로구 구로동 689-7 일대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문화시설, 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범 례
지적선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주) 2-19
대(주) 2-18
중(주) 2-302
대(주) 2-107
유수지
유수지
유수지
S = NONE
N
0 10 25 50 100m


구로구 구로동 689-7 일대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문화시설, 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범 례
지적선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주) 2-19
대(주) 2-18
소(폭) 8-1
중(주) 2-302
대(주) 2-107
문화시설
유수지
유수지
유수지
■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문화시설)
건폐율(%) 용적률(%) 높이
60% 이하 400% 이하 4층 이하
S = NONE
N
0 10 25 50 100m

◈ 동작구고시 제2024-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총독부 고시 제1936-772호(1936.12.26.)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4-83호(2024.6.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91호(2020.06.18.), 동작구고시 제2022-185호(2022.12.8.), 동작구고시 제2022-208호(2022.12.29.), 동작구고시 제2023-51호(2023.5.4.), 동작구고시 제2024-7호(2024.1.28.)로 (변경)실시계획 하였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동작구 공고 제2024-1223호로 열람공고한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18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나. 사업의 규모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사업규모
상도동(대3-18)~(중3-35)	1,030	12	12,360	상도동 (대3-18)	상도동 (중3-35)	일부(보상 부분)

다.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 ~ 2025. 12. 31.까지　※ 사업기간 조정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별첨조서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동작구 상도동	264-135	대	30	30	이**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926번길 46, ***동 ****호 (북변동, 풍년마을)				
2	동작구 상도동	264-148	대	17	17	주식회사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25길 15 **호				
3	동작구 상도동	264-149	대	7	7	주식회사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25길 15 **호				
4	동작구 상도동	264-136	대	43	43	주식회사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25길 15 **호				
5	동작구 상도동	264-138	도로	76	76	이**	동작구 성대로 *** (상도동)				
6	동작구 상도동	244-382	대지	1	1	차**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71번길 39, ***동 ****호 (송내동, 뉴서울아파트)				

□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상도동 264-138	주택	시멘트블록조	106	37	이**	동작구 성대로 *** (상도동)				상도동 264-186
2	상도동 244-339	점포	시멘트블록조	66	41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21길 * (상도동)				상도동 244-291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11-38, *동 ***호 (홍제동, 세희아트빌)				

◈ 서초구고시 제2024-135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64호(1978.03.29.)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75호(1979.08.22.)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74호(2020.05.07.)로 실시계획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105호(2022.05.06.)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한남I.C ~ 양재I.C 만남의 광장간 6.9㎞)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잠원동 6-3번지 외 9필지(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내용(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나) 사업의 명칭: 경부고속도로변 녹지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 토지보상
  3) 사업의 면적: 2,519.39㎡⇒2,837.4㎡
    가) 면적의 변경 : (기정)2,519.39㎡ (변경) 2,837.4㎡
    나) 변경사유 : 편입면적의 기재 오류 정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변경없음)

나. 고시방법: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합 계			10,124.4	2,837.4						
1	잠원동 6-3	대	130	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6(잠원동, 더리버사이드호텔)	주식회사가우**		주식회사국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근저당권설정
2	잠원동 7-1	대	1,594	1,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6(잠원동, 더리버사이드호텔)	주식회사가우**		주식회사국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근저당권설정
3	양재동 산70-4	임	7,832	682	캐나다 온타리오주 버링톤 크로스윈즈 코트2***	신충*	3,575/7,832			
					캐나다 온타리오주 버링톤 크로스윈즈 코트2***	신재*	3,575/7,832			
					서울시	서울시	682/7,832			
4	양재동 산69-3	임야	172	3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9가길 36, 1층(사당동)	**개발주식회사				
5	양재동 192-2	구	23	23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216-*	김경*		박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882-7	근저당권설정
								정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16-38	근저당권설정
6	양재동 산71-34	임	10	10	캐나다 온타리오주 버링톤 크로스윈즈 코트 214*	신충*	1/2			
					캐나다 온타리오주 버링톤 크로스윈즈 코트 214*	신재*	1/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7	서초동 1681-3	대	1.8	1.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아파트 1동 50*호	양낙*	21.15/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1-6 삼호아파트 13-10*	이응*	19.523/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아파트 4-30*	백창*	11.388/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아파트 4-10*	김창*	11.388/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아파트 2-40*	최창*	15.943/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아파트 2-10*	조규*	15.943/3561.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2-7 원흥아파트 50*	심외*	11.388/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아파트 1-10*	지태*	21.15/3561.2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329번길 7*	김영*	15.943/3561.2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 13동 50*호	김규*	15.943/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아파트 2-90*	김정*	15.943/3561.2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5-10 신반포16차아파트 119-71*	김성*	11.388/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아파트 1-20*	김수*	20.824/3561.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1 삼익아파트 3-110*	윤재*	11.388/3561.2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5*(서초동)	삼익건설아파트재건축조합	3299.6/356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06, 105동 170*호(주엽동,강선마을)	이도*	42.298/3561.2			
8	서초동 1311-3	대	269.2	269.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0-100*	강성*	327240/3079440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파트 4동 7*호	금홍*	386820/307944000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97 대림2차아파트 102동 30*호	김건*	44631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6-120*	김동*	44631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8-40*	김동*	386820/307944000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군자리길 4*	김방*	386820/307944000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927-*	김영*	446310/307944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4 롯데아파트 7동 50*호	김예*	112400/30794400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51 한신아파트 5-41*	김우*	223155/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08, 3동 90*호(서초동, 삼호아파트)	김종*	257958/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3-120*	김종*	112400/3079440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3-120*	김종*	112400/307944000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3층(수원지점)	가압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8-140*	김태*	386820/307944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99-*	김형*	386820/30794400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63 롯데아파트 111-180*	라애*	32724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0-100*	맹주형	32724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85 7동 80*호(서초동 진흥아파트)	박경*	16362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37 1동 100*호(서초동, 신동아아파트)	박경*	163620/307944000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7 대림아파트 6-60*	박귀*	327240/307944000			
8	서초동 1311-3	대	269.2	269.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10*	박사*	38682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7길 52-1*(서초동)	박성*	327240/307944000	주식회사한국스텐다드차타드은행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소매여신운영부)	근저당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926번길 78-*(와부읍,레스토랑파크)	박운*	327240/307944000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게이트시 칼몬트에비뉴 1000*	박태*	38682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5-111*	서재*	327240/307944000			
					서울시 도봉구 창동 38 주공아파트 1701동 100*호	석손*	32724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7 유원서초아파트 102-11*	소병*	223155/3079440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7 유원서초아파트 102-11*	손경*	223155/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0 삼호아파트 9-110*	신창*	386820/307944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9-60*	안우*	252900/307944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4 강촌마을 803-90*	우경*	223155/307944000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201-20*	윤태*	327240/307944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4 롯데아파트 7-50*	이경*	168600/307944000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19 703동 170*호(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이창*	38682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08 3동 90*호(서초동 삼호아파트)	이현*	247842/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8-70*	임미*	1080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20*	장심*	20430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5 진흥아파트 3-40*	전광*	38682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110*	전유*	50580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2-80*	정상*	44631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4-70*	정지*	505800/307944000			
8	서초동 1311-3	대	269.2	269.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18-*	조성*	327240/307944000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495 장미마을 삼성래미안2차아파트 215-190*	조용*	386820/3079440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21 주공아파트 234-50*	조철*	505800/307944000			
					인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15*	최경*	446310/307944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9-60*	한나*	252900/307944000			
					미합중국 뉴욕 1050 이스트 80 핫스테일아베뉴아파트 20*	황영*	446310/307944000			
					서울시	서울특별시	297713070/307944000			
9	서초동 1311-6	대	55.8	5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0-100*	강성*	32724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0-150*	권영*	257877/307944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 삼호아파트 2-80*	권태*	446310/307944000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97 대림2차아파트 102동 30*호	김건*	44631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2-90*	김기*	446310/307944000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군자리길 4*	김방*	386820/307944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4 롯데아파트 7동 50*호	김예원	112400/30794400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51 한신아파트 5-41*	김우*	223155/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08, 3동 90*호(서초동, 삼호아파트)	김종*	257958/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3-120*	김종*	11240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3-120*	김종*	112400/307944000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3층(수원지점)	가압류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8-140*	김태*	386820/307944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99-*	김형*	386820/30794400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63 롯데아파트 111-180*	라애*	327240/307944000			
9	서초동 1311-6	대	55.8	5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0-10*6	맹* 형	32724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85 7동 8*4호(서초동 진흥아파트)	박* 희	16362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37 1동 10*9호(서초동, 신동아아파트)	박* 희	163620/307944000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7 대림아파트 6-6*7	박* 연	32724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1*3	박* 임	386820/30794400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926번길 7*-0(와부읍,레스토랑파크)	박* 좌	327240/307944000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게이트시 칼몬트 에비뉴 100*9	박* 경	38682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5-11*1	서* 명	327240/307944000			
					서울시 도봉구 창동 38 주공아파트 1701동 10*1호	석* 숙	32724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0 삼호아파트 9-11*7	신* 수	386820/307944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4-*	안* 숙	386820/307944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9-6*1	안* 석	252900/3079440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4 강촌마을 803-9*1	우* 은	223155/307944000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201-2*9	윤* 경	327240/307944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4 롯데아파트 7-5*4	이* 희	168600/307944000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62 주공아파트 401동 2*2호	이* 섭	327240/307944000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19 703동 17*8호(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이* 하	38682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08 3동 9*2호(서초동 삼호아파트)	이* 종	247842/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8-7*8	임* 건	1080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2*3	장* 덕	20430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11*2	전* 열	505800/307944000			
9	서초동 1311-6	대	55.8	5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2-8*4	정* 우	446310/307944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4-70*	정* 태	505800/3079440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18-*	조* 재	327240/307944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2-120*	조* 준	386820/3079440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21 주공아파트 234-5*5	조* 주	505800/307944000			
					인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15*	최* 숙	446310/307944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9-6*1	한* 영	252900/307944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4*8	현* 상	446310/3079440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미합중국 뉴욕 1050 이스트 80 핫스테일아베뉴아파트 2*9	황* 희	446310/307944000			
					서울시	서울특별시	297831213/3079440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133 동작삼성래미안 105-20*1	강* 매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11*5	강* 수	224838689760/8085 28792984800			
					경기 용인시 백암면 가좌리 *9	고* 남	427193510544/8085 2792984800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60-*6	고* 민	427193510544/8085 2792984800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쿠 토도로키 1-34-16-3*3	고* 란	16435667267232/80 8528792984800			
					경상북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1가 613 신세계타운 10-4*1	권* 호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2 정든마을 809-1*4	권* 숙	71198918424/80852 8792984800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281-176 삼환맨션 가-2*2	권* 락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2-1 우성아파트 21-10*2	김* 란	66965712648/80852 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2 극동아파트 14-2*7	김* 숙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52-105 동양빌라 에이동 3*2호	김* 하	71198918424/80852 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6*2	김* 일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3-2*6	김* 호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80*	김* 영	237329728080/8085 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13*	김* 기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0-3 신반포8차아파트 312-61*	김영	142397836848/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9 주공아파트 317-20*	김* 숙	854387021088/8085 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1-11*2	김* 숙	284795673696/8085 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4 삼호아파트 9-13*4	김* 진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15-3 영광연립 10*	김* 만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9 한국아파트 102-4*2	김* 희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경기 광명시 하안동 13 고층주공아파트 907-90*	김* 순	355994592120/8085 2879298480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11 4*5호	김* 익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1*09	김* 성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28-3 군인아파트 가-3*4	김* 민	142397836848/8085 28792984800			
					서울 중랑구 목동 2*9-1	김* 우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3-4*1	김수*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2-3*2	김수익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3*7	김* 인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6*5	김* 옥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3-1*1	김* 월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0-24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114-90*	김* 현	356377382004/8085 2879298480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아파트 59-40*	김* 애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8-*8	김* 철	284795673696/8085 28792984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시 도봉구 번동 98-*	김* 숙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3-40*	김* 칠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82 홍제한양아파트 106-10*	김* 미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전북 군산시 나운동 401 삼성아파트 103-160*	김* 수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경북 경산군 진량면 부기리 126-6 에덴타운 50*	김* 수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6 신동아아파트 702-50*	김* 덕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일원동 735 가람아아파트 111-30*	김* 봉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60-4 반포미도아파트 306-110*	김* 웅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8-100*	김* 완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5-*	김* 희	189863782464/8085 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57 동아아파트 107-14*3	김* 현	142397836848/8085 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기 미금시 호평동 133-*	김* 건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6-1*5	김* 문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도봉구 창동 26 동아아파트 6-4*7	김* 배	669657126480/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4 주공아파트 334-1*7	김* 집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성동구 광장동 453-1 삼성아파트 나동 6*2호	김* 정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6 현대아파트 101-50*	김* 연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1-110*	김* 림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경기 의왕시 오전동 21 진달래아파트 103-50*	나* 옥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1*1	남* 란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70*	남* 환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88-*	대한예수교장로회	2849487896496/808528792984800			
					광주 북구 문흥동 996-3 라인아파트 102-60*	마* 희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83-13 동인빌라 비-10*	문* 례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평택시 합정동 829 주공아파트 308-40*	민* 연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8-2*	민* 기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동 91*호	민* 식	1138417115016/808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4 개포한신아파트 6동 70*호	박* 일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936 은빛마을 606-10*	박* 이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일본국 대판시 중앙구 삼노궁 중앙 1-19-*	박* 수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110*	박* 호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710 경남교수아파트 104-50*	박* 숙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1-8 서초빌라 20*호	박* 근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5동 80*호	박* 욱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21동 90*호	박* 훈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5 사당우성아프트 204-50*	박* 섭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1동 100*호	박* 숙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5-13 신도곡아파트 가동 20*호	박* 민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1-6 삼호아파트 12동 80*호	박* 선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 994-110*호	박* 웅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5 무지개아파트 8-10*	박* 원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경주시 황남동 318-*	박훈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80*	배* 순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재*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2 신반포6차 아파트 216동 215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0 하얀마을 501-90*	백* 순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285-8 럭키우아아파트2동 120*호	백* 기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5*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3701578178280/808 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동 80*호	서* 원	142397836848/8085 28792984800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93-27*	서* 임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 경남아파트 3동 80*호	서* 호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대전시 서구 관저동 990 대자연마을 아파트 108-170*	송* 호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3-80*	신* 덕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18-1*	신* 자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1-10*	신* 수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8-50*	신* 우	427193510544/8085 28792984800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203-*	신* 수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4 현대아파트 102-120*	신* 철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4 현대아파트 213동 10*호	심* 민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5동 20*호	안* 미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미합중국 11355 뉴욕프루씽 62 에브뉴샌포드 144-6*	안* 주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2-80*	안* 균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1-3*	양* 식	142397836848/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50*	양* 성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4 현대아파트 202-40*	염* 순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2-80*	오* 영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27-13 로얄빌라 에이-30*	왕* 자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95-8 역삼한신아파트 1동 30*호	원* 주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1동 20*호	유* 하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86-1*	유* 열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40*	유* 호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경기 구리시 토평동 955 영풍아파트 107-130*	유* 희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70*	유* 례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성동구 옥수동 250 옥수삼성아파트 108-140*	유* 선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31-20*	유* 주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강동구 허일동 304-*	윤* 갑	1138417115016/8085 28792984800			
					서울 광진구 중곡동 294-10 동산빌라 30*	윤* 기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0-24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114-90*	윤* 은	356377382004/8085 28792984800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320 동아아파트 13-2*5	윤* 성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2동 10*7호	이* 준	426906418131/8085 28792984800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5-*	이* 윤	126575854976/8085 2879298480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629 대우사원주택 3동 10*호	이* 철	1138417115016/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4-1 2*1호	이* 년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0-68 한강맨션 34-1*3	이* 희	1138417115016/8085 28792984800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아파트 371-21*	이* 원	1138417115016/8085 287929848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27 양지마을 304-1*3	이* 분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26 삼성래미안아파트 204-14*3	이* 수	1138417115016/8085 287929848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 9-4브럭 미리내마을 935-1*03	이* 주	1138417115016/8085 2879298480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511 한보미도맨션 206-12*2호	이* 미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6-1 4*1호	이* 형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5-*	이* 윤	126575854976/8085 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8-1*	이소* 명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13 고층주공아파트 907동 90*호	이* 숙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6-4 금호아파트 다-21*	이* 자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아파트 16동 90*호	이* 재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3*0	이* 훈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동 13*1호	이* 희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동 2*7호	이* 섭	427193510544/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0-1*	이* 택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1동 8*3호	이* 덕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78-4 삼성아파트 106-20*2	이* 주	349705867392/8085 28792984800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7 우성아파트 5-60*	이* 계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4122 샌프란시스코34가아베뉴 15*3번지	이* 모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1*07	이* 찬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인천 계양구 효성동 200-1 현대아파트 402동 70*호	이* 숙	427193510544/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6-7*0	이* 아	355994592120/8085 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2동 10*7호	이* 은	284604278754/8085 28792984800			
					서울 도봉구 쌍문동 122-2*	이* 순	427193510544/8085 2879298480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66-1 거성고속맨션 2차 10*1호	이* 희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6-7*0	이준*	355994592120/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2 신반포6차아파트 216-40*	이* 기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지구아파트 110-30*	이* 현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강남구 논현동214 논현베르빌 101-3*6	이* 남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569 진흥아파트 5동 50*호	이* 휘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6-13 목화하이츠빌라 가-10*	이* 부	219885480000/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5 진흥아파트 2-10*	이* 철	142397836848/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80*	이* 석	474659456160/8085 28792984800			
					제천시 의림동 12-1*	이* 우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강남신용지원단)	가압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5-*	이* 윤	126575854976/8085 28792984800			
					사울 마포구 도화동 61-*	임* 철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12*	임* 철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83 한강맨션 24동 10*호	임* 영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60 한강맨션 13동 50*호	임* 일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2-4*0	임* 근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1-130*	장* 숙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송파구 신천동7 장미아파트 2동 10*호	정* 순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3-37 40*호	장* 희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강서구 화곡동 869-3*	장* 자	142397836848/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10*	장혁	427193510544/8085 28792984800			
					서울 도봉구 쌍문동 199-1 금호아파트 1동 90*호	전* 숙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 양천구 신월동 987-1 신월시영아파트 18-120*	정경*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0-4 세종아파트 110*	정영*	142397836848/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7-20 파크빌 30*	정용*	142397836848/8085 28792984800	서초삼익아파트재건축조합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312 삼익아파트 구성서	가처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6-70*	정재*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154-2 우성아파트 110-120*	정정*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부산 사상구 주례동 75*	정지*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7-39 30*호	정진*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성동구 마장동 817 삼성아파트 103-60*	정창*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2*	정혜*	854387021088/8085 28792984800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70 반도아파트 2동 90*호	조경*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62 현대아파트 56동 20*호	조상*	149892459840/8085 28792984800			
					미합중국 뉴욕주 10583 수카스데일시 게이로로우드 17*	조상*	224838689760/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0동 120*호	조선*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미합중국 뉴욕주 13045 코드란드시 크레스크우쎈타*	조정*	37473114960/80852 8792984800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 동현아파트 6동 20*호	조정*	37473114960/80852 8792984800			
					서울 강동구 명일동 29-5 삼익아파트 509동 90*호	조정*	37473114960/80852 8792984800			
					서울 동작구 상도동 299-5*	조종*	284795673696/8085 28792984800			
					경기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373-*	조철*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2동 100*호	조태*	426906418131/8085 28792984800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7*	조형*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14-1 원미동풍림아파트 102-15*4	주덕*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 노원구 상계동 652 주공아파트 1103-10*3	주병*	284795673696/8085 28792984800	㈜동원에프앤비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반포동 18-1 주공아파트 218-10*	주영*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남 통영시 정량동 1125-7 프린스빌리지-30*	지건*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62-10 신미주아파트 2동 180*호	지영*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원지동 238-1*	차종*	142397836848/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171*	채맹*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79-2*	채민*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11-130*	천호*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883-1 대진수지2차아파트 102-100*	최길*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 우성아파트 223동 30*호	최립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 삼호가든맨션 11-30*	최병*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서울 은평구 녹번동 35-3*	최인*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5-17 삼익아파트 101-50*	최인*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잠원동 58-16 신반포10차아파트 315-120*	최재*	142397836848/8085 28792984800			
					미국 워싱톤주 98040 머셔아일랜드 사우스이스트풀81가 2949번지 아파트 시-*	최정*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31-70*	한기*	1138417115016/808 528792984800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9-2*	한익*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2-1*	한자*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928 현대아파트 106동 50*호	한호*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8-101 천명빌라 10*호	한희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2 극동아파트 5동 50*호	허* 형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10	서초동 1312-2	대	36.6	36.6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1-2*	허복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0-12 현대연립 비동 20*호	허인*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2-2*	현설*	401794275888/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81*	현영*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3-303	홍관*	711989184240/8085 28792984800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1-2*	홍남*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신용보증기금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동대문재기지원단)	가압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0-4 세종아파트 60*	홍남*	142397836848/8085 287929848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25-10 30*호	홍* 철	142397836848/8085 28792984800			
					경남 창원시 신촌동 23-5 동성빌라아파트 1동 20*호	홍상*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7-90*	홍성*	1138417115016/8085287929848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773 반포아파트 61동 40*호	홍영*	569591347392/8085 28792984800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285-13 현주프라자 40*	홍희*	284795673696/8085 2879298480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의 종류및내용
					수원시 권선동 구운동 462 삼환아파트 5-100*	황선*	71198918424O/80852879298480O		
					서울시	서울특별시	80852879298480O/80852879298480O		

◈ 서초구고시 제2024-14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건설부고시 제53호(1980.2.22.)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지하철3호선), 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1981.7.30.)로 최초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2022-47호(2022.3.3.) 및 서초구고시 제2022-123호(2022.6.16.)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잠원역),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685호(1995.5.20.)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28호(2022.6.16.)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 초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잠원로4길이 확장될 예정으로 현재 잠원로4길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환기구 시설이 도로확장시 차도에 저촉되어 이를 이설하고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철도	고속철도	벽제~수서간	41.81	-	건설부고시 제53호 (1980.2.22)	도로확장에 따른 환기구 이설
변경	철도	고속철도	벽제~수서간	41.81	-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고속철도 (지하철3호선 본선)	• 환기구 이설에 따른 철도 변경 - 면적 218.7㎡ 증가 (당초 면적의 0.06% 변경)주)	•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도로공사)에 따라 잠원동 100-1번지 일대 본선 구간 내 환기구(#3-130)가 도로에 저촉되어 차량 및 보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하고자 철도를 변경하는 사항임

주) 지하철3호선 본선구간은 면적이 고시되지 않아 잠원역 본선구간의 최소 폭원 9.4m로 산출한 개략적인 면적(393,014㎡)을 기준으로 0.06% 변경

2)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3호선 잠원역)	서초구 잠원동 93-17 일대	4,386.8	증)25.2	4,412.0	서울시고시 제287호 (1981.07.30)	환기구 이설 및 선형 조정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시철도 (지하철3호선잠원역)	·환기구 이설 및 도시계획시설 선형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 면적 25.2㎡ 증가 (당초 면적의 0.57% 변경)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잠원역 환기구(#3-133)를 이설하고, ·환기구(#3-131) 구조물과 도시계획시설(철도) 선형이 불일치하여 선형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임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㉚	공원	소공원	잠원동 60-3일대	2,529.2	-	2,529.2	서울시고시 제1685호 (1995.05.20)	환기구 일부 중복결정 (89.2㎡)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㉚	공원 (소공원)	·환기구 이설에 따른 중복결정 - 면적 89.2㎡	·잠원동 100-1번지 일대 지하철3호선 본선 내 환기구(#3-130)가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도로공사)으로 인해 도로에 저촉되어 공원변으로 이설하면서 시설 일부가 공원과 중복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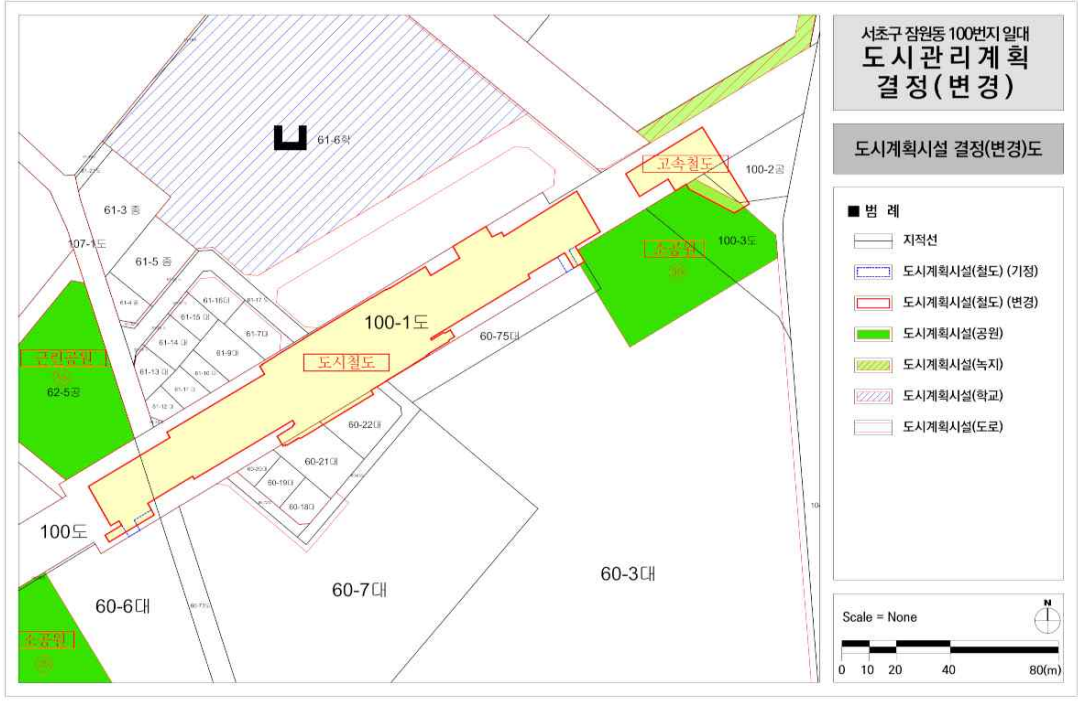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2)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강남구고시 제2024-106호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4호(2009. 7. 2.)로 결정(변경) 고시된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강 남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 계획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역삼동 700-5 외 1필지에 한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조서

○ 용적률 계획(기정)

구 분		계획내용		
		기 준 용적률	허 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220% 이하	250% 이하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가중치: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α토지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α건축물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상업 지역	일반상업	600% 이하	800% 이하[1]	•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2] - 대지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8항

주1) 일반상업지역의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에 따른 허용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09.9.29,신설)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함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2 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따름

※ 용적률 계획기준 변경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함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계획 내용		
		기 준 용적률	허 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220% 이하	250% 이하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가중치: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α토지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α건축물이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2] - 대지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 허용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8항 • 친환경 항목 적용하는 경우[3] =허용용적률+법적용적률×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역삼동 700-5 외 1필지에 한하여 적용
상업 지역	일반상업	600% 이하	800% 이하[1]	

주1) 일반상업지역의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에 따른 허용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09.9.29,신설)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함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3) 친환경 인증 완화비율(β)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구분	ZEB1	ZEB2	ZEB3	ZEB4	ZEB5	에너지 효율 1++	에너지 효율 1+
완화 비율	15%	14%	13%	12%	11%	6%	3%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완화비율	5%	10%	15%

※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2 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따름
※ 용적률 계획기준 변경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함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역삼동 700-5 외 1	• 상한용적률 계획 변경	•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3423-610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강동구고시 제2024-1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2009. 2. 12.)호로 집단취락지구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7(2013. 5. 16.)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강동구 공고 제2024-654(2024. 3. 21.)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 의견청취 공고한 '양지2마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 및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강동구 암사동 281-4~281-6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명칭: 양지2마을 도로개설
라.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폭 4m, 연장 57m
마. 사업시행자: 강동구청장(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바. 사업기간: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따로 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양지2마을 도로개설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암사동 280-1	909	3.7	도	1	강동구청	서울특별시 성내로 25				
2	암사동 281-4	271	57.5	전	1	오*길	서울특별시 성동구 둘레**길 *,1**- 60*				
3	암사동 281-3	291	52.7	대	1	박*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길 9*-**				
4	암사동 281-7	241	2.2	대	52/73	윤*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가길**, 60*				
					21/73	윤*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길**-10, 20*				
5	암사동 281-2	423	74.8	답	1	이*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길 5, **				
6	암사동 281-6	515	88.7	전	1	구*옥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길 9*	강동** **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	근저당	

수용 및 사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 양지2마을 도로개설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암사동 281-3	담장	20m*1.8m	1	1	박*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길 9*-**				
		대문	270m*200m	1							
2	암사동 281-7	담장	4m*1.8m	1	52/73	윤*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가길**, 60*				
		조립식건물	0.6㎡	1	21/73	윤*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길**-10, 20*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24-79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

1. 내무부고시 제413호(1958.2.15.)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9-50호(2019.4.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124, 광장동 5-126 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칭 :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
다. 사업면적 및 내용
  1) 면적 : 8,665m² (공원면적)
  2) 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광진구청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0. 12. 31.
바. 관계도서 : 생략(광진구청 공원녹지과 비치 ☎02-450-7776)

◈ 성북구공고 제2024-1125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3-194호(2023.12.28.)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된【성북동 210-57번지 외 3필지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2차)】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동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 하며,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6조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합니다.

2.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2241-2643)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8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나.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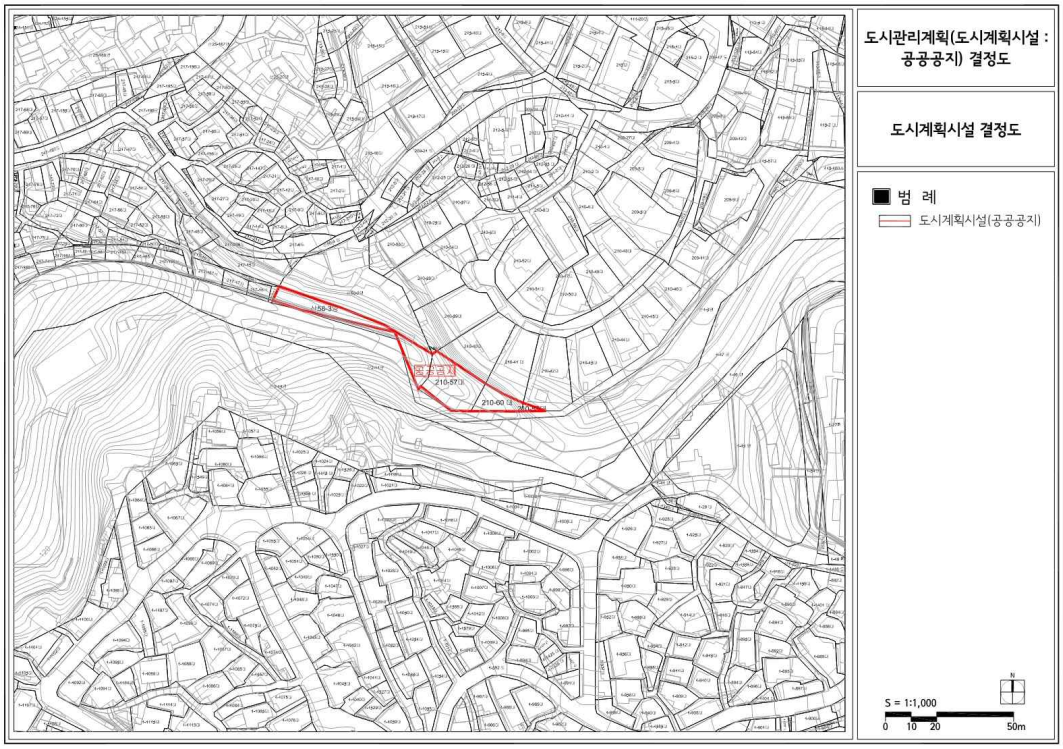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시행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2차)	성북동 210-57번지 외 3필지	994㎡	2023-12-28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3-194호)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성북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마.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 붙임
바. 열람개요
-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성북구청 7층 문화체육과 (☎ 02-2241-2643)

사. 관계서류 :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서류(도서)를 열람기간 중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 의견서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도 】



토 지 조 서

사 업 시 행 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 업 의 명 칭 :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권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성북동 210-57	대	337	326	서울특별시					
2	성북구 성북동 210-59	대	16	16	이*익	서울 성북구 성북동 ***-**				
3	성북구 성북동 210-60	대	129	129	나*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 ***동 ***호(성주동, *********)	대구축산업협동조합	대구 동구 동북로 ***(신암동)(*****)	근저당권	
4	성북구 성북동 산58-3	임	529	523	이*종	서울 용산구 이촌로 ***, **동 ***호(이촌동, ****)				
					이*영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동 ****호(잠실동, *****)				
					신*애	인천 부평구 배곧북로*번길 **-*, ***호(십정동, *****)	이경숙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 *동 ***호(구로동, *****)	근저당권	
					양*원	서울 성북구 길음로**길 **, ***동 ****호(길음동, *****)				

◈ 강북구공고 제2024-93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80-358호(1980.10.28.)로 최초 결정되고 강북구고시 제1997-16호(1997.3.24.)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2호(2007.12.6.)로 건축범위 일괄결정·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127-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의 학교시설면적 및 건축물의 범위 변경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8일
강 북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02-901-6844)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초중고 (화계초)	강북구 미아동 127-2번지 일대	13,352.2	증)33.4	13,385.6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0-358호 (1980.10.28.)	

○ 건축물의 범위 결정(변경)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5 이하	40 이하	150 이하	160 이하	5층 이하	6층 이하	제2종 일반 주거지역(7층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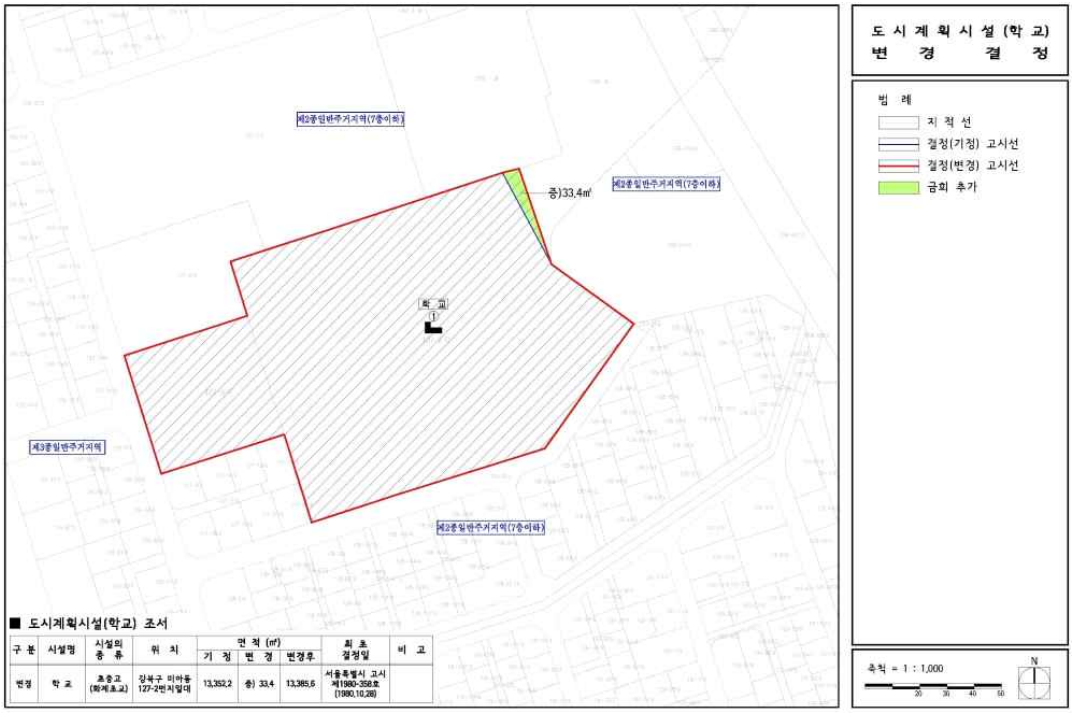
○ 변경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학교	○ 면적 13,352.2㎡ → 13,385.6㎡ 증) 33.4㎡	학교용지의 측량 결과 일부 도시계획시설(학교)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	
	○ 건폐율 35% → 40% ○ 용적률 150% → 160% ○ 높이 5층 → 6층	화계초는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로 안전등급 등을 고려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에 선정되어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공간 확보를 위한 새로운 건축계획 필요	

라.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02-901-6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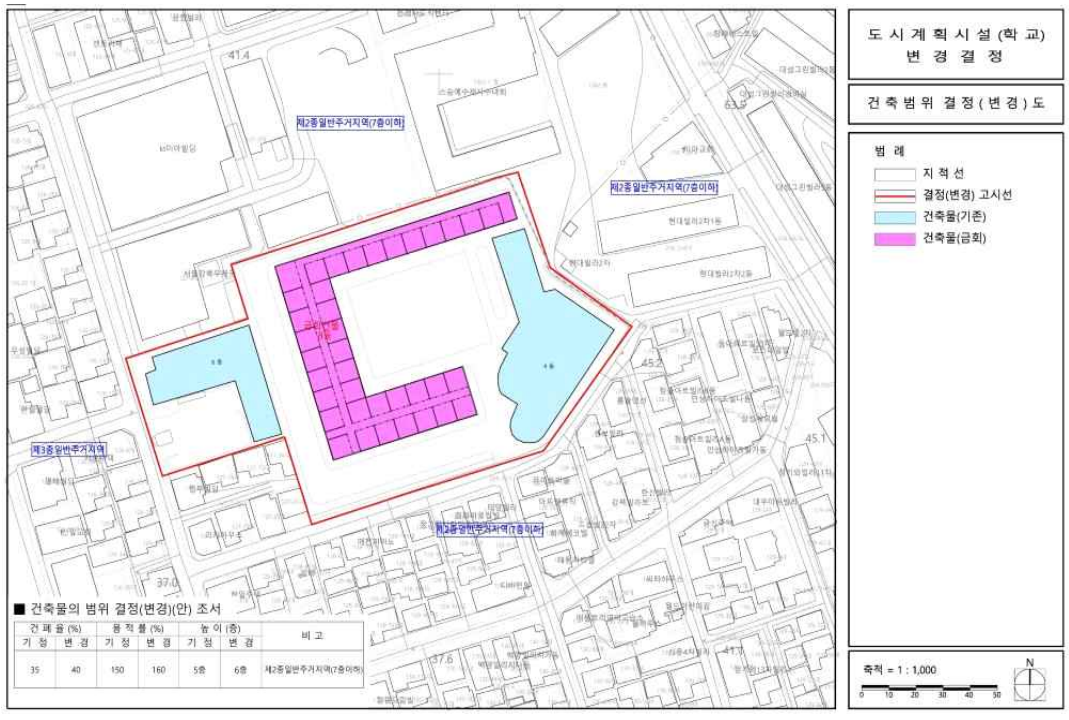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도



■ 도시계획시설(학교)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기 정	면 적 (㎡) 변 경	면 적 (㎡)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변경	학 교	초중고 (통계초,교)	강북구 미아동 127-2번지일대	13,352.2	중) 33.4	13,385.6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0-358호 (1980.10.28)	

■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안)도



■ 건축물의 범위 결정(변경)(안) 조서

건 폐 율 (%) 기 정	건 폐 율 (%) 변 경	용 적 률 (%) 기 정	용 적 률 (%) 변 경	높 이 (층) 기 정	높 이 (층) 변 경	비 고
35	40	150	160	5층	6층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도봉구공고 제2024-1151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 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08.06.)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48호(2021.08.1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봉구 둘리(쌍문)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18일
도 봉 구 청 장

1. 공 원 명 : 둘리(쌍문)근린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240-5번지 일대 등

3. 면 적 : 264,718.4㎡

4. 주요 변경내용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반영 등
   - 기반시설 : 25,216㎡ → 23,305㎡ (감 1,731㎡)
   - 조경시설 : 2,114㎡ → 1,382㎡ (감 732㎡)
   - 휴양시설 : 6,934㎡ → 7,785㎡ (증 851㎡)
   - 유희시설 : 2,651㎡ → 2,655㎡ (증 4㎡)
   - 운동시설 : 5,458㎡ → 7,772㎡ (증 2,314㎡)
   - 교양시설 : 12,421㎡ → 13,558㎡ (증 1,137㎡)
   - 편익시설 : 1,789㎡ → 1,749㎡ (감 50㎡)
   - 관리시설 : 180㎡ → 190㎡ (증 10㎡)
   - 녹지 및 기타 : 203,886.9㎡ → 206,322.4㎡ (증 2,435.5㎡)

5.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 : 00 ~ 18 : 00)

6. 열람장소 : 도봉구청 공원여가과(☎ 02-2091-3757/도봉구 마들로 656)

7.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리(쌍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위치:도봉구 쌍문동 산 240-5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260,649.9	40,623	10	3,378.33	6,733.31	58	264,718.4	42,526	8	3,556.77	6.911.75	117	증) 1,903㎡
기반시설	소계	25,216	17,679					23,305	15,948					감) 1,731㎡
	도로	22,544	15,187 (7,357)					21,881	14,524 (7,357)					감) 663㎡
	광장	2,672	2,672					1,424	1,424					감) 1,248㎡
조경시설		2,114	2,114				7	1,382	1,382				10	감) 732㎡
휴양시설		6,934	6,934	2	173.0	173.0	35	7,785	7,785	1	117.0	117.0	63	증) 851㎡
유희시설		2,651	2,651				7	2,655	2,655	1	386.72	386.72	7	증) 4㎡

운동시설	5,458	5,138	2	1,110.00	1,110.00	7	7,772	7,452	1	990.0	990.0	35	지) 2,314㎡
교양시설	12,421	4,233	4	2,030.33	5,385.31		5,568	5,380	3	2,001.77	5,356.75		지) 1,470㎡
편익시설	1,789	1,694	2	65.0	65.0	2	1,749	1,744	2	65.0	65.0	2	지) 50㎡
관리시설	180	180					190	190					지) 10㎡
녹지 및 기타	203,886.9						206,322.4						지) 2,435.5㎡
공원시설율(법정40%)	40,623m2 / 260,649.9m2 x 100 = 15.59%						42,526m2 / 264,718.4m2 x 100 = 16.06%						
공원건폐율(법정10%)	3,378.33m2 / 260,649.9m2 x 100 = 1.3%						3,556.77m2 / 264,718.4m2 x 100 = 1.34%						
특정시설율(법정20%)	7,016.56m2 / 40,623m2 x 100 = 17.27%						6,783m2 / 42,526m2 x 100 = 15.95%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계					260,649.9	40,623		10	3,378.33	6,733.31	58			264,718.4	42,526		8	3,556.77	6,911.75	117	증) 1,903㎡
기반시설	소계				25,216	17,679								23,305	15,948						감) 1,731㎡
	도로				22,544	15,187 (7,357)								21,881	14,524 (7,357)						감) 663㎡
	광장	소계			2,672	2,672								1,424	1,424						감) 1,248㎡
		진입광장	가	7개소	1,561	1,561						가	4개소	864	864						감) 697㎡
			가-8	쌍문동 산283-5	180	180						가-8	쌍문동 산283-5	150	150						감) 30㎡ (현황반영)
			가-9	쌍문동 산83-30	128	128						가-9									폐지 (현황반영)
			가-10	쌍문동 산83-30	468	468						가-10									폐지 (현황반영)
			가-11	쌍문 산83-2	180	180						가-11	쌍문 산83-2	180	18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조경시설	소계			2,114	2,114					7			1,382	1,382					10	
	휴게광장	가-13	쌍문동 산79	71	71						가-13									폐지 (현황반영)
		가-14	쌍문동 산240-5	480	480						가-14	쌍문동 산240-5	480	480						
		가-15	쌍문동 산249-1	54	54						가-15	쌍문동 산249-1	54	54						
		나	4개소	1,111	1,111						나	2개소	560	560						감) 551㎡
		나-9	방학동 산90-14	453	453						나-9	방학동 산90-14	160	160						감) 293㎡ (현황반영)
		나-10	쌍문동 산80-1	400	400						나-10	쌍문동 산80-1	400	400					(1)	
		나-12	쌍문동 산79	146	146															폐지 (현황반영)
		나-13	쌍문동 산79	112	112															폐지 (현황반영)
																				감) 732㎡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파고라	정원	라	방학동 산90-14	118	118					(1)	라	쌍문동 산83-1	30	30	목구조				(1)	폐지(현황반영)
	정자	1	쌍문동 산83-1	30	30	목구조				7	①	9개소							10	
		①-1	방학동 산90-14 (휴게소(터-5) 내)	(25)	(25)					1	①-1	방학동 산90-14 (휴게소(터-5) 내)	(25)	(25)					1	
		①-2	방학동 산90-14 (휴게소(터-6) 내)	(57)	(57)					1	①-2	방학동 산90-14 (휴게소(터-6) 내)	(57)	(57)					1	
		①-3	쌍문동 산282-3 (휴게소(터-7) 내)	(30)	(30)					1	①-3	쌍문동 산282-3 (휴게소(터-7) 내)	(30)	(30)					1	
		①-4	방학동 산90-14 (휴게소(사-4) 내)	(16)	(16)					1	①-4	방학동 산90-14 (휴게소(사-4) 내)	(16)	(16)					1	
		①-5	쌍문동 산80-1 (휴게광장(나-10) 내)	(25)	(25)					1	①-5	쌍문동 산80-1 (휴게광장(나-10) 내)	(25)	(25)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조정 시설	바닥분수	허	방학동 산90-14	103	103						허	방학동 산90-14	103	103							
	실개천	퍼	쌍문 산241	262.00	262.00						퍼	쌍문동 산79	262	262							폐지 (현황반영)
	야생화원	마	쌍문 산241	711.00	711.00						마										
	관찰데크	2	쌍문 산83-1	266.00	266.00	목재					2	쌍문동 산83-1	266	266	목재						
		①-7	쌍문동 산264 (휴게소(터-4) 내)	(13)	(13)						①-9	쌍문동 산238-14 (전입광장(가-9) 내)	(20)	(20)					1		신설 (현황반영)
		①-6	쌍문동 산82 (유아숲체험원(오) 내)	(20)	(20)					1	①-8	쌍문동 산79 (휴게소(터-10) 내)	(13)	(13)					1		신설 (현황반영)
											①-7	쌍문동 산264 (휴게소(터-4) 내)	(13)	(13)					1		
											①-6	쌍문동 산82 (유아숲체험원(오) 내)	(20)	(20)					2		신설 (현황반영)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벽천	11	쌍문동 산79	25.00	25.00						11	쌍문동 산79	122	122						증) 97㎡ (현황반영)
	캐스케이드	고	쌍문동 산240-5	199	199	철근콘크리트조					고	쌍문동 산240-5	199	199	철근콘크리트조					
	화계	노	2개소	39	39						노	2개소	39	39						
		노-1	쌍문동 산264	31	31						노-1	쌍문동 산264	31	31						
		노-2	쌍문동 산249-1	8	8						노-2	쌍문동 산249-1	8	8						
	참여정원	도	쌍문동 산264	16	16						도	쌍문동 산264	16	16						
	스탠드	로	쌍문동 산264	14	14						로	쌍문동 산264	14	14						
	돌담	모	2개소	17	17						모	2개소	17	17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모-1	쌍문동 산249-1	13	13						모-1	쌍문동 산249-1	13	13						
		모-2	쌍문동 산264	4	4						모-2	쌍문동 산264	4	4					(3)	
	생태계류	보	쌍문동 산249-1	314	314					(3)	보	쌍문동 산249-1	314	314						
휴양시설	소 계			6,934	6,934		2	173.0	173.0	35			7,785	7,785		1	117.00	117.00	63	증) 663㎡
	경로당	3	2개소	236.00	236.00		2	173.00	173.00		3	1개소	236.00	236.00		1	117.00	117.00		감) 56㎡
		3-1	방학동 산90-14	180.00	180.00	조적조	1	117.00	117.00		3-1	방학동 산90-14	180.00	180.00	조적조	1	117.00	117.00		
		3-2	쌍문동 산283-5	56.00	56.00	조적조	1	56.00	56.00		3-2									폐지 (현황반영)
휴양시설	장의자	④	전지역			목재				12	④	전지역			목재				40	
	임간휴게소	저	쌍문동 산283-10, 11	6,029	6,029					23	저	쌍문동 산283-10,11	6,029	6,029					23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게소		터	5개소	669	669						터	12개소	1,576	1,576						증) 719㎡
		터-3	쌍문동 산283-13	104	104						터-3	쌍문동 산283-13	287	287					(2)	증) 183㎡ (현황반영)
		터-4	쌍문동 산264	100	100						터-4	방학동 산90-14	10	10					(1)	감) 90㎡ (현황반영)
		터-5	방학동 산90-14	43	43						터-5	방학동 산90-14	43	43					(1)	
		터-6	방학동 산90-14	162	162						터-6	방학동 산90-14	162	162					(1)	
		터-7	쌍문동 산282-3	260	260						터-7	쌍문동 산282-3	424	424					(1)	증) 164㎡ (현황반영)
											터-8	쌍문동 산283-13	20	20					(1)	신설 (현황반영)
											터-9	쌍문동 산264	45	45					(1)	신설 (현황반영)
											터-10	쌍문동 산79	287	287					(1)	신설 (현황반영)
											터-11	쌍문동 산79	44	44						신설 (현황반영)
											터-12	쌍문동 산79	40	40						신설 (현황반영)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타-13	쌍문동 산83-30	26	26						신설 (현황반영)
											타-14	방학동 산90-14	78	78						신설 (현황반영)
유희시설	소 계			2,651	2,651					7			2,655	2,655	철골조	1	383	383	7	증) 4㎡
	놀이터	사	4개소	2,453	2,453						사	3개소	1,673	1,673						감) 780㎡
		사-1	쌍문동 152-2	627	627					(6)	사-1	쌍문동 152-2	627	627					(6)	
		사-2	쌍문동 산79	780	780						사-2									폐지
		사-3	쌍문동 산83-1	291	291						사-3	쌍문동 산83-1	291	291						
		사-4	방학동 산90-14	755	755					(5)	사-4	방학동 산90-14	755	755					(5)	
유희시설	조합놀이대	⑤	쌍문동 152-2 (놀이터(사-1) 내 171)							1	⑤	쌍문동 152-2 (놀이터(사-1) 내 171)							1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운동시설	그네	⑥	쌍문동 152-2 (놀이터(사-1) 내 17)							1	⑥	쌍문동 152-2 (놀이터(사-1) 내 17)							1	
	흔들놀이대	⑦	쌍문동 152-2 (놀이터(사-1) 내 37)							3	⑦	쌍문동 152-2 (놀이터(사-1) 내 37)							3	
	시소	⑧	쌍문동 152-2 (놀이터(사-1) 내 17)							1	⑧	쌍문동 152-2 (놀이터(사-1) 내 17)							1	
	조합놀이대	⑤	방학동 산90-14 (놀이터(사-4) 내 17)							1	⑤	방학동 산90-14 (놀이터(사-4) 내 17)							1	
	실내놀이터										조	쌍문동 산79	784	784	철골조	1	383	383		신설
	물놀이장	소	쌍문동 267답	198	198						소	쌍문동 267답	198	198						
	소 계			5,458	5,138		2	1,110.00	1,110.00	7			7,772	7,452		1	990	990	35	주) 2,31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운동	배드민턴장	아	4개소	1,366	1,366							아	4개소	2,170	2,170						증) 804㎡
		아-1	방학동 산90-14	373	373					(1)		아-1	방학동 산90-14	609	609					(1)	증) 236㎡ (현황반영)
		아-3	쌍문동 산82-25	478	478							아-3	쌍문동 산82-25	478	478						
		아-4	쌍문동 산82-25	305	305							아-4	쌍문동 산82-25	256	256						감) 49㎡ (현황반영)
		아-5	쌍문동 산83-2	210	210							아-5	쌍문동 산83-2	827	827						증) 617㎡ (현황반영)
	배구장	자	방학동 산90-14	400	400							자	방학동 산90-14	433	433						증) 33㎡ (현황반영)
	체력단련장	타	2개소	257	257		1	120.00	120.00			타	10개소	2,053	2,053						증) 1,796㎡
		타-1	방학동 산90-14	140	140	철골조	1	120.00	120.00			타-1	방학동 산90-14	223	223						
		타-2	쌍문동 산79	117	117					(4)		타-2	쌍문동 산79	263	263					(4)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시설	체력단련장										타-3	방학동 산90-14	139	139						신설 (현황반영)
											타-4	쌍문동 산264	154	154						신설 (현황반영)
											타-5	쌍문동 산264	400	400						신설 (현황반영)
											타-6	쌍문동 산79	225	225						신설 (현황반영)
											타-7	쌍문동 산83-2	90	90						신설 (현황반영)
											타-8	쌍문동 산81	265	265						신설 (현황반영)
											타-9	쌍문동 산81	50	50						신설 (현황반영)
											타-10	쌍문동 산81	244	244						신설 (현황반영)
	체력단련시설	②	전지역							7	②									35	(현황반영)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교양시설	테니스장	버	쌍문동 산83-1	1,480	1,480						버	쌍문동 산83-1	1,600	1,600						증 120㎡ (현황반영)
	체육관	10	쌍문동 산83-1	1,310	990	철골조	1	990.00	990.00		10	쌍문동 산83-1	1,310	990	철골조	1	990.00	990.00		
	농구장	15	1개소	645	645						15	1개소	206	206						감 439㎡ (현황반영)
		15-1	쌍문동 산80-1	439	439															폐지 (현황반영)
		15-2	쌍문동 산80-1	206	206						15-2	쌍문동 산80-1	206	206						
	소 계			12,421	4,233		4	2,030.33	5,385.31				5,568	5,380		3	2,001.77	5,356.75		증 1,147㎡
	지역 문화센타	4	쌍문 산240-5	1,583	1,395	철근콘크리트조	2	1,547.00	4,160.00		4	쌍문 산240-5	1,583	1,395	철근콘크리트조	2	1,547.00	4,160.00		
	야외무대	파	쌍문동 산79	293	293						파	쌍문동 산79	293	293						
	야외전시장	하	쌍문 267 답	61.00	61.00						하	2개소	61	61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하-1	쌍문 267 답	(30.00)	(30.00)							하-1	쌍문 267 답	30	30							
		하-2	쌍문 267 답	(31.00)	(31.00)							하-2	쌍문 267 답	31	31							
	청소년 문화회관	9	쌍문 산80	455.00	455.00	철근콘크리트조	1	454.77	1,196.75			9	쌍문동 산80	455	455	철근콘크리트조	1	454.77	1,196.75			폐지 (현황반영)
	이동식 도서관	13	쌍문 산82	28.56	28.56	경량철구조	1	28.56	28.56			13										
	유아숲체험원	오	쌍문동 산82	10,000	2,000		2	65.0	65.0	2	(1)	오	쌍문동 산82	3,176	3,176					(1)		증 1,176㎡
		오-1	쌍문동 산82	10,000	2,000							오-1	쌍문동 산82	2,010	2,010							증 10㎡ (현황반영)
		오-2	쌍문동 산247임	1,166	1,166							오-2	쌍문동 산247임	1,166	1,166							신설 (현황반영)
편입 시설	소 계			1,789	1,694		2	65.0	65.0	2				1,749	1,744		2	65.0	65.0	2		증 50㎡
	주차장	거	2개소	1,386	1,386							거	2개소	1,386	1,386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편입시설	화장실	거-3	쌍문동 산80-1	450	450							거-3	쌍문동 산80-1	450	450							
		거-4	쌍문동 산79	936	936							거-4	쌍문동 산79	936	936							
		6	4개소	114	109		2	65.0	65.0	2		6	2개소	181	176		2	65.0	65.0	2		증 67㎡
		6-3	쌍문 산152-2	(40.00)	(35.00)		(1)	(35.00)	(35.00)			6-3	쌍문 산152-2	40	35		1	35	35.00			
		6-4	쌍문동 산82 (유아숲체험원(오)인근)	24	24					1		6-4	쌍문동 산82 (유아숲체험원(오)인근)	24	24					1		
		6-5	쌍문동 산79 (아생화원(마)인근)	20	20					1		6-5	쌍문동 산79 (아생화원(마)인근)	25	25					1		증 5㎡ (현황반영)
		6-6	방학동 산90-14	30	30		1	30.0	30.0			6-6	방학동 산90-14	92	92		1	30.0	30.0			증 62㎡ (현황반영)
	전망대	쿄	3개소	259	169							쿄	2개소	152	152							감) 17㎡
		쿄-1	쌍문동 산249	200	110							쿄-1										폐지 (현황반영)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관리시설		표-2	쌍문동 산264	25	25							표-2	쌍문동 산264	118	118							증 93㎡ (현황반영)
		표-3	쌍문동 산249	34	34							표-3	쌍문동 산249	34	34							
	수변데크	포	쌍문동 산249-1	30	30							포	쌍문동 산249-1	30	30							
	소 계			180	180									190	190							증 10㎡
	약수터	더	방학 산90-31	20.00	20.00							더	방학동 산90-14	30	30							증 10㎡ (현황반영)
	보행육교	러	쌍문 산240-외2	160.00	160.00	철근콘크리트조						러	쌍문동 산240-1도	160	160	철근콘크리트조						
녹지 및 기타	소 계			203,886.9										206,322.4								증) 2,435.5㎡
	녹지및기타			203,886.9										206,332.4								증) 2,435.5㎡

3. 도 로 조 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6,679 (730)	14,639 (7,357)				
변경					6,613 (730)	14,524 (7,357)				
당초	중로	소 계			(352)	(5,277)				
당초		2	1	15	(352)	(5,277)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당초	소로	소 계			430 (378)	2,095 (2,080)				
당초		3	1	4.0	147	900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휴게광장 (나-10)	
당초		3	2	6	237	1,113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체육관 (10)	
당초		3	5	1.5	38	66	연결로	진입광장 (가-14)	산책로 44	
당초		3	6	1.5	8	16	연결로	소로 3-7	소로 3-5	
당초		3	7	5.5	(270)	(1,486)	연결로	중로2-1	도자구역	
당초		3	8	5.5	(108)	(594)	연결로	도자구역	도시계획도로	
당초	산책로	소 계			5,836	13,092				
변경					6,184	12,429				
당초		-	1	2.5	200	460	산책로	도자구역	쌍문동 산280-1	
당초		-	2	2.0	7	20	연결로	산책로 1	도자구역	
당초		-	4	2.0	69	212	산책로	쌍문동 산267-2	쌍문동 산267-1	
당초		-	9	2.0	58	115	연결로	산책로 66	산책로 10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경		-	9	2.0	17	35	연결로	산책로 66	산책로 10	
당초		-	10	2.0	266	552	연결로	도자구역	산책로 39	
변경		-	10	2.0	207	415	연결로	도자구역	산책로 39	
당초		-	12	2.0	73	145	연결로	산책로 14	산책로 15	
당초		-	14	2.0	273	549	산책로	배구장 (자)	산책로 39	
당초		-	15	2.0	138	277	연결로	산책로 66	산책로 14	
당초	산책로	-	16	2.5	139	401	연결로	산책로 19	산책로 83	
변경		-	16	2.5	222	555	연결로	산책로 68	보행육교 (러)	
당초		-	17	1.5~ 2.0	104	185	산책로	산책로39	도자구역	
당초		-	19	2.0	253	711	산책로	휴게광장 (나-12)	산책로 39	
변경		-	19	1.8	190	342	산책로	휴게광장 (나-12)	산책로 39	
당초		-	20	2.0	39	85	연결로	산책로 16	산책로 47	
변경		-	20	2.0	33	66	연결로	산책로 85	실내놀이터 (조)	
당초		-	21	2.5	56	155	연결로	산책로 23	산책로 87	
변경		-	21	1.5	22	33	연결로	도자구역	도자구역	
당초		-	23	2.0	119	256	산책로	쌍문동 산227-10	산책로 24	
변경		-	23	2.0	107	215	산책로	쌍문동 산227-10	산책로 24	
당초		-	24	3.0	72	183	산책로	중로 2-1	산책로 87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경		-	24	2.0	21	42	산책로	산책로43	실내놀이터 (조)	
당초		-	26	2.0	38	93	산책로	진입광장 (가-9)	산책로 87	
변경		-	26	1.0	22	22	산책로	소로1	도자구역	
당초		-	27	2.0	7	14	산책로	진입광장 (가-10)	도자구역	
변경		-	27	2.0	67	134	산책로	쌍문동 159-22도	도자구역	
당초		-	33	1.5	56	85	산책로	배드민턴장 (아-3)	도자구역	
변경		-	33	1.5	52	78	산책로	산책로93	배드민턴장 (아-5)	
당초	산책로	-	34	2.0	93	186	산책로	진입광장 (가-10)	배드민턴장 (아-5)	
변경		-	34	2.0	117	235	산책로	산책로27	산책로94	
당초		-	38	2.5	181	431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95	
당초		-	39	2~ 2.5	191	423	산책로	산책로 69	산책로 17	
변경		-	39	2~ 2.5	191	300	산책로	산책로 19	산책로 10	
당초		-	40	2	154	278	산책로	놀이터 (사-3)	산책로 39	
당초		-	42	1.5	26	50	진입로	진입광장 (가-13)	산책로 80	
변경		-	42	1.5	93	140	진입로	쌍문동 276-6도	산책로 43	
당초		-	43	2.3	15	65	연결로	산책로-19	놀이터 (사-2)	
변경		-	43	2.3	267	615	연결로	산책로-44	체력단련장 (타-5)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	44	4	138	467	연결로	소로 3-7	산책로 45	
당초		-	45	2	67	130	연결로	산책로 46	산책로 81	
변경		-	45	1.5	33	50	연결로	산책로 43	산책로 44	
당초		-	46	2	51	98	연결로	실내놀이터 (조)	산책로 45	
변경		-	46	1.5	41	62	연결로	산책로 47	산책로 44	
당초		-	47	2~4	73	271	산책로	산책로 16	쌍문동 산79공	
변경		-	47	2~4	73	197	산책로	실내놀이터 (조)	쌍문동 산79공	
당초		-	48	1.5	4	6	진입로	쌍문동 산264	산책로 49	
당초		-	49	2.0	12	12	연결로	산책로 48	산책로 50	
당초	산책로	-	50	1.5	31	46	연결로	산책로 53	산책로 51	
당초		-	51	1.8	89	161	진입로	산책로 1	쌍문동 산267-1	
변경		-	52	1.5	24	45	연결로	산책로 53	산책로51	
당초		-	53	1.5	71	107	연결로	산책로 98	산책로 50	
변경		-	53	1.5	94	142	연결로	산책로 57	산책로 50	
당초		-	54	1.5	3	5	연결로	산책로 56	휴게소 (터-4)	
변경		-	54	1.5	20	30	연결로	산책로 62	쌍문동 산89임	
당초		-	55	1.5	24	36	연결로	전망대 (코-2)	휴게소 (터-4)	
변경		-	55	1.5	15	22	연결로	산책로66	휴게소 (터-14)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	56	1.5	3	5	연결로	산책로 98	전망대 (코-2)	
변경		-	56	1.5	10	16	연결로	휴게소 (터-9)	산책로39	
당초		-	57	1.5	61	91	연결로	산책로 75	전망대 (코-2)	
변경		-	57	1.5	115	173	연결로	산책로 75	산책로51	
당초		-	58	2.5	28	69	진입로	도자구역	산책로 59	
당초		-	59	1.5	69	104	연결로	놀이터 (사-4)	산책로 57	
당초		-	60	1.8	21	37	연결로	산책로 44	지역문화센타(4)	
당초		-	61	2.0	226	452	연결로	휴게광장 (나-8)	산책로 62	
변경		-	61	1.5	152	228	연결로	놀이터 (사-4)	산책로62	
당초		-	62	1.5	174	261	산책로	산책로 64	산책로 64	
당초	산책로	-	63	1.5	29	43	산책로	산책로 62	산책로 62	
변경		-	63	1.5	22	33	연결로	산책로 62	산책로 62	
당초		-	64	2.5	39	98	진입로	파고라 (4-1)	방학동 507-7	
당초		-	65	2.0	29	57	연결로	화장실 (6-6)	산책로 64	
변경		-	65	2.0	18	36	연결로	휴게소 (터-6)	도자구역	
당초		-	66	2~5	82	288	진입로	방학동 734-6	배구장 (자)	
변경		-	66	2~5	82	417	진입로	방학동 734-6	배구장 (자)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	67	1.5	16	24	연결로	산책로 66	체력단련장 (타-1)	
변경		-	67	1.5	11	16	연결로	산책로 66	체력단련장 (타-1)	
당초		-	68	2.0	65	131	연결로	배구장 (자)	산책로 10	
변경		-	68	1.5	46	70	연결로	산책로19	산책로16	
당초		-	69	2.0	36	71	연결로	산책로 40	산책로 39	
당초		-	70	1.0	5	6	연결로	산책로 40	산책로 71	
당초		-	71	4.7	4	20	연결로	산책로 40	산책로 71	
당초		-	72	1.5	36	53	연결로	산책로 40	산책로 76	
당초		-	73	1.2	34	40	연결로	산책로 40	산책로 72	
당초		-	74	1.0	29	29	연결로	산책로 39	산책로 40	
당초		-	75	2.0	101	201	연결로	산책로 59	놀이터 (사-4)	
당초		-	76	1.5	90	136	연결로	산책로 72	산책로 72	
당초		-	77	1.5	22	32	연결로	산책로 76	전망대 (코-3)	
당초		-	78	1.5	34	51	연결로	산책로 39	수변데크 (포)	
당초		-	79	1.8	16	29	연결로	산책로 76	진입광장 (가-15)	
당초	산책로	-	80	3.2	95	303	진입로	휴게광장 (나-12)	소로 7	
변경		-	80	1.5	98	147	진입로	산책로43	산책로42	
당초		-	81	1.5	30	45	연결로	산책로 44	산책로 47	
변경		-	81	1.5	38	57	연결로	산책로 47	산책로 44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	82	2.0	20	40	진입로	중로 2-1	산책로 47	
변경		-	82	2.0	13	26	진입로	산책로47	산책로16	
당초		-	83	2.5	84	210	연결로	산책로 16	보행육교 (러)	
변경		-	83	2.5	10	27	연결로	산책로47	산책로16	
당초		-	84	2.0	62	124	연결로	휴게광장 (나-10)	농구장 (15-2)	
당초		-	85	1.8	29	52	연결로	주차장 (거-4)	산책로16	
변경		-	85	1.8	47	86	연결로	주차장 (거-4)	산책로20	
당초		-	86	2.0	66	131	연결로	산책로87	산책로23	
변경		-	86	2.0	53	107	연결로	휴게소 (터-3)	산책로23	
당초		-	87	2.5	364	911	산책로	산책로24	산책로87	
변경		-	87	1.5	38	57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86	
당초		-	88	1.9	30	58	연결로	산책로 87	산책로97	
변경		-	88	1.5	33	50	연결로	도자구역	산책로86	
당초		-	89	2.3	61	140	연결로	산책로87	산책로97	
변경		-	89	1.5	8	13	연결로	산책로87	산책로23	
당초		-	90	2.0	34	68	연결로	산책로87	산책로97	
변경		-	90	2.0	340	680	연결로	도자구역	휴게소 (터-3)	
당초		-	91	2.0	15	30	연결로	산책로87	산책로97	
변경		-	91	1.5	50	75	연결로	산책로93	산책로105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	92	2.5	35	87	연결로	진입광장 (가-8)	산책로87	
변경		-	92	1.5	23	35	연결로	유아숲체험장 (오-1)	도자구역	
당초		-	93	2.0	142	283	연결로	산책로92	배드민턴장 (아-3)	
변경		-	93	2.0	148	296	연결로	산책로92	도자구역	
당초		-	94	1.5	21	31	연결로	도자구역	배드민턴장 (아-4)	
변경		-	94	1.5	14	22	연결로	배드민턴장 (아-5)	도자구역	
당초		-	95	2.0	83	165	연결로	산책로96	소로3-2	
당초		-	96	8.0	57	501	진입로	쌍문동 81-371	쌍문동 152-2	
당초		-	97	2.2	74	164	산책로	산책로89	산책로89	
변경		-	97	1.5	151	227	산책로	광장 (가-8)	산책로90	
당초		-	98	1.5	42	73	산책로	산책로56	산책로54	
변경		-	98	1.5	116	174	산책로	산책로43	유아숲체험장 (오-2)	
당초		-	99	1.5	29	42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69	
신설		-	100	1.5	20	31	산책로	산책로98	산책로69	
신설		-	101	1.5	9	14	산책로	휴게소 (터-11)	산책로16	
신설		-	102	1.5	6	10	산책로	산책로44	산책로47	
신설		-	103	1.5	25	38	산책로	산책로24	중로 2-1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	104	2.0	21	42	산책로	소로 2	도자구역	
신설		-	105	1.5	17	26	산책로	도자구역	배드민턴장 (아-3)	
신설		-	106	1.5	18	28	산책로	산책로93	산책로105	
신설		-	107	1.5	14	21	산책로	실내놀이터 (조)	체력단련장 (타-2)	
신설		-	108	2.0	29	58.0	연결로	체력단련장 (터-3)	도자구역	

조성계획도[변경전]

둘리(쌍문)근린공원

SCALE=1/2,500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260,649.9	40,623	58	
기반시설	소 계		25,216	17,679		
	도 로		22,544	15,187		도시계획도로
				(7,357)		시설면적 미포함
	진입광장	가	1,561	1,561		
		가-8	180	180		
		가-9	128	128		
		가-10	468	468		
		가-11	180	180		
		가-13	71	71		
		가-14	480	480		
		가-15	54	54		
	휴게광장	나	1,111	1,111		
		나-9	453	453		
		나-10	400	400	(1)	
		나-12	146	146		
		나-13	112	112		
조경시설	소 계		2,114	2,114	7	
	팔 현 라		116	116		
	참 자	ㅣ	30	30		
	파 고 라	⑤			7	
		①-1	(25)	(25)	1	
		①-2	(57)	(57)	1	
		①-3	(30)	(30)	1	
		①-4	(16)	(16)	1	
		①-5	(25)	(25)	1	
		①-6	(20)	(20)	1	
		①-7	(13)	(13)	1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조경시설	관찰데크	2	266	266		
	야생화원	마	711	711		
	실개천	폐	262	262		
	바닥분수	허	103	103		
	벽천	11	25	25		
	캐스케이드	고	199	199		
	화 계	노	39	39		
		노-1	31	31		
		노-2	8	8		
	창 여 정 원	도	16	16		
	스 탠 드	로	14	14		
	돌 담	포	17	17		
		모-1	13	13		
		모-2	4	4	(3)	
	생 태 계 류	보	314	314		
휴양시설	소 계		6,934	6,934	35	
	경로당	3	236	236		
		3-1	180	180		1면
		3-2	56	56		
	참의지	④			12	
	임간휴게소	저	6,029	6,029	23	
	휴게소	터	669	669		
		터-3	104	104		
		터-4	100	100	(1)	
		터-5	43	43	(1)	
		터-6	162	162	(1)	
		터-7	260	26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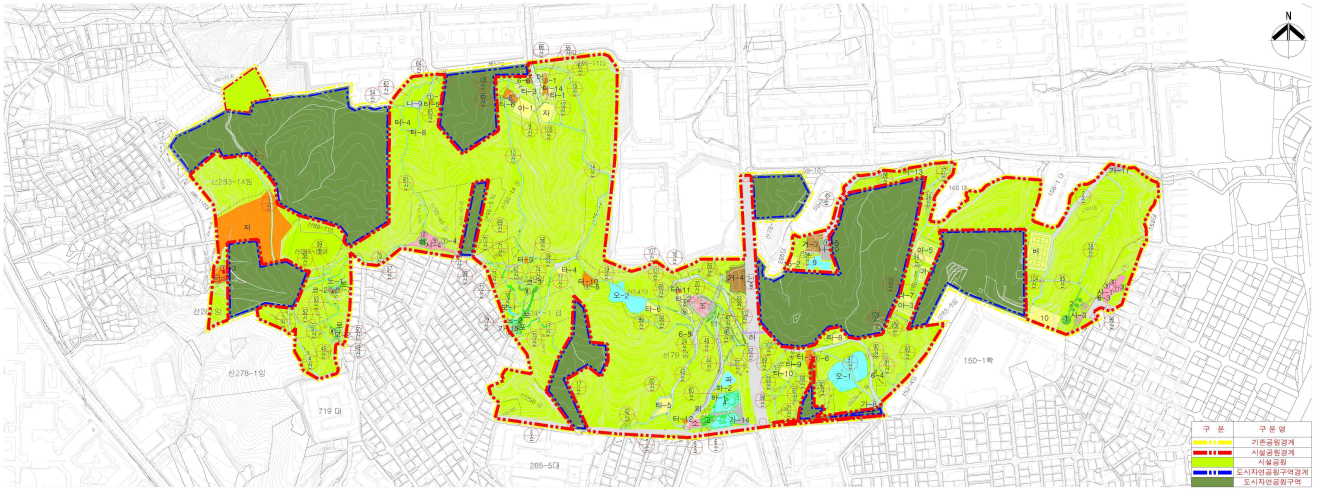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유희시설	소 계		2,651	2,651	7	
	놀이터	사	2,453	2,453		
		사-1	627	627	(6)	
	조합놀이대	⑤			1	
	그네	⑥			1	
	흔들놀이대	⑦			3	
	시소	⑧			1	
	놀이터	사-2	780	780		
		사-3	291	291		
		사-4	755	755	(5)	
	조합놀이대	⑤			1	
	물놀이장	소	198	198		
운동시설	소 계		5,458	5,138	7	
	배드민턴장	아	1,366	1,366		
		아-1	373	373	(1)	2면
		아-3	479	479		2면
		아-4	305	305		3면
		아-5	210	210		1면
	배구장	자	400	400		1면
	체력 단련장	타	257	257		
		타-1	140	140		
		타-2	117	117	(4)	
	체력단련시설	②			7	
	테니스장	바	1,480	1,480		2면
	체육관	10	1,310	990		
	농구장	15	645	645		
		15-1	439	439		1면
		15-2	206	206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교양시설	소 계		12,421	4,233		
	지역 문화센터	4	1,583	1,395		
	아위무대	파	293	293		
	야외전시장	하	61	61		
		하-1	30	30		
		하-2	31	31		
	청소년 문화회관	9	455	455		
	이동식 도서관	13	29	29		
	유아숲체험원	오	10,000	2,000	(1)	
편익시설	소 계		1,789	1,694	2	
	주차장	거	1,386	1,386		
		거-3	450	450		
		거-4	936	936		
	화장실	6	114	109	2	
		6-3	40	35		
		6-4	24	24	1	
		6-5	20	20	1	
		6-6	30	30		
	전망대	크	259	169		
		크-1	200	110		
		크-2	25	25		
		크-3	34	34		
	수변데크	포	30	30		
관리시설	소 계		180	180		
	약수터	더	20	20		
	보행육교	러	160	160		
녹지및기타	소 계		203,886.9			
	녹 지		203,886.9			

조성계획도[변경후]

둘리(쌍문)근린공원

SCALE=1/2,500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264,718.4	42,526	117	
기반시설	소 계		23,305	15,948		
	도 로		21,881	14,524		도시계획도로
				(7,357)		시설면적 비포함
	진입광장	가	864	864		
		가-8	150	150		
		가-11	180	180		
		가-14	480	480		
		가-15	54	54		
	휴게광장	나	560	560		
		나-9	160	160		
		나-10	400	400	(1)	
조경시설	소 계		1,382	1,382	10	
	정 자	1	30	30		
	파 고 라	①			10	
		①-1	(25)	(25)	1	
		①-2	(57)	(57)	1	
		①-3	(30)	(30)	1	
		①-4	(16)	(16)	1	
		①-5	(25)	(25)	1	
		①-6	(20)	(20)	2	
		①-7	(13)	(13)	1	
		①-7	(13)	(13)	1	
		①-7	(20)	(20)	1	
	관찰데크	2	266	266		
	실개천	퍼	262	262		
	바닥분수	허	103	103		
	벽천	11	122	122		
	캐스케이드	고	199	199		
	화 계	노	39	39		
		노-1	31	31		
		노-2	8	8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조경시설	참 여 정 원	도	16	16		
	스 탠 드	로	14	14		
	돌 담	모	17	17		
		모-1	13	13		
		모-2	4	4	(3)	
	생 태 계 류	보	314	314		
휴양시설	소 계		7,785	7,785	63	
	경로당	3	236	236		
		3-1	180	180		
	장의차	④			40	
	임간휴게소	저	6,029	6,029	23	
	휴게소	터	1,576	1,576		
		터-3	287	287	(2)	
		터-4	10	10	(1)	
		터-5	43	43	(1)	
		터-6	162	162	(1)	
		터-7	424	424	(1)	
		터-8	20	20	(1)	
		터-9	45	45	(1)	
		터-10	287	287	(1)	
		터-11	44	44		
		터-12	40	40		
		터-13	26	26		
		터-14	78	78		
유희시설	소 계		2,655	2,655	7	
	놀이터	사	1,673	1,673		
		사-1	627	627	(6)	
		사-3	291	291		
		사-4	755	755	(5)	
	조합놀이대	⑤			1	
	그네	⑥			1	
	흔들놀이대	⑦			3	
	시소	⑧			1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유희시설	조합놀이대	⑤			1	
	실내놀이터	조	784	784		
	물놀이장	소	198	198		
운동시설	소 계		7,727	7,452	35	
	배드민턴장	아	2,170	2,170		
		아-1	609	609	(1)	4면
		아-3	478	478		3면
		아-4	256	256		1면
		아-5	827	827		4면
	배구장	자	433	433		1면
	체력 단련장	타	1,951	1,951		
		타-1	140	140		
		타-2	263	263	(4)	
		타-3	120	120		
		타-4	154	154		
		타-5	400	400		
		타-6	225	225		
		타-7	90	90		
		타-8	265	265		
		타-9	50	50		
		타-10	244	244		
	체력단련시설	②			35	
	테니스장	버	1,600	1,600		3면
	체육관	10	1,310	990		
	농구장	15	206	206		
		15-2		206		
교양시설	소 계		13,568	5,370		
	지역 문화센타	4	1,583	1,395		
	야외무대	파	293	293		
	야외전시장	하	61	61		
		하-1	30	30		
		하-2	31	31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교양시설	청소년 문화회관	9	455	455		
	유아숲체험원	오	3,176	3,176		
		오-1	10,000	2,000	(1)	
		오-2	1,166	1,166		
편익시설	소 계		1,749	1,744	2	
	주차장	거	1,386	1,386		
		거-3	450	450		
		거-4	936	936		
	화장실	6	181	176	2	
		6-3	40	35		
		6-4	24	24	1	
		6-5	25	25	1	
		6-6	92	92		
	전망대	코	152	152		
		코-2	118	118		
		코-3	34	34		
	수변마크	포	30	30		
관리시설	소 계		190	190		
	약수터	더	30	30		
	보행육교	러	160	160		
녹지및기타	소 계		206,322.40			
	녹 지		206,322.40			

◈ 은평구공고 제2024-1348호

도시계획시설(갈곡리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8-326(1978.07.03.)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38호(2004.02.16.)호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04-16(2004.04.06.)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갈곡리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은 평 구 청 장

1. 공 원 명: 갈곡리어린이공원
2. 위　　치: 은평구 갈현동 436-51
3. 면　　적: 1,738.7㎡
4.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가. 유희시설 : 300.00㎡ → 472.41㎡(증 172.41㎡)
      · 실내놀이터 신설 119.67㎡, 1동 연면적 187.65㎡
   나. 기반시설 : 349.10㎡ → 537.79㎡(증 188.69㎡)
   다. 휴양시설 : 163.50㎡ → 0㎡(감 163.50㎡)
   라. 운동시설 : 0㎡ → 30.61㎡(증 30.61㎡)
   마. 녹지 및 기타 : 926.00㎡ → 697.79㎡(감 228.21㎡)
5.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02-351-8009)
8.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갈곡리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은평구 갈현동 436-51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738.6	812.60	1동	135.2	135.2	44	1,738.60	1,040.81	1동	78.81	187.65	34	증 228.21㎡ (감 10기)
기반시설	소 계	349.10	349.10	-	-	-	-	537.79	537.79	-	-	-	-	증 188.69㎡
	도 로	76.40	76.40	-	-	-	-	57.94	57.94	-	-	-	-	감 18.46㎡
	광 장	272.70	272.70	-	-	-	-	479.85	479.85	-	-	-	-	증 207.15㎡
조경시설		-	-	-	-	-	-	-	-	-	-	-	-	-
휴양시설		163.50	163.50	1동	135.2	135.2	10	-	-	-	-	-	11	감 163.5㎡ (증 1기)
유희시설		300.00	300.00	-	-	-	3	472.41	472.41	1동	78.81	187.65	7	증 172.41㎡ (증 4기)
운동시설		-	-	-	-	-	6	30.61	30.61	-	-	-	4	증 30.61㎡ (감2기)
교양시설		-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	-	1동	(69.27)	(69.27)	-	화장실 지하1층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관리시설	-	-	-	-	-	25	-	-	-	-	-	12	(감13기)
녹지 및 기타	926.00	-	-	-	-	-	697.79	-	-	-	-	-	감 228.21㎡
시설율 (법정 60%)	812.60 / 1,738.60 x 100 = 46.73%						1,040.78 / 1,738.6 x 100 = 59.86%						증 13.13%
건폐율 (법정 5%)	135.20 / 1,738.60 x 100 = 7.77%						78.81 / 1,738.6 x 100 = 4.53%						감 3.24%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 계			갈현동 436-51	1,738.60	812.60		1동	135.2	135.2	44		갈현동 436-51	1,738.60	1,040.81	연와조	1동	78.81	187.65	34	증 228.21㎡ (감 10기)
기반시설	소계		갈현동 436-51	349.10	349.10							갈현동 436-51	537.79	537.79						증 188.69㎡
	도로			76.40	76.40								57.94	57.94						감 18.46㎡
	광장	가		272.70	272.70						가		479.85	479.85						증 207.15㎡
											가-1		472.15	472.15						
											가-2		38.31	38.31						신설
휴양시설	소계		갈현동 436-51	163.50	163.50		1동	135.2	135.2	10		갈현동 436-51							11	감 207.15㎡ (증 1기)
	파출소	1		135.20	135.20		1동	135.2	135.2											폐지
	휴게소	나		28.30	28.30															폐지
	팔각정자	①								1										폐지
	벤치	②								3										폐지
	원형의자	③								1										폐지
	연식의자	④								5										폐지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등의자										①								6		신설
	앉음벽										②								1		신설
	파고라										③								1		신설
	평의자										④								3		신설
유희시설	소계		갈현동 436-51	300.00	300.00					3		갈현동 436-51	472.41	472.41	연와조	1동	78.81	187.65	7		증 172.41㎡ (증 4기)
	어린이놀이터	다		300.00	300.00						다		352.74	352.74							증 52.74㎡
	조합놀이대	⑤								1	⑤								1		
	그네	⑥								1	⑥								1		
	정글짐	⑦								1											폐지
	시소										⑦								2		신설
	흔들놀이대										⑧										
	실내놀이대										1		119.67	119.67	연와조	1동	78.81	187.65	3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운동시설	소계		갈현동 436-51							6		갈현동 436-51	30.61	30.61					4	증 30.61㎡ (감 27기)
	허리돌리기	⑨								1										폐지
	윗몸일으키기	⑧								2										폐지
	평행봉	⑩								1										폐지
	등치기	⑪								2										폐지
	야외운동공간										나		30.61	30.61						신설
	야외운동기구										⑨								4	신설
편익시설	소계		갈현동 436-51									갈현동 436-51			철근콘크리트	1동	(69.27)	(69.27)		
	화장실										2				철근콘크리트	1동	(69.27)	(69.27)		
공원관리시설	소계									25									12	(감 13기)
	공원등	⑫								2	⑫								3	증 1기
	수목보호덮개	⑬								10	⑬								1	감 9기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볼라드	⑭								13	⑭								2	감 11기
	CCTV										⑩								2	신설
	안내판										⑪								2	신설
	음수대										⑮								1	신설
	휀스										⑯								1	신설
녹지 및 기타	소계		갈현동 436-51	926.00								갈현동 436-51	697.79							감 228.21㎡
	녹지			926.00									697.79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9.6	76.4				
변경					23.6	57.9				
당초	산책로	소 계			39.6	76.4				
변경					23.6	57.9				
폐지		3	1	1.5	28.1	42.2	산책로	외부도로	광장	
신설		3	1	2.0	8.0	16.5	산책로	외부도로	광장	
당초		3	2	6.0	2.8	16.7	산책로	외부도로	광장	
변경		3	2	3.5	4.3	16.0	산책로	외부도로	광장	
당초		3	3	2.0	4.6	9.3	산책로	외부도로	광장	
변경		3	3	2.4	4.5	10.9	산책로	외부도로	광장	
당초		3	4	2.0	4.1	8.2	산책로	외부도로	광장	
변경		3	4	2.0	6.8	14.5	산책로	외부도로	광장	

◈ 강서구공고 제2024-147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강서구 오곡동 699-6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8일
강 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	18	집산도로	60	강서구 오곡동 699-6 (39번국도)	강서구 오곡동 699-9 (시계)	일반 도로	-	강서구 고시 제2007-40호 (2007.06.14.)	인천시 계양구 중로2-134호와 연결(구도)
변경	대로	2	가	34~48	보조간선 도로	60	강서구 오곡동 699-6 (39번국도)	강서구 오곡동 699-9 (시계)	일반 도로	-	강서구 고시 제2007-40호 (2007.06.14.)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 -	대로 2 - 가	• 폭원 변경 - 당초 : 18m - 변경 : 34m~48m • 면적 변경 - 당초 : 1,045㎡ - 변경 : 2,155㎡ (증 1,110㎡)	•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인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교통영향 평가에 반영된 사업지구 주변도로를 개설하고자 함. • 노선 폭원 변경 (중로2류 → 대로2류) (왕복 4차선 →왕복 6차선 확장)

라. 관련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공고 제2024-1310호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 내 문화공원 조성계획(안) 주민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77호(2021.12.31.)로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문화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8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위　　치: 서울특별시 신길동 205-136일원

2. 면　　적: 1,739.00㎡

3. 조성계획(안)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739.00	1,059.62	-	-	-	132	-
기반	소 계	766.74	766.74	-	-	-	17	-
	도 로	14.33	14.33	-	-	-	-	-
	광 장	752.41	752.41	-	-	-	17	-
조경시설		-	-	-	-	-	-	-
휴양시설		260.38	260.38	-	-	-	11	-
유희시설		-	-	-	-	-	-	-
운동시설		32.50	32.50	-	-	-	1	-
관리시설		-	-	-	-	-	-	-
녹지 및 기타		679.38	679.38	-	-	-	103	-
시설률 (법정 60%)		1,059.62㎡/1,739.00㎡*100=60.93%						

4.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02-2670-3757)

7.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1부. 끝.

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1. 총괄표 (위치 : 신길동 205-136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739.00	1,059.62	-	-	-	132	-
기반	소 계	766.74	766.74	-	-	-	17	-
	도 로	14.33	14.33	-	-	-	-	-
	광 장	752.41	752.41	-	-	-	17	-
조경시설		-	-	-	-	-	-	-
휴양시설		260.38	260.38	-	-	-	11	-
유희시설		-	-	-	-	-	-	-
운동시설		32.50	32.50	-	-	-	1	-
관리시설		-	-	-	-	-	-	-
녹지 및 기타		679.38	679.38	-	-	-	103	-
시설률 (법정 60%)		1,059.62㎡/1,739.00㎡ *100=60.93%						

2. 시설조서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계				1,739.00	1,059.62	-	-	-	-	132
기반시설	소 계			766.74	766.74	-	-	-	-	17
	도 로	산-1		14.33	14.33	-	-	-	-	
	광 장	가-1		752.41	752.41	-	-	-	-	17
	등의자	①								6
	앉음벽	②								1
	동판	③								10
휴양시설	소 계			260.38	260.38	-	-	-	-	11
	휴게쉼터-1	나-1		191.95	191.95	-	-	-	-	
	휴게쉼터-2	나-2		12.25	12.25	-	-	-	-	
	휴게쉼터-3	나-3		56.18	56.18	-	-	-	-	
	조형앉음벽A	④				-	-	-	-	1
	조형앉음벽B	⑤				-	-	-	-	1
	앉음벽	⑥				-	-	-	-	1
	파고라	⑦				-	-	-	-	1
	평의자	⑧				-	-	-	-	3
	데크	⑨				-	-	-	-	1
	야외테이블세트	⑩				-	-	-	-	3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 계			32.50	32.50	-	-	-	-	1
	운동공간	다-1		32.50	32.50	-	-	-	-	
	운동파고라	⑪				-	-	-	-	1
녹지 및 기타	소 계			679.38	679.38	-	-	-	-	103
	녹지 및 기타	라-1		45.07	45.07	-	-	-	-	
	녹지 및 기타	라-2		295.78	295.78	-	-	-	-	
	녹지 및 기타	라-3		25.25	25.25	-	-	-	-	
	녹지 및 기타	라-4		16.64	16.64	-	-	-	-	
	녹지 및 기타	라-5		16.06	16.06	-	-	-	-	
	녹지 및 기타	라-6		25.45	25.45	-	-	-	-	
	녹지 및 기타	라-7		84.63	84.63	-	-	-	-	
	녹지 및 기타	라-8		170.50	170.50	-	-	-	-	
	종합안내판	⑫								1
	시설안내판	⑬								2
	미스트폴	⑭								18
	경관시설A	⑮								13
	경관시설B	⑯								36
	문화가벽	⑰								1
	볼라드등	⑱								25
	공원등	⑲								4
	야외테이블	⑳								3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7.0	14.33				
신설	산책로	소 계			7.0	14.33				
신설	산책로	-	1	2.0	7.0	14.33	산책로	구역계	광장	

조성계획도

신길문화공원



■ 범례

구 분	기호	시설명	면적(M2)	공작물	비 고
기반시설	산-1	도로	14.33		
	가-1	광장	752.41		
	①	등의자		6	
	②	앉음벽		1	L=11
	③	동판		10	
	계		766.74		
휴양시설	다-1	휴게쉼터	191.95		
	다-2	휴게쉼터	44.75		
	다-3	휴게쉼터	56.18		
	④	조형앉음벽A		1	L=6
	⑤	조형앉음벽B		1	L=16
	⑥	앉음벽		1	L=5
	⑦	운동파고라		1	
	⑧	파고라		1	
	⑨	평의자		3	
	⑩	데크		1	A=56.18
	⑪	야외테이블세트		3	
	계		292.88		
녹지 및 기타	라-1	-	45.07		
	라-2	-	295.78		
	라-3	-	25.25		
	라-4	-	16.64		
	라-5	-	16.06		
	라-6	-	25.45		
	라-7	-	84.63		
	라-8	-	170.50		
	⑫	종합안내판		1	
	⑬	시설안내판		2	
	⑭	미스트폼		18	
	⑮	경관시설A		13	
	⑯	경관시설B		36	
	⑰	문화가벽		1	
	⑱	볼라드등		25	
	⑲	공원등		4	
	⑳	야외테이블		3	
	계		679.38		
합 계			1,739.00	132	

A1 : S=1/200
A3 : S=1/400

0 5 10 20 30(m)

◈ 영등포구공고 제2024-1311호

신길동 413-5번지 일원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안) 주민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9호(2021.12.1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된 신길동 413-5번지 일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8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13-5번지 일원

2. 면　　적: 6,091.00㎡

3. 조성계획(안)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6,091.00	2,844.60	-	124.13	124.13	57	-
기반	소 계	1,323.33	1,323.33	-	-	-	-	-
	도 로	1,119.18	1,119.18	-	-	-	-	-
	광 장	204.15	204.15	-	-	-	-	-
조 경 시 설		378.29	378.29	-	-	-	11	-
휴 양 시 설		-	-	-	-	-	-	-
유 희 시 설		494.10	494.10	-	-	-	9	-
운 동 시 설		292.61	292.61	-	-	-	4	-
관 리 시 설		356.27	356.27	-	124.13	124.13	33	-
녹지 및 기타		3,246.40	3,246.40	-	-	-	-	-
시 설 률 (법정 60%)		(2,844.60 / 6,091.00) x 100 = 46.70%						
건 폐 율 (법정 10%)		(124.13 / 6,091.00) x 100 = 2.04%						

4.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02-2670-3757)

7.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1부. 끝.

신길동413-5일원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안)조서

1. 총괄표 (위치 : 영등포구 신길동 413-5번지 일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6,091.00	2,844.60		124.13	124.13	57							
기반시설	소 계	1,323.33	1,323.33											
	도 로	1,119.18	1,119.18											
	광 장	204.15	204.15											
조경시설		378.29	378.29				11							
유희시설		494.10	494.10				9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운 동 시 설	292.61	292.61				4							
관 리 시 설	356.27	356.27		124.13	124.13	33							
녹지 및 기타	3,246.40	3,246.40											
시 설 율 (법정 40%)	(2,844.60 / 6,091.00) x 100 = 46.70%												
건 폐 율 (법정 10%)	(124.13 / 6,091.00) x 100 = 2.04%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	신길동413-5번지 일원	6,091.00	2,844.60			124.13	124.13	57										
기반시설	소 계	-	"	1,323.33	1,323.33															
	도 로	-	"	1,119.18	1,119.18															
	광 장	가-1	"	21.12	21.12															
		가-2	"	10.98	10.98															
		가-3	"	20.39	20.39															
		가-4	"	52.69	52.69															
		가-5	"	48.96	48.96															
		가-6	"	50.01	50.01															
조경시설	소 계		신길동413-5번지 일원	378.29	378.29					11										
	쉼터1	나-1	"	90.93	90.9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쉼터2	나-2	〃	96.79	96.79															
쉼터3	나-3	〃	60.47	60.47															
쉼터4	나-4	〃	41.49	41.49															
쉼터5	나-5	〃	42.94	42.94															
입구가벽	나-6	〃	2.45	2.45															
입구가벽	나-7	〃	3.27	3.27															
입구가벽	나-8	〃	2.36	2.36															
잔디 스탠드	나-9	〃	8.38	8.38															
잔디 스탠드	나-10	〃	8.86	8.86															
잔디 스탠드	나-11	〃	9.54	9.54															
앉음벽	나-12	〃	4.46	4.46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앉음벽	나-13	〃	3.03	3.03															
앉음벽	나-14	〃	3.32	3.32															
벅공형 플레이	①	〃							2										
터하우스 파고라	②	〃							1										
잔디스탠드	③	〃							3										
의자(평의형)	④	〃							3										
바테이블	⑤	〃							2										
소계		선길동413-5번지 일원	494.10	494.10					9										
유희시설	다-1	〃	461.66	461.66															
유희시설	다-2	〃	22.89	22.89															
유희시설	다-3	〃	9.55	9.55															
유희시설	⑥	〃							1										
네트 놀이대																			

구분		변전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관리시설	시설물	⑦	〃							2										
		⑧	〃							2										
		⑨	〃							1										
		⑩	〃							1										
		⑪	〃							2										
	소계		신길동413-5번지 일원	292.61	292.61			124.13	124.13	4									33	
	체험 단련장1	라-1	〃	235.92	235.92															
	체험 단련장2	라-2	〃	56.69	56.69															
	복합운동 시설	⑫	〃							2										
	생활체육 시설	⑬	〃							2										
	소계		신길동413-5번지 일원	356.27	356.27			124.13	124.13	33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지하주차장 상부구조물	마-1	"	222.35	222.35															
	지하주차장 출입계단	마-2	"	41.27	41.27			41.27	41.27											
		마-3	"	60.47	60.47			60.47	60.47											
	관리창고	마-4	"	9.79	9.79															
	DA	마-5	"	13.94	13.94			13.94	13.94											
		마-6	"	8.45	8.45			8.45	8.45											
	안내판	⑭	"							16										
	음수전	⑮	"							2										
	공원등	⑯	"							12										
	CCTV	⑰	"							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녹지 및 기타	소계		신길동413-5번지 일원	3,246.40	3,246.40															
	녹지 및 기타	-	"	3,246.40	3,246.40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560.50	1,119.18				
소 계					25.23	151.42				
신설	소로	3	1	6	25.23	151.42	차량진입로	외부도로	주차장	
소계					535.27	967.76				
신설	산책로		1	2	142.41	284.80	산책로	산-2	산-2	
“			2	2	82.05	164.11	“	산-1	산-1	
“			3	2	25.52	51.05	“	산-2	산-2	
“			4	2	69.94	139.88	“	산-1	산-1	
“			5	2	12.18	24.37	“	산-1	나-2	
“			6	2	12.72	25.44	“	나-2	산-1	
“			7	2	8.89	17.79	“	가-5	산-1	
“			8	2	7.99	15.98	“	가-5	산-1	
“			9	2	7.19	14.39	“	가-4	산-2	
“			10	2	16.57	33.14	“	외부도로	가-6	
“			11	2	15.70	31.41	“	외부도로	산-4	
“			12	2	21.25	42.51	“	외부도로	산-1	
“			13	1.8	2.55	4.60	“	산-16	마-2	
“			14	1.6	9.22	14.76	“	가-4	산-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			15	1.2	12.05	14.47	“	산-1	산-2	
“			16	1	89.04	89.04	“	소3-1	외부도로	

조성계획도

신풍역 역세권 어린이공원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시설면적	기반시설	1,323.33	21.73	
	조경시설	378.29	6.21	
	유희시설	494.10	8.11	
	운동시설	292.61	4.80	
	관리시설	356.27	5.85	
소계		2,844.60	46.70	
녹지		3,246.40	53.30	
총계		6,091.00	100.00	

* 어린이공원 시설률 60%이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부호	위치	부지면적(㎡)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총면적	-	신길동 413-5번지 일원	6,091.00	124.13	124.13	57	건폐율 2.04%
시설면적	-	"	2,844.60	124.13	124.13	-	시설율 46.70%
소계			1,323.33	-	-	-	
기반시설 도로	-	신길동 413-5번지 일원	1,119.18				
기반시설 광장	가-1	"	21.12				
"	가-2	"	10.98				
"	가-3	"	20.39				
"	가-4	"	52.69				
"	가-5	"	48.96				
"	가-6	"	50.01				
소계			378.29			23	
조경시설 쉼터1	나-1	신길동 413-5번지 일원	90.93				
조경시설 쉼터2	나-2	"	96.79				
조경시설 쉼터3	나-3	"	60.47				
조경시설 쉼터4	나-4	"	41.49				
조경시설 쉼터5	나-5	"	42.94				
조경시설 입구가벽	나-6	"	2.45				
조경시설 "	나-7	"	3.27				
조경시설 "	나-8	"	2.36				
조경시설 칸디스탠드	나-9	"	8.38				
조경시설 "	나-10	"	8.86				
조경시설 "	나-11	"	9.54				
조경시설 앞음벽	나-12	"	4.46				
조경시설 "	나-13	"	3.03				
조경시설 "	나-14	"	3.32				
조경시설 박공형테이블	①	"	-			2	
조경시설 피하우스파고라	②	"	-			1	
조경시설 칸디스탠드	③	"	-			3	
조경시설 의자(벤치형)	④	"	-			3	
조경시설 바테이블	⑤	"	-			2	
소계			494.10			9	
유희시설 유희시설1	다-1	신길동 413-5번지 일원	461.66				
유희시설 유희시설2	다-2	"	22.89				모래놀이터
유희시설 유희시설3	다-3	"	9.55				모래놀이터
유희시설 네트놀이대	⑥	"	-			1	
유희시설 시소	⑦	"	-			2	
유희시설 흔들놀이대	⑧	"	-			2	
유희시설 파고라	⑨	"	-			1	
유희시설 그네	⑩	"	-			1	
유희시설 타각술	⑪	"	-			2	
소계			292.61	-	-	4	
운동시설 체력단련장1	라-1	신길동 413-5번지 일원	235.92				
운동시설 체력단련장2	라-2	"	56.69				
운동시설 복합운동시설	⑫	"	-			2	
운동시설 생활체육시설	⑬	"	-			2	
소계			356.27	124.13	124.13	33	
관리시설 자하주차장 상부구조물	마-1	신길동 413-5번지 일원	222.35				
관리시설 자하주차장 출입계단	마-2	"	41.27	41.27	41.27		
관리시설 "	마-3	"	60.47	60.47	60.47		
관리시설 관리창고	마-4	"	9.79				
관리시설 DA	마-5	"	13.94	13.94	13.94		
관리시설 DA	마-6	"	8.45	8.45	8.45		
관리시설 안내판	⑭	"	-			16	
관리시설 음수전	⑮	"	-			2	
관리시설 공원등	⑯	"	-			12	
관리시설 CCTV	⑰	"	-			3	
녹지	소계		3,246.40				

* 어린이공원 시설률 60%이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어린이공원 건폐율 5%이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7

◈ 강남구공고 제2024-17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2-95호(2022. 4. 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국제교류 복합지구 보행축 정비공사' 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의 위치 : 국제교류 복합지구 일원(강남구 삼성동 일대)
- 선릉로100길 등 6개 가로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 업 명 : 국제교류 복합지구 보행축 정비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주요내용 : 교통체계변경(양방통행 ⇒ 일방통행),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개선 등

구 분	규 모			내 용	비 고
	연장(m)	폭원(m)	면적(㎡)		
선릉로100길	460	11.5	5,590	- 차도 포장 2,061㎡, 판석 포장 2,977㎡, 은행나무 식재 43주, 가로등(보안등) 설치 16개 등	
봉은사로68길	600	11.5	7,056	- 차도 포장 2,422㎡, 판석 포장 2,890㎡, 이팝나무 식재 94주, 가로등(보안등) 설치 21개 등	
삼성로95길	340	11.5	4,210	- 차도 포장 1,578㎡, 판석 포장 2,101㎡, 은행나무 식재 30주, 가로등(보안등) 설치 13개 등	
삼성로96길	230	11.5	2,945	- 차도 포장 1,078㎡, 판석 포장 1,368㎡, 은행나무 식재 24주, 가로등(보안등) 설치 11개 등	
삼성로103길	250	6.0	1,618	- 차도 포장 1,432㎡, 미끄럼방지 포장 270㎡, 가로등(보안등) 설치 13개 등	
삼성로104길	240	6.0	1,640	- 차도 포장 974㎡, 판석 포장 364㎡, 미끄럼방지 포장 194㎡ 등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현대자동차(주) 외 2개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

마. 사업시행기간 : 2022. 5. 25. ~ 2024. 5. 24.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강남구 삼성동	172-30	도	2,432.7	1,685.1	서울특별시 강남구
2	강남구 삼성동	172-35	도	3,320.9	1,265.2	서울특별시 강남구
3	강남구 삼성동	172-48	도	4,125.9	2,926.6	서울특별시 강남구
4	강남구 삼성동	172-51	도	163.5	163.5	서울특별시 강남구
5	강남구 삼성동	172-52	도	2,673.5	1,035.0	서울특별시 강남구
6	강남구 삼성동	172-55	도	99.8	99.8	서울특별시 강남구
7	강남구 삼성동	172-72	도	1,375.3	1,375.3	서울특별시 강남구
8	강남구 삼성동	172-73	도	4,429.2	1,077.6	서울특별시 강남구
9	강남구 삼성동	172-74	도	623.6	6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강남구 삼성동	172-77	도	2,479.5	1,616.5	서울특별시 강남구
11	강남구 삼성동	172-79	도	1,225.0	1,225.0	서울특별시 강남구
12	강남구 삼성동	172-87	도	1,261.7	1,261.7	서울특별시 강남구
13	강남구 삼성동	172-88	도	2,280.4	2,280.4	서울특별시 강남구
14	강남구 삼성동	172-89	도	2,933.4	2,615.0	서울특별시 강남구
15	강남구 삼성동	172-90	도	5,176.7	3,604.0	서울특별시 강남구
16	강남구 삼성동	172-98	도	3,631.9	2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				38,233.0	23,059.3	

사. 관련도서: 생략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로관리과(☎02-3423-6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공고 제2024-1475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21호(2013.12.12.)로『천호뉴타운3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3호(2021.12.02.)로『「천호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안)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 도서는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에 비치하고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열람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8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96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천호 재정비촉진구역 소공원2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 소공원 조성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 분 류			
공 원	소공원	천호동 423-96 일원	2,306.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천호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봉수)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88, 3층(천호동, 강동빌딩)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고시일~2026.0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연번	동명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계		25필지		3,042.0	2,306.0						
1	둔촌동	422-1	대	356.0	295.0	천호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88, 3층				
2	둔촌동	422-11	대	63.0	63.0	상동	상동				
3	둔촌동	423-285	대	211.0	211.0	상동	상동				
4	둔촌동	423-86	대	106.0	28.0	상동	상동				
5	둔촌동	423-91	대	123.0	25.0	상동	상동				
6	둔촌동	423-92	대	96.0	35.0	상동	상동				
7	둔촌동	423-93	대	96.0	49.0	상동	상동				
8	둔촌동	423-94	대	109.0	71.0	상동	상동				
9	둔촌동	423-95	대	119.0	119.0	상동	상동				
10	둔촌동	423-96	대	129.0	129.0	상동	상동				
11	둔촌동	423-97	대	126.0	126.0	상동	상동				
12	둔촌동	423-98	대	165.0	165.0	상동	상동				
13	둔촌동	423-100	대	157.0	157.0	상동	상동				
14	둔촌동	423-132	대	116.0	116.0	상동	상동				
15	둔촌동	423-133	대	89.0	24.0	상동	상동				
16	둔촌동	423-134	대	96.0	16.0	상동	상동				
17	둔촌동	423-135	대	86.0	86.0	상동	상동				
18	둔촌동	423-136	대	86.0	86.0	상동	상동				

연번	동명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9	둔촌동	423-137	대	96.0	6.0	상동	상동				
20	둔촌동	423-138	대	96.0	1.0	상동	상동				
21	둔촌동	423-139	대	182.0	159.0	상동	상동				
22	둔촌동	423-142	대	99.0	99.0	상동	상동				
23	둔촌동	423-143	대	106.0	106.0	상동	상동				
24	둔촌동	423-144	대	126.0	126.0	상동	상동				
25	둔촌동	423-250	도	8.0	8.0	강 동 구	-				

사. 열람기간: 2024. 7. 22.~2024. 8. 5.

아. 열람장소: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3425-5984)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재건축재개발과 ☎ 02-3425-59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공고 제2024-1477호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27호(2003. 11. 18.)로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8호(2009. 1. 2.)로 천호뉴타운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1호(2014. 7. 31.)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의제 고시된 다음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15-40호(2015. 3. 18.)로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2-167호(2022. 10. 1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당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 기간 내 강동구 도시계획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서류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또는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강 동 구 청 장

□ 공람 개요
1. 공람기간: 2024. 7. 17. ~ 2024. 8. 2.
2. 열람장소: 강동구청 제2청사 3층 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무실(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200, 302호)
3.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 서류

□ 사업시행계획(변경) 개요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명 칭: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대
나. 면 적: 38,509.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광)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200, 302호(천호동, 문화빌딩)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15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15. 3. 1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구역면적: 38,509.2㎡
 나. 대지면적: 27,510㎡
 다. 건축면적: 12,900.32㎡ (건폐율: 46.89%)
 라. 연 면 적: 지상층 143,200.5630㎡ / 지하층 85,707.9557㎡
 합 계 228,908.5187㎡ (용적률: 516.57%)
 마. 최고높이: 134.95m
 바. 주 용 도: 공동주택(999세대), 오피스텔(264실), 업무·판매시설
 사. 규 모: 지하5층/지상40층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공급 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25	47A	47B	50	59	84A	84B	98	102	114	135P	136P	137P	138AP	138BP	138CP
계		4	999	2	138	100	35	200	272	103	37	70	33	1	1	1	3	2	1
분 양	아파트	4	882	2	88	51	17	200	272	103	37	70	33	1	1	1	3	2	1
임 대	아파트		117	-	50	49	18	-	-	-	-	-	-	-	-	-	-	-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사업시행자 설치 후 강동구로 무상귀속

구분	규모					위치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합계					10,999.2		
도로	중로	1-406	20	618 (235)	767.0	천호동 217-134	천호동 550-6
	중로	3-7	12~15	134 (134)	1,432.0	천호동 417-57	천호동 423-158
	중로	2-1	15	399 (285)	4,279.0	천호동 357-1	천호동 397-16
	소 계				6,478.0		
공원	소공원				3,115.0	천호동 422-12번지 일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중복결정)	
공공청사	공공청사				1,406.2	천호동 422-12번지 일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중복결정-시설면적 2,973.65㎡)	
주차장	주차장				(4,521.2)	천호동 422-12번지 일원 (공공청사 및 소공원(천호1,천호3) 중복결정- 천호3구역 합산면적 6,827.2㎡(시설면적 17,097.71㎡))	
체육시설	체육시설(수영장)				(4,521.2)	천호동 422-12번지 일원 (공공청사 및 소공원(천호1,천호3) 중복결정(지하1층~지하3층 일부)- 천호3구역 합산면적 6,827.2㎡(시설면적 17,097.71㎡))	

 나.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변경없음

10. 의제처리사항
 - 변동사항 없음

11. 변경내용
 가. 업무시설동(104동) 2~5층 용도변경(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법정주차대수 변경
 나. 업무시설동(104동) 4~5층 평면 레이아웃 변경(경량벽체 구획)
 다. 기타 변경사항
  (1) 획지1(아파트) 실시설계 적용, 특화설계 반영, 시공성향상 등 경미한변경
  (2) 획지2(공공청사) 관련 시공성향상 등 경미한변경
  (3)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실시계획변경: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도로 관련심의(규제심의, 소방심의, 디자인심의 등) 반영으로 인한 도로계획변경 등

13. 관계도서는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53)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1) 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2-12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천호 재정비촉진지구」천호1 공원조성계획(공간시설: 소공원)
 나. 명 칭: 천호 재정비촉진구역 소공원1 조성계획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존		소공원	천호동 422-1번지 일원	3,115.0	-	3,115.0	2009.1.2.	-
변경		소공원	천호동 422-12번지 일원	3,115.0	-	3,115.0	-	분할로인하여 천호동 422-1에서 이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광)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200, 302호(천호동, 문화빌딩)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2024년 08월
 나. 준공예정일: 2024년 10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동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천호동	422-2	대	2,155.0	13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422-12	대	4,222.0	2,984.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200,302호(천호동,문화빌딩)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외 4인			
	423-289	대	220.0	1.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원 소계		6,597.0	3,115.0	-	-	-	-	-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3호(2021. 12. 2.)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금번 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되는 소공원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강동구에 무상으로 귀속됨

8. 기타 안내사항

가.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20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천호 재정비촉진지구」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위 치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사업시행면적)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시 점	종 점			
기정	중로	1	406	20	보조간선도로	618 (235)	천호동 217-134	천호동 550-6	일반도로	2001. 6. 2.	767.0㎡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99 (285)	천호동 357-1	천호동 397-16	일반도로	1969. 1.18.	4,278.0㎡
기정	중로	3	7	12~15	집산도로	134 (134)	천호동 417-57	천호동 423-158	일반도로	1969. 1.18.	1,432.0㎡

※ 폭원, 연장에서 ( )는 사업을 시행하는 평균 폭원과 연장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일: 2015. 3. 18.)
 가. 성 명: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대표자 김종광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구천면로 200, 302호 (문화빌딩,천호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일: 2024년 4월
 나. 준공예정일: 2024년 10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동	지번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권리
천호동	397-18	도로	43.0	11.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397-19	대	361.0	101.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02-7	대	344.0	69.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02-8	대	1497.0	183.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03-9	대	416.0	84.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03-10	도로	33.0	16.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03-13	대	343.0	76.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심미정 외 5인		근저당권설정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권리
	403-27	도로	124.0	24.0	강동구				
	406-10	대	99.0	19.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외1인		근저당권설정
	406-11	대	228.0	42.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외1인		근저당권설정
	406-12	대	145.0	23.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외1인		근저당권설정
	406-13	대	149.0	20.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06-14	대	271.0	36.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외1인		근저당권설정
천호동	421-14	대	83.0	17.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21-17	대	162.0	16.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외1인		근저당권설정
	421-18	대	37.0	30.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397-467	대	253.0	253.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397-16	대	172.0	171.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397-17	대	291.0	242.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최정연		근저당권설정
	424-6	대	66.0	8.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외1인		근저당권설정
	424-7	대	43.0	25.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397-402	도로	5427.0	74.0	강동구				
	399-57	대	36.0	36.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외1인		근저당권설정
	399-58	대	149.0	57.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399-9	도로	86.0	86.0	강동구				
	399-59	대	833.0	137.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허명란		근저당권설정
	399-48	도로	58.0	58.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박지영		근저당권설정
	399-60	도로	1.0	1.0	강동구				
	399-61	도로	21.0	21.0	강동구				
	401-15	대	491.0	141.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근저당권설정
	401-14	도로	14.0	14.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권리
	402-4	대	294.0	27.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근저당권설정
	402-15	도로	76.0	67.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02-16	대	112.0	50.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근저당권설정
	402-26	대	13.0	9.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근저당권설정
	404-1	주차장	3905.0	286.0	강동구				
	404-5	도로	67.0	25.0	강동구				
	406-7	대	7.0	7.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외1인		근저당권설정
	406-37	대	198.0	163.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외1인		근저당권설정
	406-38	대	186.0	110.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외2인		근저당권설정
	406-22	도로	16.0	16.0	강동구				
	406-24	도로	3.0	3.0	강동구				
	406-27	대	79.0	79.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외1인		근저당권설정
	406-31	대	37.0	37.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외1인		근저당권설정
	422-12	대	4641.0	7.0	주택도시보증공사외1인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외1인		근저당권설정
	422-2	대	2155.0	828.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23-283	대	205.0	44.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외1인		근저당권설정
	423-284	대	251.0	45.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23-286	도로	893.0	342.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23-287	대	221.0	73.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23-288	대	205.0	82.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외1인		근저당권설정
	423-289	대	377.0	219.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외1인		근저당권설정
	423-101	도로	18.0	3.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23-105	대	218.0	37.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	천호1도시환경		근저당권설정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권리
						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정비사업조합 외1인		
	423-106	대	215.0	50.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외1인		근저당권설정
	423-112	대	510.0	114.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근저당권설정
천호동	423-115	대	182.0	86.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외1인		근저당권설정
	423-290	대	74.0	74.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외1인		근저당권설정
	423-296	대	89.0	52.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23-246	대	732.0	42.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23-249	도로	36.0	10.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근저당권설정
	417-17	대	66.0	52.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외1인		근저당권설정
	417-18	대	50.0	43.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외1인		근저당권설정
	417-33	대	40.0	15.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외1인		근저당권설정
	417-34	대	46.0	46.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17-35	대	79.0	68.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17-50	대	94.0	52.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17-54	대	22.0	1.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17-57	대	106.0	83.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17-80	도로	236.0	49.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23-158	대	132.0	132.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외1인		근저당권설정
	423-166	대	88.0	88.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외1인		근저당권설정
	423-167	대	75.0	75.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23-295	도로	260.0	257.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동	지번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권리
	423-206	대	29.0	29.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근저당권설정
	423-237	대	136.0	136.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외1인		근저당권설정
	424-2	대	483.0	75.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외1인		근저당권설정
	424-3	대	40.0	11.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424-5	대	410.0	187.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24호(2020. 3. 26.)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금번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되는 중로1-406(해당구간),중로2-1호선(해당구간),중로3-7호선(해당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강동구에 무상으로 귀속됨
8. 관련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8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서울시계내 한강 (강동대교~ 한남대교)	- 고무보트1대 - 작업대1대 (38.75㎡)	동양하루살이 유충의 서식 현황 확인 중 선박운항	'24. 7. 15. ~ '24. 10. 31.	'24. 7. 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8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조선기술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47, 10동 309호	서울시계내 한강 (행주대교~ 압구정동376-1)	(선박2척) 472.5㎡	대한웨이크 유선장 설치 중 선박운항	'24. 6. 28. ~ '24. 9. 27.	'24. 6. 27.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8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호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구 상암동 496-119번지상 한강)	(선박38척) 9,841.7㎡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24. 7. 1. ~ '24. 7. 31.	'24. 6. 27.
한수개발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호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구 상암동 496-119번지상 한강)	(선박2척) 384.66㎡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24. 7. 1. ~ '24. 7. 31.	'24. 6. 27.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9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신호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구 상암동 496-119번지상 한강)	(선박5척) 544.6㎡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24. 7. 1. ~ '24. 7. 31.	'24. 6. 28.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9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서울시계내 한강 (올림픽대교 일원)	308.09㎡ - 기선1척 부산1척	서울시계 내 올림픽대교 정밀안전점검 중 선박운항	'24. 7. 1. ~ '24. 7. 31.	'24. 6. 28.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9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광장티엔비	서울시 강동구 선사로 6길 **(*층)	서울시계내 한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678번지상 한강)	(선박11척) 3,185㎡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24. 7. 1. ~ '24. 9. 30.	'24. 7. 1.
		서울시계내 한강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57 한강)	(선박13척) 3,72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9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 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천 명칭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 기간	
서울특별시 미래한강 본부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 등	- 토 지 365.7㎡ - 도선장 619.8㎡ - 공작물 411.1㎡	수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선착장 조성 (도선사업)	2024. 7. 15. ~ 12. 31.	2024. 7. 15.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126-1 등	- 토 지 408.6㎡ - 도선장 619.8㎡ - 공작물 411.9㎡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86 등	- 토 지 364.8㎡ - 도선장 427.0㎡ - 공작물 251.3㎡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80-1 등	- 토 지 415.4㎡ - 도선장 619.8㎡ - 공작물 372.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등	- 토 지 460.3㎡ - 도선장 619.8㎡ - 공작물 110.3㎡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205-8 등	- 토 지 348.4㎡ - 도선장 619.8㎡ - 공작물 359.0㎡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441 등	- 토 지 263.2㎡ - 도선장 427.0㎡ - 공작물 199.5㎡			

기 타

◈ 마포소방서공고 제2024-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마포소방서장

○ 등록대상

업 종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미리방재(주)	제서울(마포)-2024 -0001호 (2024.7.11.)	장필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65, 501호	02-1661-391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소방서 예방과 관리업담당(☎02-6981-78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24-3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영등포소방서장

○ 등록대상

업 종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한솔방재 주식회사	제서울(영등포)-2024 -0003호 (2024.7.10.)	박경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79, 303호	02-884-911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관리업담당(☎02-6981-70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70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지에스티에이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2산단로 15-2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76 외 2필지

 - 면 적 : 일시 7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반조사

5. 점용기간 : 2024.7.9.~2024.8.30.(기간 중 5일)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7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당인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초구 반포동 일원
 - 면 적 : 35,06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열배관 매설
 - 개 요 : 300A: 22m, 400A: 180m, 500A: 1,942m, 700A: 5,872m, 900A: 10m
 가압펌프장 1동

5. 점용기간 : (당초) 2019.10.21. ~ 2024.06.30.
 (변경) 2024.07.01. ~ 2029.06.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80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205-5번지

 - 면 적 : 일시 1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송배수관 긴급정비 필요 확인을 위한 사전굴착

5. 점용기간 : 2024.7.00.~2024.7.24.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8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이수엔지니어링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4층 A4-68호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468
 - 면 적 : 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당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지반조사
 (변경)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장기 지하수위 관측
 - 개 요 : 시추조사 1개소

5. 점용기간 : (당초) 2023.10.16. ~ 2024.03.31.
 (변경) 2023.10.16. ~ 2027.10.15.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82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17-3번지 ~ 강동구 천호동 480-19번지 일대

 - 면 적 : (변경전) 영구 24,582㎡, 일시 7,350㎡
 (변경후) 영구 13,519㎡, 일시 7,35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호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공사

5. 점용기간 : 2021.7.5.~ 영구.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